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

이정원 외

연구보고 2018-27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

연구책임자 **이 정 원**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이 정 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 태 우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연구보고 2018-27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인 백선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경성문화사 02) 786-2999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7952-86-2 93330

머 / 리 / 말

영유아 가구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또는 즐거운 육아를 위해 다양한 ‘육아서비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영유아 가구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과 선호, 부모의 취업 형태, 자녀의 연령에 따라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육아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해 왔다.

본 연구는 지속적인 저출산의 영향으로 육아서비스의 수요가 양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며, 개별 육아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수요자인 영유아 가구의 육구와 가치관 변동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시작하여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와 선호, 이용 계획 등에 대한 기초 자료를 축적하여, 육아서비스 수요자의 육아를 효율적으로 돕고 육아만족도 제고를 통해 저출산 해소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육아정책의 양적·질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18년 1차년도 조사 결과 영유아 가구가 선호하는 양육 형태는 자녀의 연령별로 차이가 있고, 현재 이용하는 서비스와 가장 원하는 서비스의 불일치도 발견되었다. 선호하는 육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로 부모의 취업과 비용 부담 때문이었으나, 서비스 인프라 부족, 희망하는 서비스 수준과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 차로 인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육아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인프라의 양적 적정성 확보, 수요자 만족도 제고, 수요 변동에 대한 대응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응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육아서비스 수요 대응 방안이 육아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 가구에 좀 더 즐겁고 편안한 육아 현장을 제공하는데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힌다.

2018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목 차

요약	1
<hr/>	
I. 서론	17
<hr/>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9
2. 연구 개요 및 연구내용	23
3. 연구방법	27
4. 연구의 범위	31
<hr/>	
II. 연구의 배경	33
<hr/>	
1. 선행연구 분석	35
2. 우리나라의 육아서비스 수요 대응 정책 현황	49
3. 육아서비스 수요 관련 사회·정책 환경	83
4. 소결	97
<hr/>	
III.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101
<hr/>	
1. 육아서비스 이용 현황	103
2. 육아서비스 종류별 관련 비용 지출 현황과 만족도	143
<hr/>	
IV.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수요	161
<hr/>	
1.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향후 이용 의사와 연령별 이상적 육아서비스 이용 ..	163
2. 이용 수요와 이용 실제의 간극 현황	169
3. 정책 변동에 따른 육아서비스 이용 변동 의사	196
4. 소결	198

V.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지원 정책 관련 의견과 요구	203
1. 영유아 가구의 육아지원 정책 관련 의견	205
2.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시 정부 지원 부족 부분	212
3.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개선 요구	224
4. 소결	237
VI. 육아서비스 수요에 대응한 정책 방안	241
1. 기본 방향	243
2. 육아서비스 수요 대응을 위한 주요 전략	246
3. 육아서비스 수요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248
참고문헌	261
Abstract	267

표 목차

〈표 Ⅰ-2-1〉 연차별 연구 내용 심층 주제	26
〈표 Ⅰ-3-1〉 지역별 패널 표본 할당	28
〈표 Ⅰ-3-2〉 설문 문항	29
〈표 Ⅰ-3-3〉 자문회의 추진 일정	29
〈표 Ⅰ-3-4〉 영유아 가구 심층 면담 추진 일정	30
〈표 Ⅰ-3-5〉 육아서비스 공급자 간담회 추진 일정	30
〈표 Ⅰ-4-1〉 본 연구의 육아서비스의 범주 및 연구범위	31
〈표 Ⅱ-1-1〉 ‘사교육’의 개념 및 해당 유형	38
〈표 Ⅱ-1-2〉 육아서비스 이용 비용 관련 연구 목록	48
〈표 Ⅱ-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 결과 정리	49
〈표 Ⅱ-2-1〉 보육실태조사	50
〈표 Ⅱ-2-2〉 유아교육실태조사	51
〈표 Ⅱ-2-3〉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52
〈표 Ⅱ-2-4〉 가족실태조사	53
〈표 Ⅱ-2-5〉 중장기보육계획의 내용	55
〈표 Ⅱ-2-6〉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유아교육혁신방안)의 내용	57
〈표 Ⅱ-2-7〉 유아수용계획	58
〈표 Ⅱ-2-8〉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59
〈표 Ⅱ-2-9〉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건강가정사업	61
〈표 Ⅱ-2-10〉 어린이집 일반 현황(2017. 12. 기준)	63
〈표 Ⅱ-2-11〉 설립유형별 어린이집 설치 개소 및 비율 추이(2008-2017)	64
〈표 Ⅱ-2-12〉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책의 연혁(2012-2016)	66
〈표 Ⅱ-2-13〉 보육료 지원 단가(2018)	67
〈표 Ⅱ-2-14〉 설립별 유치원 수(2012-2017)	67
〈표 Ⅱ-2-15〉 연도별·유형별 유치원 원아 수용 추이(2012-2017)	68
〈표 Ⅱ-2-16〉 2018년 유아학비 지원연령 및 금액	69
〈표 Ⅱ-2-17〉 시간제 보육 기관 현황	70
〈표 Ⅱ-2-18〉 시간제 보육 이용 및 지원 기준	70

〈표 II-2-19〉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대상 및 시간	71
〈표 II-2-20〉 아이돌봄서비스 인력 현황	72
〈표 II-2-21〉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영아종일제, 보육교사형)	73
〈표 II-2-22〉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시간제, 종합형)	73
〈표 II-2-23〉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내용(가정양육지원)	74
〈표 II-2-24〉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현황	75
〈표 II-2-25〉 지원대상별 지원액	76
〈표 II-2-26〉 가정양육수당 유형별·연령별 지원금액	77
〈표 II-2-27〉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안)	78
〈표 II-2-28〉 유연근무제 유형	79
〈표 II-2-29〉 국내의 출산 및 육아관련 휴가·휴직제도	81
〈표 II-3-1〉 연도별 가구규모별 가구수(1980-2016)	83
〈표 II-3-2〉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 추이(2007-2017)	85
〈표 II-3-3〉 장래 합계 출산율 전망(2015-2065)	86
〈표 II-3-4〉 장래 영유아 인구 전망(2017-2065)	87
〈표 II-3-5〉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추이(2008-2016)	88
〈표 II-3-6〉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추이(2008-2016)	89
〈표 II-3-7〉 경제활동인구 및 여성경제활동참가율(2000-2017)	90
〈표 II-3-8〉 한부모 가구 비율(2008-2017)	91
〈표 II-3-9〉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2013-2017)	92
〈표 II-3-10〉 미취학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돌봄유형	92
〈표 II-3-11〉 부모 국적별 출생아 수 및 출생성비	93
〈표 II-3-12〉 외국인주민 만5세 이하 자녀연령별 현황(2010-2016)	94
〈표 III-1-1〉 응답자 가구 및 아동특성	104
〈표 III-1-2〉 응답자 부모 특성	104
〈표 III-1-3〉 영유아 자녀의 주양육자	105
〈표 III-1-4〉 영유아 자녀의 육아서비스 이용	106
〈표 III-1-5〉 이용하는 어린이집 설립 유형	108
〈표 III-1-6〉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반	109
〈표 III-1-7〉 어린이집 이용의 주된 이유	111
〈표 III-1-8〉 어린이집 이용 시간(평균)	112
〈표 III-1-9〉 관련서비스 이용	113
〈표 III-1-10〉 어린이집 서비스 만족도	114

〈표 Ⅲ-1-11〉 이용하는 유치원 설립 유형	115
〈표 Ⅲ-1-12〉 유치원 이용 주된 이유	117
〈표 Ⅲ-1-13〉 유치원 이용 시간(평균)	118
〈표 Ⅲ-1-14〉 유치원 이용 유아의 관련서비스 이용	119
〈표 Ⅲ-1-15〉 유치원 서비스 만족도	119
〈표 Ⅲ-1-16〉 이용하는 반일제 이상 기관 유형	121
〈표 Ⅲ-1-17〉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주된 이유	122
〈표 Ⅲ-1-18〉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시간(평균)	122
〈표 Ⅲ-1-19〉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영유아의 특별활동 이용	123
〈표 Ⅲ-1-20〉 반일제 이상 기관 서비스 만족도	123
〈표 Ⅲ-1-21〉 시간제 보육 이용 기관(장소)	124
〈표 Ⅲ-1-22〉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 이용 주된 이유	125
〈표 Ⅲ-1-23〉 시간제 보육 월 평균 이용 횟수와 1회 평균 이용 시간	126
〈표 Ⅲ-1-24〉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 만족도	126
〈표 Ⅲ-1-25〉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유형별 이용률, 돌봄장소, 근무형태	127
〈표 Ⅲ-1-26〉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주된 이유	129
〈표 Ⅲ-1-27〉 개별돌봄서비스의 유형별 전반적 이용 행태	130
〈표 Ⅲ-1-28〉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131
〈표 Ⅲ-1-29〉 제 특성, 기타서비스 유형별 이용률	131
〈표 Ⅲ-1-30〉 키즈카페(민간) 및 공공부문 육아카페 이용 주된 이유	133
〈표 Ⅲ-1-31〉 공공부문 육아지원 프로그램 이용 주된 이유	133
〈표 Ⅲ-1-32〉 개별돌봄서비스의 유형별 전반적 이용 행태	134
〈표 Ⅲ-1-33〉 기타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만족도	135
〈표 Ⅲ-1-34〉 사교육 유형별 이용 행태	135
〈표 Ⅲ-1-35〉 사교육 유형별 비용 만족도	137
〈표 Ⅲ-1-36〉 사교육 유형별 이용 만족도	138
〈표 Ⅲ-1-37〉 단시간 학원 이용 주된 이유	139
〈표 Ⅲ-1-38〉 방문형 학습지 이용 주된 이유	140
〈표 Ⅲ-1-39〉 비방문형 학습지, 온라인 통신 교육 이용 주된 이유	141
〈표 Ⅲ-1-40〉 방문형 교구활동교육 이용 주된 이유	141
〈표 Ⅲ-1-41〉 비방문형 교구활동교육 이용 주된 이유	142
〈표 Ⅲ-1-42〉 개인 및 그룹지도 이용 주된 이유	142
〈표 Ⅲ-1-43〉 문화센터 프로그램 이용 주된 이유	143

〈표 Ⅲ-2-1〉 어린이집 이용 비용	144
〈표 Ⅲ-2-2〉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과목 수 및 과목당 비용	145
〈표 Ⅲ-2-3〉 유치원 이용 비용	146
〈표 Ⅲ-2-4〉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과목 수 및 과목당 비용	147
〈표 Ⅲ-2-5〉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비용	148
〈표 Ⅲ-2-6〉 반일제 이상 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과목 수 및 과목당 비용	149
〈표 Ⅲ-2-7〉 반일제 이상 기관 지출 비용 만족도	150
〈표 Ⅲ-2-8〉 시간제 일시보육 이용(월평균 이용 비용)	151
〈표 Ⅲ-2-9〉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비용	153
〈표 Ⅲ-2-10〉 사교육 이용비용	155
〈표 Ⅲ-2-11〉 사교육 비용 수준 만족도	157
〈표 Ⅲ-2-12〉 기타서비스 시간당 이용비용	158
〈표 Ⅲ-2-13〉 기타서비스 비용 수준 만족도	159
〈표 Ⅳ-1-1〉 자녀의 연령별 이용 희망 육아서비스(막내 자녀 기준)	164
〈표 Ⅳ-1-2〉 자녀의 연령별 가장 이상적인 육아서비스(0세~6세)	164
〈표 Ⅳ-1-3〉 자녀 초등학교 입학 후 하교 후 돌봄 희망 방법	166
〈표 Ⅳ-2-1〉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어린이집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였는지 여부 ..	170
〈표 Ⅳ-2-2〉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어린이집 이용이 가장 원하는 형태가 아니었던 경우) ..	172
〈표 Ⅳ-2-3〉 가장 원하는 형태의 양육을 하지 않는 이유(어린이집 이용이 가장 원하는 형태가 아니었던 경우) ..	174
〈표 Ⅳ-2-4〉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유치원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였는지 여부 ..	176
〈표 Ⅳ-2-5〉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유치원 이용이 가장 원하는 형태가 아니었던 경우) ..	177
〈표 Ⅳ-2-6〉 가장 원하는 형태의 양육을 하지 않는 이유(유치원 이용이 가장 원하는 형태가 아니었던 경우) ..	178
〈표 Ⅳ-2-7〉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였는지 여부 및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 ..	179
〈표 Ⅳ-2-8〉 가장 원하는 형태의 양육을 하지 않는 이유(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이 가장 원하는 형태가 아니었던 경우) ..	180
〈표 Ⅳ-2-9〉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개별돌봄서비스가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였는지 여부	181
〈표 Ⅳ-2-10〉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개별돌봄서비스 이용이 가장 원하는 형태가 아니었던 경우) ..	182
〈표 Ⅳ-2-11〉 가장 원하는 형태의 양육을 하지 않는 이유(개별돌봄서비스 이용이 가장 원하는 형태가 아니었던 경우) ..	184
〈표 Ⅳ-2-12〉 현재 어린이집 이용 시간에 대한 의견	185
〈표 Ⅳ-2-13〉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늘리고 싶음에도 현재까지만 이용하는 주된 이유 ..	187
〈표 Ⅳ-2-14〉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줄이고 싶음에도 줄이지 않고 이용하는 주된 이유 ..	189
〈표 Ⅳ-2-15〉 현재 유치원 이용 시간에 대한 의견	190
〈표 Ⅳ-2-16〉 유치원 이용시간을 늘리고 싶음에도 현재까지만 이용하는 주된 이유 ..	192
〈표 Ⅳ-2-17〉 유치원 이용시간을 줄이고 싶음에도 현재까지만 이용하는 주된 이유 ..	194

〈표 IV-2-18〉 현재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시간에 대한 의견	195
〈표 IV-2-19〉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시간을 늘리고 싶음에도 현재까지만 이용하는 주된 이유 ...	195
〈표 IV-3-1〉 육아정책 변화 시 육아서비스 이용의사 변화 정도	197
〈표 V-1-1〉 교육보육비 지원 정책 이용 경험 및 만족도	205
〈표 V-1-2〉 교육보육비 지원 정책 미이용 사유	207
〈표 V-1-3〉 부모 시간지원 정책 인지 및 이용 경험	208
〈표 V-1-4〉 부모 시간지원 정책 만족도(육아휴직, 남성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유연근무제) ...	209
〈표 V-1-5〉 기타 육아지원 정책 인지 및 이용 경험	210
〈표 V-1-6〉 기타 육아지원 정책 만족도	211
〈표 V-2-1〉 자녀양육을 위한 정부지원이 부족한 육아지원 분야	214
〈표 V-2-2〉 기관보육·교육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이 부족한 부분	217
〈표 V-2-3〉 개별돌봄서비스 정책 분야에서 정부지원이 부족한 부분	218
〈표 V-2-4〉 시간제 이용, 기타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한 부분 ...	220
〈표 V-2-5〉 부모의 돌봄 시간 지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한 부분	222
〈표 V-2-6〉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한 부분	223
〈표 V-2-7〉 양육물품 지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한 부분	224
〈표 V-3-1〉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소재	225
〈표 V-3-2〉 부모교육의 필요성	227
〈표 V-3-3〉 기관보육·교육서비스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	228
〈표 V-3-4〉 개별돌봄서비스 정책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	229
〈표 V-3-5〉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 정책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 ..	231
〈표 V-3-6〉 부모의 돌봄시간 지원 정책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	233
〈표 V-3-7〉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정책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	234
〈표 V-3-8〉 양육물품 지원 정책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	236
〈표 VI-3-1〉 현금 지원 서비스 조정안	253
〈표 VI-3-2〉 개별돌봄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과제	254
〈표 VI-3-3〉 부모 자녀 돌봄 시간 지원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과제	256

그림 목차

[그림 Ⅰ-2-1] 연구의 구성 및 수행 체계(2018년 1차년도 연구 기준)	24
[그림 Ⅱ-3-1] 연도별 가구규모별 가구비중(1980-2016)	84
[그림 Ⅱ-3-2] 출생아수와 합계 출산율 추이(2007-2017)	85
[그림 Ⅱ-3-3] 장래 합계 출산율 전망(2015-2065)	86
[그림 Ⅱ-3-4] 장래 영유아 인구 전망(2017-2065)	87
[그림 Ⅱ-3-5] 여성 경제활동참가율(2000-2017)	90
[그림 Ⅱ-3-6] 다문화 출생아 수 및 전체 출생 중 다문화 비중 추이(2008-2016) ...	93
[그림 Ⅱ-3-7] 다문화 가정의 유형별 출산 비중(2008, 2015, 2016)	94
[그림 Ⅱ-3-8] 외국인주민 만5세 이하 자녀연령별 현황(2010-2016)	95
[그림 Ⅱ-3-9] 북한이탈주민의 영유아 자녀의 수 및 자녀 출생국	96
[그림 Ⅱ-3-10]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여부(N=2,172) ...	96

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전반을 분석하여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며, 영유아 자녀의 양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만이 아니라, 육아서비스에 대한 영유아 가구의 선호와 실제 선택 간 간극 여부 및 이유 분석을 통해 잠재적 이용 욕구를 포함한 진정한 ‘수요’를 파악하고자 함.
 - 인구 변동, 근로 문화, 정책 등 다양한 사회변동에 따른 육아서비스에 대한 선호의 변화와 수요 변동을 예측하여 향후 육아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나. 연구 개요 및 연구내용

- 본 연구는 2018~2022년 5년 간 수행 예정으로 본 1차년도 연구에서는 중장기 연구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음.
 -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육아서비스’의 범위를 설정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육아서비스 수요 대응 방안 검토
 - 육아서비스 이용 현황 제시 그리고 잠재 수요 파악을 위한 이용 희망과 실제 이용 간의 간극 및 이유를 분석
 - 향후 육아서비스 수요 변화를 전망
 - 현재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욕구에 대응한 단기적 서비스 제공 방안 및 중·장기 정책 과제 도출

- 2~5차년도 연구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2차년도에는 ‘초등학생’이 포함되므로 ‘초등학생 가구’가 필요로 하고 사용하는 ‘육아서비스’를 심층 분석하고자 하며, 아동수당이 육아서비스 수요와 이용 실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 3차년도에는 가구 소득수준별 육아서비스 이용 격차를 살펴보기 위해 빈곤가구와 일반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비교 분석할 계획임.
 - 4차년도에는 다자녀 가구, 맞벌이 가구 등 육아 부담이 큰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와 이용을 심층분석할 계획임.
 - 5차년도에는 누적된 자료를 활용하여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와 수요 변화의 추이 분석에 주력하여 중·장기적인 시사점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육아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이슈와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육아서비스의 수요를 전망하기 위한 자료를 살펴봄.
- 영유아 가구 대상 설문조사
 - 본 연구는 ‘영유아 가구의 소비 실태 및 육아물가 연구’에 포함된 3개 세부과제 중하나로, ‘영유아 가구의 소비 실태 조사’와 통합 조사를 실시함.
 - 조사는 일정 수의 패널을 구축하여 동일 패널에 매년 조사를 실시하는 ‘패널조사’ 방식을 취하며, 전국에 거주하는 만0세~5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1,648가구를 방문 면접 조사 실시하였음.
 - 통합조사 내용 중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현황과 수요, 육아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요구 부분을 구축하여 분석하였음.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의 방향 정립, 설문지 검토, 정책 제언에 대한 자문을 위해 관련 학계,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문회의를 실시함.
- 영유아 가구 대상 심층 면담
 - 대규모 설문조사에서 드러나기 어려운 특수 수요층을 선별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음.

□ 육아서비스 부문 공급자 대상 간담회 개최

- 설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아서비스 부문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와 요구와 관련된 공급자 측면의 의견을 수렴함.

라. 연구의 범위

□ 본 연구에서는 ‘육아서비스’를 보육·교육서비스를 포함해 자녀 양육과 관련해 영유아 가구가 이용하고 필요로 하는 ‘육아지원’의 영역과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설정함.

- ‘육아지원’의 범주는 ‘서비스’, ‘시간’, ‘비용(현금)’으로 구분하고, 이외 ‘사교육’을 더하여 ‘육아서비스’의 범위를 설정함.

2.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가. 육아서비스 이용 현황

□ 응답자 특성

- 응답한 가구는 총 1,648가구이며, 영유아는 총 2,276명이며, 응답자의 연령 분포는 조사설계상 고르게 대상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 비슷한 비중을 나타냄.
- 부모 근로형태의 경우, 부모 모두 대부분 임금근로자였음.
- 영유아 자녀의 주양육자는 부모가 95.1%, 조부모 4.5%, 타인 0.3%, 조부모 외 기타 친인척이 0.2%로 나타남.

□ 육아서비스 이용 개요

- 전체 영유아 중 절반 이상인 51.2%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며, 유치원 27.8%, 반일제 이상 기관 미이용이 17.8%, 반일제 이상 학원 등 이용 3.3%로 나타남.

□ 육아서비스 종류별 이용 실태와 만족도

-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54.1%는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19.7%, 가정 15.1%, 사회복지법인 5.2%, 법인·단체 3.5%, 직장 2.2%, 협동은 0.3%에 해당함

- 어린이집에 보내는 이유는 ‘발달적 측면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58.2%), 이용시간은 총6시간 58분이며, 시간연장 보육 서비스 이용 비율은 2.1%, 특별활동 이용은 62.5%로 나타났고, 이용 중인 어린이집의 서비스에 대해 75.7%가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함.
- 유치원 이용 아동 중 국·공립 이용아동은 30.5%, 사립유치원 이용 아동은 69.5%로 나타남.
 - 유치원을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38.8%), 이용시간은 총 6시간 53분이며, 방과후 과정은 6.2%가 이용하며, 특성화 프로그램은 63.8%가 이용하고 있고, 유치원 서비스에 대해 77.2%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음.
-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아동 중 47.1%는 영어학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24.4%, 체육 관련 기관, 16.6% 종교기관, 5.2% 예능학원(미술, 음악), 5.1%는 놀이학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주기 위해서’였으며(29.9%),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총 5시간 39분이며, 반일제 이상 기관의 특별활동을 59.1%가 이용하고 있고, 반일제 이상 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87.4%가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함.
- 시간제 보육 이용율은 1.9%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70.4%가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16.6% 육아종합지원센터, 6.8%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간제 일시보육서비스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급한 불일이 있을 때 필요해서’였으며(48.7%), 월평균 이용 횟수는 8.7회, 1회 평균 이용 시간은 2.7시간으로 나타났고, 이용자의 56.5%가 만족한다고 응답함.
- 아이돌보미 이용가구가 1.5%,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가 1.8%,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 13.9%, 친인척이 자녀를 돌봐주는 경우 1.8%인 것으로 나타남.
 -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 중 ‘아이 연령에 발달상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가 24.6%로 가장 많으며, 평균 3~4회씩 총 13~18.6시간을 이용하고 있고, 민간육아도우미에 대해서는 73.6%, 조부모 돌봄의 경우는 93.0%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타서비스에 해당하는 키즈카페는 이용률이 66.8%, 공공부문 육아카페 3.5%, 공공부문 육아지원 프로그램은 4.3%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 키즈카페와 공공부문 육아카페를 이용하는 이유는 주로 ‘아이가 좋아해서’이며, 공공부문 육아지원 프로그램은 ‘유용한 프로그램이 많아서’였음.
 - 키즈카페는 월평균 1.8회 이용 회당 2시간 정도 이용하며, 공공부문 육아카페는 월평균 2.4회 회당 1.6시간, 공공부문 육아지원 프로그램은 월평균 2.4회 회당 1.4시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타 육아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키즈카페 3.8점, 공공부문 육아카페 3.8점, 공공부문 육아지원 프로그램은 4.1점으로 높게 나타남.
- 사교육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단시간 학원’은 15.6%가 이용하고 있고, ‘방문형 학습지’ 15.4%, ‘문화센터 프로그램’ 10.0% 그 밖의 사교육 유형은 1.1~3.2%정도만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형별로 월평균 1.1~1.4개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단시간 학원’은 주당 3.5회 이용하고, 주평균 3시간을 조금 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모든 유형에 대해 지불하고 있는 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이용 만족도 역시 유사하게 나타났음.
 - 사교육 이용 이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시간 학원’은 주로 ‘자녀가 원해서’이며, ‘방문형 학습지’는 선행학습을 위해, ‘비방문형 학습지’는 ‘편리성’, ‘방문형 교구활동교육’은 ‘교육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우수해서’, ‘비방문형 교구활동교육’은 ‘편리성’, ‘개인 및 그룹지도’는 집중적인 교습 효과를 얻기 위해, ‘문화센터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다양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 유형별로 상이하게 나타났음.

나. 육아서비스 종류별 관련 비용 지출 현황과 만족도

- 어린이집 이용 관련하여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추가 보육료로 매월 8,100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기타비용 18,900원, 시간연장 서비스 이용료 1,000원, 특별활동비 51,2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3개를 이용하는 영유아가 가장 많았으며(29.8%), 과목당 월평균 19,8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치원 이용을 위해 정부보조금 제외 추가 교육비로 매월 55,700원을 지출하며, 기타비용 28,300원, 방과후 과정 3,200원,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65,400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3과목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가장 많으며 (25.6%), 과목당 월평균 28,7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에 따라 수업료로 월평균 449,300원, 기타비용 65,400원, 특별활동 97,900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일제 이상 기관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2개를 이용하는 영유아가 가장 많으며(31.7%), 과목당 월평균 비용은 44,600원으로 나타남.
- 시간제 일시보육 이용에 따라 월평균 69,000원 정도 지출하고 있음.
-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에 따라 아이돌보미는 월평균 169,100원, 민간 육아도우미 536,600원, 조부모 돌봄 275,200원,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 212,200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교육 이용에 따른 지출 비용을 살펴보면, 단시간 학원 이용 134,000원, 방문형 학습지 74,000원, 비방문형 학습지 56,000원, 방문형 교구활동교육 102,000원, 비방문형 교구활동교육 88,000원, 개인 및 그룹지도 127,000원, 문화센터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월평균 이용비용은 52,000원으로 나타남.
- 기타서비스 이용에 따른 시간당 비용을 살펴보면, 키즈카페는 6,700원, 공공부문 육아카페 2,500원, 공공부문 육아지원 프로그램 1,600원으로 나타남.

3.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수요

가.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의사와 연령별 이상적 육아서비스 이용

- 막내 자녀 기준 향후 연령별 이용 희망서비스를 응답하도록 함
 - 자녀 1세 때는 ‘부모 직접 돌봄’을 가장 희망한다는 응답이 71.4%, 만 2~4세는 ‘어린이집 이용’을 가장 희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2세는 49.9%, 3세 76.7%, 만4세 60.0%가 어린이집 이용을 가장 희망함. 5세~6세는 유치원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가 각각 71.4%, 79.3%로 가장 높았음.

□ 현재 자녀 연령과는 상관없이 영유아의 연령별 이상적인 육아서비스 이용 형태를 응답하도록 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자녀 0~1세 때는 ‘부모 직접 돌봄’을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는 경우가 가장 많아서 0세 89.7%, 1세 74.6%로 압도적으로 높았음. 만2~4세는 ‘어린이집 이용’을 가장 이상적인 육아서비스 이용이라 응답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2세 53.3%, 3세 70.4%, 50.2%). 5세~6세는 유치원 이용을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각각 74.0%, 78.4로 가장 높았음.

□ 초등학교 입학 후 돌봄 희망 방법

- ‘학원 등 사교육 시설’을 초등학교의 하교 후 돌봄 방법으로 희망한다는 응답이 36.7%로 가장 높고, 방과 후 교실 이용 30.3%, 초등학교 돌봄교실 16.8%, 부모직접돌봄 13.1% 순으로 응답됨.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초등돌봄교실’ 이용 의향이(21.7%) 외벌이 가구(12.6%)에 비해 높았음.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초등학교의 방과후 돌봄 방법으로 ‘학원 등 사교육’이용과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음.
- 2019년 초등입학 예정인 자녀가 있는 가구는 42.7%가 ‘학원 등 사교육 시설’이용을 원한다고 응답해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에 대한 공적 부문의 서비스의 불충분성을 보여줌.

나. 이용 수요와 이용 실제의 간극 현황

□ 영유아 부모에게 자녀의 해당 연령에 현재 육아서비스의 이용 유형이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였는지 질문한 결과, 현재 이용 서비스 유형에 따라 응답에 차이를 보임.

- 현재 이용 서비스가 가장 원하는 육아서비스 이용 형태였다는 응답은 어린이집 이용 사례의 82.9%, 유치원 이용 사례의 94.2%,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사례의 91.1%, 개별돌봄 서비스 이용 사례의 65.5%로 나타남.
- 아동의 연령별로는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이 가장 원하는 형태라는 응답이 4세에서 가장 높았고(88.7%), 0~1세에서 가장 낮았음(69.2%, 68.1%).
- 유치원 이용 가구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 5세인 경우 유치원 이용이 가장 원하는 형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아 97.1%에 달함.

- 가장 원하는 형태의 육아서비스 이용을 못하는 경우, 가장 원하는 육아서비스 형태
 - 어린이집 이용 사례는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34.8%)’,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보며 시간제 양육지원 활용(26.4%)’이 가장 원하는 형태였음.
 - 유치원 이용 사례는 ‘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이 가장 높고(40.2%), ‘어린이집 이용’ 26.8%,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로 양육지원 이용’이 25.1% 순으로 나타남.
 -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사례는 ‘어린이집 이용’(30.8%),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30.2%), ‘가정에서 부모가 돌보며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20.3%)’ 순으로 원하는 형태를 응답하였음.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사례 중 아동이 0~1세인 경우 가장 원하는 형태는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고(0세 50.6%, 1세 39.8%), 2세는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 보육 이용’(36.7%), 3~4세는 ‘어린이집 이용’(3세 41.1%, 4세 56.3%), 5~6세는 ‘유치원 이용’을 응답하였음(5세 40.0%, 6세 37.5%).
- 가장 원하는 형태의 양육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 가장 원하는 형태의 양육을 하지 않는 이유는 주로 부모의 ‘취업’, ‘비용 부담’, ‘원하는 서비스의 접근성 부족’, ‘서비스 희망 수준과 가능 수준의 차이’ 등 현실적인 문제로 가장 원하는 육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음.
- 육아서비스 이용 시간과 희망 이용 시간의 간극
 - 자녀의 어린이집 현재 이용 시간은 ‘적당하다’ 76.8%, ‘지금보다 이용 시간을 좀 더 늘리고 싶다’ 16.0%, ‘지금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줄이고 싶다’ 3.8%, ‘지금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늘리고 싶다’ 3.1% 순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늘리고 싶음에도 현재만큼만 이용하는 주된 이유
 - ‘아이가 혼자 남게 되어 싫어해서’(31.0%),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22.1%), ‘이용 자격 때문에(종일반 자격에 해당되지 않아서)’ 20.9%, ‘더 이용하는게 왠지 눈치가 보여서’ 14.5% 순으로 응답됨.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아이가 혼자 남게 되어 싫어해서’ 37.9%,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29.9%, ‘더 이용하는데 왠지 눈치가 보여서’ 16.8% 순으로 나타났음. 반면 외벌이 가구는 ‘이용 자격 때문에(종일반 자격에 해당되지 않아서)’ 가 31.8%로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냄.

-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줄이고 싶음에도 현재만큼만 이용하는 주된 이유
 -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65.8%), ‘아이를 봐주는 사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11.1%), ‘어린이집의 운영 방침상 일정 시간을 이용해야 해서’(10.7%) 순으로 나타남.
- 유치원 이용 시간을 늘리고 싶음에도 현재만큼만 이용하는 주된 이유:
 - 현재 자녀의 유치원 이용 시간은 ‘적당하다’가 74.1%로 가장 높고, ‘지금보다 이용 시간을 좀 더 늘리고 싶다’ 14.1%, ‘지금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줄이고 싶다’ 6.5%, 지금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늘리고 싶다 5.0% 순임.
 - 현재 시간만큼만 유치원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추가 이용비용이 부담되어서’로 18.7%이며, ‘아이가 혼자 남게 되어 싫어해서’,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가 동일하게 16.6%, ‘더 이용하는게 왠지 눈치가 보여서’ 11.3% 순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에 비해 ‘비용 부담’이 원하는 시간만큼 이용하기 어려운 주된 이유로 나타남.
 - 유치원 이용 시간을 줄이고 싶으나 못줄이고 이용하는 이유는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가 45.6%로 가장 높게 나타남. 어린이집도 유사한 응답 경향을 보여, 기관의 장시간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대리 돌봄이 필요한 시간 동안 다른 돌봄 방법과의 연계가 필요함을 보여줌.

다. 정책 변동에 따른 육아서비스 이용 변동 의사

- 2018년 도입 예정 또는 도입 여부 논의 중인 정책 변화가 해당 서비스 의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봄.
 - 대부분 확대 위주의 정책 변동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용 의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국공립어린이집·국공립유치원의 확충은 국공립어린이집·국공립유치원 이용 의사를 크게 증가시킨. 일부 자부담 체계 도입을 예상하는 ‘표준보육시간 제도 도입’으로 인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이용 의사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4.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지원 정책 관련 요구

가.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지원 정책 관련 의견

□ 보육교육비 지원 정책 이용 경험 및 만족도

- 보육·교육비 지원 정책 중 가장 이용 경험이 높은 지원 유형은 ‘양육수당’이 있음(87.7%). 이밖에 ‘3-5세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72.3%)’, ‘0-2세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67.4%)’, ‘3-5세 유치원 교육비 지원(47.4%)’ 순임.
- 모든 지원 정책에 대해 5점 척도로 평정 결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3.9점, 유치원 교육비 지원 3.8점, 아이돌봄서비스 3.8점이며 양육수당 만족도가 3.7점으로 가장 낮았음. 기관보육교육비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개별돌봄서비스 지원과 출산양육비용 지원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임.
 - 이러한 보육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사유는 ‘지원 대상 비해당’이라는 사유 외에, ‘다른 지원과의 중복 지원 배제’가 가장 주요한 응답이었음. ‘아이돌봄서비스’는 ‘신뢰 부족’(14.8%) 또한 주요한 미이용 이유로 응답되었고,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없음’(9.9%), ‘실제 이용이 어려움’(8.9%)이라는 인프라 부족 문제가 지적됨. 가정에서 1:1 개별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를 단독으로 맡기는 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인프라의 확충과 이용의 편의성 증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부모 시간지원 정책 인지 및 이용 경험 및 만족도

- 부모 시간 지원 정책 중 가장 인지(96.6%)와 이용 경험(19.3%)이 높은 지원 유형은 ‘육아휴직’이었음. 기타 남성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는 ‘들어만 봤음’을 포함한 전체적인 인지도는 80% 이상이나, 이용 경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0%~남성 육아휴직 3.3%에 불과함.
- 부모 시간지원 정책 만족도는 5점 척도로 평정 결과 평균 3.6점이었음. 부모 시간지원 정책 만족도는 맞벌이 가구에 비해 외벌이 가구가 현저히 떨어짐. 맞벌이 가구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65.8%, 외벌이 가구는 39.0%로 차이를 보임.

나.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시 정부 지원 부족 부분

-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꼈던 육아서비스 분야가 무엇인지를 응답하도록 함.

- 정부 지원 부족 분야: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이라는 응답이 30.9%로 가장 많았음. 이외 ‘기관보육·교육(어린이집·유치원) 서비스’ 27.9%, ‘육아휴직 등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 지원’ 17.6%, ‘개별돌봄서비스’ 11.2% 순으로 응답됨.
 - 맞벌이 가구는 ‘기관보육·교육(어린이집·유치원) 서비스’가 가장 부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26.4%) 외벌이 가구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35.8%)이 가장 부족하다는 응답이 높았음.
 - 영아가구의 경우 ‘현금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31.5%), 자녀가 유아인 경우는 ‘기관보육·교육(어린이집·유치원) 서비스’가 가장 정부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32.7%).
- 기관보육·교육서비스 분야에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구체적인 내용
- ‘국공립 어린이집·국공립 유치원 공급 부족’ 47.6%,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부족’ 18.9%, ‘영아 무상보육료, 누리과정 보육·교육비 지원액 수준’ 17.8%, ‘어린이집·유치원의 보육·교육 서비스 질 수준 미흡’ 14.1% 순으로 응답됨.

다.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개선 요구

- 기관보육·교육서비스 분야
-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충’ 50.2%, ‘유치원·어린이집 접근성 제고’ 18.3%, ‘보육료·교육비 지원 안정화’ 9.3% 순으로 응답됨.
- 개별돌봄서비스 정책분야
- ‘공공 개별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 확대’ 33.2%, ‘공공 개별돌봄인력(예: 아이돌보미) 양성 확대’ 29.3%, ‘공공 개별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수준 제고’ 10.3% 순으로 나타남.
 - 거주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가 있음. 대도시는 공공 개별돌봄인력(예: 아이돌보미) 양성 확대가 39.2%로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공공 개별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 확대가 각 38.6%, 55.6%로 가장 많음.
-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 정책 분야
- ‘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예: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사업 비용 지원 대상 확대)가 29.4%, ‘서비스의 다양성 확대’ 29.4%, ‘서비스 수준 제고’ 21.1%, ‘적극

적 홍보로 서비스 내용에 대한 인지도 제고' 19.3% 순으로 나타남.

□ 부모 돌봄시간 서비스 정책 분야

-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홍보 강화)' 32.8%, '제도 이용의 일부 자동화·강제화(예; 자동육아휴직, 아빠의 달 이용 강제화)' 19.0%,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직장지원강화(대체인력풀 구축 및 연계, 대체인력 비용 지원 수준 제고 등)' 16.2% 순으로 나타남.

□ 현금지원 정책 분야

- '현금지원수준 제고' 30.5%, '양육비용지원 대상 확대(지원 대상 연령 확대 등)' 25.5%, '자녀 연령별 양육비가 많이 소요되는 핵심 범주에 대한 집중 양육비 제공' 25.1% 순으로 나타남.
- 총 자녀수에 따른 차이: 자녀가 1명이나 2명인 경우 '현금지원수준제고' 개선 요구가 각 33.7%, 32.1%로 가장 많고,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연령별 양육비가 많이 소요되는 핵심 범주에 대한 집중 양육비 제공'이 35.7%로 가장 많았음.

□ 양육물품 지원 정책 분야

- '지원 자격기준 확대(소득 기준 상향 등)' 30.2%, '물품 지원 서비스 분야 다양화' 17.7%, '물품지원 전달체계의 접근성 확대(물품 대여 기관의 확충 등)' 16.7%, '서비스 홍보 강화(자격 충족 시 대상자 통보, 이용 의향 접수)' 13.5% 순으로 나타남.

5. 육아서비스 수요에 대응한 정책 방안

가. 기본방향

- 육아서비스 인프라의 충분성 확보
- 수요자의 '육아만족도' 제고
- 육아서비스 수요 변동에 대한 대응성 강화: 육아서비스의 대상자 양적 변동, 가족유형 등 질적 변동, 육아서비스 선호의 변화를 고려한 대응성을 강화함.

나. 육아서비스 수요 대응을 위한 주요 전략

□ 수요자의 ‘육아만족도’ 제고 전략

- 수요자의 육아만족도 제고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중 ‘이상과 실제의 간극을 최소화’ 하는 전략으로 ‘연령별 선택과 집중’ 전략을 제안함.
 - 연령별 수요가 집중되는 육아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 서비스의 특성과 서비스 대상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서비스별 차별화 전략을 제안함.

□ ‘수요 변동의 대응성’ 강화 전략

- 양적 변동 요인을 모니터링하여 수요 예측과 필요 재정 규모, 필요 공급량에 자동 반영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함.
- 육아서비스 욕구가 차별화되는 영유아 가구 유형별 통계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반영함.

다. 육아서비스 수요 대응을 위한 정책 과제 제안

□ 육아서비스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 아동 연령별 핵심 육아서비스에 대한 지원 강화
 - 0~1세 영영아 양육: 부모 직접 돌봄 지원 서비스 사회적 인식 제고와 육아 휴직 급여 대체율 인상
 - 2~6세 기관보육·교육 서비스: 질 높은 인프라 구축에 집중
 - 초등학생의 돌봄 지원: 공공 돌봄 인프라의 확충과 내실화에 집중
- 서비스별 정책 과제
 - 기관 보육·교육서비스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을 통한 보육교육서비스 질의 제고
 - 현금 지원: 현금 지원의 재설계

▮ 요약 표 1 ▮ 현금 지원 서비스 조정안

구분	지급대상	지급수준
가정양육수당	영아에 한정(유아 제외)	영유아 가구의 희망 수준, 실제 양육비 소요액을 반영하여 조정
아동수당	영유아 ~ 미성년 자녀까지 확대	출생순위, 연령별 차등화 및 상한액 설정

- 개별 돌봄 서비스 :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접근성 제고

요약 표 2 | 개별돌봄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과제

구분	정책과제	실행과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상향	• 가~다형 확대 (중위소득 기준 150%까지 확대)주)
	• 정부 지원 비율 상향	• 시간당 단가 상승시 상승분 정부 부담으로 흡수주)
아이돌봄서비스 인프라 접근성 강화	• 절대 인력풀 확대	• 수요 예측에 근거한 양성(대기시스템 활용)
	• 수요- 공급 mismatch 감소	• 피크시간대 활동 돌보미 추가 인센티브 지급 • 단시간 활동 돌보미 교통비 실비 지원

- 부모 돌봄 시간 지원: 사회문화적지지 기반 확대와 사각지대 보안을 통한 접근성 제고

요약 표 3 | 부모 자녀 돌봄 시간 지원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과제

구분	정책과제	실행과제
심리적 접근성 제고	• 사회문화적 분위기 조성 (마음 놓고 당당히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 정부의 적극적 홍보·지속적 메시지 (매스미디어 활용 광고, 대중교통 광고 지속 노출, 가족진화사업 인증 지표 내 '직장 분위기' 가중치 확대 강화)
	• 사회문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실질 인프라 조성	• 사업주 지원 차등화(사업장 규모, 육아휴직 발생 비율에 따른 차등 지원 설계) • 육아휴직 자동 신청 간주 법제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①항 개정)
사각지대 보완	• '맞벌이' 가구의 2차 소득자 지원이 아닌 '모든 취업부모' 지원 (한부모 가구 취업부모, 외벌이 가구의 취업부모, 남성, 고소득 취업 부모 등)	• 육아휴직 급여대체를 상향(급여대체를 복유립 국가 수준의 파격 상향 또는 지급상한액 폐지-) 급여대체율 상한으로 중장기 개선
	•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확대

- 물품 지원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 서비스 홍보 강화 및 물품 지원의 다양화

□ 육아서비스 수요 변동 대응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 육아서비스 통합 통계 구축
- 육아서비스 수요 파악을 위한 종합 실태조사 실시 및 종합 육아서비스 공급 계획 수립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개요 및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의 범위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가.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전반을 분석하여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며, 영유아 자녀의 양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특히 본 연구는 육아서비스 수요자의 육아서비스 이용 요구에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사각지대와 미흡성에 사후적으로 결함을 메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선제적이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육아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즉, 육아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출 및 서비스 이용 구조에 대한 중장기 자료 구축을 통해 인구 구조의 변동, 생활양식 변화에 따른 서비스재에 대한 선호 변동, 정책 변화에 따른 수요자의 육아서비스 수요 변화를 적극적으로 예측하여 보다 선제적인 대응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만이 아니라, 육아서비스에 대한 영유아 가구의 선호와 실제 선택 간 간극 여부 및 이유 분석을 통해 잠재적 이용 욕구를 포함한 진정한 '수요'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인구 변동, 근로 문화, 정책 등 다양한 사회변동에 따른 육아서비스에 대한 선호의 변화와 수요 변동을 예측하여 향후 육아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하는 목적을 지닌다.

본 연구는 총 5차년도에 걸쳐 수행될 예정인 중기 연구로서, 1차년도인 2018년에 영유아 가구 패널을 구축하고 영유아 가구 패널 대상의 육아서비스 이용현

황과 향후 이용 의사 등을 2018~2022년에 걸쳐 매년 측정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처럼 동일 대상에 대한 연차별 자료 구축을 통해 자녀 연령 및 가구가 처한 경제적·인구학적 상황 변화, 영유아 가구와 관련되는 정책 변화가 육아서비스 이용 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장기적 관점에 입각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연구의 필요성

왜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변동)에 주목해야 하는가?

그간의 육아환경에서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에 대한 선호와 실제 선택 간에 일정 부분의 간극이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2015년 보육실태조사에서 단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 가구 중 21.8%는 집에서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있다면 자녀를 어떤 기관에도 보내지 않겠다고 응답하여(김은설·유해미·최은영·최효미·배윤진·양미선·김정민, 2016: 128)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선호하는 양육이 아닌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미·김아름·김진미(2015)의 연구에서는 자녀 연령별로 맞벌이 가구에 적합한 양육방식을 질문하였는 바, 만0세~만5세에 걸쳐 부모가 육아휴직 등을 활용해 직접 돌보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만5세 27.1%에서 만0세 80.3%까지 높게 나타났으나, 정작 육아휴직 이용 경험은 29.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7.1% 등으로(유해미 외, 2015: 106-112) 대부분의 맞벌이 부모는 부모가 직접 돌보는 육아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2004년 ‘제1차 육아지원정책방안’ 수립 등 육아정책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시작된 지(이정원·이윤진·김희수, 2017: 61) 10년 이상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 이러한 간극이 발생하는 이유를 분석하여 가능한 간극을 줄여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수요자의 실제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는 정책적 대응의 일종의 지체 현상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된다.

향후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의 양적·질적 변동이 일어날 것임은 현 시점에서도 쉽게 예측 가능하다. 가장 즉각적으로 예상되는 육아서비스 수요의 변화는 수요자층의 감소로 인한 양적 위축이다.

2018년 2월 통계청은 2017년 총 출생아 수는 35만 7,700명으로 2016년도의 40만 6,200명 대비 4만 8,500명, 약 11.9%이 감소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관련 통계를 생산하기 시작한 1970년대 이래 최저치로 2002년 49만 2,111명으로 50만명 선이 붕괴된지 15년만에 40만 명 선이 또 다시 붕괴되고 출생아 30만 명 시대에 진입하였음을 보여준다¹⁾.

출산률의 감소, 출생아수의 감소는 육아서비스를 이용할 수요자층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대표적인 육아서비스인 영유아 대상 기관 보육·교육서비스의 향후 공급량 조절 필요성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이미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 학교의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음이 보고되므로²⁾³⁾,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사교육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육아서비스는 아니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소비재 사업들이 영향을 받고 있음도 이미 보고되고 있다⁴⁾⁵⁾.

이 외에도 문재인 정부는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의 국정 과제 하에 근로자의 노동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중이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7:107). 이러한 정책 기조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육아서비스 수요자 중 맞벌이 가구가 주로 이용하는 육아서비스의 종류와 이용 시간, 지출 비용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 예로 근로자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의 실질적(문화적·심리적 접근성 포함) 이용 기회가 확대된다면 특히 영아기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서비스 중 가정 양육을 위한 육아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기관보육서비스 수요는 감소될 수 있으리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수당법안이 2018년 2월 28일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8년 9월부터 만6세 미만(최대 72개월)의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18. 2. 28)⁶⁾, 보육서비스에 있어서도 무상으

1) 한국일보(2018. 3. 1). 「가팔라지는 ‘출산 절벽’...합계출산율 1.17→1.05명 급감」
 2) 연합뉴스(2018. 2. 12). “저출산 영향 충북 공립유치원·초중고생 18만명 대로 감소”
 3) 광주매일신문(2018. 2. 26). “울해지역초등학교 입학생 709명 감소... 지난해 비광주 425·전남 284명 줄어. 10명 미만 입학 속출...대책마련 절실”
 4) 글로벌이코노믹(2018. 1. 24). “‘기저귀 왕국’ 킴벌리도 저출산엔 속수무책...5500명 감원·공장 10개 폐쇄”
 5) 충남일보(2017. 8. 2). “저출산으로 6월 온라인쇼핑 아동·유아용품 홀로 뒷걸음”
 6)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경제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아동에 지급(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 2. 28).

로 제공되는 보육시간에 대한 개편을 추진중이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 1. 17).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서도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는 이전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육아서비스 수요자인 영유아가구를 둘러싼 인구사회학적 변화, 정책 변화, 문화적 변화에 따른 육아서비스 수요의 변동이 가능하므로, 수요 변화를 예상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통해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육아 환경을 마련하여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크게 두 가지의 필요성으로 압축된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육아서비스 수요자의 수요를 분석하고 예측하고자 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효과적인 육아서비스 지원체계의 구축을 통해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육아서비스 수요자의 육아서비스 이용의 만족도, 궁극적으로는 자녀 양육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육아서비스를 이용하여 일-가정 양립을 하고 있는 많은 맞벌이 가구는 여전히 일과 가정의 선택지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일-가정의 양립 갈등 상황에서 많은 취업모가 경력단절로 귀결되고 있음이 지적된다(이삼식·최효진, 2014). 또한 양육수당을 받으며 가정 양육을 선택한 영유아 가구는 양육수당의 수준과 도움 정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김은설 외, 2016: 391), 기관 보육 서비스 위주의 육아서비스에서도 실제 이용 시간은 희망하는 수준보다는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은설 외, 2016: 174)

한편 영유아 가구의 욕구가 대리양육서비스와 비용 지원의 충분성에서 자녀와 함께 할 시간의 충분성, 기관 이용 외 촘촘한 양육지원 인프라 등으로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육아서비스 공급 체계는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게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기관보육·교육서비스 위주 지원에 편중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이에 육아서비스 수요자의 변화하는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수요 분석 및 선제적 대응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매 3년마다 행해지고 있는 ‘보육실태조사’가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보육·교육 서비스를 포함한 육아서비스와 보육정책 전반에 대한 이용 실태, 요구를 파악하고 있고, 취학권역별 유치원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육아서비스 수요 파악의 내용을 담고 있는 대규모의 실태조사

및 연구가 있다. 그러나, 보육실태조사는 ‘어린이집’이용 수요에 초점을 맞춘 조사 설계에 기초하며,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또한 취학권역별 유치원 이용 수요 파악만을 목적으로 한 조사로서 영유아 가구가 가지는 다양한 육아서비스 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를 통해 실시하고자 하는 영유아 가구 대상 조사는 보육·교육서비스, 개인양육지원 서비스, 현금(비용) 지원, 육아시간 지원, 사교육 등 다양한 육아서비스 전반에 대해 영유아 가구의 이용 수요와 이용 계획,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에 초점을 맞춰 구성되며, 패널 조사 형식으로 자녀 연령 변화에 따라 동일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변동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선행 대규모의 실태 조사와 차별적인 필요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둘째, 육아서비스 수요 대응을 위한 육아정책 관련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육아서비스의 수요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육아서비스 수요자의 서비스 수요와 향후 수요 변동을 예측함과 동시에 육아서비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 체계 및 공급 현황을 분석하여, 수요-공급 간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정과 향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확대해야 할 공급기반에 재정 투입을 집중함으로써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영유아 부모들의 육아서비스의 이용 선택과 결정의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축적하여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한정된 재정 내에서 육아서비스 수요자의 만족을 제고할 수 있는 육아서비스 공급 체계의 개편과 지원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육아지원에 대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 개요 및 연구내용

가. 연구의 개요

본 연구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연구의 방향과 내용 범위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먼저 본 연구의 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8년도 육아정책연구소 일반과제인「영유아 가구의 소비 실태 및

육아물가 연구」를 이루는 3개 세부과제 중 하나로 수행되는 연구이며, 향후 5년을 연속하여 수행될 연속과제의 1차년도 연구라는 특성을 지닌다.

첫째, 총괄과제 내 세부과제로서 본 연구는 연관된 2개 세부과제와 내용의 차별화(연구 범위의 구분)를 피함과 동시에 연구사업 수행 목적을 공유하며 3개 과제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특히 [과제1]과의 통합조사를 위한 설문 문항의 공동 제작과 결과의 공유, 통합 자문회의 등을 통해 연구진행의 전 과정을 공유, 협력하였다. 본 연구는 아래 <그림 I-2-1>의 연구과제2에 해당한다.

그림 I-2-1 연구의 구성 및 수행 체계 (2018년 1차년도 연구 기준)

	연구과제1: 영유아 가구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 Part I: KICCE 소비실태조사 - 영유아 가구 특성 및 응답자 관리 문항
연구과제1: 영유아 가구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 Part II :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실태 - 문헌연구 -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 통계자료 분석 - 해외 사례 조사(출장) - 영유아 부모 심층면담	- 전반적인 가계 경제 및 소비 실태 - 영유아 양육비용 지출 실태 - 자녀 양육비용 소비 행태 및 소비문화 - 양육비 경감 지원 정책 인지 및 제도 활용, 개선 방안
연구과제2: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본 연구) - 문헌연구 -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 영유아 부모 심층면담	- 육아서비스 이용 현황 - 향후 육아서비스 수요 - 육아서비스 이용비용 - 서비스 지원 정책 선호 및 요구
연구과제3 :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 - 통계자료 분석 - 육아물가지수(시장가격조사) - 영유아 부모 심층면담 -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 체감 물가 지수 산출 관련 문항 - 소비 심리 지수 산출 관련 문항 ※육아품목에 대한 지출비용 조사를 활용하여 가중치 산출

주: 1) 연구과제1 : 영유아 가구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는 'Part I : KICCE 소비실태조사'와 'Part II :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실태' 두 부분으로 구성됨(굵은 선 참조).
 2) Part I :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연구과제1~연구과제3의 영유아 가구 대상 통합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단, 조사 설계 등 전반적인 조사 관련 내용은 연구과제1의 Part I에 수록될 예정이며, 조사 자료에 대한 심층 분석은 각 연구과제별로 수행됨.
 3) 상기 내용은 연구과제별 연구방법을 간략히 기술한 것이며, 세 과제의 공통적인 연구방법인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연구과제별 유관 설문 내용을 정리한 것임.
 자료: 최효미·강은진·조미라·조숙인·김태우(2018). 영유아가구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 p.18. [그림 I-2-1]

둘째, 본 연구는 2018~2022년간 5년 과제로 수행 예정으로 통합조사를 위해 구축하는 영유아 가구 패널에 대한 자료를 매년 축적, 연도별 변화를 추적하는 한편, 단기적 대응이 아닌 육아서비스 수요 변동에 따른 중장기적 정책적 대응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최종 5차년도 연구(22년)에서 축적된 연구 결과를 활용한 종합 대응 방안 제시를 목표로, 본 1차년도 연구에서는 중장기 연구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나. 연구내용

앞서 제시한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1차년도(2018년)의 연구 내용을 포함해 2~5차년도의 연구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1차년도 연구 내용

첫째, 육아서비스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육아서비스’의 범위를 설정하고 적절한 육아서비스 범주 및 측정 항목을 제시하였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육아서비스 수요 대응 방안을 검토하였다.

셋째,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영유아 가구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영유아의 연령 및 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취업특성, 소득수준, 거주지역, 가구구성원 특성 등)에 따른 육아서비스 이용 현황(종류별 이용 여부, 이용 주기, 주기별 이용 시간, 지출 비용 등)을 분석한다. 특히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이용 실태 외 잠재 수요까지 파악하기 위해, 이용 희망과 실제 이용, 각각의 이유를 분석한다.

넷째, 향후 육아서비스 수요 변화를 전망하였다. 수요 변화 전망을 위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실시한다. 먼저 관련 문헌, 통계자료, 정책자료 분석을 통해 육아서비스 수요의 총량 및 종류별 증감을 대략적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육아서비스 수요자 대상 조사에서 육아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와 정책변동에 따른 이용 의사를 살펴봄으로써 육아서비스 수요에 대한 정책적 개입 여지를 살펴보았다.

다섯째, 현재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욕구에 대응한 단기적 서비스 개선 및

제공 방안과 중·장기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2) 2~5차년도 연구 내용

2차년도 연구부터는 반복적인 실태조사 내용 분석 외에 초점을 두는 심층 분석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육아서비스’와 관련해 연차별로 초점을 두어 분석할 수 있는 심층 주제로 다음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 2019년에는 본 연구를 위해 구축한 패널 중 ‘초등학생’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초등학생 가구’가 필요로 하고 사용하는 ‘육아서비스’를 심층 분석하고자 하며,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 6. 18)이 육아서비스 수요와 이용 실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차년도인 2020년에는 가구 소득수준별 육아서비스 이용 격차를 살펴보기 위해 빈곤가구와 일반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의 비교 분석을 심층 주제로 수행하고자 한다.

4차년도인 2021년에는 다자녀 가구, 맞벌이 가구 등 육아 부담이 큰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와 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5차년도에는 1~5차년도의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와 수요 변화의 추이 분석에 주력하여 중·장기적인 시사점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표 I-2-1 ▣ 연차별 연구 내용 심층 주제

구분	연구 내용	심층주제
1차년도(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서비스’의 연구 범위 설정 ▸ 육아서비스 수요 대응 방안 및 정책 ▸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분석 ▸ 육아서비스 수요변화 전망 ▸ 정책 과제 	-
2차년도(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분석 ▸ 육아서비스 수요변화 전망 ▸ 정책 과제 	초등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와 수요
3차년도(2020)		소득수준별 육아서비스 이용 격차 분석
4차년도(2021)		육아 부담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와 육아서비스 수요
5차년도(2022)		패널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와 수요 변화 추이 분석

주: 연차별 상황(정책적 관심 및 필요도)에 따라 심층주제의 변경 가능.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육아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이슈와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육아서비스의 수요를 전망하기 위한 자료를 살펴보았다.

먼저 육아서비스 분류, 이용 및 지출 관련 선행연구 등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며, 출산률과 출생아수 변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영유아인구 증감 추이, 한부모·다문화 북한이탈주민 가구 등 육아 관련 취약계층의 증감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는 통계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영유아의 육아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육아 관련 정책 변화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나. 영유아 가구 대상 설문조사

1) 조사 대상 및 규모

본 연구는 ‘영유아 가구의 소비 실태 및 육아물가 연구’에 포함된 3개 세부과제 중 하나로, 역시 3개 세부과제 중 하나인 ‘영유아 가구의 소비 실태 조사 및 양육 비용 연구’와 통합 조사인「KICCE 소비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일정 수의 패널을 구축하여 동일 패널에 매년 조사를 실시하는 ‘패널조사’ 방식을 취하는데, 매해 출생하는 새로운 출생아(0세) 가구에 대한 표본을 추가하는 한편 이탈하는 패널 표본을 일정 부분 대체하는 ‘로테이션 패널 조사’방식을 응용하여 표본 대표성과 시계열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목표모집단은 “설문조사 시점 기준 전국에 거주하는 만0세~5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구”이며, 조사모집단은 실제 조사에서 표본으로 선정될 수 있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0세~5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구로 2018년 4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였다.

목표 표본 규모(패널 규모)는 최소 1인 이상의 취학전 영유아가 있는 1600가구였으며, 가구 방문 면접 조사로 실시하였다⁷⁾.

7) 6월 7일 조사원 교육을 실시한 후 실사중임.

패널 구축을 위한 지역별 표본할당은 다음 <표 I-3-1>과 같다.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18년 4월 말)을 기준으로 층별 조사대상 동수를 배분하고 행정 단위 동을 기준으로 PPS(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ampling) 방식에 따라 조사 대상 동을 추출하고 동별로는 출생년도 별 2명씩 균등 할당하였다⁸⁾.

표 I-3-1 지역별 패널 표본 할당

단위: 명

지역	막내자녀 출생년도							계
	2012년생	2013년생	2014년생	2015년생	2016년생	2017년생	2018년생	
서울특별시	42	42	42	42	42	42	21	273
부산광역시	16	16	16	16	16	16	8	104
대구광역시	12	12	12	12	12	12	6	78
인천광역시	14	14	14	14	14	14	7	91
광주광역시	8	8	8	8	8	8	4	52
대전광역시	8	8	8	8	8	8	4	52
울산광역시	6	6	6	6	6	6	3	39
경기도	68	68	68	68	68	68	34	442
강원도	6	6	6	6	6	6	3	39
충청북도	8	8	8	8	8	8	4	52
충청남도	12	12	12	12	12	12	6	78
전라북도	8	8	8	8	8	8	4	52
전라남도	8	8	8	8	8	8	4	52
경상북도	14	14	14	14	14	14	7	91
경상남도	18	18	18	18	18	18	9	117
제주특별자치도	4	4	4	4	4	4	2	26
세종특별자치시	2	2	2	2	2	2	1	13
목표쿼터	250	250	250	250	250	250	127	1,627

2) 조사 내용 및 분석

[그림 I-2-1]에서 제시한 [연구과제1] ‘영유아 가구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와 통합하여 실시하는 조사에서 본 연구는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현황(육아서비스 종류별 이용 여부 및 이용 정도, 이용 목적, 지출 비용 등)과 수요(선호, 이용 의사 등), 육아(서비스)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요구 부분의 설문을 구축하여 해당 부분을 분석하였다.

8) 0세는 2018년 1~6월 출생자에 한하므로 1명씩 할당함.

설문결과 분석 시 영유아 가구의 자녀특성(영유아 자녀 연령, 자녀 수), 가구 특성(부모 취업 상태, 근로특성, 소득, 가구구성) 등 관련 변인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다.

■ 표 I-3-2 ■ 설문 문항⁹⁾

설문 범주	항목
1) 인구사회학적 특성	거주지, 가구소득, 총지출, 부모 연령, 학력, 취업 관련 특성(근로유형 및 시간), 가구(가구원수, 조부모 동거여부 등), 자녀특성(자녀수, 영유아자녀 연령, 출생순위)
2) 육아서비스 이용 현황	육아서비스 유형별 이용 여부, 이용 목적, 이용 주기 및 1회 이용 시간, 지출 비용(지출 비용 유무, 비용, 방법), 이용 이유
3) 육아서비스 선호 및 이용 의사	연령별 선호 육아서비스 및 이용 계획, 선호와 이용이 다른 이유, 정책 변동에 따른 이용 의사 변동
4) 육아(서비스)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요구	육아정책 인지 및 수혜 경험, 휴가·휴직 제도 이용 경험, 정도, 이용 만족도, 개선 요구, 육아서비스 관련 제안

주: 조사의 전체 내용은 최효미 외(2018)의 p.77 <표 III-2-1>과 p.78 <표 III-2-2>을 참조.

3) 조사 방법

구축된 패널에 대해 TAPI(Tablet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방식의 가구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의 방향 정립, 설문지 검토, 정책 제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관련 학계,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 표 I-3-3 ■ 자문회의 추진 일정

구분	일정	안건	대상	비고
1차	2018. 2. 27	- 연구 방향 및 범위, 연구방법 논의	학계	추진완료
2차	2018. 3~4월 중	- 설문지 검토	학계	추진완료
3차	2018. 11월	- 조사 결과 논의	학계 전문가	추진완료

9) [부록] 2018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중 '아동용' 설문 II-IV 참조

라. 영유아 가구 대상 심층 면담

영유아 가구 패널을 구축하여 실시하는 설문조사는 한부모 가구, 저소득 가구 등 육아서비스 특수 수요층의 의견이 충분히 담겨지기 어려운 보편적 영유아 가구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육아서비스 특수 수요층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심층 면담을 통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설문조사에서 드러나기 어려운 특수 수요층을 선별하여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이들의 육아서비스 특수 욕구, 국가 육아서비스 지원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육아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 표 I-3-4 ▣ 영유아 가구 심층 면담 추진 일정

구분	일정	안건	대상	비고
1~2차	2018. 5~10월	- 육아서비스 특수 욕구 - 국가 육아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 요구	외벌이 가구/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어머니 7인	완료(6. 8)
			저소득 가구	완료(10.26)

마. 육아서비스 부문 공급자 대상 간담회 개최

육아서비스 수요자(영유아 가구) 대상으로 실시되는 설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아서비스 부문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와 요구와 관련된 공급자 측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표 I-3-5 ▣ 육아서비스 공급자 간담회 추진 일정

구분	일정	안건	대상	참석자
1차	2018. 4	- 보육·교육서비스 현장에서 나타나는 육아서비스의 요구와 이용 형태	육아서비스 제공 기관 관계자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원장 5인
2차	2018. 6			민간, 가정어린이집 원장 각 1인
3차	2018. 10	- 가정양육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형태와 지역사회 육아서비스에의 요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서비스 담당자	건강가정지원센터 담당자 4인
4차	2018. 10		육아종합지원센터 담당자	육아종합지원센터 담당자 3인

4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분석 및 자문회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 다룰 ‘육아서비스’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본래 ‘서비스’란 사람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을 상품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하나¹⁰⁾, 본 연구에서는 자문회의를 거쳐 이러한 협의의 서비스 개념을 넘어서 ‘육아서비스’를 폭넓게 해석하고자 하였다. 즉, 자문회의를 통해 ‘육아서비스’를 보육·교육서비스를 포함해 자녀 양육과 관련해 영유아 가구가 이용하고 필요로 하는 ‘육아지원’의 영역과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설정하였다. ‘육아지원’의 범주는 II장의 육아서비스의 분류 및 측정에 관한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서비스」, 「시간」, 「비용(현금)」으로 구분하고, 이외 ‘사교육’을 더하여 ‘육아서비스’의 범위를 설정하였다¹¹⁾.

이처럼 본 연구의 핵심주제인 ‘육아서비스’의 범위를 폭넓게 설정함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육아서비스 수요자인 영유아 가구가 자녀를 양육하며 (협의의)서비스, 비용, 시간, 사교육의 영역을 각각 어떠한 목적에서 이용(혹은 수급)하는지, 향후 수요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표 I-4-1 ▮ 본 연구의 육아서비스의 범주 및 연구범위

사교육		육아지원(공공, 민간 포함)										
		서비스					비용 (현금)	시간				
시간제사교육			기관 보육·교육		가정 내 개인양육지원서비스					기타 육아서비스	휴가· 휴직	유연 근무
반일제 이상 학원	시간제 학원	가정 방문 교육, 학습지	상업 문화 센터 프로 그램	반일제 이상	시간제	공공 (아이 돌봄)	민간*	혈연*	육아종, 건가 등 프로그램, 공간 지원	아동 수당, 양육 수당 등		

* 원가구 내/ 타가구 위탁 구분

10) 매일경제용어사전(<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05&cid=43659&categoryId=43659>)
2018. 3. 4 인출

11) II장(연구의 배경)의 1절(선행연구) 가(육아서비스의 분류 및 측정에 관한 연구)를 참조할 것

II

연구의 배경

1. 선행연구 분석
2. 우리나라의 육아서비스 수요 대응 정책 현황
3. 육아서비스 수요 관련 사회·정책 환경
4. 소결



II. 연구의 배경

1 선행연구 분석

가. 육아서비스의 분류 및 측정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 ‘육아서비스’는 영유아 자녀를 양육할 때 필요로 하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정부 지원 정책 일체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의 육아서비스는 크게 선행 연구에서의 주된 주제인 ‘육아지원정책’에 영유아기에 이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을 더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념으로 정의할 경우 육아서비스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는 ‘육아지원정책’의 포괄 범위와 분류 방식에 좌우될 수 있는 바, 우선 ‘육아지원정책’에 관한 선행연구의 개념 정의와 분류 방식을 살펴보았다.

먼저, 국내 육아지원정책의 동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육아지원’을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양육비용, 부모가 직접 돌보기 힘든 경우 자녀 돌봄을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그리고 일하는 부모들이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머물면서도 어린 자녀를 둔 경우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시간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유해미·김아름·김진미, 2015: 18). 이는 육아지원을 자녀 양육을 위한 1) 비용, 2) 서비스, 3) 시간에 대한 지원으로 개념화 한 선행연구(Lewis J., 2009: 83)의 정의를 차용한 것이다.

유해미 외(2015)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 정의에 따라 육아지원정책을 1) 자녀를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인 ‘현금급여 및 세제혜택’, 2) 기관 및 가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지원’, 3) ‘육아휴직, 유연근무제’로 대표되는 ‘기업의 가족친화제도’로 분류하였다(유해미 외, 2015: 24-39).

이중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기에 ‘기업의 가족친화제도’로 분류된 육아 지원의 범주는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시간정책’으로 분류되기도 하였다(김나영·도남희·이동하·조혜주, 2016: 24).

김나영 외(2016)의 연구에서는 ‘시간정책’을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의 부모들이 자녀양육을 위하여 기본적인 양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의하여, 이 연구에서는 ‘시간정책’에 유연근무제도, 출산 및 육아관련 휴가·휴직제도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김나영 외, 2016: 24).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시간정책’은 ‘근로자인 부’ 또는 ‘근로자인 모’에 대한 지원이지, 반드시 부모 모두가 취업한 ‘맞벌이 가구’의 부모를 위한 지원으로 협소하게 정의할 이유는 없다.

유해미 외(2015)의 연구 또는 김나영 외(2016)에서 분류한 방식은 육아지원정책이 ‘무엇’을 지원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분류 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지,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가정에 ‘대리 돌봄의 서비스’를 지원하는지,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지원하는지를 기준으로 한 분류 방식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백은주·한선아·강민정(2011)의 연구에서는 ‘육아지원’을 어린 연령의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돌봄’을 ‘직접적인 돌봄 제공자’를 기준으로 정리한 Kremer의 5가지 돌봄 유형, 즉 ‘전일제 모성돌봄(Full-time mother care)¹²⁾’, ‘부모 분담 돌봄(parental sharing care)¹³⁾’, ‘세대 간 돌봄(intergenerational care)¹⁴⁾’, ‘대리모 돌봄(surrogate mother care)¹⁵⁾’, ‘전문가 돌봄(professional care)¹⁶⁾’을 소개하고(Kremer, 2006; 백

12) 어머니가 주 양육자가 되어 가정에서 자신의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가 일정 기간 전일제 모성돌봄 실현을 보장하는 제도임(백은주 외, 2011: 214)

13) 영유아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돌봄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부성휴가제 및 육아휴직제가 이를 지원하는 제도임(백은주 외, 2011: 214).

14) 돌봄의 분담이 남녀 간이 아닌 세대 간의 분담이며 동시에 상호 교환의 형태를 띤다. 자녀세대가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조부모 세대가 영유아를 돌보는 형태로 공보육 시스템이 미비할 때 가장 손쉽고 안심할 수 있는 돌봄 유형으로 인식됨(백은주 외, 2011: 214)

15) 베이비시터, 보모 등에 의한 어머니가 제공하는 돌봄과 가장 유사한 환경이나 가정에서 제공되는 돌봄임(백은주 외, 2011: 214-215)

16) 보육교사 등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아이의 발달에 필요한 교육-사회화 교육, 공동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의 돌봄이 이에 해당함(김윤정·문순영, 2009; 백진주 외, 2011: 215에서 재인용)

은주 외, 2011: 214-215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의 육아지원정책 방향이 초기에는 전문가 돌봄에 대한 지원에서 차츰 다른 유형 돌봄에 대한 지원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평가하였다(백은주 외, 2011: 215).

백은주 외(2011)의 연구에서는 육아지원서비스 유형을 두 단계로 구분하였다. 먼저, 자녀양육의 주체를 기준으로 어머니, 부모외 대리양육으로 구분하고, 대리양육의 유형을 ‘개인대리양육’, ‘보육시설’, ‘개인+보육시설’로 구분하며(백은주 외, 2011: 218-219) 육아지원정책 방안에 육아휴직, 탄력 근무 등의 제도 정착 및 확대를 포함하였다(백은주 외, 2011: 220). 이로써 이 연구는 육아지원서비스에 ‘부모(어머니)의 직접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와 ‘부모외 대리양육 지원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고 대리양육지원서비스의 유형을 기관보육, 개인돌봄, 기관과 개인 돌봄 병행의 세부 유형으로 분류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육아지원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집단’ 또는 ‘개별’ 돌봄이라는 방식을 기준으로 크게 ‘기관에서의 집단 양육지원’, ‘가정 내 양육 지원’으로 크게 대별하는 분류 방식을 취한 경우가 있다(이정원·도남희·김세현·나지혜, 2012: 29). 이러한 분류 방식을 취한 연구에서는 ‘가정 내 양육’은 영유아를 “어린이집과 같이 아동이 종일제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양육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이때 ‘가정 내 양육’이 행해지는 공간은 개별적인 양육이 이루어지는 ‘가정(집)’이지만 평소 아동이 살고 있는 집 뿐 아니라 아동을 돌보아 주는 주양육자의 집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이정원 외, 2012: 29).

이처럼 ‘가정 내 양육’은 공간은 집단 보육이 이루어지는 ‘기관’이 아니고 ‘가정(집)’이나, 개별 돌봄을 제공하는 주된 돌봄제공자(주양육자)에 따라 세분될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 이용을 내포할 수 있다.

한편 육아서비스를 크게 ‘육아지원서비스’와 ‘사교육서비스’로 구분할 때 나머지 큰 축인 ‘사교육’의 개념은 그간 선행연구를 통해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다양하게 사용된 사교육의 개념을 정리한 김은영·최효미·최지은·장미경(2016)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1-1 '사교육'의 개념 및 해당 유형

선행연구	개념	유형	특별활동 포함여부
김지경(2004)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제외한 학원, 개인·그룹과외, 학습지, 방과후 교실, 사회복지관, 공부방 등에서의 교육활동		×
우남희 외(2005)	조기사교육: 초등학교 입학을 전후로 하여 학원이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특기 또는 과외 교육으로, 아동의 발달 단계적 특성이나 능력에 맞는 교육이라기 보다는 인지적 자극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학습 자극		
이정원(2009)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두고 정부에 의한 비용 지원 및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외 모든 형태의 사적 비용이 드는 교육	학원, 학습지, 교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방문지도, 문화센터·구민회관 등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관련 프로그램	
이경선·김주후 (2010)	학원, 개인·그룹과외, 학습지(온라인학습지 포함)		
한유미(2010)	어린이집 외에 가정방문 학습지, 학원, 문화센터 등		
정익중(2012)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제외한 민간학원, 개인 또는 그룹과외, 학습지		○
서문희·양미선 (2013)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특기(별)활동, 각종학원, 방문학습지, 개인·그룹 과외비, 인터넷교육, 전화교육 등 기타 교육		
차성현·김순남·김지경·박선옥·전경원·민병철·최보윤(2010)	유아교육기관 내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교육활동(특별활동)과 유아교육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유치원·어린이집 특별활동, 학원, 개별교육(학습지·문화·주민센터 교육, 과외 등), 기타 교육(도서, 장난감, 교재교구, 문화생활 등)	
송정외(2011)	정규 유아교육기관(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보육·교육과정 이외의 일체의 교육	유아교육기관 내 특별활동, 사설학원 및 교습소, 학습지 및 방문과외, 문화센터 및 동주민센터 등에서 운영되는 영유아 프로그램 등	
이광현·권용재 (2015)	1) 원론적 사교육비: 학교밖의 사설 교육기관에 학부모가 지출하는 제반 교육비(학원비, 개인과외비, 학습지 등) 2) 협의의 사교육비: 원론적 사교육비+학교 내 보충수업, 방과후과 정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제반 납부금 3) 광의의 사교육비: 협의의 사교육비+기본적(표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이자부담 경비(수학여행, 현장학습, 급간식, 행사 비용 등)		
이기숙·장영희·정미라·홍용희 (2002a)	유아 조기·특기교육: '적기교육'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유아의 흥미나 관심과 무관하게 주로 초등학교나 그 이후 교육에 대비한 선행학습이나 준비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학원, 개인·소집단 과외, 가정학습지, 가정방문교육, 유치원 특별활동 등	다른 용어 사용

(표 II-1-1 계속)

선행연구	개념	유형	특별활동 포함여부
이명순(2007)	유아조기교육: 0-6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유아의 흥미나 발달을 고려하지 않고 선행학습이나 준비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가정 방문학습지, 각종 학원, 국가적 교육과정 및 보육과정에 준하지 않은 유아교육기관의 특별활동	
백혜정 외(2005)	조기사교육: 학령기에 도달하지 않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원이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특기 또는 과외 교육으로 아동의 발달 단계적 특성이나 능력에 맞는 교육이라기 보다는 인지적 자극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학습 자극		명시하지 않음
김은영 외(2016)	사교육: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외에서 사부담으로 이루어지는 개인 및 그룹교육: 이광현·권용재(2015)의 원론적 사교육비의 사교육 정책 차용.	학원, 개인·소집단 과외, 가정학습지, 가정방문교육	×

출처: 김은영 외(2016).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방안(II). p. 35-36. '〈표 II-1-1〉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영유아 사교육 개념'에 김은영 외(2016)의 사교육 개념(p. 35) 추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사교육을 개념 정의한 연구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의 '사교육' 포함 여부에 따른 차이가 발견된다. 다양한 '사교육' 개념을 정리한 김은영 외(2016)의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에서의 특별활동이나 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은 '사(私)비용 공(公)교육'으로 엄격한 의미에서 '사교육'과 구분하였다(김은영 외, 2016: 35). 반면 영유아 대상 보육·교육비용 추정 연구(최효미·김나영·김태우, 2017)에서는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비용'의 구성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비용', '사교육 이용 비용',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으로 분류하면서, 사교육 이용 비용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 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는데(최효미 외, 2017: 21), 이는 어린이집의 특별활동과 유치원의 특성화 프로그램은 개념적으로 사교육과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나. 육아서비스의 이용 행태 분석 연구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형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같은 기관 이용, 조부모 및 친인척, 민간육아도우미 또는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가정 내 개인양육지원서비스, 반일제 이상 및 시간제 학원 등의 사교육 관련 이용, 기타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제공 프로그램 이용, 양육수당 지원과 같은 비용 지원,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의 영유아 가구 부모의 시간 지원 서비스 등과 같이 다양하다. 다음에서 이상에서 언급되었던 다양한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형태 각각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1) 보육·교육 기관 이용

우리나라 전체 미취학 영유아 중 68.1%(2016년 12월말 기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었다. 연령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0세 16.9%, 1세 72.5%, 2세 87.8%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고, 3세 89.7%, 4세 91.1%, 5세 90.7%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어(육아정책연구소, 2017: 23), 0세를 제외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같은 기관 보육·교육 형태의 육아서비스 이용이 영유아들에게 보편적임을 알 수 있다.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 가장 많이 응답된 것은 ‘집과의 거리’(25.9%) 였으며, 영아의 경우 ‘집과의 거리’ 때문에 보육기관을 선택한 비율이 27.3%로 유아에 비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김은설 외, 2016: 125).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기관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질 높은 기관이 집 가까이에 있기를 원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 외,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병설 유치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신뢰가 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어린이집의 경우 52.9%, 유치원의 경우 49.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비용이 저렴해서라는 응답이 어린이집의 경우 26.6%, 유치원은 31.0%로 나타났다(김은설 외, 2016: 258).

2)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가정 내 개인양육지원서비스의 경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단독으로 이용하는 경우, 기관과 병행하여 이용하는 경우로 이용 형태가 구분되며, 개인양육서비스의 제공자도 혈연인 경우와 비혈연인 경우로 구분된다. 먼저 가정 내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의 단독 및 기관 병행 이용 정도에 관하여 살펴보면, 2015년 전국보육실태의 가구조사에서 영유아는 10.9%가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양육지원서비스만을 이용하는 경우는 2.4%, 기관 이용과

병행하는 경우는 8.5%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설 외, 2016: 340). 개인양육지원 서비스 이용은 유아보다 영아가 많고, 0세아 중 87.4%가 개인양육 단독으로 이용하고, 5세 유아 중에서는 개인 단독으로만 이용하는 경우가 없으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단독 이용은 감소하고 기관과 병행하는 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은설 외, 2016: 341).

다음으로 2015년 전국보육실태의 가구조사에서의 가정 내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를 살펴보면, 혈연 개인양육서비스 제공자 중 95.7%는 조부모이며(김은설 외, 2016: 345), 비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베이비시터가 49.2%, 아이돌보미 22.2%, 동거비혈연이 12.1% 순으로 나타났고, 영아의 경우 아이돌보미가 자녀를 가장 많이 돌봐주는 비혈연 개인양육서비스 제공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설 외, 2016: 355). 가구소득별로는 파출부·가사도우미와 같은 비혈연 개인양육서비스 제공자는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인 가구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설 외, 2016: 355).

2015년 전국보육실태의 가구조사에서 자녀 돌봄에 있어 남편 이외에 도움을 주는 사람에 대한 조사 결과, 51.7%에 해당하는 절반 정도의 응답자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그 외 친정부모 21.9%, 시부모 15.3%의 순으로 나타났다(김은설 외, 2016: 98). 이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영유아 가구의 자녀 돌봄은 조부모 의존도가 매우 높은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긴급하게 대리 양육이 필요할 경우 도움을 가장 많이 받는 대상이 조부모라고 조사 대상의 70%가 응답한 것으로 보고하였던 권미경·박원순·엄지원(2016)의 연구 결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보여진다.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너무 어려 적응에 애로가 있음’이 72.4%를 차지하였고, ‘주변에 마땅한 기관 없음’이 10.2%, ‘한 사람이 여러 아이를 같이 돌보는 것이 불안해서’가 6.8% 순으로 보고되었다(김은설 외, 2016: 344). 영아의 경우에는 너무 어려서 적응이 어렵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던 반면, 유아의 경우는 한 사람이 여러 아이를 같이 돌보는 것이 불안해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서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볼 수 있었다(김은설 외, 2016: 344).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고 해당 응답에 모두 답하도록 하였던(중복 응답 허용) 다른 연구 결과에서는 ‘자녀가

기관 이용 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46.1%로 절반 정도였으며, 다음으로 '자녀가 어려서 기관 적응이 힘들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41%, '원하는 시간에 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서'가 32.5% 순으로 나타났다(김나영·도남희·이동하·조혜주, 2016: 119)고 보고하였다. 이를 연령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로는, 0세와 만 1세의 경우에는 '자녀가 어려서 기관적응이 힘들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각각 57.4%, 52.7%로 가장 많았고, 만 2세와 만 3세, 만 4~5세의 경우에는 '기관 이용 후 돌보아 줄 사람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다(김나영 외, 2016: 119).

3) 반일제 이상 및 시간제 학원 등 이용

반일제 이상 학원 및 시간제 학원 등 사교육 관련 이용에 관하여 살펴보면, 먼저 김은설 외(2016)의 연구에서는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영유아 중, 영어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57.3%, 미술학원, 체육센터, 선교원 등의 기타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42.7%인 것으로 보고하였다(김은설 외, 2015: 308). 동연구에서 어린이집유치원 외 반일제 이상 학원은 영아의 경우에는 기타 기관을, 유아는 영어학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좀 더 높았고, 미취업모 자녀들이 기타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김은설 외, 2016: 308). 또한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구의 소득은 400~699만원 범위에 속하며, 소득이 높은 가정의 유아가 영어학원을 이용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다(김은설 외, 2016: 308). 동연구에서는 또한 시간제 학원을 이용하고 있는 영아의 비율은 6.7%, 유아는 24%인 것으로 나타났고, 개별교육 중 학습지 이용 비율이 14.1%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다(김은설 외, 2016: 363). 시간제 학원 이용의 경우, 대도시 지역이 21.4%로 다른 지역에 비해 시간제 학원 이용 비율이 높았으며, 모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크게 없었지만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이용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김은설 외, 2016: 363). 시간제 학원 이용 프로그램으로는 체육 프로그램이 5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미술 28.1%, 음악 13.6%, 언어 9.2%, 수학 8%, 영어 7.5% 순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김은설 외, 2016: 366). 시간제 학원의 프로그램별 부모부담 비용은 영어가 119,2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체육 92,300원, 과학 88,200원,

음악 81,600 순인 것으로 보고하였다(김은설 외, 2016: 369).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되었던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추정 4차년도 연구에서는 이장에서 논의되었던 기관 이용, 개인양육지원서비스, 반일제 이상 및 시간제 학원 등 이용에 관한 만족도와 관련된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개인양육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4.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일제 이상 학원에 대한 만족도는 4.0점, 시간제 학원은 3.9점 이었던 반면, 학습지에 대한 만족도는 3.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다(최효미·김길숙·이동하·임준범, 2016: 155). 또한 관련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에서는 개인양육지원서비스가 조금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반면 만족도는 가장 높았고, 학습지 이용 부담에 관하여는 부담스럽지 않다는 응답이 많은 편이었지만 만족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최효미 외, 2016: 155). 한편, 김나영 외(2016)의 연구에서도 이장에서 논의되었던 관련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경제적 부담을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 부모 1,035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던 바 있었고, 그 결과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경우 부담된다는 비율이 연구 대상의 58.7%에 해당하였고, 유치원 이용 부모의 68.1%가 부담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조부모와 친인척을 이용하는 경우 50.4%, 베이비시터 72.9%, 반일제 이상 학원 69.7%, 사설 기관 67.2% 순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상과 같은 기관 및 서비스 이용에 월 평균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가구가 전체 22.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다(김나영 외, 2016: 102).

4) 육아종합지원센터/건강지원센터 및 임신육아종합포털 등 이용

육아종합건강지원센터 및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이용과 관련하여 2015년 전국보육실태의 가구조사에서 먼저 인지여부를 살펴본 결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부모들이 과반수(59.7%) 인 것으로 나타났고(김은설 외, 2016: 103),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인지 정도는 67.0%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설 외, 2016: 105). 먼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장난감·도서대여에 대한 인지정도가 92.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가 영아인 경우 육아정보 제공, 놀이·체험 프로그램 및 장난감 도서대여 서비스로 자녀 양육에 도움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고하였고, 특히 장난감 도서대여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김은설 외, 2016: 104). 읍면지역의 경우 육아 정보 제공에 대한 이용 비율과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김은설 외, 2016: 104). 육아카페는 자녀가 유아인 경우와 읍면 지역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김은설 외, 2016: 105). 다음으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이용 경험은 도시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이용자 중 45.1%는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김은설 외, 2016: 105). 한편,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에 관한 권미경 외(2016) 연구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 가정지원센터 사업의 경우,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반면 이용자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은 정보제공과 더불어 지원 정책의 신청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이용률이 매우 높은 편이었다고 보고하였다(권미경 외, 2016).

5) 비용 및 시간 지원 정책 이용

여기서는 부모에게 지원되는 비용 및 시간 지원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 보았다. 먼저 부모에게 지원되는 비용 지원으로 가정양육수당에 관하여 2015년 전국보육실태의 가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가정양육수당은 31.1% 정도가 받고 있었고(김은설 외, 2016: 390), 만족하는 비율(만족과 매우만족의 합산 비율)은 60.1%로 이러한 만족 비율은 0~2세 보육료 지원과 3~5세 누리과정 지원이 각 73.1%, 70.4%이었던 것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은설 외, 2016: 393). 또한 가정양육수당은, 영아보다 유아에서, 미취업모보다 취업모에서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설 외, 2016: 393). 가정양육수당 수혜자 대상으로 양육수당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자녀를 기관에 보낼 의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 결과, 가정에서 돌본다는 응답이 57.1%, 기관에 보낸다는 응답이 42.9%로, 가정양육수당 제공으로 인하여 기관에 자녀를 보내려고 했던 가구를 가정 양육으로 일정 수준으로 전환토록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유해미·김아름·김진미, 2015: 115). 2018년도에 5세까지 지급될 예정인 아동수당 도입에 관한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연구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된 바 있으나(김나영·김아름, 2017), 본격적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시점에서의 아동수당 수혜자인 영유아 부모들의 요구나 만족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연구한 바는 아직 없는 관계로 본 연구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다음으로 유해미 외의 연구(2015)에서 부모에게 지원되는 시간 지원 제도 이용에 관하여 살펴 본 결과, 육아휴직 이용 기간은 평균 9.1개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는 8.3개월, 시차출근제는 9.2개월로 1년 미만이 대부분이며, 해당 이용시간이 부족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 66.0%, 64.9%, 49.4%인 것으로 나타나 부모 시간 지원 제도의 실효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해석하였다(유해미 외, 2015: 117). 한편,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 부모 1,035명을 대상으로 시간정책 이용 여부 및 만족도를 조사한 김나영 외(2016)의 연구 결과에서 보고하였던 관련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현재 직장에서의 유연근무제도(단시간 시간제 근로제도, 시차출퇴근제) 시행 비율은 각 33.0%, 31.8%인 반면(김나영 외, 2016: 66), 유연근무제를 얼마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다소/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3.7%를 차지하였다(김나영 외, 2016: 71). 둘째,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육아휴직과 같은 육아관련 휴가·휴직제도의 경우 현재 직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율은 각각 77.7%, 52.1%, 61.1%로 유연근무제 보다 높은 시행률을 나타낸 반면(김나영 외, 2016: 76), 육아 관련 휴가·휴직제도의 사용 자유 수준은 유연근무제와 비슷한 양상으로 다소/매우 어려운편이라는 응답이 47.6%로 나타났다(김나영 외, 2016: 83). 한편, 응답자의 46.6%가 관련 제도의 사용이 직장 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함으로써(김나영 외, 2016: 86) 시간 정책 효율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다.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분석

우리나라의 육아지원 수요 전반에 관하여 자녀 연령별, 모의 취업 여부별, 가구 소득별로 결과를 제시하였던 유해미 외(2015)의 연구에서는 영아 부모의 경우에는 현금지원을 더 많이 원하고, 특히 0세의 경우 현금지원 수요가 다른 연령에 비해 더 많으며 휴직 기회 보장에 대하여서도 0세와 만 1세 부모에서 눈에 띄는 높은 수요를 드러냈다고 보고하였다. 미취업모 경우에는 현금지원에 대한 수요가 37.8%로 가장 많고, 취업모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조정 29.7%, 믿을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 27.7%, 휴직 기회 보장 19.3% 순으로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다

소 다른 응답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했다(유해미 외, 2015). 저소득 가정은 현금지원에 대한 수요가 두드러진 반면, 고소득 가정은 보육서비스와 근로시간 조정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유해미 외, 2015: 123). 영아 대상의 육아서비스 지원에 대한 수요 분석에서는 전반적으로 가정 내 양육 시에는 현금지원이 적합하다는 응답이 52.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혈연 개인양육서비스 이용 시에는 비용지원, 기관 이용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비혈연 개인양육서비스 이용 시에는 비용지원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보고하였다(유해미 외, 2015: 124).

한편, 2015년 전국보육실태의 가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정 내 개인양육과 기관이용에서 선호와 실제 선택의 간극이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영유아를 돌보아 줄 사람이 있다면 기관 이용을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영아 부모의 경우 21.5%, 유아 부모의 경우 4.9%(김은설 외, 2016: 128)로 아동의 연령에 따라 육아서비스 수요 의사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모 외 어디(누구)로부터 양육지원서비스를 받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조사 결과, 2세 미만은 조부모, 2세~4세미만은 가정어린이집 이외 어린이집, 4세 이상은 유치원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설 외, 2016: 102). 국내 육아지원 수요 분석을 시행하였던 연구에서 부모가 모두 일할 경우 자녀를 돌보는 것을 누가 하는 것이 적합한 지 질문한 결과, 자녀 연령별로 응답에 차이가 있었는데, 0세의 경우는 80.3%가 부모가 돌보아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부모돌봄이 적합하다는 응답은 만 3세까지 44.8%로 높은 비율을 보이다가 만 4세 이후로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는 응답이 더 많아졌다고 보고하였다(유해미 외, 2015: 106).

부모들의 이러한 자녀 연령에 따른 육아서비스 선호 형태가 실제 선호하는 육아서비스 선택으로 연결되는 지,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관한 파악이 필요할 것이다. 부모가 선호하는 육아서비스 이용 형태와 실제 선택할 수 있는 육아서비스 이용 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시 부모의 육아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낮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부모의 육아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모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러한 부모의 육아서비스 이용 수요 욕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때 부모의 육아 부담 완화 및 부모의 육아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위해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라. 육아서비스 이용 비용 지출 분석 연구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에 관한 국내 연구를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II-1-2>와 같다. 해당 선행연구에서는 사교육비 혹은 교육·보육서비스 이용실태와 비용에 관하여 분석하였는데, 주로 사교육 서비스 이용이 매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서비스 이용 비용 지출 연구를 3가지로 분류하면, 사교육비 지출에 관하여 분석한 연구(강이주, 2007; 이경선·김주후, 2010; 박선훈 외, 2012), 보육서비스 선택 및 보육비용 지출에 관한 연구(김지경, 2005; 박선욱, 2008; 박선욱, 2011; 백선훈·조성우, 2005; 이성림, 2011; 이성림·성미애, 2012; 이윤진 외, 2013), 사교육비를 포함한 교육·보육비용 및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양미선 외, 2013; 양미선 외, 2014; 이진화 외, 2015; 최효미 외, 2016; 최효미 외, 2017)로 분류할 수 있다.

강이주(2007)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교육비를 분석하였으며, 가구당 15~25만원 정도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선·김주후(2010)에서는 한국복지패널 2차조사(2007)에서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를 분석하였으며, 평균 사교육비가 151,588원으로 나타나 강이주(2007)과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박선훈 외(2012)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 7차조사(2006, 2012)에서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를 분석하였으며, 평균 사교육비가 2006년 62,273원, 2012년 85,331원으로 나타났다. 강이주(2007)¹⁷⁾ 및 이경선·김주후(2010)¹⁸⁾연구와 비용이 큰 차이를 나타낸 것은 박선훈 외(2012)¹⁹⁾와 사교육비의 범위 설정이 다른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선욱(2008)연구는 한국노동패널 8차조사(2005)를 분석하였으며, 월평균 자녀보육비용이 25.4만원으로 분석하였다. 박선욱(2011)은 자체조사를 통해 미취학 자녀 일인당 지출하는 보육서비스 비용은 평균 37.4만원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성림(2011)은 자체조사를 통해 영아 1명 가구 보육 및 교육 서비스 이용 비용은

17) 강이주(2007)에서 사교육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비용 외에 가계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선택적 비용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정규 공교육비 외에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함.

18) 이경선·김주후(2010)에서 사교육비는 학원, 개인·그룹과의, 학습지를 사교육이라 하고 해당 서비스 이용에 따른 교재비, 재료비, 도구실습비, 간식비 등의 부대비용을 포함함.

19) 박선훈 외(2012)에서 사교육비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제외한 학원, 개입그룹과의, 학습지, 어학연수, 인터넷, 유료강좌, 문화센터 등의 항목을 의미함.

22만원, 유아 1명 가구 보육 및 교육 서비스 이용 비용은 39만원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성림·성미애(2012)는 여성가족패널 2차조사(2008) 분석하였으며, 영유아 자녀의 돌봄 및 교육비 월평균 비용이 소득계층에 따라 상층 30.3만원, 중층 18.7만원, 하층 11.7만원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윤진 외(2013)는 자체조사를 통해 월 기본비용(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수업료, 급식비, 교재비 및 재료비, 차량운행비, 간식비, 현장학습비 등)이 2013년 64,886원, 2014년 68,289원인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사교육비용이 2013년 33,216원 2014년 72,372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윤진 외(2013)의 산출값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분석대상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자녀를 둔 가구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진행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는 5년 연속과제(양미선 외, 2013; 양미선 외, 2014; 이진화 외, 2015; 최효미 외, 2016; 최효미 외, 2017)로 진행되었으며, 자체조사를 통해 영유아 교육·보육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분석하였다. 총 교육·보육비용이 2013년 18.2만원에서 2017년 25.5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2014년을 제외하면 어린이집 이용비용은 줄어드는 추세이고, 유치원 이용비용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에 해당하는 반일제 이상 학원 비용은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비용 역시 다소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 표 II-1-2 ▮ 육아서비스 이용 비용 관련 연구 목록

분석내용	저자명	분석대상	분석자료
사교육비 지출	강이주(2007)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	자체조사
	이경선·김주후(2010)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한국복지패널(2차년도)
	박선혜 외(2012)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	한국복지패널(1, 7차년도)
보육서비스 선택 및 보육비용 지출	김지경(2005)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한국노동패널(5차년도)
	백선희·조성우(2005)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	한국노동패널(6차년도)
	박선욱(2008)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	한국노동패널(8차년도)
	박선욱(2011)	미취학자녀	자체조사
	이성림(2011)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자체조사
	이성림·성미애(2012)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여성가족패널(2차년도)
	이윤진 외(2013)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자녀를 둔 가구	자체조사

(표 II-1-2 계속)

분석내용	저자명	분석대상	분석자료
교육·보육비용 결정요인 및 사교육 비용 결정요인	양미선 외(2013)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	자체조사
	양미선 외(2014)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	자체조사
	이진화 외(2015)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	자체조사
	최효미 외(2016)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	자체조사
	최효미 외(2017)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	자체조사

표 II-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 결과 정리

구분	단위: 만원			
	2,013	2,014	2016	2017
총 교육·보육비용	18.2	23.5	22.8	25.5
어린이집	8.3	9.9	6.5	6.9
유치원	16.7	22.5	19.4	19.8
반일제 이상 학원	60.0	85.7	61.8	73.5
시간제 학원	8.7	10.3	13.3	12.1
개인 및 그룹지도	12.8	12.2	13.0	11.0
가정 내 학습지	6.3	6.3	6.8	6.1
개별돌봄서비스	45.7	52.8	56.3	53.7

주: 1) 2013, 2014년 시간제 학원은 '공공기관', '문화센터', '시간제 학원'의 합으로 계산하였으며, '개인 및 그룹지도'와 '가정 내 학습지' 값도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계산함.
 2) '개인돌봄서비스'는 혈연 및 비혈연 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함.
 자료: 최효미 외(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V). p.131~139 내용을 재구성함.

2 우리나라의 육아서비스 수요 대응 정책 현황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파악과 수요에 부합하는 육아서비스 정책 대응을 위해 대규모로 수행되는 실태조사, 국가 수준의 계획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육아서비스 수요에 대한 정책 대응의 큰 골자과 함께 보육·교육 기관 서비스, 가정양육 지원 서비스, 부모의 양육 시간 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육아서비스 수요 파악을 위한 대규모 실태 조사 실시

영유아 가구가 이용하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육아서비스는 대부분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 한 예로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유아교육 서비스는 ‘유아교육법’,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하여 제공된다.

이중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은 각각 유아교육과 보육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²⁰⁾. 또한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아수용계획 수립을 위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²¹⁾.

보육실태조사는 2004년 1월 29일 전부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최초로 명시되었고 이는 2005년 1월 시행되었다²²⁾. 제1차 보육실태조사는 법률 시행 전인 2004년 최초 실시된 후²³⁾ 5년 주기로 2009년에 2차 실태조사가 실시되었고, 2004년 조사와 2009년 조사를 활용한 결과 5년 간격의 조사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보육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으로 실시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2011년 영유아보육법을 개정²⁴⁾하였다(서문희 외, 2012: 21). 개정이후 2012년 3차 조사, 2015년 4차조사를 실시하는 등 총 4사례에 걸쳐 시행되었다(표 II-2-1 참조).

보육실태조사는 크게 어린이집 조사와 가구조사로 구분되며, 어린이집 조사는 ‘원장조사’와 ‘보육교사 조사’의 2종으로, 가구조사는 ‘가구조사’와 ‘아동조사’의 2종으로 구성된다(이미화 외, 2016; 김은설 외, 2016).

표 II-2-1 보육실태조사

구분	보육실태조사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9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
실태조사의 목적	영유아보육법의 적절한 시행
실태조사의 연혁	2004년 제1차 실태조사, 2009년 2차 실태조사, 2012년 3차 실태조사, 2015년 4차 실태조사
실태조사의 주기	3년
실태조사의 방법	가구조사(가구, 아동 조사), 어린이집 조사(어린이집 원장, 교사 조사2종) 구분, 표본 조사

20) 유아교육법 제3조의2 ②, 영유아보육법 제9조

21)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2

22) 법률 제7153호. 시행일 2005년 1월 30일

23) 당시는 ‘전국 보육·교육실태조사’로 실시되어, 유치원에 관한 조사도 함께 실시되었다.

24) 법률 제10983호. 시행일 2011년 12월 8일

(표 II-2-1 계속)

구분	보육실태조사
실태조사의 내용	[가구조사] 1. 가구 및 영유아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이용 현황 3. 어린이집 이용 시 만족도 및 요구사항 4. 향후 어린이집 이용계획 등
	[어린이집 조사] 1. 어린이집의 환경 및 설비 2. 보육교직원 실태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의 지역별·유형별 분포 4. 어린이집의 정원·현원에 관한 사항 5. 보육내용 및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자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보육실태조사는 가구조사를 통해 어린이집의 이용 현황과 요구 사항 파악, 어린이집의 이용 계획 등 향후 어린이집 이용 수요를 파악하며, 어린이집 외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개인양육지원 서비스,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양육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육아서비스에 대한 이용 현황과 욕구를 파악하고 있다(김은설 외, 2016: 23-25). 또한 어린이집조사를 통해서도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보육 영유아 현황, 보육교직원 운영, 보육프로그램 운영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과 보육교사의 근무조건과 처우, 보육정책에 대한 의견 등을 파악하고 있다(이미하 외, 2016: 29-30).

유아교육실태조사는 2012년 1월 26일 관련 조항이 유아교육법 제3조의2로 신설, 7월 1일자로 시행되어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²⁵⁾, 2015년 12월 22일 개정을 통해 실태조사의 주기가 5년이며, 결과발표의 의무가 명시되는 등 비로소 실질적인 실시 근거가 명확화 되었다.

▮ 표 II-2-2 ▮ 유아교육실태조사

구분	유아교육실태조사
법적 근거	유아교육법 제3조의2,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조의2
실태조사의 목적	기본계획 수립

25) 본조신설 2012년 1월 26일, 2012년 7월 1일 시행(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서 2018. 6. 14 인출)

(표 II-2-2 계속)

구분	유아교육실태조사
실태조사의 연혁	2004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3: 유치원 실태조사, 2012년 관련 법조항 신설, 2017년 1차 조사 실시
실태조사의 주기	5년
실태조사의 방법	유치원 조사, 교사 조사 2종 표본조사(필요시 전수조사)
실태조사의 내용	1. 지역별 유아교육 대상자 현황 2. 지역별·유형별 유치원 분포 현황 3. 유치원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 유치원 원아 정원 및 현원에 관한 사항 5. 유아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유아교육 지원 현황 6. 그 밖에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태조사 결과를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자료: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실태조사의 목적은 법상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수립임이 명시되어 있고 2017년 실시된 ‘2017년 전국 유아교육 실태조사’에서는 보육실태조사의 ‘어린이집조사’와 유사한 형태로 유치원 조사와 교사 조사 2종으로 실시되었다(서울특별시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2017).

2017년 이루어진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은 유치원 설치, 취원 유아 현황, 유치원 및 교직원 운영 실태, 누리과정 운영, 방과후 과정 운영, 운영 평가 및 관리,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및 평가, 교사 근무여건 및 직무만족도 등으로 구성되었다(서울특별시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2017: 11). 유아교육실태조사는 법상 명시된 내용 중(표 II-2-2 참조) 교육통계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현황 자료를 제외하고 직접 설문이 필요한 운영과 의견에 관한 내용으로 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 표 II-2-3 ▣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구분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법적 근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2
취학 수요조사의 목적	유아수용계획 수립 지원
취학 수요조사의 연혁	2013년 최초 실시, 2016년 실시
취학수요조사의 대상	만 5세이하 영유아보호자
수요조사의 주기	3년

(표 II-2-3 계속)

구분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수요조사의 방법주)	취학권역별 실시,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 전수조사: 취학권역내 취학 수요조사 대상자 수가 표본 수보다 적은 경우 등 실시
수요조사의 내용	1. 유치원 취학 희망 여부 2. 취학 희망유치원 유형(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병설유치원)

주: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지침(안)(2013. 2)」내용(최은영 외, 2014: 17-18) 참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자료: 유아교육법 시행령

한편 ‘유치원취학 수요조사’는 ‘유아교육실태조사’보다 약 7개월 뒤인 2012년 8월 31일에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관련 조항이 신설되어 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교육부가 2013년 2월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지침」(안)을 마련하여(최은영·장명림·민정원·김문정·우석진, 2014: 17), 이에 따라 2013년 최초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가 시행되었다²⁶⁾. 유치원취학 수요조사는 유아교육수용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실시된다. 취학수요조사의 주된 내용은 유치원 취학 희망 여부와 취학 희망 유치원 유형이다(표 II-2-3참조).

유치원취학 수요조사는 육아서비스의 유형중 유치원을 현재 또는 미래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연령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해당 자녀가 만 3~5세가 되었을 때 각 연령별로 유치원 이용을 희망하는지, 희망유형 유치원은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묻는 조사로, 취학권역별 단기적인 유치원의 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로 볼 수 있다.

| 표 II-2-4 | 가족실태조사

구분	가족실태조사
법적 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제 20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가족실태조사의 목적 ^{주)}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 파악,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 욕구와 수요 파악, 가족 정책 추진의 근거자료 제공
가족실태조사의 연혁 ^{주)}	2005년 최초 시행, 2010년 2차, 2015년 3차 실시
가족실태조사의 주기	5년
가족실태조사의 대상 ^{주)}	표본가구의 가족구성원(1차: 가구내 10세 이상 가구원, 2차: 가구내 15세 이상 가구원, 3차: 가구내 12세 이상 가구원)

26) 본조신설 2012년 8월 31일(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2018. 6. 12 인출)

(표 II-2-4 계속)

구분	가족실태조사
가족실태조사의 방법 ^{주)}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필요시 자기기입식 병행)
가족실태조사의 내용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성별, 연령, 혼인상태, 취업상태 등) 2.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소득, 지출, 자산 등) 3. 가족의 형성·유지와 관련한 가족의 가치관에 관한 사항 4. 가족행태에 관한 사항(혼인, 출산, 자녀양육, 가족부양, 가족역할 등) 5.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등) 의식주·소비·여가·정보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6. 가족갈등·가족해체 등 가족문제에 관한 사항 7. 건강가정관련 교육·상담·가정봉사원의 이용 등 서비스 욕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건강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 「2015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장혜경 외, 2015: 17-18) 참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자료: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가족실태조사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를 근거로 2005년 1차 조사 실시 후 5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다(표 II-2-4 참조). 가족실태조사의 목적은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한국가족의 변화양상 및 추이를 읽어내며, 서비스 욕구와 수요를 진단하여 가족 정책 추진의 근거자료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장혜경 외, 2014; 장혜경 외, 2015: 5에서 재인용), 3차 조사의 경우 제3차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 수립시 반영을 위해 앞서 실시되었다(장혜경 외, 2015: 6).

가족실태조사는 조사 내용 중 가족돌봄(영유아, 초등학생, 간병 필요자) 유무와 관련 세부내용, 필요서비스, 정책 요구를 포함하고 있어 변화하는 가족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가족서비스(육아서비스 포함)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적절한 가족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가차원의 대응 노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육아서비스 관련 국가 수준의 계획 수립

1) 중장기 보육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해 매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보육계획'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되며, 어린이집 수급계획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2004년 1월 영유아보육법 개정(2005년 1월 시행)으로 국가 보육계획수립이 의무화된 후 2006년 7월 '제1차 중장기보육 계획(새싹플랜, 2006-2010)'이 국가수준의 최초의 보육계획으로 수립되었다(이정원 외, 2017: 15). 당시 국가수준의 보육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배경에는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가정 내 돌봄 기능 약화, 여성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보육의 필요성·중요성 부각과 2000년 이후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여성가족부, 2006:3; 이정원 외, 2017:15에서 재인용) 가정의 기능을 대신할 자녀 돌봄 서비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대리돌봄 서비스로 '보육'서비스라는 육아서비스의 제도화·체계화의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제1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추진 중 정권 교체로 인해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수정판인 '아이사랑플랜(2009-2012)'이 마련되었고(보건복지가족부, 2009: 5; 이정원 외, 2017: 16에서 재인용),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3-2017)'이 수립되었다. 2017년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종료를 앞두고 향후 5년간의 보육정책의 향방을 지시하는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²⁷⁾.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은 관련 사회정책환경의 분석, 관련 연구결과 및 통계, 선행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바탕으로 보육사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며, 보육서비스 관련 수요 파악을 근거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보육교직원의 양성 등 인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므로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의 골자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표 II-2-5 ■ 중장기보육계획의 내용

구분	내용	비고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시기 및 절차)	

2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 12. 17).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발표」

(표 II-2-5 계속)

구분	내용	비고
연혁 ^{주)}	2006년 '제1차 중장기 보육 계획(새싹플랜, 2006-2010)', 2009년 '아이사랑플랜(2009-2012)', 2013년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3-2017)', 2017년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아이사랑플랜'은 '제1차중장기보육 계획'의 수정판
주체	보건복지부 장관	
목적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	
주기	5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방법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내용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주: 이정원·이윤진·김희수(2017). 2018-2022 보육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참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자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유아교육혁신방안)과 유아수용계획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3조의2에 근거하여 5년 마다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²⁸⁾. 앞서 소개하였던 '유아교육실태조사'는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실시하며, 2017년 전국 유아교육실태조사의 주요 결과가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²⁹⁾에 반영되었다(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정책연구소, 2017).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년 11월 '유아교육선진화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중이던 2012년 1월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추진이 의무화되었다(문무경·박창현·송기창·김문정, 2017: 18).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선진화정책의 미진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누리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2013년 2월 '제1차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13-2017)'을 수립하였고(문무경 외, 2017: 18), 2017년 12월 27일 제2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인 '유아교육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³⁰⁾.

28) 유아교육법 제3조의2

29) 유아교육혁신방안

30) 교육부 보도자료(2017. 12. 27).「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발표」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은 유아교육실태조사, 교육통계, 관련 사회정책환경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유아교육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정책 목표를 설정하며, 유아교육과 관련된 수요 파악을 근거로 투자 및 필요 자원, 유아교육 기반 구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므로 유아교육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의 골자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I-2-6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유아교육혁신방안)의 내용

구분	내용	비고
법적 근거	유아교육법 제3조의2,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조의2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유아교육 실태조사 실시
연혁	2013년 '제1차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13-2017)' 2017년 '유아교육 혁신방안(2018-2022)' 수립	2017년 전국 유아교육실태조사 실시
주체	교육부 장관	
목적	유아교육 발전을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 설정	
주기	매 5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방법	교육부장관이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내용	1.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유아교육 관련 투자의 확대 및 필요한 자원에 관한 사항 4. 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유치원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아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자료: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유아수용계획’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하여 수립된다. ‘유아수용계획’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2005년 ‘원아수용계획’으로 명시된 후, 2010년 ‘유아수용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2년 8월 법 개정을 통해 유아수용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 등 통일된 기준이 제시되게 되었고³¹⁾,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가 2013년 이루어짐에 따라³²⁾ 각 지방교육청별로 취학권역별 ‘유아수용계획’이 공포되었다. 각 지방교육청·지원청별로 공포되는 유아수용계획의 주된 내용은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로 교육

31)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이유(www.law.go.kr/IsSideInfoPrint.do?contentNm=%EA%B0%9C%EC%A0%95%EB%AC%E8)2018.6.12. 인출

32) 17개 시도 중 대전시와 강원도 2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의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2013. 12월 까지 완료함. 대전시와 강원도의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는 2014년도에 시행함(최은영 외, 2014: 23)

청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된다(표 II-2-7 참조). ‘유아수용계획’은 취학권역별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유치원’서비스에 관한 3년간의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계획으로서 직접적인 육아서비스 대응 정책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만,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정원 대비 희망 취원 수요로 사립유치원 인가 가능 여부를 결정할 뿐 아니라, 유아교육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유아수용계획의 변경도 가능하다. 한 예로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2016년 ‘2016-2019학년도 유아중기수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17년 국정과제로 ‘국공립유치원 취학을 확대’가 추진되고 유치원 교사 정원 증원 등으로 유아 수용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향후 2년간 병설유치원 신·증설 계획을 추가한 ‘2018-2019학년도 유아수용변경계획’을 수립하였다³³⁾. 한편 유아수용계획에 있어 ‘취학권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지역 유아의 유치원 이용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도, 그렇지 못하기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³⁴⁾.

표 II-2-7 유아수용계획

구분	내용	비고
법적 근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주체	교육감	
목적	유치원에 취학하기를 희망하는 유아의 적절한 수용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
주기	매 3년	
방법	취학권역별 3개 학년도 이상의 유아수용계획 수립	취학권역은 취학 대상 유아의 거주분포를 고려하여 정함
내용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	교육청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자료: 유아교육법 시행령

3)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2004년 ‘저출산·고령화’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대한민국정부, 2015: 18)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시작되었다³⁵⁾.

33) 국제뉴스(2017. 11. 3). 제주도교육청, 병설유치원 24학급 신증설...입학 부담 해소

34) 중부일보(2017. 5. 29). 유치원 부족 시흥 목감지구...안산·안양으로 원정 통학

3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www.betterfuture.go.kr/pc/news1.php)

2005년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근거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이 최초로 수립된 이후, 2010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이 수립되어 추진되었고(대한민국정부, 2015: 18), 2015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이 수립되어 추진 중이다.

제1차~제3차에 걸친 기본계획 중 ‘저출산 대응 정책’의 진행은 기본적으로 결혼·출산·양육 지원, 일·가정양립 지원 등을 대응 정책의 골간으로 하여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세밀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박선권, 2017:15). 즉, 그간 ‘저출산’ 대응 정책은 출산을 저하의 주된 원인을 결혼 및 임신·육아로부터 발생하는 부담과 어려움으로부터 찾고, 육아부담 및 일·가정의 양립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육아서비스’의 지원 확대로부터 그 해법을 찾으려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 2차 계획 내에서 보육인프라의 확충과 보육료 지원 지속 확대를 통해 영유아 전계층 무상보육을 시행할 정도로 보육·돌봄분야에 대한 예산 투입이 집중되었고,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관련 재정지출,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자 등도 단시간에 양적으로 급증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5: 22-23). 즉, 육아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저출산 대응’의 관점에서 크게 부각되었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제1, 2차 계획에서 추진하였던 기혼가구 보육 부담 경감 위주의 저출산 대응에서 일자리, 주거 등 만혼·비혼 대책으로 전환하고 제도, 비용지원 위주에서 실천, 사회인식 변화 중심으로의 접근을 시도하겠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표방하고 있으나, 여전히 저출산 대응 분야에서 ‘일·가정 양립’과 ‘보육·돌봄’ 분야의 정책 비중이 적지 않고 이 분야는 기본적으로 육아서비스의 수요에 맞는 공급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육아서비스와 관련한 총체적인 정책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표 II-2-8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구분	내용	비고
법적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21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2005년 제정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정의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	
연혁 ^{주)}	2005년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 수립, 2010년 2차(2011-2015), 2015년 3차 계획 (2016-2020) 수립	
주체	보건복지부 장관	

(표 II-2-8계속)

구분	내용	비고
목표 ^{주)}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합계 출산율] ('14)1.4 → ('20)1.5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 [노인빈곤율]('14)49.6 → ('20)39%	
주기	매 5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방법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 → 저출산·고령사회위원, 국무회의의 심의 → 대통령의 승인으로 확정	
내용	다음의 사항을 포함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육아서비스와의 관련성	'저출산 정책'은 인구변동을 예측하며,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는 자의 직장-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환경의 조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의 강구, 모자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 강구를 방향성으로 함.	동법 제2장 제1절 저출산 대책

주: 대한민국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자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4) 건강가정기본계획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 8)

근거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이 2004년 제정, 2005년 시행됨에 따라 2006년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이 수립되었고(관계부처합동, 2010), 2011년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5)' 수립(관계부처합동, 2011), 2016년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이 수립되어 추진 중이다(여성가족부, 2016).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2006년 수립되었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3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주무부처의 이관과 기존 가족정책 평가, 새로운 의 제발굴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정기운영에 따라 2009년 1월 기본계획의 수정·보완 방침이 결정되어 보완관이 수립된 바 있다(관계부처합동, 2010).

한편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은 '생애주기별·가족유형별 수요에 따

른 맞춤형 가족정책 강화'로 가족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유형별 가족에 맞춘 정책 및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며, '정부·가족·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지원 강화'로 자녀돌봄과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조와 동시에 가족, 지역사회의 돌봄책임 분담과 연계를 강조함으로써 다양한 돌봄수요에 따른 지원방식의 다양화를 추구하며, '남성과 기업의 참여를 기반으로 일·가정 양립 실천 강화'로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 남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 이러한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과 주요 정책 과제를 보면, 자녀 돌봄과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육아서비스와의 연계성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즉,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추진하는 '건강가정사업'의 상당 부분은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자녀 돌봄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기관, 개인양육지원, 부모의(양육) 시간 지원 등 다양한 육아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것이다.

▣ 표 II-2-9 ▣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건강가정사업

구분	내용	비고
법적 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 제3장	
연혁 ^{주)}	2006년 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수립, 2011년 2차(2011-2015), 2016년 3차 계획 (2016-2020) 수립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보완 수립(2010)
주체	여성가족부 장관	
주기	매 5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
방법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 →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내용	다음의 사항을 포함 1.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 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2.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 3. 다양한 가족의 육구 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4.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5.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6. 가족의 양육·부양 등의 부담 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7.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8.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9.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 10.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표 II-2-9 계속)

구분	내용	비고
육아서비스와의 관련성	'건강가정사업' 중 '가정에 대한 지원'에는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직장과 가정의 양립' 등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지원, 임신·출산·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 등이 포함됨. '자녀양육지원의 강화'를 위해 보육, 방과후 서비스,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의 적극적 확대 시행,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아동양육지원사업의 수립·시행 등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명시됨.	제3장 건강가정사업

주: 관계부처합동(2010).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보완판; 관계부처합동(2011).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11-2015); 여성가족부(2016).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자료: 건강가정기본법

다. 육아서비스 수요 대응 세부 정책

여기서는 본 연구에서 분류한 육아서비스의 범주 구분³⁶⁾에 따라 육아서비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단, 이중 국가적으로 정책적 지원이 되지 않는 사교육의 범주에 해당하는 육아서비스는 제외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지원하는 육아서비스인 '기관 육아지원 서비스(유치원·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가정 내 개인양육지원 서비스(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서비스(양육수당)', '부모 시간 지원 서비스(휴가·휴직, 유연근무)', '기타 육아지원 서비스(지역사회 인프라 자원, 물품 지원 등)'에 대한 정책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1) 기관 서비스 지원 정책

육아서비스 수요자의 입장에서 기관 서비스 지원은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과 이용 비용 지원 등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기관 서비스 지원 정책은 크게 인프라 구축과 비용 지원 정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36) <표 I-4-1>참조

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이용 지원

(1) 어린이집 인프라 구축 현황

2017년 보육통계(2017. 12. 31 기준)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총 40,238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고, 어린이집 설립유형별로는 가정어린이집(48.9%), 민간 어린이집(34.9%), 국공립어린이집(7.9%),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3.5%), 직장어린이집(2.6%), 법인단체등(1.9%), 부모협동어린이집(0.4%)의 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 1년 전인 2016년 보육통계자료(2016. 12. 31 기준)와 비교 시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이 1% 가까이 증가하고 가정 어린이집의 비중이 1% 이상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6).

한편 2017년 전체 어린이집의 총 정원은 1,756,603명이며, 그 중 현원은 1,450,243명으로서 전체 어린이집 정원 대비 82.6%의 이용률을 보였다(보건복지부, 2017).

표 II-2-10 어린이집 일반 현황(2017. 12. 기준)

단위: 개소, 명, %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
어린이 집수	개소	40,238	3157	1,392	771	14,045	19,656	164	1,053
	(비중)	100.0%	7.8%	3.5%	1.9%	34.9%	48.8%	0.4%	2.6%
아동수	정원	1,756,603	209,727	131,820	56,514	915,855	360,397	5,506	76,784
	(비중)	100.0%	11.9%	7.5%	3.2%	52.1%	20.5%	0.3%	4.4%
	현원	1,450,243	186,916	96,794	43,404	738,559	321,608	4,508	58,454
	(비중)	100.0%	12.9	6.7	3.0	50.9	22.2	0.3	4.0
	이용률	82.6%	89.1%	73.4%	76.8%	80.6%	89.2%	81.9%	76.1%
1개소당 아동수	2017	36.0	59.2	69.5	56.3	52.6	16.4	27.5	55.5
	2016	35.3	61.5	70.7	56.4	52.1	16.0	27.0	55.2

주: 1) 아동수는 현원(종일, 맞춤, 야간, 24시간, 방과후) 기준임.
 2) 이용률은 현원/정원 비율임.
 자료: 1) 보건복지부(2016). 2016 보육통계. 어린이집 일반현황. p.5.
 2) 보건복지부(2017). 2017 보육통계. 어린이집 일반현황. p.5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의 어린이집 기관수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 어린이집 개소 수는 2013년까지 매년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2013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II- 2-11 참조). 유형별로는 전반적으로 가

정어린이집(46.3~54.0%)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민간어린이집(33.7~39.7%)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은 2014년까지 5.2%에서 5.7%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5년 6.7%, 2017년 7.8%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은편이나, 2008년 1.0%에서 2017년 2.6%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가정어린이집의 비중은 여전히 가장 높지만 2013년 54%에 이른 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다. 2012년 ‘영아무상보육’의 전격적 실시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수요가 단기간에 급증한 2012-2013년간 가정어린이집의 신규 설치가 활발하였으나, 2013년 양육수당의 전계층 지급, 육아휴직의 지속적 확대 등 영아기 양육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영향과 출생아의 감소가 가정어린이집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보육 관련 국정과제에는 ‘22년 국공립어린이집이용률 40% 달성’을 발표하였으며(이정원·이윤진·김희수, 2017: 74),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도 ‘공공성 제고’를 4대 목표 중 하나로³⁷⁾ 제시하고 있으므로,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II-2-11 설립유형별 어린이집 설치 개소 및 비율 추이(2008-2017)

단위: 개소(%)

구분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2008	33,499 (100.0)	1,826 (5.5)	1,458 (4.4)	969 (2.9)	13,306 (39.7)	15,525 (46.3)	65 (0.2)	350 (1.0)
2009	35,550 (100.0)	1,917 (5.4)	1,470 (4.1)	935 (2.6)	13,433 (37.8)	17,359 (48.8)	66 (0.2)	370 (1.0)
2010	38,021 (100.0)	2,034 (5.3)	1,468 (3.9)	888 (2.3)	13,789 (36.3)	19,367 (50.9)	74 (0.2)	401 (1.1)
2011	39,842 (100.0)	2,116 (5.3)	1,462 (3.7)	870 (2.2)	14,134 (35.5)	20,722 (52.0)	89 (0.2)	449 (1.1)
2012	42,527 (100.0)	2,203 (5.2)	1,444 (3.4)	869 (2.0)	14,440 (34.0)	22,935 (53.9)	113 (0.3)	523 (1.2)
2013	43,770 (100.0)	2,332 (5.3)	1,439 (3.3)	868 (2.0)	14,751 (33.7)	23,632 (54.0)	129 (0.3)	619 (1.4)
2014	43,742 (100.0)	2,489 (5.7)	1,420 (3.2)	852 (1.9)	14,822 (33.9)	23,318 (53.3)	149 (0.3)	692 (1.6)

3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 12.27).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 계획(2018-2022) 발표

(표 II-2-11 계속)

구분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2015	42,517 (100.0)	2,629 (6.2)	1,414 (3.3)	834 (2.0)	14,626 (34.4)	22,074 (51.9)	155 (0.4)	785 (1.8)
2016	41,084 (100.0)	2,859 (7.0)	1,402 (3.4)	804 (2.0)	14,316 (34.8)	20,598 (50.1)	157 (0.4)	948 (2.3)
2017	40,238 (100.0)	3,157 (7.8)	1,392 (3.5)	771 (1.9)	14,045 (34.9)	19,656 (48.8)	164 (0.4)	1,053 (2.6)

자료: 이정원·이윤진·김희수(2017). <표 II-2-6>설립유형별 어린이집 개소 및 비율 추이(2008-2016)에 보건복지부(2017). 보육통계 추가함.

(2)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이용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을 위해 어린이집에 지불해야 하는 보육료를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에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이정원 외, 2017: 38). 즉,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육료는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아동 또는 주민등록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아동, 난민,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번호를 불가피하게 부여받지 못한 아동), 거주불명등록가구의 아동에 지원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 309-310). 단, 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수당 지원,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따른 지원과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사망, 실종선고를 받은자, 행방불명자, 국적상실자, 아동복지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16. 1. 1일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가정위탁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중 '16. 1. 1일 이후 출생아동, 해외에 체류 중인 아동은 보육료 지원 자격이 없다(보건복지부, 2018:310).

보육료 지원은 2012년 이전에는 소득계층에 따른 차등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2012년 만5세를 시작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통 커리큘럼인 누리과정의 도입·시행에 따라 점진적으로 보편화 되고(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1. 9. 5; 이정원 외, 2017: 38에서 재인용), 2012년에는 만0~2세 영아를 대상으로 무상보육도 시행되고, 2013년에는 만3~4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취학전 영유아 전연령, 전체층 대상으로 보육료가 지원되는 무상보육이 완성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2. 1. 3; 012. 6. 11; 2013. 2. 1; 이정원 외, 2017: 38에서 재인용).

2016년 7월에는 ‘맞춤형 보육’이 도입, 전면시행되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 12. 30; 이정원 외, 2017: 38에서 재인용) 보육료 지원 대상 중 만0~2세반 이용 영아에 대해 보육 수요에 따른 ‘자격 기준’을 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시간 12시간(07:30~19:30)을 종일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7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맞춤반’을 구분하고³⁸⁾, 이용 시간에 따라 ‘종일반 보육료’, ‘맞춤반 보육료’로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도 차등하여 지원하게 되었다(육아정책연구소, 2016: 11; 이정원 외, 2017: 42에서 재인용).

표 II-2-12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책의 연혁(2012-2016)

연혁	내용
2012. 3. 1	- 만5세 누리과정 도입: 유아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하고 유아학비·보육료를 소득수준 무관하게 지원 - 영아 무상보육 도입
2013	- 만3~4세 누리과정 확대 도입을 통해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완성 및 무상보육 완성
2016	- 만0~2세 맞춤형 보육 시행

출처: 이정원 외(2017). 2018-2022 보육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표 II-1-7>

- 자료: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5. 2). 「만5세 어린이 교육·보육, 국가가 책임진다」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6. 28). 「만5세 공통과정’ 도입 관련 법령 개정」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7. 14). 「이제 ‘5세 누리과정’으로 불러주세요」
 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9. 5). 「5세 누리과정’ 고시」
 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2. 1. 18). 「내년 만 3~4세아도 ‘누리과정(공통과정)’ 도입 및 0~2세아에 대한 양육수당 대폭 확대」
 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2. 1. 13). 「보육료·유아학비 신청하세요 -5세 누리과정, 0~2세 보육료 신청·접수 시작」
 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2. 6. 11).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완성」
 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3. 2. 1). 「어린이집 이용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료 지원」
 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 12. 30). 「내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

2018년 현재 보육료는 보육연령에 따라 0~2세반 보육료와 3~5세반 보육료(누리공통과정)가 지원된다. 0~2세반 보육료는 종일반 보육료와 맞춤형 보육료로 구분하여 지급된다. 종일반은 12시간 종일반(7:30~19:30) 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하며, 맞벌이, 다자녀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의 영아를 자격 조건으로 한다. 그 외 어린이집 이용 영아는 6시간 맞춤형(9:00~15:00) 서비스와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를 제공한다(보건복지부, 2018: 326).

3~5세반 보육료(누리공통과정)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에 대해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18: 324). 0~5세 보육료 지원단가는 다음과 같다.

38) ‘맞벌이, 다자녀, 장애, 입원·간병 등으로 시설 보육 필요 정도가 큰 아동’은 종일반보육료, 그 외 아동은 맞춤형 보육료 지원(보건복지부, 2018).

표 II-2-13 보육료 지원 단가(2018)

단위: 원

자격 구분	지원 대상	지원 비율	연령	지원단가			
				종일반	맞춤반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100%	만0세반	441,000	344,000	441,000	661,500
			만1세반	388,000	302,000	388,000	582,000
			만2세반	321,000	250,000	321,000	481,500
			만3세반	220,000	-	220,000	330,000
			만4세반	220,000	-	220,000	330,000
			만5세반	220,000	-	220,000	330,000

자료: 보건복지부(2018). 보육사업안내. p. 325

나) 유치원 유아교육서비스 이용 지원

(1) 유치원 인프라 구축 현황

2017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총 9,029개원의 유치원이 설치되어 있고, 설립유형을 크게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으로 구분할 때 국공립 유치원이 4747개원으로 52.6%를 차지하고 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7). 유치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공립유치원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의 비중은 거의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표 II-2-14 설립별 유치원 수(2012-2017)

연도	국공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수	비율		단설		병설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2012	4,525	53.0	3	168	2.0	4,354	51.0	4,013	47.0	8,538
2013	4,577	52.7	3	184	2.1	4,390	50.6	4,101	47.3	8,678
2014	4,619	52.3	3	228	2.6	4,388	49.7	4,207	47.7	8,826
2015	4,678	52.4	3	272	3.0	4,403	49.3	4,252	47.6	8,930
2016	4,696	52.3	3	305	3.4	4,388	48.8	4,291	47.7	8,987
2017	4,747	52.6	3	351	3.9	4,393	48.7	4,282	47.4	9,029

자료: 문무경 외(2017). 2018-2022 유아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p.38 (표 III-1-1) 2014년도 사립 비율 수치 오류를 수정하여 활용함;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7). 교육통계연보

한편 2017년 유치원을 이용한 총원아수는 694,631명이며, 그 중 사립유치원 이용 원아가 522,10명으로 전체 유치원 이용 원아 중 75.2%의 비중을 차지하였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7). 2012년부터의 유치원의 원아를 연도별·설립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I-2-15 참조). 어린이집에 비해 유치원은 국공립시설의 수와 수용 가능 유아수가 모두 양호한 편이지만, 2017년에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와 이어 수립된 ‘유아교육혁신방안’³⁹⁾에 따라 국공립유치원의 확대와 원아 수용 비중의 확대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II-2-15 연도별·유형별 유치원 원아 수용 추이(2012-2017)

연도	국공립		사립		계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2012	127,347	20.7	486,402	79.3	613,749	100.0
2013	142,052	21.6	516,136	78.4	658,188	100.0
2014	148,269	22.7	504,277	77.3	652,546	100.0
2015	161,339	23.6	521,214	76.4	682,553	100.0
2016	170,349	24.2	533,789	75.8	704,138	100.0
2017	172,521	24.8	522,110	75.2	694,631	100.0

자료: 문무경 외(2017). 2018-2022 유아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p.38 <표 III-1-3>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7). 교육통계연보

(2) 유아학비 지원

우리나라는 현재 어린이집보육료 지원과 동일하게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가 지불해야 하는 유아학비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실현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도입,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계층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교육부, 2018:1). 유아학비는 국·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6만원, 사립유치원은 22만원을 지원하며, 방과후 과정 비로 국공립유치원은 5만원, 사립유치원은 7만원을 지원하고 있다(표 II-2-16 참조).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가정·농어촌·장

39) 교육부 보도자료(2017. 12.27). ‘출발선 평등을 실현하지 위한’ 유아교육 혁신 방안 발표

애아동양육수당 지원, 유치원 이용 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따른 지원과도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교육부, 2018:2).

■ 표 II-2-16 ■ 2018년 유아학비 지원연령 및 금액

구분	연령	지원액(원/월)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만5세	60,000	220,000
	만4세		
	만3세		
방과후 과정	만3-5세	50,000	70,000

자료: 교육부(2018). 2018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p. 1

방과후과정비는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원아에게 지원되며, 유치원 교육과정 대상 원아가 방과 후 과정을 이용하고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경우에 지급한다(교육부, 2018: 7).

다) 시간제 보육

(1) 시간제 보육 인프라 구축 현황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말한다(보건복지부, 2018: 289). 이는 매일 일정 시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긴급한 돌봄 필요가 발생할 때에 대응하고, 긴급한 돌봄 필요 상황이 아니더라도 가정 양육 가정의 어머니에 육아의 쉽표, 원기회복(refreshment)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권미경·박원순·엄지원, 2016: 78). 시간제 보육은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 받지 않고,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유아반(36개월 이상 만 5세)의 경우 시범운영 중이다(보건복지부, 2018: 289).

시간제 보육은 시·군·구로부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제공하며,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관리한다(보건복지부, 2018: 289).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은 2013년 15개소에서 매년 확대되어 2017년에는 382개소까지 확대되었다(표 II-2-17 참조).

표 II-2-17 시간제 보육 기관 현황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기관수	15	83	216	347	382
반수	21	107	237	382	438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www.kcpi.or.kr)

(2) 시간제 보육 이용 지원

양육수당 수급 가구가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월 80시간 이내에서 시간당 3천원이 지원된다. 이용 단가는 시간당 4천원이나 지원을 받을 경우 실제 부담은 시간당 1천원 수준이다(표 II-2-18 참조).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경우 전액 본인 부담이다(보건복지부, 2018: 295).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의 운영시간은 월~금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가 원칙이며, 이용은 사전예약 또는 당일예약 등 예약에 의하며, 사전예약은 온라인 또는 전화로 1일 전까지, 당일 예약은 전화로 당일 15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2018: 295-296). 사전예약은 60%, 당일예약은 40%로 운영된다(보건복지부, 2018: 296).

표 II-2-18 시간제 보육 이용 및 지원 기준

구분	내용	
이용대상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유아반(36개월 이상~만5세)의 경우, 일부기관에서 시범운영 중	
지원대상	양육수당 수급 가구	
지원시간	월 80시간	
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4천원
	지원단가	시간당 3천원
	부모부담	시간당 1천원

자료: 보건복지부(2018). 보육사업안내. p. 295.

2) 가정 내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가) 지원대상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⁴⁰⁾.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에서 집단으로 제공되는 양육지원 서비스가 존재함에도 시설 보육으로는 일시적인 돌봄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부족하며, 특히 2세 이하 영아를 둔 취업부모들은 자녀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1:1 개별 보육을 선호한다는 ‘개별양육서비스’에 대한 수요 파악에 근거하여, 2006년 아이돌보미 양성 및 연계 시범사업이 실시된 후 2007년 신규사업으로 도입되었다(여성가족부, 2018: 7-8).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다. 즉, 아이돌봄서비스는 크게 만 3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영아종일제’ 외에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단위의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 서비스로 구분되며, 이외 아이돌봄 업무 외에 가사지원까지 포함된 ‘종합형’ 서비스, 보육교사 자격소지자가 아이돌보미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사형’ 서비스가 ‘14년 8월 추가되었다(여성가족부, 2018: 9). 시간제 돌봄은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이용 가능하며, 1회 2시간 이상 사용이 원칙이고 정부지원은 연간 600시간 이내 받을 수 있다. 영아 종일제 돌봄은 만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가 이용 대상이며, 1일 1회 4시간 이상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지원은 월 120~200시간 이내 받을 수 있다(표 II-2-19 참조).

▮ 표 II-2-19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대상 및 시간

구분	시간제 돌봄	영아 종일제 돌봄
이용 대상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이용 시간	1회 2시간 이상	1일 1회 4시간 이상 사용
정부 지원 시간	연간 600시간 이내	월 120~200시간 이내
비고	서비스 이용 중인 가정이 기 이용 시간내에서 시간제돌봄서비스 아동을 추가할 경우, 1시간 이상 신청 추가 가능	

자료: 여성가족부(2018). 2018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9 내용 표로 구성

40) 아이돌봄지원법 제1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인력인 ‘아이돌보미’는 2017년 현재 전국적으로 20,878명이 활동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아이돌보미를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13년 16,393명에서 '14년 17,208명으로 대폭 증가한 이후, '16년 19,377명으로 확대되었고, 2017년에는 2만 명을 넘어섰다(표 II-2-20 참조).

표 II-2-20 아이돌봄서비스 인력 현황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아이돌보미 수	16,393	17,203	17,553	19,377	20,878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주요 통계. 아이돌보미 현황.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lm.go.kr)에서 2018. 6.1 인출

나) 지원금액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공백의 발생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대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이 차등화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표 II-2-21 참조). 양육공백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정부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다(여성가족부, 2018: 11).

정부 지원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을 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비용을 전액 본인 부담하는 정부 미지원 가구는 소득판정 절차 없이,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여성가족부, 2018: 10).

아이돌봄서비스 유형에 따른 가구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수준은 다음 <표 II-2-21>, <표 II-2-22 >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야간, 휴일에 이용시 시간당 3,900원, 보육교사형은 시간당 4,290원이 추가되며, 시간제 서비스는 야간, 휴일 이용시 시간당 3,900원, 종합형은 5,070원이 추가된다(여성가족부, 2018: 11).

표 II-2-21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영아종일제, 보육교사형)

유형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 (월 156만원, 200시간 기준)		보육교사형 (월 171.6만원, 200시간 기준)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60% 이하 (2,712천원)	117만원 (75%)	39만원 (75%)	117만원	54.6만원
나형	85%이하 (3,841천원)	85.8만원 (55%)	70.2만원 (45%)	85.8만원	85.8만원
다형	120%이하 (5,423천원)	54.6만원 (35%)	101.4만원 (65%)	54.6만원	117만원
라형	120%초과	-	156만원 (100%)	-	171.6만원

주: 괄호 속 비율은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본인부담 비율임.
 자료: 여성가족부(2018). 2018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 11

표 II-2-22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시간제, 종합형)

유형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시간당 7,800원)				종합형(시간당 10,140원)			
		A형		B형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60% 이하 (2,712천원)	6,240원 (80%)	1,560원 (20%)	5,460원 (70%)	2,340원 (30%)	6,240원	3,900원	5,460원	4,680원
나형	85%이하 (3,841천원)	3,900원 (50%)	3,900원 (50%)	-	7,800원	3,900원	6,240원	-	10,140원
다형	120%이하 (5,423천원)	2,340원 (30%)	5,460원 (70%)	-	7,800원	2,340원	7,800원	-	10,140원
라형	120%초과	-	7,800원	-	7,800원	-	10,140원	-	10,140원

주: (A형) '11.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0.12..31 이전 출생 아동
 자료: 여성가족부(2018). 2018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 11

3) 기타 육아서비스

가) 육아종합지원센터등 지역사회 종합육아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육아지원기관으로,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보육교직원·부모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한다⁴¹⁾.

41) 영유아보육법 제7조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주로 가정양육을 하는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부모 및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는 상담 및 교육,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장난감도서관 운영 등 대여서비스, 영유아체험프로그램 제공 등이 있으며, 지역내 one-stop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보건복지부, 2018: 433)⁴²⁾.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 내용(가정양육지원)은 다음과 같다.

▣ 표 II-2-23 ▣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내용(가정양육지원)

구분	사업
가정양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교육 및 상담 •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운영 • 육아콘텐츠 개발 및 지원 • 영유아 체험프로그램 및 놀이공간 제공 • 도서·장난감 등 제공 또는 대여 •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 부모소모임 등 교류 공간 제공 • 영유아 발달에 관한 검사 • 그 밖에 가정양육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자료: 보건복지부(2018). 보육사업안내. p. 440, 가정양육지원사업 부분 발췌

2013~2017년간 추진되었던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국 시군구 확산을 목표로 하였으나, 2017년 기준 전국적으로 95개소가 설치되어 영유아 가구가 이를 인지하고 편의성 있게 활용하기에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 바 있다(이정원 외, 2017: 101; 118). 다만 시·군·구마다의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수요자의 활용도나 요구도가 높은 기능을 중심으로 한 ‘분소’의 설치가 활발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건물구조, 일시보육실, 화장실, 놀이기구, 비상재해대비시설 등은 영유아의 안전과 이용에 편리하게 설계·시공⁴³⁾되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8: 435).

42)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eoul.childcare.go.kr/Iseou/10000/d2_10002/d2_10003.jsp)

4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을 준용하고, 「건축법」, 「소방방재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을 준수하여야 함(보건복지부, 2018: 4354)

Ⅱ 표 II-2-24 Ⅱ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현황

단위: 개소(분소수)

구분	계	중앙	시·도	시·군·구	부속사업장주
2012(보육정보센터)	66	1	17(8)	48(56)	(66)
2013	69	1	17(12)	51(57)	(69)
2014	76	1	18(10)	57(84)	(94)
2015	87	1	18(4)	68(104)	(108)
2016	92	1	18(5)	73(116)	(121)
2017	95	1	18(4)	76(128)	(132)

주: 부속사업장: 장난감 도서관, 체험실 등의 육아 지원하는 기관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으나 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별도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분소).

출처: 이정원 외(2017). 2018-2022 보육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p.48 (표 II-1-20)에 2017년 자료 추가
자료: 보건복지부(2012-2017). 각년도 보육통계.

나) 물품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우리나라의 육아서비스 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장난감, 도서 등을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외하고 육아물품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주 대상을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대표적인 저소득층 육아물품지원 서비스로 2015년 도입·시행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들 수 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를 근거로 하며,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보건복지부, 2018a:431).

기저귀 지원의 기본적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로 영아별로 지원하며, 조제분유의 경우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1)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2)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영아 입양가정,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3)산모의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질환자로서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이다(보건복지부, 2018a: 435-436).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자격 있는 영아의 부모가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지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취급하는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기간은 최대 24개월이다(보건복지부, 2018a: 449-455).

지원대상별 지원액은 다음 <표 II-2-25>와 같다.

■ 표 II-2-25 ■ 지원대상별 지원액

지원 내용	지원유형	지원액(원)
기저귀 지원	가유형	64,000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나유형	150,000
조제분유 추가 지원주)	다유형	86,000

주: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조제분유 추가지원 신청
 자료: 보건복지부(2018a). 2018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안내(개정안).

4)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가) 양육수당

(1) 지원대상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 양육지원 서비스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 초등학교 미취학 84개월 미만 전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가정양육수당에는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영유아 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양육수당’,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양육수당’이 포함된다(보건복지부, 2018: 344). 2009년 도입된 ‘양육수당’은 도입 당시에는 저소득층의 영아에 한정하여 지급하였으나, 도입 후 지원대상의 연령과 소득계층이 지속 확대되어 2013년에는 취학전 영유아 전연령 전계층을 지원대상으로 전격 확대하였다(이정원 외, 2017: 51-52). 한국국적의 해외 체류 영유아에게도 2013년 3월부터 국내 체류 영유아와 동일하게 양육수당이 지원되게 되었으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 3. 11; 이정원 외, 2017: 52에서 재인용) ‘15년 9월 19일부터 90일 이상 해외에 지속하여 체류중인 영유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게 되었다. 지원 자격이 정지된 영유아가 추후 입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을 재확인하여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8: 345).

(2) 지원금액

가정양육수당의 지원 금액은 유형별, 지원대상 영유아의 연령별 차이가 있어, 각 유형내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지원액 수준이 높다(표 II-2-26 참조). 그러나, 동일 유형, 동일 연령에서는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은 없다.

표 II-2-26 가정양육수당 유형별·연령별 지원금액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0~35	200천원
12~23	150천원	12~2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84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	100천원		
	100천원	이상~84개월	100천원		
	100천원	미만	100천원		

자료: 보건복지부(2018). 보육사업안내. p.344.

나) 아동수당

(1) 지원대상

‘아동수당’은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강력히 추진하는 아동 관련 정책으로 도입되어 2018년 9월부터 만6세 미만 아동 중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에게 지급되기 시작하였다. 2018년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가 시작되어 첫 수당은 9월 지급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 6. 18).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동수당의 목적으로, 이에 따라 아동수당의 수급권자는 ‘아동’이며, 보호자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수당을 사용해야 한다⁴⁴⁾.

아동수당은 주요 국가에서 아동과 양육가구 지원을 위해 오래전부터 운영 중인 기본적인 사회복지제도로 '16년 말기준 OECD 35개국 중 우리나라 등 4개국만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 6. 18). 또한 우리나라는 아

44) 아동수당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 제4,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항

동·가족에 대한 지출 중 서비스·현물 급여에 비해 현금 급여의 비중이 작아 현금 지출이 부족한 수준이었는데(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 6. 18) 이번 아동수당 도입으로 현금·서비스에 대한 지출의 균형과 영유아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의 효과적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 당시에는 소득기준에 따른 차등 지급이 아닌 만 0~5세아에 일괄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었으나(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7), 논의를 거쳐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소득기준에 따라 제한하는 선정기준을 마련하였다⁴⁵⁾.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아동수당법(법률 제15539호)’이 2018년 3월 27일 제정되었고, 제4조 ①항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 기준이 명시되었다.

“아동수당은 6세 미만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⁴⁶⁾. 이에 따른 2018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다.

표 II-2-27 |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안)

구분	아동 1명 (3인 가구)	아동 2명 (4인 가구)	아동 3명 (5인 가구)	아동 4명 (6인 가구)	아동 5명 이상 (7인 이상 가구)
금액(월)	1170만원	1436만원	1702만원	1968만원	1인 증가 시마다 266만 원씩 가산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 4. 16).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가구 월 1170만 원.

(2) 지원금액

아동수당은 일반적으로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되, 보호자와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일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⁴⁷⁾ 현재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가구(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가구 내 수급아동 수 × 5만원)의 경우 5만원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⁴⁸⁾.

45) 아동수당 수급 아동의 선정기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를 통해 마련됨(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 4. 16)

46) 아동수당법 제4조 제①항

47) 아동수당법 제4조 제③항

48)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 자주하는 질문에서 2018. 6. 18 인출

5) 부모 시간지원 정책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되었던 육아지원을 위한 시간정책의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는 시간정책을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의 부모들이 자녀양육을 위하여 기본적인 양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김나영 외, 2016: 24)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간정책을 크게 유연근무제도와 출산 및 육아관련 휴가·휴직제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김나영 외, 2016: 24). 본 연구에서도 김나영 외(2016)에서 정의하였던 시간정책의 개념과 구분을 따라서 그동안 정부의 육아서비스 수요 대응 정책으로서 진행되어 왔던 부모 시간지원 정책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가) 유연근무제도

유연근무제란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일하는 시간이나 장소를 유연하게 해주는 근무제도를 말한다. 유연근무제는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http://worklife.kr/website/index/m2/flexitime_what.asp, 2018. 6. 18. 인출). 다음 <표 II-2-28>에서 이상의 5가지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소개하였다.

▣ 표 II-2-28 ▣ 유연근무제 유형

구분	내용
시차출근제	• 주 5일 근무와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
선택근무제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
재량근무제	• 업무특성상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야 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
재택근무제	•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
원격근무제	•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 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

자료: http://worklife.kr/website/index/m2/flexitime_what.asp(2018. 6. 18. 인출)

나) 출산 및 육아관련 휴가·휴직제도

출산 및 육아관련 휴가·휴직제도를 살펴보면 <표 II-2-29>와 같다. 2012년도

8월 기준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던 이정원·도남희·김세현·나지혜(2012)의 연구와 비교해볼 때, ‘유산·사산휴가’,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제도의 내용이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직 등의 내용이 5년여가 지난 현재 시점에서 다소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17. 7.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다. 다음에서 각 제도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2012년 이후로 변경되지 않은 제도인 ‘유산·사산휴가’,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산·사산 휴가’는 임신부가 태아를 유산·사산했을 경우 임신부가 요구하면 휴가를 임신기간에 따라 5일~90일까지 제공하여야 하고, 단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계산되므로 신청이 늦어지면 그만큼 휴가일수가 단축된다(http://worklife.kr/website/index/m4/worker_pay.asp, 2018. 06. 18. 인출). 관련 제도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하여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이정원 외, 2012). ‘출산전·후 휴가’ 제도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제공하고, 출산이후 45일이 확보되도록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휴가급여를 지원한다(http://worklife.kr/website/index/m4/worker_pay.asp, 2018. 06. 18. 인출).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아내가 있는 경우 3일 이상의 휴가와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http://worklife.kr/website/index/m4/worker_pay.asp, 2018. 06. 18. 인출).

다음으로, 현재 2012년 8월 기준에 비해 다소 변화된 출산 및 육아관련 휴가·휴직제도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육아휴직’은 2012년 기준 만 6세 미만 취학 전 자녀에 대해 1년 이내로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던 것이 2015년 이후 현재까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년까지 휴직이 가능한 제도로 변경되었다.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하한 50만)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http://worklife.kr/website/index/m4/worker_pay.asp, 2018. 06. 18. 인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경우에도 2012년 기준 만 6세 이하 취학 전 자녀가 있을 때 1년 이내 가능하였던 제도가 2018년 6월 기준 변경된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0시간 근무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http://worklife.kr/website/index/m4/worker_pay.asp, 2018. 06. 18. 인출). 2012년 8월 기준으로 ‘가족돌봄 휴직’의 경우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보아야 할 때,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불가피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을 해야만 하는 규정이었으나(이정원 외, 2012), 2018년 6월 기준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 부모를 돌보기 위해 무급휴직을 원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연간 최장 90일까지 보장되는 제도로 확대·완화되었다(http://worklife.kr/website/index/m4/worker_pay.asp, 2018. 06. 18. 인출).

최근,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는 제도로써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제도가 신설되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엄마와 아빠가 나란히 육아휴직을 사용하며(엄마, 아빠의 순서가 바뀌어도 같음)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둘째 자녀부터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증액된다.

■ 표 II-2-29 ■ 국내의 출산 및 육아관련 휴가·휴직제도

종류	권리/기간	분할횟수	급여	비고
유산·사산 휴가	유산·사산 주수에 따라 5일~90일까지 가능	-	최초 60일 유급 (통상임금상당)	
출산전후 휴가	산전, 산후로 90일간 가능함. 산후에 45일 이상 배정 되어야 함	- 이전 유산 경험, 청구당시 만 40세 이상 임산부, 의료기관의 진단서 제출 시 출산 전 분할하여 미리 사용 가	최초 60일 유급(통상임금상당)- 사업주지급/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이 405만원 초과시 405만원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3일~5일 이내	-	최초 3일 유급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을 때 최대 1년 사용 가능	1회 가능	첫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하한 50만) 지급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육아휴직 급여 지급되지 않음

(표 II-2-29 계속)

종류	권리/기간	분할횟수	급여	비고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을 때 최대 1년 사용 가능	1회 가능	첫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하한 50만) 지급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육아휴직 급여 지급되지 않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0시간 근무하는 방법 사용 가능	1회 가능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 급여 지급, 국가는 단축근무자의 급여 감소분의 일부 지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총 기간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와 아빠가 나란히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100% 지원	-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100% 지원(상한액 150만원), 둘째 자녀부터는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	2017. 7.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가족돌봄 휴직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해 무급 휴직을 원할 경우 사용 가능, 연간 최장 90일	분할가능. 1회 분할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무급	

자료: 1) 이정원·도남희·김세현·나지혜(2012). 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2012). 육아정책연구소 발간 보고서 p.61 표를 토대로 표의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추가하였음.

2) http://worklife.kr/website/index/m4/worker_pay.asp, 2018. 06. 18. 인출

3 육아서비스 수요 관련 사회·정책 환경

가. 가구원 수 변화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1980년에 총 7,969,201가구에서 2016년 19,367,696가구로 약 11,398,495가구가 늘어났으며, 7인 가구 이상은 1980년 1,209,806가구에서 2016년 63,956가구로 1,145,850가구가 줄어든 반면, 1인 가구는 1980년 382,743가구에서 2016년 5,397,615가구로 5,397,615가구가 늘어났다.

전체 가구에서 각 가구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3인 이하 가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5인 이상의 가구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에 5인 이상의 가구가 49.9%를 차지했던 반면 2016년에는 6.2%로 줄어들었고, 1인 가구의 경우 1980년에 4.8%로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6년에는 2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⁹⁾

표 II-3-1 연도별 가구규모별 가구수(1980~2016)

단위: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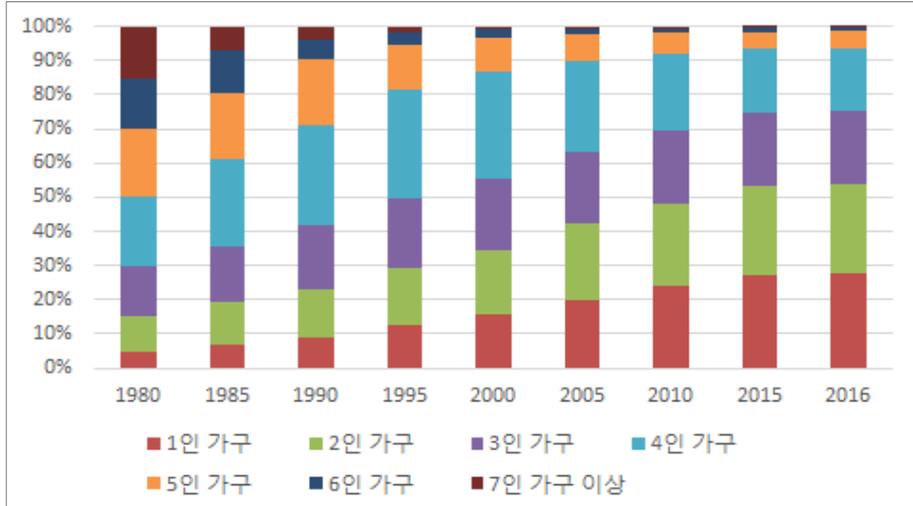
연도	총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이상
1980	7,969,201	382,743	839,839	1,152,569	1,619,742	1,597,002	1,167,500	1,209,806
1985	9,571,361	660,941	1,175,532	1,579,668	2,421,627	1,862,908	1,182,604	688,081
1990	11,354,540	1,021,481	1,565,713	2,163,272	3,350,728	2,140,073	671,062	442,211
1995	12,958,181	1,642,406	2,184,626	2,636,254	4,110,359	1,666,981	496,861	220,694
2000	14,311,807	2,224,433	2,730,548	2,987,405	4,447,170	1,442,895	344,992	134,364
2005	15,887,128	3,170,675	3,520,545	3,325,162	4,289,035	1,222,126	266,930	92,655
2010	17,339,422	4,142,165	4,205,052	3,695,765	3,898,039	1,078,444	241,063	78,894
2015	19,111,030	5,203,440	4,993,818	4,100,979	3,588,931	940,413	217,474	65,975
2016	19,367,696	5,397,615	5,067,166	4,151,701	3,551,410	924,373	211,475	63,956

자료: 1) 통계청(1980~2010). 인구총조사(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A000&conn_path=I3)
 2) 통계청(2015). 인구총조사(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02&conn_path=I3)
 3) 통계청(2016). 인구총조사(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602&conn_path=I3)

49) 통계청(1980~2010). 인구총조사(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A0001&conn_path=I3), 통계청(2015). 인구총조사(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02&conn_path=I3), 통계청(2016). 인구총조사(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602&conn_path=I3)

Ⅱ 그림 II-3-1 Ⅱ 연도별 가구규모별 가구비중(1980-2016)

단위: %



자료: 1) 통계청(1980~2010). 인구총조사(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A0001&conn_path=I3)
 2) 통계청(2015). 인구총조사(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02&conn_path=I3)
 3) 통계청(2016). 인구총조사(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602&conn_path=I3)

나. 영유아 인구 전망

1) 출생아수 및 합계 출산율 추이(2007-2017)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보도자료(통계청 보도자료, 2018. 2. 28.)에 따르면 2007~2017까지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 추이는 다음의 <표 II-3-2>, [그림 II-3-2]와 같다. 2007년 총 출생아 수 493.2천 명에서 2017년 357.7천 명까지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였지만, 전체적인 추세에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합계출산율의 경우, 2007년 1.25명 이후 2017년 현재 1.05명으로 심각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2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 추이(2007-2017)

단위: 천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출생 인구											
총계	493.2	465.9	444.8	470.2	471.3	484.6	436.5	435.4	438.4	406.2	357.7
남자	254.0	240.1	229.4	242.9	242.1	249.0	223.9	223.4	224.9	208.1	184.2
여자	239.2	225.8	215.5	227.3	229.1	235.6	212.6	212.1	213.5	198.2	173.4
합계 출산율	1.25	1.19	1.15	1.23	1.24	1.30	1.19	1.20	1.24	1.17	1.05

자료: 통계청(2018). 2017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그림 II-3-2 출생아수와 합계 출산율 추이(2007-2017)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8). 2017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2) 장래 합계 출산율 및 영유아 인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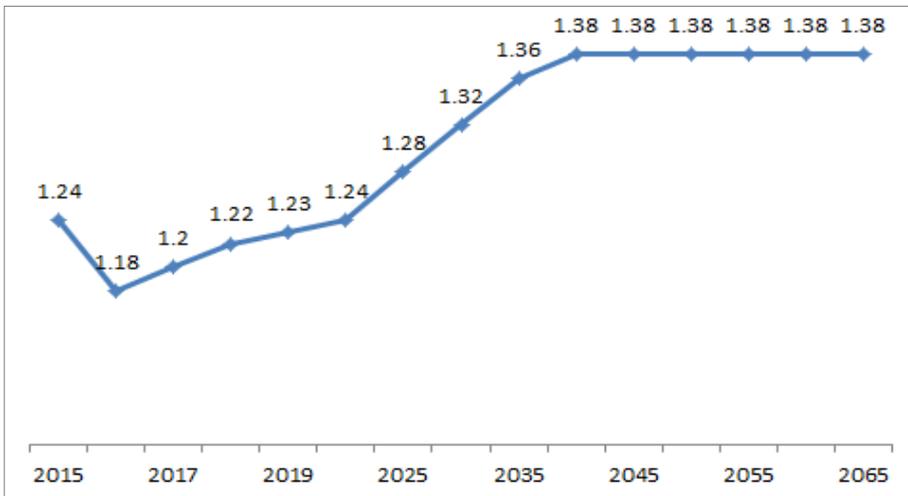
통계청의 2015-2065년 장래 합계 출산율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3-3>, [그림 II-3-3]과 같다. 2015년 1.24명에서 2016년 1.18명으로 최저치를 나타낸 후, 점차 증가하여 2040년 이후로는 1.38명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통계청(2018) 보도자료(통계청 보도자료, 2018. 2. 28.)에 따르면 2017년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이미 전망치(1.20명)보다 심각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망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II-3-3 장래 합계 출산율 전망(2015-2065)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2065
합계 출산율	1.24	1.18	1.20	1.22	1.23	1.24	1.28	1.32	1.36	1.38	1.38	1.38	1.38	1.38	1.38

주: 1) 2016년 12월에 공표한 장래인구추계 자료임.
 2) 중위 가정별 추계 결과임.
 자료: 통계청(2018). 장래인구추계(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101&con_n_path=13)

그림 II-3-3 장래 합계 출산율 전망(2015-2065)



자료: 통계청(2018). 장래인구추계(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101&con_n_path=13)

통계청 장래 영유아 인구 전망(2017~2065년)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3-4>, [그림 II-3-4]와 같다. 2017년 0~5세 영유아 인구수는 2,639,254명으로 나타났으며, 꾸준히 감소하여 2040년 이후에는 200만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65년에는 1,624,747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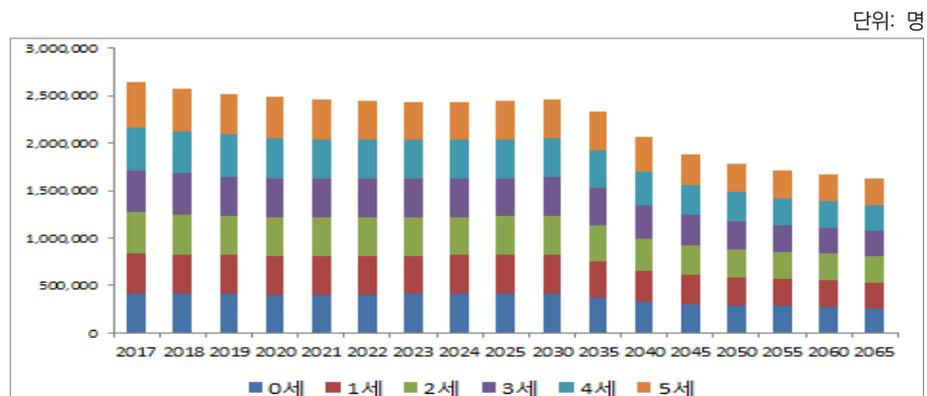
표 II-3-4 장래 영유아 인구 전망(2017-2065)

단위: 명

연령별	총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2017	2,639,254	410,949	422,726	439,093	434,196	462,214	470,076
2018	2,576,232	410,770	409,221	422,110	438,754	433,776	461,601
2019	2,520,020	409,075	409,032	408,623	421,764	438,338	433,188
2020	2,490,742	407,623	407,310	408,420	408,285	421,343	437,761
2021	2,456,234	407,013	405,833	406,673	408,071	407,876	420,768
2022	2,439,080	407,440	405,193	405,172	406,300	407,656	407,319
2023	2,436,641	408,807	405,582	404,505	404,778	405,868	407,101
2024	2,436,281	410,788	406,906	404,865	404,088	404,331	405,303
2025	2,439,714	412,917	408,838	406,155	404,424	403,623	403,757
2030	2,463,577	409,549	411,010	412,058	411,951	410,625	408,384
2035	2,333,640	370,474	378,243	386,420	393,874	400,024	404,605
2040	2,067,939	326,566	331,737	339,071	347,637	356,817	366,111
2045	1,881,691	307,452	308,604	310,887	313,957	317,896	322,895
2050	1,789,176	292,612	294,289	296,822	299,457	301,892	304,104
2055	1,707,433	281,668	281,653	282,875	284,744	287,002	289,491
2060	1,666,298	277,396	277,053	277,304	277,688	278,132	278,725
2065	1,624,747	266,060	268,052	270,291	272,206	273,614	274,524

주: 1) 2016년 12월에 공표한 장래인구추계 자료임.
 2) 매년 7월 1일 시점 자료임.
 3) 중위추계(기본추계)는 인구변동요인별(출생, 사망, 국제이동) 중위가정을 조합한 결과임.
 자료: 통계청(2018). 장래인구추계(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_n_path=I3)

그림 II-3-4 장래 영유아 인구 전망 (2017-2065)



자료: 통계청(2018). 장래인구추계(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_n_path=I3)

2008~2016년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3-5>와 같다. 2008년 전체 영아 인구 1,382,803명 중, 36.2%인 501,889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계속 이용율이 증가하여 2010년에는 처음으로 이용율이 절반을 넘었고, 전계층 무상보육료 지원이 도입된 2012년 이후로는 60%를 넘어섰으며, 2016년에는 전체 영아 1,274,601명 중 66.4%에 해당하는 845,984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5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추이(2008-2016)

단위: 명(%)

구분	계	만0세	만1세	만2세
2008 영아인구	1,382,803 100.0	444,421 100.0	491,498 100.0	446,884 100.0
2008 어린이집 이용아동	501,889 36.3	99,245 22.3	160,320 32.6	242,324 54.2
2009 영아인구	1,381,293 100.0	424,529 100.0	464,282 100.0	492,482 100.0
2009 어린이집 이용아동	574,394 41.6	107,525 25.3	198,831 42.8	268,038 54.4
2010 영아인구	1,358,043 100.0	448,516 100.0	443,963 100.0	465,564 100.0
2010 어린이집 이용아동	686,256 50.5	125,133 27.9	229,486 51.7	331,637 71.2
2011 영아인구	1,367,240 100.0	451,579 100.0	470,224 100.0	445,437 100.0
2011 어린이집 이용아동	739,332 54.1	146,666 32.5	249,787 53.1	342,879 77.0
2012 영아인구	1,407,605 100.0	464,374 100.0	472,275 100.0	470,956 100.0
2012 어린이집 이용아동	872,284 62.0	177,757 38.3	321,716 68.1	372,811 79.2
2013 영아인구	1,382,218 100.0	421,465 100.0	486,655 100.0	474,098 100.0
2013 어린이집 이용아동	874,975 63.3	148,273 35.2	325,921 67.0	400,781 84.5
2014 영아인구	1,346,641 100.0	419,833 100.0	438,778 100.0	488,030 100.0
2014 어린이집 이용아동	890,573 66.1	138,563 33.0	342,056 78.0	409,954 84.0
2015 영아인구	1,302,546 100.0	424,563 100.0	437,994 100.0	439,989 100.0
2015 어린이집 이용아동	864,596 66.4	137,117 32.3	308,227 70.4	419,252 95.3
2016 영아인구	1,274,601 100.0	393,674 100.0	441,720 100.0	439,207 100.0
2016 어린이집 이용아동	845,984 66.4	141,013 35.8	318,245 72.0	386,726 88.1

자료: 1) 통계청(2008~2016). 주민등록인구현황(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13).

2) 보건복지부(2008-2016). 각 년도 보육통계.

2008~2016년 만3~5세 유아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3-6>과 같다. 2008년 만3~5세 유아 총 1,400,169명 중에 42.7%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였으며, 37.9%가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이용률과 어린이집 이용률 격차가 계속 줄어들다가 무상보육이 도입된 2012년에는 처음 유치원이 어린이집 이용율을 넘어섰으며, 이후로도 유치원 이용률이 계속 증가해 2016년 기준 유아인구 총 1,405,487명 중 절반이 넘는 50.1%가 유치원을 이용하였으며, 42.5%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6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추이(2008~2016)

단위: 명(%)

구분	계	만3세	만4세	만5세				
유아인구	1,400,169	100.0	434,320	100.0	472,935	100.0	492,914	100.0
2008 어린이집이용아동	597,415	42.7	229,424	52.8	192,668	40.7	175,323	35.6
유치원이용아동	530,548	37.9	99,499	22.9	184,178	38.9	246,871	50.1
유아인구	1,355,244	100.0	447,432	100.0	434,700	100.0	473,112	100.0
2009 어린이집이용아동	574,280	42.4	227,966	50.9	193,934	44.6	152,380	32.2
유치원이용아동	536,668	39.6	100,406	22.4	185,195	42.6	251,067	53.1
유아인구	1,376,933	100.0	493,452	100.0	448,200	100.0	435,281	100.0
2010 어린이집이용아동	573,084	41.6	243,264	49.3	180,542	40.3	149,278	34.3
유치원이용아동	537,577	39.0	111,482	22.6	181,441	40.5	244,654	56.2
유아인구	1,409,969	100.0	466,807	100.0	494,388	100.0	448,774	100.0
2011 어린이집이용아동	592,382	42.0	272,034	58.3	182,999	37.0	137,349	30.6
유치원이용아동	564,312	40.0	133,986	28.7	196,602	39.8	233,724	52.1
유아인구	1,408,498	100.0	446,256	100.0	467,432	100.0	494,810	100.0
2012 어린이집이용아동	603,047	42.8	259,112	58.1	194,413	41.6	149,522	30.2
유치원이용아동	612,794	43.5	130,986	29.4	229,911	49.2	251,897	50.9
유아인구	1,387,037	100.0	472,047	100.0	447,055	100.0	467,935	100.0
2013 어린이집이용아동	602,176	43.4	255,786	54.2	184,513	41.3	161,877	34.6
유치원이용아동	654,821	47.2	143,069	30.3	233,926	52.3	277,826	59.4
유아인구	1,395,194	100.0	474,932	100.0	472,731	100.0	447,531	100.0
2014 어린이집이용아동	597,862	42.9	265,338	55.9	177,014	37.4	155,510	34.7
유치원이용아동	651,802	46.7	156,097	32.9	228,129	48.3	267,576	59.8
유아인구	1,437,355	100.0	488,716	100.0	475,519	100.0	473,120	100.0
2015 어린이집이용아동	580,821	40.4	253,294	51.8	180,249	37.9	147,278	31.1
유치원이용아동	681,855	47.4	172,114	35.2	249,197	52.4	260,544	55.1
유아인구	1,405,487	100.0	440,530	100.0	489,140	100.0	475,817	100.0
2016 어린이집이용아동	597,800	42.5	263,652	59.8	180,255	36.9	153,893	32.3
유치원이용아동	703,506	50.1	174,907	39.7	253,076	51.7	275,523	57.9

주: 유치원 이용 아동의 경우, 3세 미만과 6세 이상 이용 아동은 제외시킨 통계자료임.
 자료: 1) 통계청(2008~2016). 주민등록인구현황(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I3).
 2) 보건복지부(2008~2016). 각 년도 보육통계.
 3) 교육통계서비스(2008~2016). 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및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3-7>과 같다. 2000년 경제활동인구는 2,215만 명에서 2017년 2,775만 명으로 약 560만 명 증가하였다. 여성경제활동인구는 2000년 910만 명에서 2017년 1,177만 명으로 267만 명이 증가하였다.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2000년 48.8%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절반이 넘는 52.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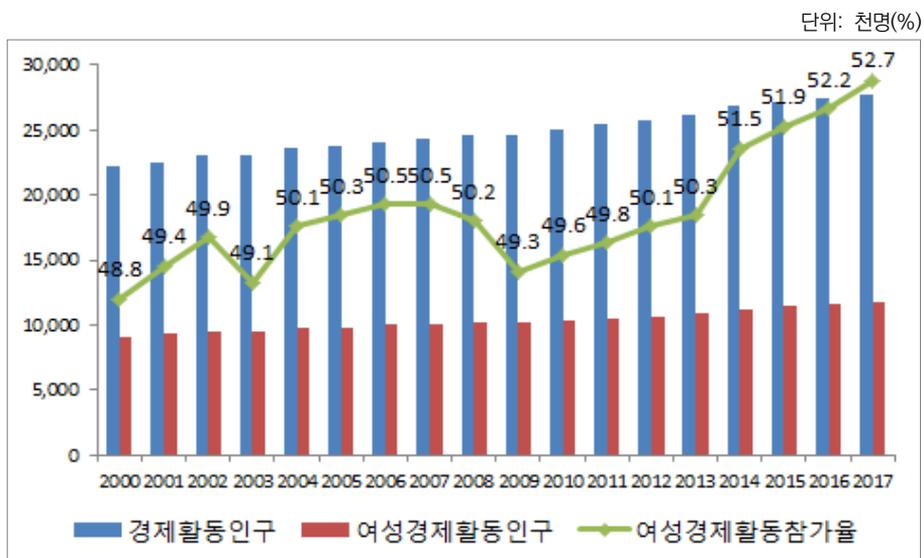
표 II-3-7 경제활동인구 및 여성경제활동참가율(2000-2017)

단위: 천명(%)

연도	경제활동인구	실업률	여성경제활동인구	여성경제활동참가율
2000	22,151	4.4	9,104	48.8
2001	22,511	4.0	9,313	49.4
2002	22,982	3.3	9,504	49.9
2003	23,043	3.6	9,442	49.1
2004	23,544	3.7	9,733	50.1
2005	23,718	3.7	9,842	50.3
2006	24,024	3.5	10,003	50.5
2007	24,351	3.2	10,118	50.5
2008	24,551	3.2	10,207	50.2
2009	24,582	3.6	10,153	49.3
2010	24,956	3.7	10,335	49.6
2011	25,389	3.4	10,520	49.8
2012	25,781	3.2	10,704	50.1
2013	26,108	3.1	10,862	50.3
2014	26,836	3.5	11,229	51.5
2015	27,153	3.6	11,426	51.9
2016	27,418	3.7	11,583	52.2
2017	27,748	3.7	11,773	52.7

자료: 통계청(2000-2017).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II-3-5 여성 경제활동참가율(2000-2017)



자료: 통계청(2000-2017).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다. 육아 취약계층의 변화

1) 한부모

e-나라지표의 한부모 가구 비율 자료를 살펴보면 2008년 전체 16,791가구 중 한부모가구는 1,509가구로 9.0%를 차지하였으나, 이후로 한부모 가구는 꾸준히 증가해 2017년에는 전체 19,524가구에서 한부모 가구는 2,127가구로 1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졌음을 알 수 있다(표 II-3-8참조).

▣ 표 II-3-8 ▣ 한부모 가구 비율(2008-2017)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한부모 가구 현황	전체 가구	16,791	17,052	17,339	17,687	18,119	18,388	18,705	19,013	19,285	19,524
	한부모 가구	1,509	1,551	1,594	1,639	1,796	1,880	1,970	2,052	2,090	2,127
	한부모 가구 비율	9.0	9.1	9.2	9.3	9.9	10.2	10.5	10.8	10.8	10.9

단위: 천가구, %

주: 한부모가구는 일반가구 중 한부(모)와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를 의미함.
 자료: e-나라지표 한부모 가구 비율(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_idx_cd=1578)

여성가족부의 2018년 한부모가족사업안내에 따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은 다음의 <표 II-3-9>와 같다. 전체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2013년 188,572세대에 478,418명에서 2017년 181,023세대, 449,469명으로 7,549세대, 28,949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 및 부자가족은 2017년에 180,087세대, 447,249명으로 나타났으며, 조손가족은 2017년에 936세대, 2,220명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8a).

2012년 및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김은지 외, 2013; 김은지 외, 2015)에서 나타난 한부모가족의 미취학자녀 돌봄유형을 살펴보면 다음의 <II-3-10>과 같다. 한부모가족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기관을 이용하는 비중이 2012년 82.2%, 2015년 87.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직접돌봄은 2012년 7.7%, 2015년 8.1%로 나타나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임을 감안하면 경제활동을 하게되는 한부모를 대신해 자녀를 돌봐줄 기관 혹은 인력이 필요함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3-9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2013-2017)

단위: 세대, 명

연도	계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2013	188,572	478,418	144,281	365,544	43,224	110,218	1,067	2,656
2014	192,244	484,232	147,592	371,367	43,617	110,297	1,035	2,568
2015	192,387	482,710	147,926	370,872	43,460	109,386	1,001	2,452
2016	187,841	468,414	145,258	362,137	41,627	103,966	956	2,311
2017	181,023	449,469	141,207	350,674	38,880	96,575	936	2,220

주: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도말 기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 동시보장결정가구 포함)
 자료: 여성가족부(2018a). 2018년 한부모가족사업안내. p.15.

표 II-3-10 미취학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돌봄유형

단위: %(명)

연도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조부모	친인척	학원	직접돌봄	합계
2012	60.0	22.2	8.7	1.4	0.0	7.7	100.0(272)
2015	69.1	18.5	3.4	0.5	0.4	8.1	100.0(350)

주: 미취학 자녀는 만 7세 미만을 의미함
 자료: 1) 김은지 외(2013). 2012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75p.
 2) 김은지 외(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57p.

2) 다문화 가족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출생아 수 및 출생성비는 다음의 <표 II-3-11>과 같다. 2015년 다문화 출생아 수는 19,729명에서 2016년 19,431명으로 출생아가 전년대비 298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7.3% 감소했음에 비해 다문화 부모의 출생아(다문화 가정 출생아)수의 감소폭은 1.5%로 상대적으로 감소폭은 작게 나타났다. 전체 출생아에서 다문화 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4.8%로 나타나 전년 대비 0.3%p 증가하였다(통계청, 2016). 지속적인 초저출산 기조 속에서 다문화 가정에서의 출생아 비중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II-3-11 부모 국적별 출생아 수 및 출생성비

단위: 명, %, 여아 100명당 남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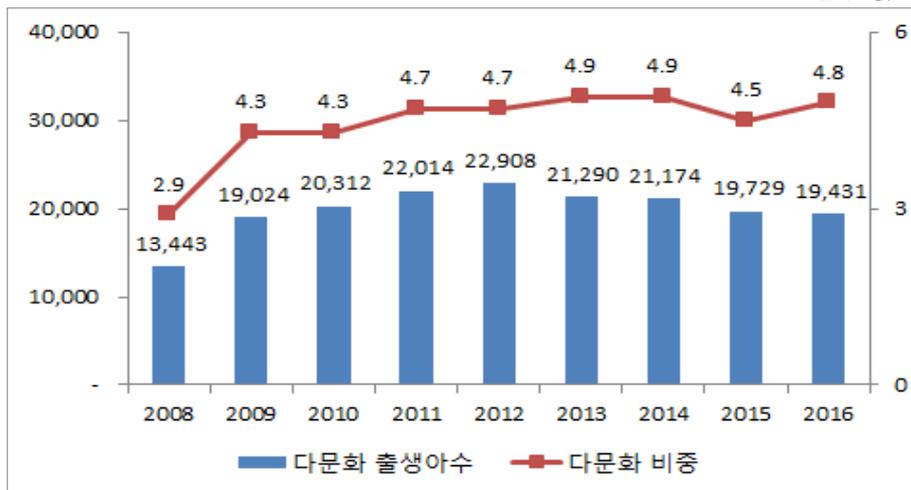
구분	전체1)			다문화 부모2)			출생기준 한국인 부모3)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출생아 수	435,435	438,420	406,243	21,174	19,729	19,431	409,823	414,600	382,694
(비중)	(100.0)	(100.0)	(100.0)	(4.9)	(4.5)	(4.8)	(94.1)	(94.6)	(94.2)
전년 증감	-1,020	2,985	-32,177	-116	-1,445	-298	-660	4,777	-31,906
대비 증감률	-0.2	0.7	-7.3	-0.5	-6.8	-1.5	-0.2	1.2	-7.7
남아	223,356	224,906	208,064	10,686	10,158	9,927	210,399	212,678	196,054
여아	212,079	213,514	198,179	10,488	9,571	9,504	199,424	201,922	186,640
출생성비	105.3	105.3	105.0	101.9	106.1	104.5	105.5	105.3	105.0

- 주: 1) 부모 국적 미상(기아, 영아사망 등) 포함
- 2)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한 쪽이 외국인 또는 귀화자인 경우
- 3) 부모 모두 출생기준이 한국인인 경우

자료: 통계청(2016). 2016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p. 22.

그림 II-3-6 다문화 출생아 수 및 전체 출생 중 다문화 비중 추이(2008-2016)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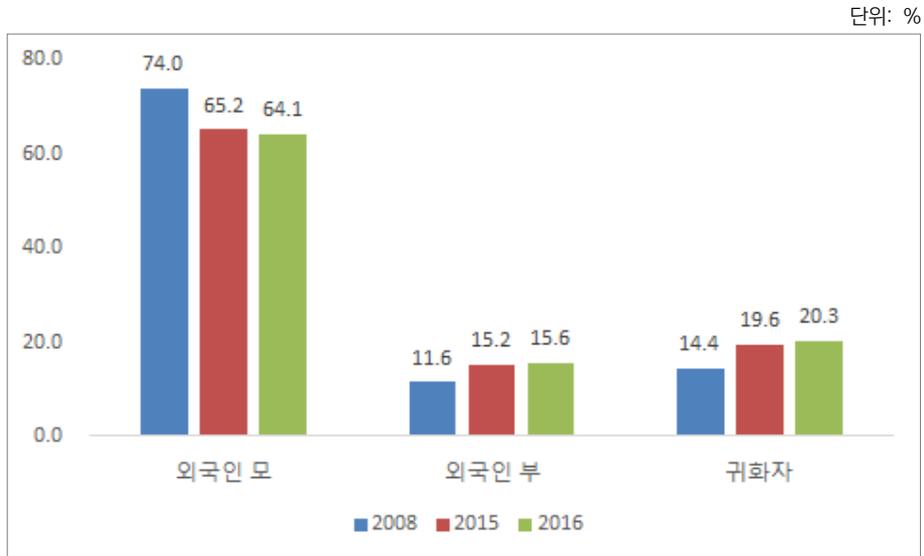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6). 2016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p. 22.

다문화 가정의 유형별 출산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II-3-7]과 같다.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2008년 74.0%에서 2016년 64.1%로 줄어든 반면,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는 11.6%에서 15.6%로, 부모가 귀화자인 경우는 14.4%에서 20.3%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6).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한 연도별 외국인주민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3-12>와

같다. 미취학 자녀에 해당하는 만5세 이하의 자녀수는 2010년 69,882명에서 점차 증가해 2013년 105,4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점차 감소해 2016년에는 97,218명으로 나타났다.

■ 그림 II-3-7 ■ 다문화 가정의 유형별 출산 비중(2008, 2015, 2016)



자료: 통계청(2016). 2016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p. 24.

■ 표 II-3-12 ■ 외국인주민 만5세 이하 자녀연령별 현황(2010~2016)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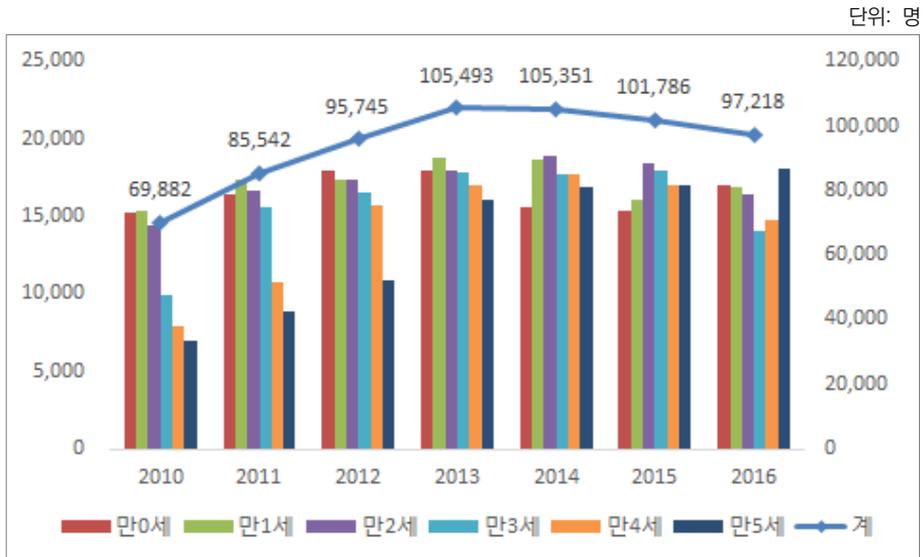
연도	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2010	69,882	15,248	15,377	14,448	9,871	7,912	7,026
2011	85,542	16,428	17,304	16,607	15,584	10,775	8,844
2012	95,745	17,944	17,299	17,322	16,564	15,707	10,909
2013	105,493	17,953	18,820	17,891	17,805	16,990	16,034
2014	105,351	15,577	18,640	18,829	17,718	17,670	16,917
2015	101,786	15,295	16,076	18,448	17,988	16,989	16,990
2016	97,218	17,006	16,864	16,454	14,104	14,705	18,085

주: 외국인주민자녀는 외국인 또는 귀화한 자의 자녀로서 국적법 제2조에 따른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의미함.

자료: 1) 행정안전부(2010, 2011). 연도별 외국인주민 현황.

2) 행정안전부(2012~2016).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그림 II-3-8 ■ 외국인주민 만5세 이하 자녀연령별 현황(2010-2016)



주: 외국인주민자녀는 외국인 또는 귀화한 자의 자녀로서 국적법 제2조에 따른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의미함.

자료: 1) 행정안전부(2010, 2011). 연도별 외국인주민 현황.

2) 행정안전부(2012~2016).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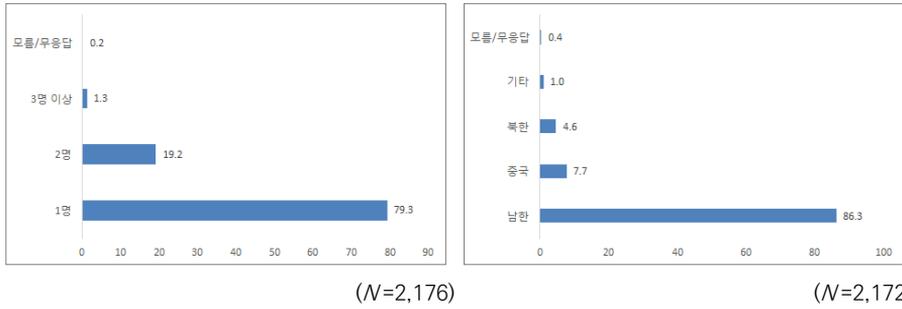
3) 북한이탈주민 가정

남북하나재단에서 발표한 북한이탈주민의 영유아 자녀의 수 및 자녀 출생국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II-3-9]와 같다.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경우는 약 19.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자녀가 1명인 경우가 79.3%로 가장 많았고, 2명인 경우가 19.2%, 3명 이상인 경우가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출생국을 살펴보면, 남한인 경우가 86.3%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7.7%, 북한 4.6%, 기타가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여부를 살펴보면(그림 II-3-10 참조), 69.9%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9.8%는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부모가 20대인 경우가 36.9%, 거주기간이 3~5년 미만인 경우가 40.4%,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39.9%로 나타났다(박원순 외, 2016).

■ 그림 II-3-9 ■ 북한이탈주민의 영유아 자녀의 수 및 자녀 출생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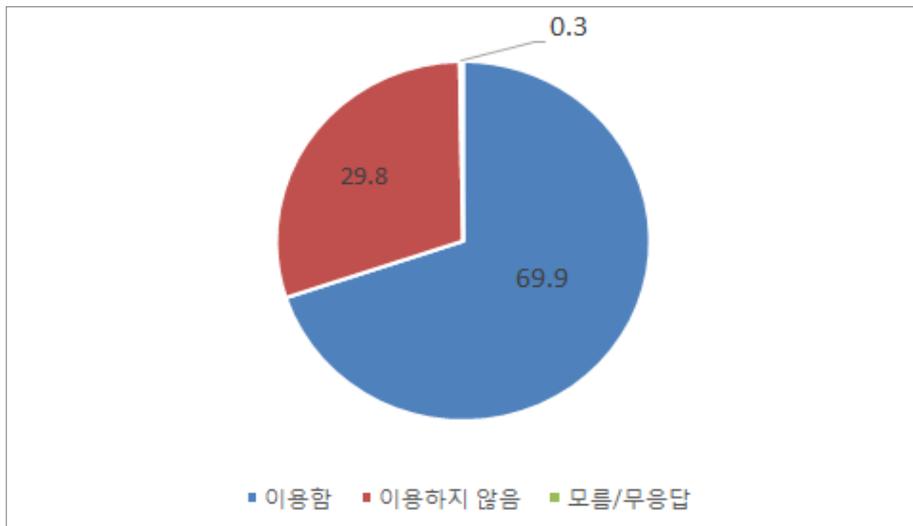
단위: %



자료: 박원순·김동훈·김승진(2016). 북한이탈주민 자녀양육지원시스템. 육아정책연구소. p26. 재구성.

■ 그림 II-3-10 ■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여부(N=2,172)

단위: %



자료: 박원순·김동훈·김승진(2016). 북한이탈주민 자녀양육지원시스템. 육아정책연구소. p26. 재구성.

4 소결

제II장에서는 육아서비스와 관련된 학문적·정책적 관심이 드러나는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육아서비스 수요에 대한 정책적 대응 현황을 국가 수준의 실태조사, 계획,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육아서비스의 수요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육아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정책 환경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정리한 관련 실태조사와 계획의 연혁을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 저출산이 국가적 위기로 인식되기 시작한 이후 저출산을 초래하는 다양한 원인 중 육아의 어려움과 부담이 주목받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육아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육아서비스의 중요성이 비로소 부각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최초 시작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 목적이었으나, 이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가 아니더라도 가정의 육아가 행복하고 즐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육아서비스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절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민들의 육아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육아서비스 수요는 국가 수준의 육아서비스 관련 계획에 반영되고 있고 계획에서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동시다발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굵직한 육아서비스 지원들이 확대되어 왔다. 우선적으로 기관보육·교육서비스는 전국적으로 촘촘한 인프라를 갖추고 무상보육이 보편적으로 시행되어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육아서비스로 자리 잡았고, 가정양육을 위한 개별돌봄 서비스의 지원과 지역사회 양육지원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부모에 대한 시간지원도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주력하는 부분이며, 제도의 확대와 함께 직장과 사회의 문화 측면에서의 변화를 통한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2018년에는 서비스 지원, 가정 양육 지원, 시간 지원의 확대에 이어 '아동수당'이라는 현금 지원이 도입 예정으로 서비스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어떠한 육아서비스 수요의 변화를 이끌지 주목된다.

이러한 육아서비스의 보편적인 확대 기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분명 지

난 10년 전과는 다른, 양육환경의 질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겠다.

육아서비스 수요에의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로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육아서비스의 공급량 조절과 새로운 육아서비스의 도입이 요구되는 지점에 대한 파악일 것이다. 즉, 양적 변동을 초래할 요인과 육아서비스에 대한 질적 변동(요구와 선호의 변화)에 대한 파악이 요구된다. 이에 서비스 대상인 영유아 인구 뿐 아니라 가정의 돌봄 기능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가구의 특성(가구원 수, 맞벌이 가구, 육아 취약 가구) 추이에 대한 분석과 수요층에 대한 조사를 통한 직접적인 요구 파악이 동시에 요구된다. 다양한 육아서비스 간의 선호의 변화도 수요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 구축을 통해 매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보편적인 자녀 양육 가정에서 나타내는 육아서비스에 대한 수요, 가정의 특성이나 정책 변동에 따른 수요의 변동과 차이를 분석하여 보편적인 육아서비스의 수요 변동에 대응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가구 특성과 관련된 통계 분석과 가구 특성별 심층 면담을 대규모의 보편적 육아서비스 지원으로 해소되지 않는 육아특수 수요층의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고자 한다.

III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1. 육아서비스 이용 현황
2. 육아서비스 종류별 관련 비용 지출 현황과 만족도



Ⅲ.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본 장에서는 ‘KICCE 소비실태조사’의 결과 중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용실태는 육아서비스의 종류별로 이용이유, 이용시간, 만족도, 이용비용을 통해 살펴보았다.

1 육아서비스 이용 현황

가. 응답자 특성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 연구를 위해 영유아가 있는 가구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 가구는 총 1,648가구, 가구내 영유아는 총 2,276명이었다. 응답자 특성은 <표 Ⅲ-1-1>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가구원 수는 4명인 가구가 약 절반인 47.4%로 가장 많았고, 3명 이하 37.0%, 5명 이상인 경우는 15.7%로 나타났다. 부모의 소득활동 유형에 따라서는 외벌이가구(53.8%)가 맞벌이가구(46.2%) 보다 많고,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13.5%, 300~399만원 26.7%, 400~499만원 23.3%, 500~599만원 16.4%, 600만원 이상 20.0%로 나타났다. 자녀 수는 2명인 가구가 가장 많았으며(49.6%), 1명 38.7%, 3명 이상 11.7%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 규모는 중소도시 43.4%, 대도시 40.2%, 읍면 지역 16.4% 순이었다.

응답자의 연령분포는 조사설계상 고르게 대상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 비슷한 비중을 나타내었다. 영유아의 성별은 남녀 반씩을 차지하였으며, 출생 순위는 첫째가 50.0%, 둘째 40.6%, 셋째 이상이 9.3% 비중을 차지하였다. 영유아중 1.3%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아동에 해당하였다.

표 III-1-1 응답자 가구 및 아동특성

단위: %(명)

가구특성			아동특성		
구분	계(수)		구분	계(수)	
전체	100.0	(1,648)	전체	100.0	(2,276)
가구원 수			영유아 연령1		
3명 이하	37.0	(609)	영아	49.7	(1,130)
4명	47.4	(781)	유아	50.3	(1,146)
5명 이상	15.7	(258)	영유아 연령2		
맞벌이 가구 여부			0세(2018년생)	6.2	(141)
맞벌이	46.2	(762)	1세(2017년생)	12.3	(281)
외벌이	53.8	(886)	2세(2016년생)	14.9	(338)
가구 소득			3세(2015년생)	16.3	(370)
299만원 이하	13.5	(223)	4세(2014년생)	16.1	(366)
300~399만원 이하	26.7	(440)	5세(2013년생)	16.3	(370)
400~499만원 이하	23.3	(384)	6세(2012년생)	18.0	(410)
500~599만원 이하	16.4	(271)	영유아 성별		
600만원 이상	20.0	(330)	남	50.9	(1,159)
총자녀수			여	49.1	(1,117)
1명	38.7	(638)	영유아 출생순위		
2명	49.6	(818)	첫째	50.0	(1,139)
3명 이상	11.7	(192)	둘째	40.6	(925)
거주 지역 규모			셋째 이상	9.3	(212)
대도시	40.2	(662)	수급가구아동여부		
중소도시	43.4	(716)	대상가구 아동	1.3	(29)
읍면지역	16.4	(270)	대상가구 아동 아님	98.7	(2,247)

응답자 부모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I-1-2>와 같다. 부모의 연령은 30대(부: 57.9%, 모: 73.8%)가 가장 많고, 40대(부: 41.1%, 모: 22.3%) 이상, 20대(부: 1.0%, 모: 3.9%)가 뒤를 이었다. 학력의 경우, 부모 모두 동일하게 4년제 대학 졸업자(부: 56.8%, 모: 49.2%), 전문대 졸업(부: 18.1%, 모: 25.7%), 고졸이하(부: 17.8%, 모: 20.1%), 대학원 이상(부: 7.3%, 모: 5.0%) 순이었다. 근로 형태는 부모 모두 대부분 임금근로자(부: 83.7%, 모: 78.9%)에 해당하였다.

표 III-1-2 응답자 부모 특성

단위: %(명)

구분	계(수)			
	부		모	
연령				
20대	1.0	(23)	3.9	(89)

(표 III-1-2 계속)

구분	계(수)			
	부		모	
30대	57.9	(1,308)	73.8	(1,673)
40대 이상	41.1	(927)	22.3	(505)
학력				
고졸이하	17.8	(403)	20.1	(456)
전문대졸	18.1	(408)	25.7	(582)
4년제대학졸	56.8	(1,283)	49.2	(1,115)
대학원이상	7.3	(164)	5.0	(113)
근로형태				
임금근로자	83.7	(1,865)	78.9	(821)
비임금근로자	16.3	(363)	21.1	(220)

영유아 자녀의 주양육자는 부모가 95.1%로 대부분이고, 조부모 4.5%, 타인 0.3%, 조부모 외 기타 친인척 0.2%로 나타났다. 맞벌이가구인 경우, 외벌이가구보다 조부모가 양육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조부모 및 친인척이 주양육자인 응답자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규모가 커짐에 따라 부모가 주양육자인 경우가 줄고, 조부모 및 친인척이 주양육자인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가구원수, 총자녀수에 따라 주양육자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유아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 영유아 자녀의 주양육자

단위: %(명)

구분	부모	조부모	조부모 외 기타 친인척	타인	계(수)	
전체	95.1	4.5	0.2	0.3	100.0	(2,276)
가구원 수						
3명 이하	93.5	5.9	0.4	0.2	100.0	(619)
4명	96.6	3.0	0.1	0.3	100.0	(1,201)
5명 이상	93.1	6.5	0.0	0.4	100.0	(457)
$\chi^2(df)$	18.967**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89.9	9.3	0.3	0.6	100.0	(1,020)
외벌이	99.3	0.6	0.1	0.0	100.0	(1,256)
$\chi^2(df)$	106.602***					

(표 III-1-3 계속)

구분	부모	조부모	조부모 외 기타 친인척	타인	계(수)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99.4	0.6	0.0	0.0	100.0	(313)
300~399만원 이하	98.7	1.3	0.0	0.0	100.0	(622)
400~499만원 이하	96.8	3.0	0.2	0.0	100.0	(508)
500~599만원 이하	92.0	7.8	0.2	0.0	100.0	(390)
600만원 이상	87.8	10.5	0.4	1.4	100.0	(443)
$\chi^2(df)$	105.978***					
총 자녀 수						
1명	92.9	6.4	0.6	0.1	100.0	(646)
2명	96.1	3.7	0.0	0.2	100.0	(1,278)
3명 이상	95.5	3.9	0.0	0.6	100.0	(352)
$\chi^2(df)$	19.201**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93.6	6.1	0.2	0.1	100.0	(911)
중소도시	95.2	4.1	0.2	0.5	100.0	(973)
읍면지역	98.2	1.8	0.0	0.0	100.0	(393)
$\chi^2(df)$	18.176**					
영유아 연령1						
영아	95.0	4.8	0.0	0.2	100.0	(1,130)
유아	95.2	4.2	0.3	0.3	100.0	(1,146)
$\chi^2(df)$	5.165					

** $p < .01$, *** $p < .001$.

나. 육아서비스 이용 개요

본 조사에서 영유아 자녀가 이용하는 육아서비스를 살펴본 결과, 전체 영유아 중 절반 이상인 51.2%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며, 유치원 이용 27.8%,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가 17.8%, 반일제 이상 학원 등 이용 3.3% 순으로 나타났다.

▮ 표 III-1-4 ▮ 영유아 자녀의 육아서비스 이용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등	반일제 이상 기관 미이용	계(수)	
전체	51.2	27.8	3.3	17.8	100.0	(2,276)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53.1	29.3	3.6	14.0	100.0	(1,020)

(표 III-1-2 계속)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등	반일제 이상 기관 미이용	계(수)	
외별이 $\chi^2(df)$	49.6	26.7	3.0	20.8	100.0	(1,256)
			18.009***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53.9	17.8	2.1	26.2	100.0	(313)
300~399만원 이하	49.6	26.6	1.3	22.4	100.0	(622)
400~499만원 이하	51.7	31.0	3.5	13.7	100.0	(508)
500~599만원 이하	56.4	27.0	2.1	14.5	100.0	(390)
600만원 이상	46.1	33.7	7.5	12.7	100.0	(443)
$\chi^2(df)$			90.960***			
총 자녀 수						
1명	46.1	24.8	4.9	24.1	100.0	(646)
2명	52.6	29.4	2.8	15.2	100.0	(1,278)
3명 이상	55.3	27.5	2.0	15.3	100.0	(352)
$\chi^2(df)$			37.824***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50.3	27.5	4.4	17.8	100.0	(911)
중소도시	49.7	29.1	2.9	18.3	100.0	(973)
읍면지역	56.7	25.4	1.5	16.4	100.0	(393)
$\chi^2(df)$			12.586			
영유아 연령1						
영아	64.3	0.0	0.8	35.0	100.0	(1,130)
유아	38.2	55.3	5.7	0.8	100.0	(1,146)
$\chi^2(df)$			1,117.327***			
영유아 연령2						
0세(2018년생)	2.3	0.0	0.0	97.7	100.0	(141)
1세(2017년생)	32.9	0.0	0.4	66.7	100.0	(281)
2세(2016년생)	82.9	0.0	0.7	16.4	100.0	(338)
3세(2015년생)	94.6	0.0	1.4	4.0	100.0	(370)
4세(2014년생)	52.0	41.0	5.1	1.8	100.0	(366)
5세(2013년생)	34.6	59.7	5.4	0.2	100.0	(370)
6세(2012년생)	29.2	64.0	6.6	0.2	100.0	(410)
$\chi^2(df)$			2,170.173***			

*** $p < .001$.

제 특성에 따라서는 맞벌이가구가 외벌이가구에 비해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이용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정 연령 이상이 되어야 유

치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료된다.

다. 육아서비스 종류별 이용 실태와 만족도

여기서는 영유아가 이용하고 있는 육아서비스 종류별로 이용 유형과 시간,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1) 어린이집 이용 실태

가) 이용 유형

앞서 응답 대상 가구의 영유아 중 51.2%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어, 어린이집은 영유아가구에서 이용하는 육아서비스 중 가장 보편적인 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여기서는 먼저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설립유형과 영아의 경우 맞춤형, 종일반 이용 비율을 살펴보았다. <표 III-1-5>에 따르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으로 54.1%가 이용하고 있었고, 이외 국공립 19.7%, 가정 15.1%, 사회복지법인 5.2%, 법인·단체 3.5%, 직장 2.2%, 협동은 0.3%에 해당하였다.

■ 표 III-1-5 ■ 이용하는 어린이집 설립 유형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직장	협동	계(수)
전체	19.7	5.2	3.5	54.1	15.1	2.2	0.3	100.0 (1,165)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1.4	4.3	2.2	53.0	15.7	2.8	0.6	100.0 (541)
외벌이	18.2	5.9	4.6	55.1	14.5	1.7	0.0	100.0 (623)
$\chi^2(df)$				12.791*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1.6	7.9	5.2	50.7	14.6	0.0	0.0	100.0 (169)
300~399만원 이하	18.7	4.3	4.6	55.3	15.5	1.7	0.0	100.0 (308)
400~499만원 이하	18.4	6.2	1.8	61.6	9.5	2.4	0.0	100.0 (263)
500~599만원 이하	20.6	4.5	2.7	48.8	19.4	2.6	1.5	100.0 (220)
600만원 이상	20.3	3.6	3.3	51.1	17.5	4.3	0.0	100.0 (205)
$\chi^2(df)$				45.701**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26.2	4.3	3.4	51.9	11.5	2.7	0.0	100.0 (458)

(표 III-1-5 계속)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직장	협동	계(수)	
중소도시	14.0	4.0	3.4	56.4	21.4	0.8	0.0	100.0	(484)
읍면지역	18.7	9.5	3.6	53.6	9.0	4.2	1.4	100.0	(223)
$\chi^2(df)$	71.066***								
영유아 연령 ¹									
영아	15.6	4.6	2.4	52.2	23.1	1.9	0.3	100.0	(726)
유아	26.5	6.1	5.3	57.3	1.8	2.8	0.3	100.0	(438)
$\chi^2(df)$	108.896***								

* $p < .05$, ** $p < .01$, *** $p < .001$.

제 특성별로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설립유형을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이용이 외벌이 가구의 18.2%에 비해 3.2%p 높고, 가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이용도 외벌이 가구에 비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가구소득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은 299만원 이하의 소득계층과 500만원 이상의 상대적 고소득계층에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는 바, 이는 입소우선순위에서 맞벌이 가구와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 적용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되는 결과이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대도시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26.2%로 중소도시 14.0%, 읍면지역 18.7%에 비해 현저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읍면지역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이용률이 대도시, 중소도시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규모의 사회복지법인이 주로 읍면지역 위주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영유아를 불문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형태는 민간어린이집이지만, 연령별로는 차이가 나타났는 바 영아는 민간어린이집 이외에는 가정어린이집 이용이 23.1%로 다음으로 높아 영아에게는 국공립어린이집보다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표 III-1-6 ▮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반

구분	맞춤반	종일반	계(수)	
전체	34.3	65.7	100.0	(726)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1.6	78.4	100.0	(340)
외벌이	45.5	54.5	100.0	(386)

단위: %(명)

(표 III-1-6 계속)

구분	맞춤반	종일반	계(수)	
$\chi^2(df)$	45.976***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40.0	60.0	100.0	(113)
300~399만원 이하	39.0	61.0	100.0	(195)
400~499만원 이하	38.7	61.3	100.0	(162)
500~599만원 이하	26.9	73.1	100.0	(125)
600만원 이상	23.9	76.1	100.0	(131)
$\chi^2(df)$	14.778**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어린이집 이용 영아가 '맞춤형보육'에 따라 이용하는 반의 유형을 답하도록 한 결과, 응답 대상 영아의 65.7%가 종일반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 가구는 종일반 이용이 78.4%로 외벌이 가구의 54.5%에 비해 23.9%p 높았으며,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종일반 이용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나) 이용 이유

다음으로 영유아 부모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이유를 살펴 보았다. <표 III-1-7>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 이용한다는 경우가 31.8%, '전인적 발달'을 위해 이용한다는 경우가 26.4%로 '발달적 측면'에 대한 기대로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경우가 전체의 58.2%에 달하였으며,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없어서'는 19.9%,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10.0%, 이밖에 '주위에 놀이 상대가 없어서' 4.1%,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 3.2%, '보육료가 지원되기 때문에' 2.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어린이집 이용의 주된 이유는 크게 '자녀의 발달' 촉진에 대한 기대, 대리양육 육구의 충족, 양육의 부담 경감을 위한 것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겠다.

제 특성별 이용 이유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맞벌이 가구 여부, 가구소득, 거주 지역규모, 영유아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우선,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없어서'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35.7%로 현저히 높았으나, 외벌이 가구는 6.1%에 불과해 극명한 대리양육

육구의 차이를 보였으며, 대신 외벌이 가구는 ‘사회성 발달’ 39.0%, ‘아이의 전인적 발달’ 29.6% 등 발달에 대한 기대로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맞벌이 가구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399만원 이하 소득 가구에서 ‘사회성 발달’ 및 ‘전인적 발달’에 대한 기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며,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없어서’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경향을 보였는 바, 이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이 높은 이유와 연관되는 결과로 짐작된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이용 이유는 거주 지역 규모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없어서’는 대도시 20.4%, 중소도시 21.1%, 읍면지역 16.1%로 도시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성 발달’에 대한 요구는 대도시지역이 중소도시(28.3%), 읍면지역(28.5%)에 비해 크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37.0%). 읍면지역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에 비해 특히 ‘전인적 발달’에 대한 기대(29.4%)가 높게 나타나며, 또한 ‘초등학교 준비’, ‘특기교육 이용’, ‘놀이상대가 없어서’ 등의 이유도 더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읍면지역의 교육 인프라의 부족과 아동인구의 감소 현상을 반영하는 결과로 사료된다.

영유아 연령에 따라서는 눈에 띄는 차이는 유아의 경우 영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등학교 준비’, ‘사회성 발달’을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높으며, 영아의 경우는 유아에 비해 ‘부모가 직접 돌보기 어려워’, ‘주위에 놀이 상대가 없어서’, ‘양육부담 경감’의 이유로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표 III-1-7 어린이집 이용의 주된 이유

단위: %(명)

구분	전인적 발달을 위해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	특기교육 이용할 수 있어서	부모 직접 돌볼 수 어려워서	사회성 발달을 위해	놀이 상대가 없어서	양육 부담경감 위해	보육료가 지원 되어서	기타	계(수)
전체	26.4	3.2	1.6	19.9	31.8	4.1	10.0	2.7	0.4	100.0 (1,165)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2.8	2.9	1.4	35.7	23.4	3.0	8.1	2.2	0.6	100.0 (541)
외벌이	29.6	3.4	1.8	6.1	39.0	5.0	11.6	3.2	0.2	100.0 (623)
$\chi^2(df)$	164.117***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9.1	3.4	1.9	11.1	34.2	4.2	12.4	3.8	0.0	100.0 (169)
300-399만원	30.4	2.1	2.3	13.2	34.3	4.8	9.1	3.4	0.4	100.0 (308)
400-499만원	23.9	5.0	1.1	21.4	32.3	5.5	8.4	2.0	0.3	100.0 (263)

(표 III-1-7 계속)

구분	전인적 발달을 위해	초등 학교 준비를 위해	특기교육 이용할 수 있어서	부모 직접 돌봄이 어려워서	사회성 발달을 위해	놀이 상대가 없어서	양육 부담경감 위해	보육료가 지원 되어서	기타	계(수)
500~599만원	26.9	2.7	1.5	22.2	30.3	1.9	11.4	3.1	0.0	100.0 (220)
600만원 이상	21.0	2.9	1.1	32.5	26.9	3.5	9.7	1.3	1.0	100.0 (205)
$\chi^2(df)$	57.570**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24.5	2.0	0.6	20.4	37.0	2.7	10.0	2.6	0.3	100.0 (458)
중소도시	26.9	3.1	1.7	21.1	28.3	3.7	11.2	3.4	0.6	100.0 (484)
읍면지역	29.4	5.8	3.4	16.1	28.5	7.9	7.4	1.4	0.0	100.0 (223)
$\chi^2(df)$	42.980***									
영유아 연령										
영아	25.7	1.5	1.2	21.4	30.6	5.2	11.2	3.0	0.3	100.0 (726)
유아	27.7	6.0	2.2	17.3	33.7	2.4	8.0	2.3	0.4	100.0 (438)
$\chi^2(df)$	31.030***									

** $p < .01$, *** $p < .001$.

다) 이용 시간

다음으로 영유아가구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등하원 등 소요시간을 살펴보았다. 응답대상 영유아 1,165명은 평균적으로 오전 9시 19분에 등원하며, 오후 4시(16시) 18분에 하원하여 하루 평균 순수한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총 7시간(6시간 58분)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등하원으로 28분 가량이 소요되어 어린이집 이용에 소요되는 총 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 27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8 어린이집 이용 시간(평균)

단위: 시: 분

등원시간 (평균)	하원시간 (평균)	이용시간 (평균)	등하원 소요시간 ^{주)}			어린이집 이용을 위한 총 소요시간
			등원	하원	총등하원	
9:19	16:18	6:58	0:13	0:15	0:28	7:27

주: '등원 소요시간'은 집에서 출발하여 어린이집에 도착하기까지의 소요 시간이며, '하원 소요시간'은 어린이집에서 출발하여 집에 도착하기까지의 소요 시간임.

라) 관련 서비스 이용

본 조사 응답가구의 영유아 중 시간연장 보육 서비스를 이용 중인 비율은 2.1%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반면 특별활동은 응답가구의 영유아 중 62.5%가 이용하고 있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특별활동 이용은 매우 보편적임을 보여주었다.

표 III-1-9 관련서비스 이용

단위: %(명)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특별활동			계(수)
이용	비이용	무응답	이용	비이용	무응답	
2.1	89.1	8.7	62.5	33.3	4.1	100.0(1,165)

마) 서비스 이용 만족도

다음으로 영유아가구의 어린이집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 의 서비스에 대해 ‘매우 불만족’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만족한다는 경우(매우 만족 + 대체로 만족)가 75.7%이며, 대부분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어린이집 이용가구의 서비스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 특성별로 살펴보면, 맞벌이 여부, 영유아 구분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고, 가구소득별로는 6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와 299만원 이하의 가장 낮은 소득계층에서 만족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400~499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에서 만족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총자녀수와 거주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총자녀수가 많을수록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불만족’한다는 비율은 총자녀수가 적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대도시, 읍면지역, 중소도시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우선, ‘매우만족’한다는 비율은 대도시 지역이 가장 높은 18%를 차지했고, ‘대체로 만족한다’는 비율은 읍면지역이 66.6%로 대도시, 중소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중소도시에서 ‘불만족’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4.9%로 나타났다.

‘영유아 출생순위’에 따라서도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서비스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셋째 이상의 출생순위인 경우 ‘매우만족’한다는 비율이 23.5%로 첫째 12.1%, 둘째 15.2%에 비해 현저히 높아 출생순위가 낮을수록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입소에 있어 다자녀 가구의 영유아에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등의 혜택으로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가능성은 큰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어린이집 설립유형에 따라서도 어린이집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은 ‘직장’어린이집(30.8%), ‘사회복지



법인' 30.0%, 법인·단체 24.4%, 국공립 23.1%, 가정 15.9%, 민간 8.3% 순이었
고, 만족도 평균은 사회복지법인 4.2점, 국공립과 직장이 4.1점, 법인·단체와 협
동이 4.0점이며,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3.8점으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
타나고 있었다.

표 III-1-10 어린이집 서비스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①매우 만족	②대체로 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불만족	계(수)		평균
전체	14.5	61.2	21.1	3.2	100.0	(1,165)	3.9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5.6	62.0	19.6	2.8	100.0	(541)	3.9
외벌이	13.5	60.5	22.4	3.5	100.0	(623)	3.8
<i>t</i>							1.6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6.8	60.4	20.3	2.5	100.0	(169)	3.9
300~399만원 이하	13.6	62.2	19.9	4.3	100.0	(308)	3.9
400~499만원 이하	8.5	64.2	24.1	3.2	100.0	(263)	3.8
500~599만원 이하	17.0	56.3	22.1	4.6	100.0	(220)	3.9
600만원 이상	18.9	61.8	18.7	0.6	100.0	(205)	4.0
<i>F</i>							3.0*
총 자녀 수							
1명	11.1	58.5	26.6	3.8	100.0	(297)	3.8
2명	13.2	63.4	20.0	3.4	100.0	(672)	3.9
3명 이상	24.2	57.7	16.4	1.6	100.0	(195)	4.0
<i>F</i>							9.9***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18.0	62.3	17.6	2.1	100.0	(458)	4.0
중소도시	12.1	57.7	25.4	4.9	100.0	(484)	3.8
읍면지역	12.3	66.6	19.2	1.9	100.0	(223)	3.9
<i>F</i>							9.6***
영유아 연령1							
영아	13.9	60.9	22.2	3.0	100.0	(726)	3.9
유아	15.4	61.6	19.4	3.5	100.0	(438)	3.9
<i>t</i>							-0.8
영유아 출생순위							
첫째	12.1	61.8	22.1	4.1	100.0	(557)	3.8
둘째	15.2	61.5	20.7	2.7	100.0	(499)	3.9
셋째이상	23.5	57.1	18.3	1.1	100.0	(108)	4.0
<i>F</i>							4.8**

(표 III-1-2 계속)

구분	①매우 만족	②대체로 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불만족	계(수)	평균
어린이집 설립유형						
국공립	23.1	60.3	15.7	0.9	100.0 (229)	4.1
사회복지법인	30.0	58.3	8.3	3.3	100.0 (60)	4.2
법인·단체	24.4	51.2	19.5	4.9	100.0 (41)	4.0
민간	8.3	64.9	23.5	3.3	100.0 (630)	3.8
가정	15.9	53.4	25.6	5.1	100.0 (176)	3.8
직장	30.8	50.0	15.4	3.8	100.0 (26)	4.1
협동	0.0	100.0	0.0	0.0	100.0 (3)	4.0
F						70.770***

* $p < .05$, ** $p < .01$, *** $p < .001$.

2) 유치원 이용 실태

가) 이용 유형

본 연구를 위한 조사의 응답 대상 가구의 영유아 2,276명 중 유치원 이용 유아는 27.8%인 633명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유치원 이용 유아중 ‘국·공립’ 유치원 이용아동은 30.5%, 사립유치원 이용 아동은 69.5%로 사립유치원 이용 비율이 2 배 이상 높았다. 이용하는 유치원의 설립 유형은 부모의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 유아의 연령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가구의 총자녀수, 거주 지역 규모, 유아의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총자녀수가 많을수록, 거주지역 규모가 작을수록(읍면지역인 경우), 출생순위가 낮을수록 국공립유치원 이용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I-1-11 | 이용하는 유치원 설립 유형

구분	국·공립	사립	계(수)	단위: %(명)
전체	30.5	69.5	100.0	(633)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30.1	69.9	100.0	(299)
외벌이	30.9	69.1	100.0	(335)
χ^2 (df)	0.031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0.7	69.3	100.0	(56)

(표 III-1-11 계속)

구분	국·공립	사립	계(수)	
300~399만원 이하	32.9	67.1	100.0	(166)
400~499만원 이하	29.6	70.4	100.0	(158)
500~599만원 이하	33.3	66.7	100.0	(105)
600만원 이상	26.7	73.3	100.0	(149)
χ^2 (df)	1.867			
총 자녀 수				
1명	18.6	81.4	100.0	(160)
2명	31.8	68.2	100.0	(376)
3명 이상	45.4	54.6	100.0	(97)
χ^2 (df)	21.057***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25.3	74.7	100.0	(251)
중소도시	31.7	68.3	100.0	(283)
읍면지역	40.2	59.8	100.0	(100)
χ^2 (df)	7.798*			
영유아연령2				
4세(2014년생)	25.0	75.0	100.0	(150)
5세(2013년생)	29.9	70.1	100.0	(221)
6세(2012년생)	34.1	65.9	100.0	(262)
χ^2 (df)	3.560			
출생순위				
첫째	25.0	75.0	100.0	(372)
둘째	34.1	65.9	100.0	(215)
셋째 이상	58.0	42.0	100.0	(46)
χ^2 (df)	23.775***			

* $p < .05$, *** $p < .001$.

나) 이용 이유

〈표 III-1-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가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인 것으로 나타났다(38.8%). 이밖에 ‘사회성 발달을 위해’가 26.9%,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 21.4%,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없어서’ 5.1%,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2.6%로 유치원은 대리양육이나 양육부담 경감의 필요성에서 보다는 자녀의 발달적 측면에 대한 기대와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 보내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제 특성별로 이용 이유를 살펴본 결과, 맞벌이 가구 여부, 유아의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특히 부모가 맞벌이인 가구에서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없어서’ 유치원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8.5%로 외벌이 가구의 2.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대신 외벌이 가구는 ‘초등학교 준비’(23.1%), ‘사회성 발달’(30.2%)의 이유로 유치원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맞벌이 가구에 비해 각각 3.6%p, 7.0%p 높게 나타나 맞벌이 여부에 따라 유치원을 이용하는 이유는 차이를 보였다. 가구소득, 거주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유아의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초등학교 준비’, ‘특기교육 이용’을 위해 유치원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표 III-1-12 ▶ 유치원 이용 주된 이유

단위: %(명)

구분	전안적 발달을 위해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	특기교육 이용을 위해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없어서	사회성 발달을 위해	놀이 상대가 없어서	양육(교육)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비가 지원 되어서	기타	계(수)
전체	38.8	21.4	2.4	5.1	26.9	1.6	2.6	0.7	0.5	100.0 (633)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38.7	19.5	2.8	8.5	23.2	1.5	4.1	0.9	0.6	100.0 (299)
외벌이	38.9	23.1	2.0	2.0	30.2	1.6	1.4	0.5	0.3	100.0 (335)
χ^2 (df)	21.011**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6.9	26.0	0.0	8.5	33.6	0.0	3.4	1.6	0.0	100.0 (56)
300-399만원	40.9	17.8	2.9	1.7	31.1	1.1	2.7	1.1	0.6	100.0 (166)
400-499만원	36.1	25.3	3.1	3.8	24.6	4.1	2.4	0.0	0.6	100.0 (158)
500-599만원	41.7	22.6	1.8	7.9	21.6	0.9	3.6	0.0	0.0	100.0 (105)
600만원 이상	41.8	18.7	2.4	6.9	25.8	0.5	1.9	1.2	0.7	100.0 (149)
χ^2 (df)	31.818									
총 자녀 수										
1명	44.2	19.3	1.8	4.1	27.2	2.3	1.2	0.0	0.0	100.0 (160)
2명	37.5	22.6	3.0	5.6	25.4	1.7	2.4	1.2	0.5	100.0 (376)
3명 이상	34.9	20.5	1.0	4.7	32.2	0.0	5.8	0.0	1.0	100.0 (97)
χ^2 (df)	18.175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39.5	18.9	1.4	3.5	31.6	2.5	1.1	0.7	0.8	100.0 (251)
중소도시	37.3	23.3	2.7	6.7	23.7	1.0	4.6	0.3	0.3	100.0 (283)
읍면지역	41.6	22.2	4.1	4.3	24.0	0.9	1.0	1.9	0.0	100.0 (100)
χ^2 (df)	23.060									

(표 III-1-12 계속)

구분	전인적 발달을 위해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	특기교육 이용을 위해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없어서	사회성 발달을 위해	놀이 상대가 없어서	양육(교육)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비가 지원 되어서	기타	계(수)
영유아연령										
4세(2014년)	40.7	12.6	2.1	8.0	28.8	2.6	3.2	0.0	1.9	100.0 (150)
5세(2013년)	40.7	20.3	2.1	3.7	25.3	1.6	4.1	2.1	0.0	100.0 (221)
6세(2012년)	36.2	27.4	2.8	4.5	27.1	1.0	1.0	0.0	0.0	100.0 (262)
χ^2 (df)	39.317***									

** $p < .01$, *** $p < .001$.

다) 이용 시간

유치원 이용 가구의 유치원 이용 시간과 등하원 등 소요시간을 살펴본 결과는 <표 III-1-13>에 제시하였다. 유치원 이용 유아 633명은 평균적으로 오전 9시 10분에 등원하며, 오후 4시(16시) 3분 하원하여 하루 평균 순수한 어린이유치원 이용 시간은 총 6시간 53분으로 나타났다. 이외 등하원으로 34분 가량이 소요되어 유치원 이용에 소요되는 총 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 27분으로 집계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던 어린이집과 비교하여, 유치원 이용 시간은 약 5분 가량 적으나, 등하원 소요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어 총 소요 시간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현재 유치원이 어린이집에 비해 기관 수가 약 1/5 가량으로 지리적 접근성이 어린이집 보다 낮기 때문으로 더 넓은 지역에 걸쳐 유아의 수요를 포괄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결과라 하겠다.

표 III-1-13 유치원 이용 시간(평균)

단위: 시: 분

등원시간 (평균)	하원시간 (평균)	이용시간 (평균)	등하원 소요시간 ^{주)}			어린이집 이용을 위한 총 소요시간
			등원	하원	총등하원	
9:10	16:03	6:53	0:15	0:19	0:34	7:27

주: '등원 소요시간'은 집에서 출발하여 유치원에 도착하기까지의 소요 시간이며, '하원 소요시간'은 유치원에서 출발하여 집에 도착하기까지의 소요 시간임.

라) 관련 서비스 이용

본 연구를 위한 조사 대상가구의 유치원 이용 유아 중 방과후 과정을 이용 중

인 비율은 6.2%로 낮은 이용률을 보였으나, 특별활동은 유치원 이용 유아 중 63.8%가 이용하고 있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특별활동 이용 비율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표 III-1-14 유치원 이용 유아의 관련서비스 이용

단위: %(명)

방과후 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계(수)
이용	비이용	무응답	이용	비이용	무응답	
6.2	84.9	9.0	63.8	32.2	4.0	100.0(633)

마) 서비스 이용 만족도

다음으로 유치원 이용 유아가구의 유치원 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현재 이용 중인 유치원의 서비스에 대해 ‘매우 불만족’하는 경우는 0.3%에 불과하였으며, ‘불만족’한다는 응답도 2.6%로 불만족하는 경우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만족한다는 경우(매우 만족+대체로 만족)는 77.2%(매우 만족 13.9%+대체로 만족 63.3%)로 유치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수준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유치원 설립유형을 제외한 제 특성들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고, 5점 만점 중 평균 3.9점의 만족도 점수를 나타냈다. 설립유형에 따라서는 국공립유치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만족도는 4.1점, 사립유치원 이용 만족도는 3.8점으로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도 국공립 26.2%, 사립 8.6%로 차이가 있었다.

표 III-1-15 유치원 서비스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①매우 만족	②대체로 만족	③ 보통	④대체로 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계(수)	평균
전체	13.9	63.3	19.9	2.6	0.3	100.0 (633)	3.9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2.1	66.7	19.1	2.1	0.0	100.0 (299)	3.9
외벌이	15.5	60.3	20.6	3.1	0.5	100.0 (335)	3.9
<i>t</i>							0.3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4.6	52.2	16.7	6.5	0.0	100.0 (56)	4.0
300~399만원	11.5	64.5	22.9	1.2	0.0	100.0 (166)	3.9
400~499만원	12.9	64.1	19.5	2.4	1.1	100.0 (158)	3.9

(표 III-1-15 계속)

구분	①매우 만족	②대체로 만족	③ 보통	④대체로 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계(수)		평균
500~599만원	18.5	56.4	21.5	3.7	0.0	100.0	(105)	3.9
600만원 이상	10.5	70.3	16.9	2.3	0.0	100.0	(149)	3.9
<i>F</i>								0.3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14.1	62.5	21.3	1.7	0.3	100.0	(251)	3.9
중소도시	13.9	61.4	20.4	4.0	0.3	100.0	(283)	3.8
읍면지역	13.4	70.9	14.8	1.0	0.0	100.0	(100)	4.0
<i>F</i>								1.2
설립유형								
국·공립	26.2	56.9	13.8	2.1	1.0	100.0	(195)	4.1
사립	8.6	66.0	22.4	2.9	0.0	100.0	(441)	3.8
<i>F</i>								41.454***

*** $p < .001$.

3)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실태

가) 이용 유형

본 연구를 위한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응답 대상 가구의 영유아 2,276명 중 유치원, 어린이집을 제외한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영어학원, 놀이학원, 예·체능 학원, 종교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이용 중인 영유아는 3.2%인 74명에 해당하였다. 이들이 이용하는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중에서는 '영어학원' 이용 비율이 가장 높아 반일제 이상 영유아 중 47.1%에 해당하였고, 다음으로 체육 관련 기관 이용 24.4%, 종교기관(선교원 등) 이용 16.6%로 주요 유형을 차지하였고, 예능학원(미술, 음악 등) 5.2%, 놀이학원 5.1%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부모의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 가구의 영어학원 이용 비율이 53.9%로 외벌이 가구의 40.5%에 비해 현저히 높고, 반면 체육학원, 종교기관 이용 비율은 외벌이 가구의 영유아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소득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영어학원 이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고소득층인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에서 영어학원 이용 비율이 71.3%로 현저하게 높았다.

표 III-1-16 이용하는 반일제 이상 기관 유형

단위: %(명)

구분	영어 학원	예능 학원 (음악, 미술)	놀이 학원	체육 학원	종교기관 (선교원 등)	기타 공공기관	계(수)
전체	47.1	5.2	5.1	24.4	16.6	1.5	100.0 (74)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53.9	5.3	2.7	22.5	15.7	0.0	100.0 (37)
외벌이	40.5	5.2	7.5	26.3	17.5	3.0	100.0 (37)
χ^2 (df)			3.001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0.0	0.0	14.7	13.8	54.3	17.2	100.0 (7)
300~399만원	23.2	0.0	10.9	42.0	23.9	0.0	100.0 (8)
400~499만원	37.7	16.2	0.0	36.2	10.0	0.0	100.0 (18)
500~599만원	33.0	0.0	11.0	31.6	24.5	0.0	100.0 (8)
600만원 이상	71.3	3.0	3.0	13.9	8.8	0.0	100.0 (33)
χ^2 (df)			40.209**				

** $p < .01$

나) 이용 이유

〈표 III-1-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녀를 국가로부터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이 아닌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에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였으며(29.9%), ‘차별화된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응답도 유사한 비율로 응답되었다(29.5%). 이외 ‘집 주변에 마음에 드는 유치원, 어린이집이 없어서’ 10.2%,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 7.0%, ‘자녀가 원해서’ 5.0%,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다른 기관으로 바꿔주고 싶어서’ 4.8%,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낮아서’ 3.7%, ‘집주변 어린이집, 유치원 정원이 다 차서’ 3.6%, ‘주변사람들이 많이 보내서’ 1.4%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결과로부터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아닌 기타 기관을 굳이 이용하는 이유는 보편적인 교육과는 다른 좀더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집 주변의 어린이집, 유치원 인프라 부족 등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기타 반일제 기관을 이용하게 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III-1-17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주된 이유

단위: %(명)

구분	자녀가 원해서	재능이나 소질 개발을 위해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	차별화된 교육을 위해	마음에 드는 어린이집/유치원이 없어서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다른 기관으로 바뀌려고 싶어서	집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의 정원이 다 차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낮아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보내고 있어서	기타	계(수)
전체	5.0	29.9	7.0	29.5	10.2	4.8	3.6	3.7	1.4	4.9	100.0 (75)
기관유형											
영어학원	8.3	47.2	8.3	22.2	0.0	8.3	0.0	2.8	0.0	2.8	100.0 (36)
예능학원	0.0	25.0	25.0	0.0	50.0	0.0	0.0	0.0	0.0	0.0	100.0 (4)
놀이학원	0.0	25.0	0.0	50.0	25.0	0.0	0.0	0.0	0.0	0.0	100.0 (4)
체육학원	5.3	15.8	5.3	47.4	5.3	0.0	10.5	10.5	0.0	0.0	100.0 (19)
종교기관	0.0	7.7	7.7	23.1	23.1	7.7	0.0	0.0	7.7	23.1	100.0 (13)
기타 공공기관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100.0 (1)

다) 이용 시간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가구의 기관 이용 시간과 등하원 시간 등 기관 이용에 소요되는 시간을 살펴보았다. <표 III-1-18>에 제시된 바에 의하면,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영유아 74명은 평균적으로 오전 9시 29분에 등원하며, 오후 3시(15시) 8분 하원하여 하루 평균 순수한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시간은 총 5시간 39분이다. 이외 등하원을 위해 34분 가량이 소요되어 반일에 이상 기관 이용에 소요되는 총 시간은 하루 평균 6시간 13분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어린이집, 유치원 순수 이용 시간과 총 소요시간에 비해 각각 약 1시간 이상 짧게 나타나는 것이다.

표 III-1-18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시간(평균)

단위: 시: 분

등원시간 (평균)	하원시간 (평균)	이용시간 (평균)	등하원 소요시간(주)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을 위한 총 소요시간
			등원	하원	총등하원	
9:29	15:08	5:39	0:17	0:17	0:34	6:13

주: '등원 소요시간'은 집에서 출발하여 반일제 이상 기관에 도착하기까지의 소요 시간이며, '하원 소요시간'은 반일제 이상 기관에서 출발하여 집에 도착하기까지의 소요 시간임.

라) 관련 서비스 이용

표 III-1-19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영유아의 특별활동 이용

단위: %(명)

이용	미이용	계(수)
59.1	40.9	100.0(74)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영유아 중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이용 비율은 59.1%로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영유아는 유형을 불문하고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서비스 이용 만족도

다음으로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영유아가구의 이용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현재 이용중인 반일제 이상 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매우 불만족’한다는 경우는 없었으며, ‘대체로 불만족’한다는 응답도 1.3%로 불만족하는 경우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반면 만족한다는 경우(매우 만족 17.2%+ 대체로 만족 70.2%)는 87.4%로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만족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를 제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맞벌이 가구 여부, 가구소득, 거주 지역 규모 등 구분에 따른 만족도 평균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고, 5점 만점 중 평균 4.0점의 만족도 점수를 나타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가구소득 구간 중 300~399만원 소득 구간의 반일제 이상 만족도는 평균 3.7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낮은 구간으로 나타났다.

표 III-1-20 반일제 이상 기관 서비스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① 매우 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불만족	계(수)	평균
전체	17.2	70.2	11.3	1.3	100.0 (74)	4.0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7.3	77.8	4.9	0.0	100.0 (37)	4.1
외벌이	17.1	62.7	17.7	2.6	100.0 (37)	3.9
<i>t</i>						1.4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7.2	58.0	14.9	0.0	100.0 (7)	4.1
300~399만원 이하	20.7	44.6	23.2	11.5	100.0 (8)	3.7

(표 III-1-20 계속)

구분	① 매우 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불만족	계(수)		평균
400~499만원 이하	15.9	63.3	20.8	0.0	100.0	(18)	4.0
500~599만원 이하	11.0	79.3	9.7	0.0	100.0	(8)	4.0
600만원 이상	16.6	80.5	2.9	0.0	100.0	(33)	4.1
<i>F</i>							0.9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17.9	68.8	13.3	0.0	100.0	(40)	4.0
중소도시	16.6	76.5	3.5	3.4	100.0	(28)	4.1
읍면지역	15.1	50.3	34.6	0.0	100.0	(6)	3.8
<i>F</i>							0.5
기관유형							
영어학원	11.4	77.1	11.4	0.0	100.0	(35)	4.0
예능학원	25.0	50.0	25.0	0.0	100.0	(4)	4.0
놀이학원	25.0	75.0	0.0	0.0	100.0	(4)	4.3
체육학원	26.3	52.6	15.8	5.3	100.0	(19)	4.0
종교기관	15.4	76.9	7.7	0.0	100.0	(13)	4.1
기타 공공기관	0.0	100.0	0.0	0.0	100.0	(1)	4.0
<i>F</i>							8.247

4) 시간제 보육 이용 실태

가) 이용 장소

본 연구를 위한 조사의 응답 대상 가구의 영유아 2,276명 중 응답 시점 기준 지난 3개월 동안 시간제 일시보육서비스를 이용해 본 영유아는 1.9%인 43명에 해당하였다. 지난 3개월 동안 시간제 보육 이용 경험이 있는 영유아 가구가 지난 3개월 동안 시간제 보육을 이용한 장소 중 가장 응답 비율이 높았던 곳은 ‘어린이집’으로 70.4%였으며, 다음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16.6%, ‘건강가정지원센터’가 6.8%, ‘기타’가 6.2% 순으로 나타났다.

▮ 표 III-1-21 ▮ 시간제 보육 이용 기관(장소)

단위: %(명)

시간제 보육 이용율		시간제 보육 이용 기관				
이용	계(수)	어린이집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기타	계(수)
1.9	100.0(2,276)	70.4	6.8	16.6	6.2	100.0(43)

나) 이용 이유

시간제 일시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급한 볼 일이 있을 때 필요해서’ 로 전체 응답의 거의 반수(49.7%)를 차지하였다. 이는 일정 시간 이상의 정기 서비스가 아닌 ‘시간제’로 그때그때 활용하는 ‘일시적’ 보육 서비스인 시간제 일시보육서비스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 ‘기관 운영 시간이 부모 근로시간과 맞지 않아서’ 시간제 보육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11.4%, ‘아이 연령이 어려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반일제 이상) 기관에 오래 있으면 힘들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10.6%, ‘다른 기관 이용 시간 이외에 추가적(등원 전, 하원 후 저녁)돌봄이 필요해서’ 9.5%등이 유사한 비율로 주된 이용 이유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보면,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정기적으로 일정 시간 이용하는 다른 서비스가 있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돌봄 수요에 대한 ‘틈새 보육’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반일제 이상 기관의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영아 가구가 단시간의 돌봄 지원을 받기 위해 이용하는 서비스임을 알 수 있다.

표 III-1-22 |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 이용 주된 이유

단위: %(명)

구분	다른 기관 이용시간 이외에 추가 돌봄 필요	아이 연령이 어려서 기관에 오래 있으면 힘들 것 같아서	개별돌봄 하면서 학습지 등 사교육을 이용하기 위해	기관 운영시간이 부모 근로시간과 맞지 않아서	급한 볼 일이 있을 때 필요해서	종일제 기관을 현재 이용할 수 없어서	기타	계(수)	
전체	9.5	10.6	6.9	11.4	49.7	5.0	6.8	100.0	(43)
기관유형									
어린이집	6.7	6.7	6.7	10.0	53.3	6.7	10.0	100.0	(30)
건강가정 지원센터	66.7	0.0	0.0	0.0	33.3	0.0	0.0	100.0	(3)
육아종합 지원센터	0.0	28.6	0.0	28.6	42.9	0.0	0.0	100.0	(7)
기타	0.0	0.0	33.3	0.0	66.7	0.0	0.0	100.0	(3)

다) 이용 형태

지난 3개월 간 시간제 보육 이용 경험이 있는 가구의 월 평균 시간제 보육 이용 횟수와 1회당 평균 이용 시간을 응답하도록 한 결과는 <표 III-1-23>과 같다.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가구에서는 지난 3개월 간 월평균 8.7회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했으며, 1회 이용시 평균 2.7시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II-1-23 ■ 시간제 보육 월 평균 이용 횟수와 1회 평균 이용 시간

단위: 회, 시간

월 평균 이용 횟수	1회 평균 이용 시간	(수)
8.7	2.7	(43)

라) 서비스 이용 만족도

시간제 일시보육 이용 경험 가구에 대해 시간제 일시보육서비스에 대한 이용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현재 이용중인 시간제 일시보육서비스에 대해 ‘매우 불만족’한 경우는 4.7%, ‘대체로 불만족’ 6.9%로 11.6%가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반일제 이상 기관의 서비스(어린이집, 유치원,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대비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높았다.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은 18.7%, ‘대체로 만족한다’는 37.8%로 56.5%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체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거나, 불만족 비율이 반일제 이상 기관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으로, 불만족 요인에 대한 분석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만족도를 제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맞벌이 가구의 만족도 점수가(3.7점) 외벌이 가구(3.5점)에 비해 높고,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거주지역 규모가 클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시간제 일시보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평균 3.6점 수준에 해당하였다.

■ 표 III-1-24 ■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①매우 만족	②대체로 만족	③보통	④대체로 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계(수)	평균
전체	18.7	37.8	31.9	6.9	4.7	100.0 (43)	3.6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1.5	49.5	39.0	0.0	0.0	100.0 (16)	3.7
외벌이	23.1	30.6	27.5	11.2	7.6	100.0 (27)	3.5
<i>t</i>							0.8

(표 III-1-24 계속)

구분	①매우 만족	②대체로 만족	③ 보통	④대체로 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계(수)		평균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1.1	22.2	56.6	0.0	10.2	100.0	(9)	3.2
300~399만원	12.2	32.5	33.7	10.3	11.3	100.0	(9)	3.2
400~499만원	26.6	17.6	37.4	18.4	0.0	100.0	(11)	3.5
500~599만원	19.5	70.3	10.2	0.0	0.0	100.0	(10)	4.1
600만원 이상	31.7	68.3	0.0	0.0	0.0	100.0	(3)	4.3
F								1.6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33.2	31.4	35.4	0.0	0.0	100.0	(9)	4.0
중소도시	20.7	41.9	16.9	12.2	8.3	100.0	(24)	3.5
읍면지역	0.0	33.2	66.8	0.0	0.0	100.0	(10)	3.3
F								0.9
기관유형								
어린이집	10.3	34.5	37.9	10.3	6.9	100.0	(29)	3.3
건강가정 지원센터	33.3	66.7	0.0	0.0	0.0	100.0	(3)	4.3
육아종합 지원센터	42.9	28.6	28.6	0.0	0.0	100.0	(7)	4.1
기타	33.3	66.7	0.0	0.0	0.0	100.0	(3)	4.3
F								9.999

5)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실태

가) 이용 유형

본 연구를 위한 조사의 응답 대상 가구의 영유아 2,276명 중 여성가족부의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이용가구가 1.5%, 민간의 육아돌보미 이용가구가 1.8%, 조부모가 개별적으로 자녀를 돌봐주는 경우가 13.9%, 친인척이 자녀를 돌봐주는 경우가 1.8%인 것으로 나타나, 공적 영역에서의 개별돌봄지원사업의 운영과 민간 육아돌보미 시장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영유아의 개별돌봄서비스의 대표적 형태는 ‘조부모에 의한 개별돌봄 지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표 III-1-25 ▮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유형별 이용률, 돌봄장소, 근무형태

단위: %, (명)

구분	이용 여부		돌봄장소		근무형태		계(수)	
	이용률	(수)	아이의집	돌봄 인력 집	입주형	출퇴근형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1.5	(33)	97.3	2.7	2.9	97.1	100.0	(33)

(표 III-1-25 계속)

구분	이용 여부		돌봄장소		근무형태		계(수)	
	이용률	(수)	아이의집	돌봄 인력 집	입주형	출퇴근형		
민간 육아도우미	1.8	(40)	80.7	19.3	4.8	95.2	100.0	(40)
조부모 돌봄	13.9	(317)	75.5	24.5	28.2	71.8	100.0	(317)
조부모 외 친인척	1.8	(41)	69.5	30.5	16.6	83.4	100.0	(41)

이러한 개별돌봄 인력이 아이를 돌보는 장소는 대부분 아이의 집이나, 여성가 족부 아이돌보미에 비해 민간 육아도우미, 조부모, 기타 친인척이 돌보는 경우 돌봄 인력의 집에서 돌보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근무 형태를 살펴보면, 출퇴근하는 형태로 아이의 집에 매번 돌봄 인력이 출근하여 아이를 돌보고 가거나, 반대로 아이를 돌봄 인력의 집에 매번 맡겼다가 데려가는 형태인 ‘출퇴근 형태’가 대부분이었으나, 아이의 집에 돌봄인력이 매일 출퇴근하지 않고 입주하여 상주하거나, 아이를 돌봄인력의 집에 일정 기간 동안 맡겼다가 데려가는 ‘입주형’ 형태도 민간 육아도우미의 경우 4.8%, 조부모의 경우 28.2%, 친인척의 경우 16.6%였다.

나) 이용 이유

가정에서 개별돌봄인력을 통해 자녀를 돌보는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를 응답하도록 한 결과는 <표 III-1-26>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가정에서 자녀를 개별적으로 돌보는 것이 ‘아이 연령에 발달상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가 24.6% 응답되어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의 가장 주된 이유로 나타났으며, 이밖에 ‘아이가 어려 기관 적응이 힘들 것으로 우려’한 경우가 22.1%, ‘원하는 시간대에 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워’가 21.6% 순으로 주요 응답으로 나타났다. 주요 응답으로부터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자녀의 연령이나 발달 상태에 비추어 ‘집단 돌봄’ 보다는 ‘개별돌봄’이 적합하다고 믿는 양육 형태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관 이용 시에 비해 개별돌봄서비스가 부모 요구에 따라 개별인력과 융통성 있게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 개별돌봄서비스의 주된 장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제 특성별로는 맞벌이 가구는 ‘아이의 기관 적응’에 대한 우려가 25.0%로 외벌

이 가구의 13.8%에 비해 현저히 높고, 외벌이 가구는 ‘원하는 시간 이용이 어려움’이 27.1%로 맞벌이 가구의 19.7%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결과를 보였으나, 맞벌이 여부에 따른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이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유아 구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는데, 영아의 경우 ‘아이가 어려 기관 적응에 대해 우려됨’이 33.4%로 압도적으로 높고, ‘아이연령상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라는 응답도 28.5%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영아기에는 기관의 집단 보육 보다는 가정에서의 개별돌봄을 선호하고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유아 부모들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표 III-1-26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주된 이유

단위: %(명)

구분	아이의 기관 적응 우려	기관 이용 비용 부담	희망 시간대 기관 이용 어려움	기관 등하원 부담	기관 집단 돌봄 불안	이용 희망 기관 이용 하지 못함	마땅한 기관 부재	기관 프로그램 마음에 안 들	아이 연령에 개별 돌봄이 적합하다고 생각	기타	계(수)
전체	22.1	3.7	21.6	5.3	6.9	1.4	7.1	0.5	24.6	6.7	100.0(397)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5.0	3.6	19.7	6.4	5.8	1.6	6.6	0.3	25.3	5.7	100.0(296)
외벌이	13.8	4.0	27.1	2.0	10.1	1.0	8.6	0.9	22.6	9.9	100.0(101)
χ^2 (df)	14.395										
영유아 연령 ¹											
영아	33.4	1.7	15.3	4.2	5.9	1.5	3.8	0.5	28.5	5.3	100.0(203)
유아	10.6	5.8	28.0	6.4	8.0	1.3	10.5	0.5	20.6	8.3	100.0(194)
χ^2 (df)	46.181***										
유형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18.2	0.0	33.3	9.1	0.0	3.0	3.0	0.0	24.2	9.1	100.0(33)
민간 육아도우미	22.5	7.5	30.0	5.0	7.5	2.5	7.5	0.0	12.5	5.0	100.0(40)
조부모 돌봄	22.1	2.8	20.8	4.7	7.6	1.3	7.3	0.3	26.5	6.6	100.0(317)
조부모 외 친인척	23.8	9.5	33.3	2.4	4.8	0.0	9.5	2.4	7.1	7.1	100.0(42)

*** $p < .001$.

다) 이용 시간

다음으로 개별돌봄서비스의 유형(돌봄인력)별로 개별돌봄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주당 이용 횟수와 이용시간을 살펴보았다.

▣ 표 III-1-27 ▣ 개별돌봄서비스의 유형별 전반적 이용 행태

단위: 회, 시간

구분	이용빈도 (주 평균)	이용시간 (주 평균)	회당 이용시간 (평균)	계(수)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3.3회	13.0시간	3.9시간	100.0 (33)
민간 육아도우미	4.0회	18.6시간	4.7시간	100.0 (40)
조부모 돌봄	4.0회	16.1시간	4.0시간	100.0 (317)
조부모 외 친인척	3.0회	18.1시간	6.0시간	100.0 (41)

〈표 III-1-27〉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주 평균 3~4회씩, 총 13~18.6시간을 이용하여, 유형별로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는 한번 서비스를 제공시 평균 3.9시간, 민간 육아도우미는 4.7시간, 조부모는 4.0시간, 친인척은 6시간의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1회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시 친인척을 제외하고는 4시간 전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었다.

라) 서비스 이용 만족도

다음으로 개별돌봄서비스에 대한 이용 만족도를 개별돌봄인력별로 살펴보았다. 이중 조부모가 개별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매우 만족’한다는 경우가 52.1%에 달하고 ‘만족한다(매우 만족 + 대체로 만족)’는 경우가 93.0%로 다른 돌봄인력에 의한 서비스에 비해 현저히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4.4점이며, 다음으로 친인척 돌봄의 경우 4.2점,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4.0점, 민간 육아도우미 3.8점 순으로 혈연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가 비혈연 인력에 의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III-1-28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수)	평균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23.6	59.8	13.3	3.2	0.0	100.0(33)	4.0
민간육아도우미	22.4	51.2	10.4	13.3	2.7	100.0(40)	3.8
조부모 돌봄	52.1	40.9	6.0	0.3	0.6	100.0(317)	4.4
조부모 외 기타친인척 돌봄	39.6	47.7	7.9	4.9	0.0	100.0(41)	4.2

6) 기타 서비스

가) 이용 유형

본 연구의 조사 대상 가구의 영유아 2,276명 중 키즈카페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영유아는 66.8%에 달하여 ‘키즈카페’가 매우 보편적인 육아서비스 상품임을 보여주었다. 이에 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공공부문의 육아카페 이용은 3.5%,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구청 등에서 제공하는 부모 상담, 체험, 놀이 프로그램 등 ‘공공 부문 육아지원 프로그램’ 이용 경험은 4.3%로 나타나, 민간의 상업적 육아서비스 이용이 공공부문 제공 육아서비스 이용에 비해 보편화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각 서비스의 제 특성별 이용률을 살펴본 결과, 우선 키즈카페는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이용률이 높고, 대도시가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 비해 이용률이 높았다.

표 III-1-29 제 특성, 기타서비스 유형별 이용률

단위: %(명)

구분	키즈카페	공공부문 육아카페	공공부문 육아지원 프로그램
전체	66.8	3.5	4.3
가구소득			
299만원이하	61.4	3.4	4.6
300~399만원	63.7	4.4	4.9
400~499만원	70.6	3.4	4.6
500~599만원	67.1	3.0	4.0
600만원 이상	70.2	2.9	3.3

(표 III-1-29 계속)

구분	키즈카페	공공부문 육아카페	공공부문 육아지원 프로그램
거주지역 규모			
대도시	67.9	2.6	4.4
중소도시	66.0	4.1	3.8
읍면지역	66.1	4.3	5.3

민간부문의 키즈카페가 대체로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이용률이 높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육아카페는 고소득 가구 보다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의 영유아 이용률이 다소 높게 나타나며,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육아지원 프로그램도 공공부문의 육아카페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거주 지역 규모에 따른 이용률 차이도 공공부문의 육아카페와 공공부문 육아지원 프로그램은 모두 대도시 보다는 읍면지역 거주 아동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나) 이용 이유

어린 자녀를 동반하여 아이에게는 놀 수 있는 공간과 장난감 등을 제공하며, 지켜보며 부모가 안심하고 쉴 수 있는 상업적 서비스로 등장하기 시작한 ‘키즈카페’와 저렴한 비용으로 키즈카페와 유사한 놀이공간과 보호, 부모의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 공공 부문의 ‘육아카페’의 이용 이유를 살펴보았다. <표 III-1-30>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 형태의 서비스는 ‘아이가 좋아해서’ 이용한다는 응답이 공통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외에는 ‘자녀를 동반한 지인 만남을 위해’, ‘집에 없는 놀이기구들이 있어서’, ‘집에서 돌보는 것 보다 편안해서’ 등이 유사한 응답 비율을 나타내어, 민간, 공공을 불문하고 키즈카페와 같은 서비스의 주요 기능을 보여주었다. 즉, 어린자녀를 동반하여 놀이에 최적화된 공간에서 부모가 좀더 편안하게 자녀를 돌보며 양육자가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장소나 자녀 돌봄으로 인한 시간의 제약으로 지인을 편히 만나기도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제약을 줄여주는 공간으로 키즈카페나 육아카페가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음도 드러나고 있다. 즉, 키즈카페나 육아카페는 영유아들에게만 즐거운 공간이 아니라,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도 육아로부터의 쉼표를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키즈카페는 상업서비스로 비용 부담이 큰 편이나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육아카페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므로, 공공부문 육아카페의 이용 이유 중 ‘비용이 저렴해서’ 이용한다는 이유도 14.7%로 높게 나타나 민간 키즈카페에 대해 이러한 이유가 0.5%에 불과한 것과 차이를 보였다.

▣ 표 III-1-30 ▣ 키즈카페(민간) 및 공공부문 육아카페 이용 주된 이유

단위: %(명)

구분	집에 없는 놀이기구가 있어서	집에서 돌보는 것 보다 편안	자녀 동반한 지인 만남을 위해	아이가 좋아함	비용 저렴	기타	계(수)	
키즈카페 (민간)	13.9	16.6	16.8	51.8	0.5	0.6	100.0	(1,520)
공공부문 육아카페	14.2	13.5	15.1	41.2	14.7	2.3	100.0	(80)

다음으로 기타서비스 중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구청, 주민센터 등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부모상담, 아동체험, 놀이 프로그램, 육아품앗이 등 다양한 육아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유를 살펴보았다(표 III-1-31 참조).

▣ 표 III-1-31 ▣ 공공부문 육아지원 프로그램 이용 주된 이유

단위: %(명)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집에서 돌보는 것 보다 편안	아이를 데리고 외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서	이용 시간 부담되지 않음	장소가 편리	비용 부담이 적어서	유용한 프로그램이 많아서	기타	계(수)
9.6	11.2	7.4	7.1	1.0	21.7	40.9	1.1	100.0(98)

공공부문의 육아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동과 부모에게 유용한 프로그램이 많아서’로 40.9%가 이에 응답하였다. ‘비용 부담이 적어서’도 21.7%로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을 차지하였다.

주요 응답을 살펴볼 때, 공공부문에서 제공되는 육아지원프로그램들은 비용이 민간 부문의 유사한 상업적 프로그램에 비해 저렴하면서도 아동과 부모에게 유용한 프로그램이 많고 다양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다) 이용 시간

다음으로 기타 육아지원서비스별 이용 빈도와 1회당 이용 시간을 살펴보았다. <표 III-1-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용 빈도 면에서 공공부문의 육아카페와 공공부문 육아지원 프로그램은 모두 월 평균 2.4회, 키즈카페는 월평균 1.8회 이용하여 공공부문의 기타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당 이용 시간은 키즈카페 평균 2.0시간, 공공부문 육아카페 1.6시간, 공공부문 육아지원프로그램 1.4시간으로 키즈카페가 회당 이용 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났다. 즉, 키즈카페는 공공부문 육아카페나 공공부문 육아지원프로그램보다 이용 빈도는 낮으나, 1회 이용 시 가장 장시간 이용하는 서비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표 III-1-32 ▣ 개별돌봄서비스의 유형별 전반적 이용 행태

단위: 회, 시간

구분	이용빈도 (월 평균 이용 횟수)	회당 이용시간 (평균)	계(수)
키즈카페	1.8	2.0	100.0 (1,520)
공공부문 육아카페	2.4	1.6	100.0 (80)
공공부문 육아지원프로그램	2.4	1.4	100.0 (98)

라) 서비스 이용 만족도

기타 육아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 만족도를 서비스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기타 육아지원서비스 모두 이용 만족도가 5점 만점에 3.8점 이상으로 보통 이상의 유사한 만족 수준을 보였으나, 특히 공공부문 육아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공공부문 육아지원프로그램’은 5점 만점에 평균 4.1 점을 나타냈으며, ‘매우 만족한다’는 경우가 29.9%에 달하였다. 공공부문 육아카페 이용 만족도와 키즈카페 이용 만족도는 평균 3.8점으로 평균 점수가 동일하였으나, 공공부문 육아카페의 경우가 ‘매우만족’한다는 비율이 16.0%로 키즈카페의 9.9%에 비해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약 6.1%p 높게 나타났다.

표 III-1-33 기타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수)	평균
키즈카페	9.9	60.0	25.7	4.1	0.3	100.0(1,520)	3.8
공공부문 육아카페	16.0	49.3	31.0	3.7	0.0	100.0(80)	3.8
공공부문 육아지원프로그램	29.9	51.6	15.6	1.8	1.1	100.0(98)	4.1

7) 사교육 이용 실태

가) 사교육 이용 행태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비방문 학습지 또는 온라인 통신교육, 방문형 교구활동 교육, 비방문형 교구활동 교육, 개인 및 그룹지도, 문화센터 프로그램 이용 등 영유아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사교육 서비스 유형을 7가지로 구분하여 이용 여부, 이용 시 이용 개수, 이용 빈도, 이용 시간, 이용비용 등 전반적인 이용 행태를 살펴보았다.

표 III-1-34 사교육 유형별 이용 행태

단위: %(명), 개, 회, 분,만원

구분	이용률	계(수)	이용 개수 (개)	이용 빈도 (주당/회)	이용 시간 (주당/분)	이용 비용 (월평균/만원)	수 (수)
단시간 학원 (예체능, 보습학원)	15.6	100.0(2,276)	1.3	3.5	189.7	13.4	(355)
방문형학습지	15.4	100.0(2,276)	1.4	1.6	36.7	7.4	(351)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3.2	100.0(2,276)	1.1	2.4	61.3	5.6	(72)
방문형 교구활동 교육	2.2	100.0(2,276)	1.1	1.5	63.8	10.2	(49)
비방문형 교구활동교육	1.1	100.0(2,276)	1.1	2.1	77.8	8.8	(26)
개인 및 그룹지도	3.2	100.0(2,276)	1.1	2.2	114.4	12.7	(73)
문화센터 프로그램	10.0	100.0(2,276)	1.2	1.6	70.3	5.2	(228)

〈표 III-1-34〉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7개의 사교육 유형 중 영유아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유형은 ‘단시간 학원(예체능, 보습학원 등)’으로 본 조사 대상 가구의 영유아 2,276사례 중 15.6%가 이용하고 있었다. ‘방문형 학습지’도 15.4%의 영유아가 이용하여 단시간 학원만큼 이용률이 높은 유형의 사교육으로 드러났

다. ‘문화센터 프로그램’도 이용률이 10.0%로 비교적 이용률이 높은 유형의 하나였다. 이밖에 사교육 유형들은 1.1%의 이용률에서 최대 3.2% 정도의 이용률을 보여 영유아가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형태는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각 유형 사교육 이용 아동의 구체적인 이용 행태를 보면, 각 유형별로 월평균 1.1~1.4개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문형 학습지’ 이용이 월평균 1.4개로 가장 이용 가짓수가 많은 유형이었다. 이용 빈도는 주당 평균 이용 횟수로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단시간 학원 이용시 주당 평균 3.5회 이용하여 가장 빈도가 높고,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이 주당 평균 2.4회, 개인 및 그룹지도 2.2회, 비방문형 교구활동교육 주 2.1회이며, 방문형 학습지와 문화센터 프로그램은 주 평균 1.6회, 방문형 교구활동 교육은 1.5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총 이용 시간은 이용 빈도가 가장 높았던 ‘단시간 학원’ 이용자의 이용 시간이 가장 길어 189.7분, 즉 주 평균 3시간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이용하고 있었고, 개인 및 그룹지도가 114.4분으로 단시간 학원 다음으로 주당 총 이용 시간이 긴 사교육 서비스로 나타났다. 이용 시간이 가장 짧은 사교육 유형은 ‘방문형 학습지’로 주당 평균 36.7분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형태로 이용하고 있는 사교육 서비스를 위해 지불하는 월평균 비용은 단시간 학원 13.4만원, 개인 및 그룹지도 12.7만원, 방문형 교구활동 교육 10.2만원, 비방문형 교구활동 교육 8.8만원, 방문형 학습지 7.4만원, 비방문형 학습지 5.6만원, 문화센터 프로그램 5.2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 빈도와 이용 시간이 비교적 긴 단시간 학원과 개인 및 그룹지도의 비용이 높고, 방문형/비방문형 서비스가 있을 경우 ‘방문형’ 서비스의 비용이 더 높은 특징을 나타냈으며, 문화센터 프로그램이 가장 저렴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각 사교육서비스 유형별로 지불하고 있는 비용에 대한 만족도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매우 불만족’ 1에서 ‘매우 만족’ 5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응답하도록 한 결과, 모든 유형에 대해 ‘대체로 만족’ 수준에 가까운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시간 학원과 개인 및 그룹지도, 문화센터 프로그램은 모두 평균 3.8점으로 비용 만족도가 가장 높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비용 만족도가 높은 유형 중 ‘문화센터 프로그램’은 월평균 비용이 가장 낮고 4주를 기준으로 환

산한 회당 비용도 낮은 수준으로 비용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나, '단시간 학원'과 '개인 및 그룹지도'의 경우 월평균 비용이 가장 높은 사교육 유형으로 비용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할 것이다. 이 중 단시간 학원은 4주 기준으로 환산 시 회당 비용이 저렴한 점에서 높은 비용 만족도가 이해 되나, '개인 및 그룹지도'의 경우는 회당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에도 회당 단가가 높은 수준에 속하여 이는 단순히 비용만이 아닌 이용의 만족도가 함께 확인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비방문 학습지 및 온라인 교육의 경우는 월평균 총 비용과 4주 기준 환산 회당 단가가 7개 유형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에도 비용만족도가 평균 3.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표 III-1-35 사교육 유형별 비용 만족도

단위: %(명), 만원, 점

구분	이용 비용 (월평균)	회당 비용 (4주 환산)	비용수준 만족도					계(수)	평균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단시간 학원 (예체능, 보습학원)	13.4	0.96	14.4	54.8	24.1	6.1	0.6	100.0(355)	3.8
방문형학습지	7.4	1.16	5.0	50.5	38.9	5.7	0.0	100.0(351)	3.5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5.6	0.58	13.3	30.7	31.8	20.0	4.2	100.0(72)	3.3
방문형 교구활동 교육	10.2	1.70	13.7	41.4	32.7	10.5	1.8	100.0(49)	3.5
비방문형 교구활동교육	8.8	1.05	3.1	50.9	46.0	0.0	0.0	100.0(26)	3.6
개인 및 그룹지도	12.7	1.44	20.5	46.4	25.3	5.1	2.8	10.0(73)	3.8
문화센터 프로그램	5.2	0.81	20.7	45.9	26.6	5.9	1.0	100.0(228)	3.8

다음으로 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를 비용 만족도 평균과 함께 제시하였다. 우선, 사교육 유형별로 이용 만족도가 가장 높은 서비스는 '문화센터 프로그램'으로 5점 만점 중 평균 4점에 해당하였고, 이밖에 '단시간 학원', '방문형 교구활동 교육', '개인 및 그룹지도'도 모두 3.9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가장 이용 만족도가 낮은 사교육 유형은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으로 3.5점에 해당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앞서 살펴보았던 '비용 만족도'와 서비스

‘이용 만족도’가 상당히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즉, 상대적으로 비용 만족도가 높았던 사교육 유형은 이용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높고, 반대로 비용 만족도가 낮은 유형은 이용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결국 서비스의 이용자는 일종의 ‘가성비’의 관점에서 ‘비용 대비 효용’이 총체적인 ‘만족감’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반대로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비용에 대한 만족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예를 들면 ‘개인 및 그룹지도’의 경우는 월평균 비용이나 환산한 회당 비용이 모두 높은 유형이나 이용 시 만족도가 높아, 지불 비용에 대해서도 ‘적절하다’ 또는 ‘비싸지 않다’라는 느낌을 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에 있어서 무조건 저렴한 서비스 보다는 질적 수준이 높은 서비스가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되어야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표 III-1-36 사교육 유형별 이용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이용 만족도						평균	비용 만족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수)		
단시간 학원 (예체능, 보습학원)	15.0	68.1	14.2	2.2	0.5	100.0(355)	3.9	3.8
방문형학습지	6.8	54.9	33.2	4.5	0.6	100.0(351)	3.6	3.5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13.2	38.8	33.1	12.3	2.7	100.0(72)	3.5	3.3
방문형 교구활동 교육	15.7	57.6	26.7	0.0	0.0	100.0(49)	3.9	3.5
비방문형 교구활동교육	6.6	66.1	22.6	4.7	0.0	100.0(26)	3.7	3.6
개인 및 그룹지도	23.2	51.3	21.9	2.2	1.3	10.0(73)	3.9	3.8
문화센터 프로그램	21.5	55.7	21.0	1.4	0.5	100.0(228)	4.0	3.8

나) 사교육 이용 이유

다음으로 각 사교육 서비스의 유형별로 이용 이유를 살펴보았다.

(1) 단시간 학원 이용 이유

가장 많은 영유아가 이용하며, 이용의 만족도와 비용 만족도가 모두 높은 수준인 ‘단시간 학원’의 이용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표 III-1-37>에 제시된

바에 따르면 영유아 가구에서 예체능 학원이나 보습학원 같은 학원을 단시간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자녀가 원해서’였다(41.6%). 이외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이어서’ 는 32.8%로 주된 응답 중 하나였으며,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시간의 돌봄을 위해서’ 10.8%, ‘선행학습을 위해서’ 9.2%, ‘또래 친구를 만들어 주고 싶어서’ 4.0%, ‘기타’ 1.6% 순으로 응답되었다.

■ 표 III-1-37 ■ 단시간 학원 이용 주된 이유

단위: %(명)

구분	자녀가 원해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이어서	선행학습을 위해서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시간의 돌봄을 위해서	자녀에게 또래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기타	계(수)	
전체	41.6	32.8	9.2	10.8	4.0	1.6	100.0	(355)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35.3	30.8	9.4	18.7	3.7	2.1	100.0	(187)
외벌이	48.5	34.9	9.0	2.2	4.3	1.1	100.0	(168)
χ^2 (df)	26.328(5)***							
영유아 연령								
영아	54.0	17.8	6.9	17.8	0.0	3.4	100.0	(30)
유아	40.4	34.2	9.4	10.2	4.4	1.5	100.0	(325)
χ^2 (df)	7.008(5)							

이러한 응답은 가구 특성과 영유아 특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다. 우선, 부모의 맞벌이 여부에 따라 맞벌이 가구는 ‘부모가 돌보지 못하는 시간의 돌봄을 위해서’라는 ‘대리돌봄’의 욕구 때문에 이용한다는 이유가 18.7%로 외벌이 가구의 2.2%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영아는 ‘자녀가 원해서’ 가 54.0%로 유아의 40.4%에 비해 13.6%p 높은 수치를 보이고, ‘부모가 돌보지 못하는 시간의 돌봄을 위해서’도 17.8%로 유아의 10.2%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으로 응답되어 자녀의 흥미나 부모 입장에서 대리 돌봄의 필요성으로 주로 이용하는 반면, 유아의 경우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이어서’가 34.2%로 영아의 17.8%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응답을 보여, 영아기에 비해 ‘교육’의 목적으로 단시간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주었다.

(2) 방문형 학습지 이용 이유

표 III-1-38 방문형 학습지 이용 주된 이유

단위: %(명)

자녀가 원해서	비용이 저렴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우수해서	가정에서 하므로 안전 하므로	부모의 여유 시간을 위하여 (방문교사 가 잠깐 보주므로)	교육프로 그램이 다양해서	교사 가정방문 으로 이동시간 을 절약할 수 있어서	선행학습 을 위해	기타 (남들이 다해서, 정부 학습지 바우처 지원)	계(수)
16.4	18.1	7.0	13.9	1.7	3.5	8.2	28.0	3.2	100.0(351)

단시간 학원만큼 이용률이 높은 대중적인 사교육 서비스인 방문형 학습지의 이용 이유는 ‘선행학습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28.0%로 가장 높았으며, ‘비용이 저렴해서’ 18.1%, ‘자녀가 원해서’ 16.4%, ‘가정에서 하므로 안전하므로’ 13.9%, ‘이동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8.2%, ‘교육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우수해서’ 7.0%,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해서’ 3.5%, ‘기타’ 3.2% 순으로 응답되었다. 즉, ‘학습지’라는 특성상 선행학습 등 교육 목적이 이용의 가장 주된 이유이며, 이외 저렴한 비용, ‘방문형 서비스’의 장점(안전, 시간 절약) 때문에 방문학습지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3) 비방문형 학습지, 온라인 통신 교육 이용 이유

비방문형으로 학습지나 온라인 통신 교육을 이용하는 경우는 가장 큰 이용 이유는 ‘편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장소나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편리성’ 때문에 이용한다는 응답이 35.7%로 가장 높았으며, 이외에는 ‘선행학습을 위해’ 17.0%, ‘비용이 저렴해서’ 13.7%, ‘자녀가 원해서’ 10.6%,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우수해서’가 9.7% 순으로 응답되었다. 응답 결과를 보면, 비방문형 학습지, 온라인 교육은 어떠한 사교육 형태보다 ‘편리성’이 두드러지는 사교육 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는 학습, 교육의 욕구가 주된 이용 이유였다. 또한 기타 사교육에 비해 저렴한 비용도 비방문형 학습지, 온라인 교육의 장점으로 파악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1-39 비방문형 학습지, 온라인 통신 교육 이용 주된 이유

단위: %(명)

자녀가 원해서	비용이 저렴해서	정부의 학습지 바우처 지원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우수해서	이용이 편리해서 (시간, 장소 제약 없음)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해서	선행학습을 위해	남들이 다해서	가정에서 하므로 안전하므로	계(수)
10.6	13.7	4.0	9.7	35.7	2.8	17.0	2.7	3.9	100.0(72)

(4) 방문형 교구활동 교육 이용 주된 이유

방문형 교구활동 교육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교육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우수해서’가 45.7%로 응답되어 교구활동 교육이 영유아 대상의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음이 드러났고, 이외 ‘방문형’이 가지는 장점(안전함, 시간 절약, 부모의 여유시간 제공)도 ‘방문형 교구활동 교육’ 이용의 주요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표 III-1-40 방문형 교구활동교육 이용 주된 이유

단위: %(명)

자녀가 원해서	비용이 저렴해서	선행학습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우수해서	가정에서 하므로 안전하므로	부모의 여유 시간을 위하여 (방문교사가 잠깐 봐주므로)	교사 가정방문으로 이동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계(수)
17.0	2.0	2.3	45.7	9.5	10.0	5.6	7.9	100.0(49)

(5) 비방문형 교구활동 교육 이용 주된 이유

교구활동 교육이 교구를 구매하여 교사 비방문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인 ‘비방문형 교구활동 교육’은 앞서 ‘비방문형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의 경우와 동일하게 ‘이용이 편리해서(시간, 장소의 제약 없음)’가 가장 큰 이유였으며(23.3%), 교구를 구매하여 자율적으로 활용한 교육을 하는 만큼 ‘교육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우수해서’ 이용한다는 의견도 18.6%로 이유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교사 방문형 교구활동교육에 비해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비용이 저렴해서’ 이용한다는 응답도 7.4%를 차지하였다.

▣ 표 III-1-41 ▣ 비방문형 교구활동교육 이용 주된 이유

단위: %(명)

자녀가 원해서	비용이 저렴해서	선행학습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우수해서	가정에서 하드로 안전 하드로	남들이 다해서	이용이 편리해서 (시간, 장소 제약 없음)	교육프로그 램이 다양해서	계(수)
18.3	7.4	7.4	18.6	13.8	4.7	23.3	6.6	100.0(26)

(6) 개인 및 그룹지도 이용 주된 이유

개인 및 그룹지도는 사교육 유형 중 비용 지출이 높은 편이나, 비용 만족도 및 이용 만족도가 모두 높은 유형이었다. 개인 및 그룹지도 이용 이유를 살펴 본 결과, ‘집중적인 교습 효과를 얻기 위해서’가 47.5%, ‘자녀가 원해서’ 27.4%, ‘초등학교 선행학습을 위해’ 7.6%, ‘또래 친구에게 뒤쳐질까봐’ 6.1%, ‘자녀에게 또래 친구를 만들어 주고 싶어서’ 5.1% 순으로 나타나서, 개인 또는 그룹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 지도를 받는 경우는 ‘특정한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함임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또래 친구들에게 뒤쳐질까봐’라는 응답도 표현은 다르지만 ‘집중적인 교습을 통해(뒤쳐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목표 면에서 유사한 응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유아에게서는 이용 사례수가 많지 않지만 자녀의 특기나 학습 등에 있어 뚜렷한 목표치를 세우고 있는 경우 이용을 주로 원하는 형태라 사료된다.

▣ 표 III-1-42 ▣ 개인 및 그룹지도 이용 주된 이유

단위: %(명)

자녀가 원해서	집중적인 교습 효과를 얻기 위해	초등학교 선행학습을 위해서	또래 친구들에게 뒤쳐질까봐	교사 방문으로 이동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남들이 다해서	자녀에게 또래 친구를 만들어 주고 싶어서	기타	계(수)
27.4	47.5	7.6	6.1	2.4	1.3	5.1	2.6	100.0(73)

(7) 문화센터 프로그램 이용 주된 이유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와 더불어 영유아기 아동이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사교육 유형인 ‘문화센터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가장 큰 이용 이유

로 33.3%가 이에 응답하였으며, 더불어 ‘비용 부담이 적음’이 30.5%로 유사한 비율로 응답되었다. 즉,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하며, 비용도 저렴한 편으로 저렴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유아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영유아별로는 이용 이유에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영아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다’라는 응답도 17.5%, ‘아이를 데리고 외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응답도 13.2%에 달해, 단지 자녀만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표 III-1-43 문화센터 프로그램 이용 주된 이유

단위: %(명)

구분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자녀를 집에서 돌보는 것보다 편해서	아이를 데리고 외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단시간으로 이용시간이 부담이 되지 않아서	장소가 이동하기 편리해서(주차, 대중교통 등)	단시간 프로그램으로 이용비용이 부담되지 않아서	남들이 다해서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기타	계(수)
전체	33.3	4.8	8.4	5.5	5.9	30.5	1.2	8.2	2.2	100.0(228)
영유아 연령										
영아	30.6	5.7	13.2	3.4	4.6	21.6	1.1	17.5	2.3	100.0(96)
유아	35.1	4.2	4.9	7.1	6.8	37.0	1.3	1.4	2.2	100.0(132)
χ^2 (df)	28.847***									

*** $p < .001$.

2 육아서비스 종류별 관련 비용 지출 현황과 만족도

가. 어린이집 이용 관련 비용 지출

어린이집 이용 비용을 살펴보면 <표 III-2-1>과 같다.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추가 보육료로 매월 8,100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기타 비용으로는 1만 8,900원, 시간연장 서비스 이용료로 1,000원, 특별활동비로 5만 1,200원을 월평균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가구가 외벌이가구보다 정부보조금 제외 추가 보육료와 기타비용을 작게 지출하나, 시간연장 서비스나 특별활동비로는 더 많이 지

출하는 것으로 나왔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가구소득에 따라서 일정한 어린이집 이용 비용에 대한 경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 수급대상 가구는 정부보조금 제외 추가 보육료가 없었으며 특별활동 비용이 유의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의 규모가 커질수록 기타 비용과 특별활동 비용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영유아 연령에 따라서는 영아보다는 유아가 정부보조금 제외 추가보육료, 기타 비용, 특별활동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표 III-2-1 어린이집 이용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정부보조금 제외 추가 보육료		기타 비용		시간연장 서비스		특별활동	
	계(수)	평균	계(수)	평균	계(수)	평균	계(수)	평균
전체	(1,128)	8.1	(1,063)	18.9	(1,063)	1.0	(729)	51.2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523)	7.5	(495)	18.0	(496)	1.6	(334)	53.9
외벌이	(605)	8.6	(567)	19.7	(566)	0.5	(395)	49.0
<i>t</i>		-0.6		-0.9		2.0*		1.8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67)	9.1	(156)	21.2	(155)	0.8	(102)	48.2
300~399만원 이하	(295)	9.6	(274)	16.2	(274)	0.5	(180)	45.9
400~499만원 이하	(251)	5.9	(232)	17.0	(231)	1.7	(155)	51.9
500~599만원 이하	(215)	9.0	(208)	20.8	(210)	1.2	(155)	56.1
600만원 이상	(199)	6.9	(192)	21.1	(192)	0.9	(137)	54.3
<i>F</i>		0.7		1.3		0.6		2.0
기초 생활 수급 여부								
수급대상 가구	(17)	0.0	(17)	20.2	(17)	0.0	(13)	31.1
수급대상 가구 아님	(1,111)	8.2	(1,046)	18.9	(1,046)	1.1	(716)	51.6
<i>t</i>		-9.1***		0.2		-0.5		-2.0*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454)	7.5	(444)	20.6	(445)	1.3	(296)	54.2
중소도시	(455)	8.9	(409)	18.3	(407)	1.0	(284)	50.8
읍면지역	(219)	7.6	(209)	16.6	(210)	0.6	(149)	46.1
<i>F</i>		0.3		1.3		0.4		2.5
영유아 연령1								
영아	(722)	1.4	(667)	15.2	(667)	1.1	(402)	47.3
유아	(406)	20.1	(396)	25.2	(396)	1.0	(326)	56.1
<i>t</i>		-8.3***		-4.7***		0.1		-3.2**

* $p < .05$, ** $p < .01$, *** $p < .001$.

본 조사에 따른 영유아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과목 수 및 과목당 비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I-2-2>와 같다. 특별활동을 3개 이용하는 아동이 29.8%로 가장 많았고, 2개 23.3%, 4개 18.7%, 5개 이상 11.2%, 1개 10.8%순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리고 유아가 영아보다 이용 과목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가구 여부, 가구소득, 기초 생활 수급 여부에 따라서는 이용 과목 수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특별활동 과목당 월평균 지출 비용은 1만 9,800원으로 나타났다. 맞벌이가구가 2만 300원으로 외벌이가구 1만 9,400원에 비해 다소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가구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과목당 월평균 비용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연령에 따라서는 특별활동 이용에 따른 월평균 비용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III-2-2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과목 수 및 과목당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과목수							과목당 비용	
	1개	2개	3개	4개	5개이상	모름	계(수)	계(수)	평균
전체	10.8	23.3	29.8	18.7	11.2	6.2	100.0 (776)	(691)	19.8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8.3	23.0	32.8	18.2	11.7	6.1	100.0 (357)	(316)	20.3
외벌이	13.0	23.6	27.3	19.1	10.7	6.3	100.0 (419)	(375)	19.4
χ^2 (df)/t	6.761								0.8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3.7	31.0	30.3	15.8	5.4	3.7	100.0 (110)	(100)	18.8
300~399만원 이하	11.8	21.2	31.1	14.6	13.2	8.1	100.0 (198)	(167)	18.3
400~499만원 이하	8.2	21.0	27.0	22.2	11.8	9.8	100.0 (168)	(143)	18.9
500~599만원 이하	11.4	21.5	28.7	19.7	15.5	3.2	100.0 (158)	(150)	21.1
600만원 이상	9.7	25.2	32.1	21.1	7.3	4.5	100.0 (142)	(131)	22.2
χ^2 (df)/F	28.258								1.7
기초 생활 수급 여부									
수급대상 가구	24.2	44.7	15.2	8.1	0.0	7.9	100.0 (13)	(12)	17.2
수급대상 가구 아님	10.6	23.0	30.0	18.8	11.4	6.2	100.0 (763)	(679)	19.9
χ^2 (df)/t	8.093								-0.6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8.3	16.7	28.6	24.5	13.2	8.8	100.0 (299)	(270)	19.7
중소도시	11.7	28.4	31.3	12.8	11.0	4.8	100.0 (318)	(277)	20.1
읍면지역	13.9	25.9	29.0	19.4	7.7	4.1	100.0 (159)	(145)	19.5
χ^2 (df)/F	32.598***								0.1

(표 III-2-2 계속)

구분	과목수							과목당 비용		
	1개	2개	3개	4개	5개이상	모름	계(수)	계(수)	평균	
영유아 연령1										
영아	12.4	25.6	27.5	17.1	9.1	8.2	100.0 (429)	(373)	19.3	
유아	8.9	20.5	32.7	20.5	13.7	3.7	100.0 (347)	(318)	20.5	
χ^2 (df)/t	16.873**									-1.0

* $p < .05$, ** $p < .01$, *** $p < .001$.

나. 유치원이용 관련 비용 지출

유치원 이용에 따른 비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I-2-3>과 같다. 정부보조금 제외 추가 교육비는 월평균 5만 5,700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기타 비용으로 2만 8,300원, 방과후 과정으로 3,200원,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6만 5,4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라서는 다른 비용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으나, 특성화프로그램 비용은 맞벌이 가구는 7만 3,400원을 지출하는 반면 외벌이 가구는 5만 7,900원을 지출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특성화 프로그램 이용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규모가 작아질수록 정부보조금 제외 추가 보육료와 기타 비용 지출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3 유치원 이용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정부보조금 제외 추가 교육비		기타 비용		방과후 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계(수)	평균	계(수)	평균	계(수)	평균	계(수)	평균
전체	(590)	55.7	(568)	28.3	(577)	3.2	(402)	65.4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80)	55.5	(270)	27.5	(274)	3.3	(195)	73.4
외벌이	(310)	55.8	(299)	29.0	(302)	3.0	(207)	57.9
t	0.0		-0.4		0.2		2.2*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49)	35.9	(47)	27.8	(48)	4.6	(31)	49.9
300~399만원 이하	(151)	52.1	(148)	20.7	(150)	3.6	(103)	59.1
400~499만원 이하	(151)	53.4	(146)	31.9	(148)	2.7	(113)	54.1
500~599만원 이하	(97)	69.8	(95)	38.9	(96)	2.2	(65)	73.5
600만원 이상	(141)	59.2	(133)	25.5	(135)	3.4	(91)	86.0
F	1.1		2.4*		0.3		3.6**	

(표 III-2-3 계속)

구분	정부보조금 제외 추가 교육비		기타 비용		방과후 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계(수)	평균	계(수)	평균	계(수)	평균	계(수)	평균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238)	72.2	(235)	37.2	(238)	3.5	(166)	72.1
중소도시	(257)	49.4	(241)	21.8	(247)	3.0	(176)	62.7
읍면지역	(95)	31.2	(93)	22.6	(92)	2.7	(60)	55.1
F		6.9**		6.9**		0.2		1.5
영유아 연령2								
4세(2014년생)	(137)	73.9	(135)	24.4	(137)	2.2	(94)	66.0
5세(2013년생)	(208)	49.2	(204)	34.9	(205)	4.5	(145)	73.2
6세(2012년생)	(244)	50.9	(229)	24.8	(235)	2.6	(164)	58.1
F		3.1*		2.9		1.5		1.8

* $p < .05$, ** $p < .01$.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과목 수를 조사한 결과 3개 과목을 이용하는 경우가 25.6%로 가장 많았으며, 2개 22.1%, 5개 이상 17.0%, 4개 15.5%, 1개 13.9% 순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른 특성화프로그램 이용 개수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외 가구소득이나 거주 지역 규모, 영유아 연령에 따른 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과목수의 경향성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 과목당 월평균 비용은 2만 8,700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가구 영유아가 외벌이가구 영유아보다 특성화 프로그램 이용비용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거주 지역 규모가 커짐에 따라 비용이 커지고, 영유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비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I-2-4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과목 수 및 과목당 비용

단위: %(명)

구분	과목수						과목당 비용		
	1개	2개	3개	4개	5개이상	모름	계(수)	계(수)	평균
전체	13.9	22.1	25.6	15.5	17.0	5.9	100.0 (429)	(383)	28.7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4.6	26.8	24.4	14.3	16.9	3.1	100.0 (208)	(192)	32.4
외벌이	13.2	17.7	26.8	16.6	17.1	8.5	100.0 (221)	(191)	25.0
χ^2 (df)				10.872					1.8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8.4	23.4	21.6	7.8	23.5	5.3	100.0 (35)	(29)	21.4

(표 III-2-4 계속)

구분	과목수							과목당 비용	
	1개	2개	3개	4개	5개이상	모름	계(수)	계(수)	평균
300~399만원 이하	14.0	19.7	26.9	17.9	16.4	5.0	100.0 (107)	(98)	25.7
400~499만원 이하	10.3	25.3	27.7	19.8	11.7	5.3	100.0 (117)	(107)	22.0
500~599만원 이하	14.7	19.7	26.7	12.9	16.9	9.1	100.0 (70)	(60)	42.6
600만원 이상	15.7	22.2	22.7	12.3	21.7	5.4	100.0 (100)	(88)	33.2
χ^2 (df)	12.306							3.3*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11.0	21.8	19.2	19.3	19.6	9.2	100.0 (171)	(152)	30.4
중소도시	13.9	24.7	28.8	12.6	16.2	3.9	100.0 (196)	(172)	28.4
읍면지역	22.0	15.0	33.4	14.2	12.3	3.1	100.0 (62)	(59)	25.1
χ^2 (df)	20.497*							0.4	
영유아 연령2									
4세(2014년생)	19.4	19.8	28.6	12.2	15.0	5.0	100.0 (98)	(91)	32.6
5세(2013년생)	12.9	20.0	25.9	15.9	20.0	5.3	100.0 (156)	(138)	30.7
6세(2012년생)	11.7	25.3	23.8	16.9	15.5	6.8	100.0 (176)	(153)	24.6
χ^2 (df)	7.304							1.4	

* $p < .05$.

다.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관련 비용 지출

응답자의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비용을 살펴본 결과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수업료는 월평균 44만 9,300원이며, 기타 비용으로는 월평균 6만 5,400원, 특별활동으로 월평균 9만 7,900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가구의 영유아가 외벌이 가구 영유아에 비해 수업료는 많이 내고 있으나, 기타 비용 및 특별활동 비용을 적게 내는 것으로 보이나 유의하지 않았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업료는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기타비용과 특별활동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유의하진 않았다. 거주 지역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수업료가 유의하게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수업료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 표 III-2-5 ▮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비용

구분	수업료		기타 비용		특별활동	
	계(수)	평균	계(수)	평균	계(수)	평균
전체	(74)	449.3	(74)	65.4	(44)	97.9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37)	524.2	(37)	56.1	(21)	72.6

단위: %(명), 점

(표 III-2-5 계속)

구분	수업료		기타 비용		특별활동	
	계(수)	평균	계(수)	평균	계(수)	평균
외별이	(37)	375.5	(37)	74.4	(23)	120.6
<i>t</i>		1.9		-1.0		-1.4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7)	97.3	(7)	20.5	(4)	40.3
300~399만원 이하	(8)	403.2	(8)	59.4	(6)	89.0
400~499만원 이하	(18)	269.9	(18)	54.5	(8)	96.1
500~599만원 이하	(8)	564.1	(8)	59.6	(5)	79.4
600만원 이상	(33)	599.5	(33)	83.1	(21)	118.0
<i>F</i>		6.3***		1.2		0.4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40)	541.3	(40)	78.4	(26)	112.4
중소도시	(28)	355.9	(28)	39.1	(16)	68.4
읍면지역	(6)	267.3	(6)	100.1	(2)	150.0
<i>F</i>		3.6*		3.1		0.8
영유아 연령1						
영아	(9)	236.4	(9)	42.0	(2)	22.7
유아	(66)	476.8	(66)	68.4	(42)	101.7
<i>t</i>		-2.0		-1.0		-0.9

* $p < .05$, *** $p < .001$.

영유아가 반일제 이상 기관에서 이용하는 특성화 프로그램 과목 수를 살펴보면, 2개가 31.7%로 가장 많고, 3개 26.8%, 4개 14.7%, 1개 14.6%, 5개 이상 12.2%로 나타났다. 맞벌이가구 여부, 가구소득, 거주 지역 규모, 영유아 연령에 따른 반일제 이상 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과목 수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일제 이상 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과목당 월평균 비용은 4만 4,6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가구 영유아가 3만 300원인 반면, 외벌이가구 영유아는 5만 7,400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가구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과목당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마찬가지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밖에 거주 지역 규모나 영유아 연령에 따라서는 특별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표 III-2-6 반일제 이상 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과목 수 및 과목당 비용

단위: %(명)

구분	1개	2개	3개	4개	5개이상	계(수)	계(수)	평균
전체	14.6	31.7	26.8	14.7	12.2	100.0 (44)	(44)	44.6
맞벌이 가구 여부								

(표 III-2-6 계속)

구분	1개	2개	3개	4개	5개이상	계(수)	계(수)	평균
맞벌이	13.2	30.6	24.9	18.3	13.0	100.0	(21)	30.3
외벌이	15.9	32.8	28.4	11.4	11.6	100.0	(23)	57.4
χ^2 (df)	0.561							-1.5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0.0	42.0	58.0	0.0	0.0	100.0	(4)	14.7
300~399만원 이하	16.5	36.9	17.3	14.7	14.7	100.0	(6)	32.4
400~499만원 이하	23.6	51.6	24.8	0.0	0.0	100.0	(8)	50.4
500~599만원 이하	33.3	0.0	34.8	0.0	32.0	100.0	(5)	60.8
600만원 이상	9.2	29.2	21.2	26.9	13.6	100.0	(21)	47.9
χ^2 (df)	18.004							0.4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10.2	27.6	34.7	17.3	10.2	100.0	(26)	52.3
중소도시	23.4	35.3	17.7	12.4	11.2	100.0	(16)	31.4
읍면지역	0.0	54.0	0.0	0.0	46.0	100.0	(2)	52.0
χ^2 (df)	5.906							0.5
영유아 연령1								
영아	0.0	0.0	49.6	50.4	0.0	100.0	(2)	5.7
유아	15.3	33.3	25.6	12.9	12.9	100.0	(42)	46.5
χ^2 (df)	3.540							-0.9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에게 비용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다음의 <표 III-2-7>과 같이 응답하였다. 만족한다는 응답이 65.6%로 불만족한다는 응답 10.9%보다 많아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특성에 따른 지출 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유의하지 않았다.

▮ 표 III-2-7 ▮ 반일제 이상 기관 지출 비용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① 매우 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계(수)	평균	
전체	11.3	54.3	23.5	10.9	0.0	100.0	(74)	3.7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2.8	67.8	9.3	10.2	0.0	100.0	(37)	3.8
외벌이	9.8	41.0	37.6	11.7	0.0	100.0	(37)	3.5
<i>t</i>	1.8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7.2	58.0	14.9	0.0	0.0	100.0	(7)	4.1
300~399만원 이하	20.7	44.6	13.5	21.2	0.0	100.0	(8)	3.6
400~499만원 이하	10.8	52.6	22.1	14.5	0.0	100.0	(18)	3.6
500~599만원 이하	11.0	68.4	20.7	0.0	0.0	100.0	(8)	3.9

(표 III-2-7 계속)

구분	① 매우 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계(수)	평균
600만원 이상 <i>F</i>	6.1	53.3	29.2 0.9	11.3	0.0	100.0 (33)	3.5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13.7	42.2	26.3	17.8	0.0	100.0 (40)	3.5
중소도시	10.1	69.3	17.2	3.4	0.0	100.0 (28)	3.9
읍면지역 <i>F</i>	0.0	65.4	34.6 1.4	0.0	0.0	100.0 (6)	3.7
영유아 연령1							
영아	12.2	75.4	12.4	0.0	0.0	100.0 (9)	4.0
유아 <i>t</i>	11.1	51.5	25.0 1.8	12.4	0.0	100.0 (66)	3.6

라. 시간제 일시보육 이용 관련 비용 지출

시간제 일시보육 이용에 따른 비용을 살펴본 결과 월평균 6만 9,000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가구는 8만 5,000원으로 외벌이가구 5만 9,000원에 비해 지출 비용이 크며, 총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거주 지역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시간제 일시보육 월평균 이용비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영아가 유아보다 지출비용이 높았으나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 표 III-2-8 ▣ 시간제 일시보육 이용(월평균 이용 비용)

구분	계(수)	평균
전체	(43)	6.9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6)	8.5
외벌이	(27)	5.9
<i>t</i>		1.0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9)	4.3
300~399만원 이하	(9)	9.6
400~499만원 이하	(11)	4.9
500~599만원 이하	(10)	9.9
600만원 이상	(3)	4.3
<i>F</i>		1.0

(표 III-2-8 계속)

구분	계(수)	평균
총 자녀 수		
1명	(15)	9.0
2명	(25)	5.9
3명 이상	(2)	4.0
<i>F</i>		0.8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9)	2.5
중소도시	(24)	7.8
읍면지역	(10)	8.7
<i>F</i>		1.6
영유아 연령 ¹		
영아	(27)	7.2
유아	(16)	6.5
<i>t</i>		0.3

마. 개별돌봄 서비스 이용 비용 지출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따른 지출 비용을 질문한 결과,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는 월평균 16만 9,100원, 민간 육아도우미 53만 6,600원, 조부모 돌봄은 27만 5,200원,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은 21만 2,200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의 경우, 총 자녀 수가 많이 질수록 지출 비용이 감소하며, 거주 지역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이 줄고, 영아보다 유아가 비용이 적게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민간 육아도우미는 맞벌이가구보다 외벌이가구의 지출 비용이 더 컸으며, 총자녀가 늘어날수록 비용이 줄고, 거주 지역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이 늘어나나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아동연령에 따라 영아에 대해 69만 2,700원 유아에 대해 35만 4,5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응답되어 격차가 컸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였다. 조부모 돌봄의 경우, 외벌이가구가 10만 3,500원인데 반해 맞벌이가구 32만 5,100원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가구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하게 비용이 늘어나며, 총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유의하게 비용이 줄어들며, 거주 지역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이 유의하게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가 유아보다 비용이 크게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은 맞벌이가구가 외벌이가구 보다 지출 비용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였으며, 가구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고, 영아가 유아보다 컸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I-2-9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		조부모 돌봄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	
	계(수)	평균	계(수)	평균	계(수)	평균	계(수)	평균
전체	(34)	169.1	(40)	536.6	(317)	275.2	(41)	212.2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1)	171.4	(24)	496.3	(246)	325.1	(26)	298.5
외벌이	(12)	165.2	(16)	599.3	(71)	103.5	(15)	56.2
<i>t</i>		0.1		-0.6		4.9***		2.5*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5)	110.9	(2)	200.0	(16)	100.8	(3)	0.0
300~399만원 이하	(9)	241.6	(9)	650.9	(51)	142.7	(6)	49.2
400~499만원 이하	(7)	155.8	(5)	296.2	(59)	187.7	(10)	96.7
500~599만원 이하	(4)	169.8	(7)	764.1	(79)	358.6	(13)	278.4
600만원 이상	(9)	143.3	(17)	493.8	(112)	347.8	(10)	407.6
<i>F</i>		0.6		0.9		5.6***		1.5
총 자녀 수								
1명	(11)	250.6	(7)	680.7	(98)	441.7	(10)	355.0
2명	(14)	143.3	(22)	561.7	(178)	217.3	(25)	139.5
3명 이상	(8)	97.0	(10)	374.5	(41)	132.0	(6)	263.4
<i>F</i>		2.5		0.7		16.3***		1.2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11)	120.0	(18)	661.2	(148)	325.1	(12)	142.4
중소도시	(16)	174.2	(16)	522.2	(122)	262.8	(22)	302.7
읍면지역	(7)	231.1	(6)	226.9	(47)	149.5	(7)	55.1
<i>F</i>		1.0		1.5		4.1*		1.4
영유아 연령1								
영아	(20)	199.7	(22)	692.7	(160)	307.6	(16)	290.7
유아	(13)	123.0	(19)	354.5	(157)	242.4	(25)	162.8
<i>t</i>		1.3		2.1*		1.6		1.0

* $p < .05$, *** $p < .001$.



바. 사교육 이용 지출 비용

영유아의 사교육 이용에 따른 비용 지출 실태를 살펴본 결과, 단시간 학원 이용에 따른 월평균 이용 비용은 13만 4,000원, 방문형 학습지 7만 4,000원, 비방문형 학습지 5만 6,000원, 방문형 교구활동교육 10만 2,000원, 비방문형 교구활동교육 8만 8,000원, 개인 및 그룹지도 12만 7,000원, 문화센터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월평균 지출은 5만 2,000원이었다. 단시간 학원, 문화센터 프로그램은 거주지역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용 비용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방문형 학습지는 거주지역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용 비용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영유아 연령에 따라서는 영아에 비해 유아가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비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활동교육, 비방문형 교육활동교육 이용 비용이 더 컸으며 반대로 개인 및 그룹지도와 문화센터 프로그램은 영아가 유아보다 이용 비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Ⅲ-2-10 사교육 이용비용

단위: 만원(명)

구분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비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활동교육		비방문형 교구활동교육		개인 및 그룹지도		문화센터 프로그램	
	계(수)	평균	계(수)	평균	계(수)	평균	계(수)	평균	계(수)	평균	계(수)	평균	계(수)	평균
전체	(355)	13.4	(351)	7.4	(72)	5.6	(49)	10.2	(26)	8.8	(73)	12.7	(228)	5.2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87)	14.1	(172)	7.1	(34)	6.5	(23)	10.0	(10)	12.0	(39)	12.2	(93)	5.3
외벌이	(168)	12.7	(179)	7.7	(38)	4.7	(26)	10.5	(16)	6.8	(34)	13.3	(135)	5.1
<i>t</i>		1.6		-1.4		1.9		-0.5		1.2		-0.5		0.4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3)	12.4	(32)	7.5	(13)	5.8	(2)	6.3	(5)	10.2	(3)	4.4	(31)	4.3
300~399만원 이하	(68)	11.9	(91)	6.9	(20)	4.9	(11)	9.7	(7)	8.0	(9)	6.7	(51)	5.3
400~499만원 이하	(86)	13.3	(91)	7.1	(13)	4.9	(10)	11.1	(6)	3.5	(13)	14.2	(70)	5.2
500~599만원 이하	(73)	14.7	(73)	7.9	(10)	3.6	(9)	12.2	(5)	6.7	(15)	11.9	(33)	4.4
600만원 이상	(104)	13.8	(64)	8.0	(16)	8.1	(17)	9.5	(4)	19.6	(33)	14.7	(44)	6.1
<i>F</i>		1.2		1.3		2.5*		1.3		1.6		1.7		1.2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157)	13.7	(124)	7.4	(22)	4.3	(13)	10.8	(12)	8.3	(30)	13.2	(90)	5.5
중소도시	(151)	13.4	(163)	7.6	(31)	5.5	(27)	9.5	(9)	7.5	(34)	13.2	(114)	5.0
읍면지역	(48)	12.5	(64)	6.9	(19)	7.1	(10)	11.5	(5)	12.1	(9)	8.9	(24)	4.5
<i>F</i>		0.4		0.6		2.5		1.0		0.3		0.7		0.8
영유아 연령 ¹														
영아	(30)	13.1	(42)	6.6	(24)	4.3	(12)	8.0	(8)	8.4	(10)	13.3	(96)	5.7
유아	(325)	13.4	(309)	7.5	(49)	6.2	(38)	10.9	(18)	9.0	(63)	12.6	(132)	4.8
<i>t</i>		-0.2		-1.4		-2.1*		-2.2*		-0.1		0.2		1.5



(표 III-2-10 계속)

구분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비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활동교육		비방문형 교구활동교육		개인 및 그룹지도		문화센터 프로그램	
	계(수)	평균	계(수)	평균	계(수)	평균	계(수)	평균	계(수)	평균	계(수)	평균	계(수)	평균
영유아 연령2														
0세(2018년생)	(0)	0.0	(1)	11.0	(0)	0.0	(0)	0.0	(0)	0.0	(0)	0.0	(2)	8.5
1세(2017년생)	(3)	14.3	(2)	3.5	(0)	0.0	(3)	8.6	(0)	0.0	(1)	11.0	(39)	5.3
2세(2016년생)	(10)	10.2	(14)	5.4	(10)	4.8	(1)	12.0	(6)	5.9	(2)	27.1	(36)	5.7
3세(2015년생)	(17)	14.6	(25)	7.4	(14)	4.0	(7)	7.1	(2)	15.0	(6)	8.5	(19)	6.2
4세(2014년생)	(46)	13.4	(63)	6.4	(14)	7.1	(6)	9.6	(7)	5.6	(9)	14.4	(42)	4.7
5세(2013년생)	(108)	12.8	(93)	7.4	(17)	6.5	(20)	11.0	(6)	19.5	(23)	10.3	(44)	4.3
6세(2012년생)	(171)	13.9	(153)	8.0	(18)	5.2	(12)	11.5	(6)	3.1	(32)	13.8	(47)	5.3
<i>F</i>		0.6		2.5*		1.3		1.4		3.0*		1.6		0.9

* $p < .05$.

사교육 이용에 따른 비용 수준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I-2-11>과 같다. 단시간 학원의 경우, 만족이 69.2%, 불만족 6.7%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형 학습지는 만족 55.5%, 불만족 5.7%; 비방문형 학습지 만족 44.0%, 불만족 24.2%로 만족하는 응답자가 절반에 미달하였다. 방문형 교구활동 교육은 만족 55.1%, 불만족 12.3%; 비방문형 교구활동교육은 만족 54.0%, 불만족은 0.0%로 나타났으며, 개인 및 그룹지도는 만족 66.9%, 불만족 7.9%; 문화센터 프로그램도 만족 66.6%, 불만족 6.9%로 대체로 절반이상이 사교육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11 사교육 비용 수준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①매우 만족	②대체로 만족	③보통	④대체로 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계(수)	평균
단시간 학원	14.4	54.8	24.1	6.1	0.6	100.0 (355)	3.8
방문형 학습지	5.0	50.5	38.9	5.7	0.0	100.0 (351)	3.5
비방문형 학습지	13.3	30.7	31.8	20.0	4.2	100.0 (72)	3.3
방문형 교구활동교육	13.7	41.4	32.7	10.5	1.8	100.0 (49)	3.5
비방문형 교구활동교육	3.1	50.9	46.0	0.0	0.0	100.0 (26)	3.6
개인 및 그룹지도	20.5	46.4	25.3	5.1	2.8	100.0 (73)	3.8
문화센터 프로그램	20.7	45.9	26.6	5.9	1.0	100.0 (228)	3.8

사. 기타서비스 이용 비용 지출

기타서비스를 이용에 따른 시간당 비용을 물어본 결과 다음의 <표 III-2-12>와 같았다. 키즈카페의 경우 6,700원, 공공부문 육아카페는 2,500원, 공공부문 육아지원 프로그램은 1,600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키즈카페의 경우, 맞벌이가구가 외벌이가구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당 이용비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규모가 커짐에 따라 유의하게 이용비용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육아카페는 맞벌이가구보다 외벌이가구의 이용비용이 크나 유의하지 않으며, 총 자녀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용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마찬가지로 유의하지 않았다. 공공부문 육아지원 프로그램은 맞벌이가구보다 외벌이가구 이용 비용이 크며, 거주 지역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용비용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I-2-12 기타서비스 시간당 이용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키즈카페		공공부문 육아카페		공공부문 육아지원 프로그램	
	계(수)	평균	계(수)	평균	계(수)	평균
전체	(1,520)	6.7	(80)	2.5	(98)	1.6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692)	6.8	(38)	2.3	(41)	1.2
외벌이	(827)	6.6	(42)	2.7	(58)	1.8
<i>t</i>		2.0*		-0.8		-1.4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92)	6.6	(11)	1.8	(15)	1.2
300~399만원 이하	(396)	6.4	(28)	3.5	(31)	1.8
400~499만원 이하	(358)	6.5	(17)	2.1	(23)	1.1
500~599만원 이하	(262)	6.9	(12)	1.8	(16)	2.8
600만원 이상	(311)	7.2	(13)	2.3	(14)	0.6
<i>F</i>		4.6**		1.4		2.3
총 자녀 수						
1명	(399)	7.2	(18)	2.2	(29)	1.5
2명	(901)	6.5	(54)	2.6	(55)	1.4
3명 이상	(220)	6.7	(8)	2.7	(14)	2.2
<i>F</i>		8.6***		0.1		0.6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618)	6.9	(24)	2.2	(40)	1.8
중소도시	(642)	6.7	(40)	2.7	(37)	1.7
읍면지역	(260)	6.2	(17)	2.5	(21)	0.8
<i>F</i>		5.8**		0.3		1.7
영유아 연령1						
영아	(661)	6.7	(42)	2.5	(45)	1.3
유아	(859)	6.7	(38)	2.6	(54)	1.7
<i>t</i>		-0.2		-0.2		-1.0
영유아 연령2						
0세(2018년생)	(31)	7.9	(1)	2.0	(2)	5.0
1세(2017년생)	(131)	6.3	(7)	2.8	(9)	0.8
2세(2016년생)	(227)	6.5	(14)	1.3	(14)	1.7
3세(2015년생)	(271)	6.9	(20)	3.2	(20)	0.8
4세(2014년생)	(289)	6.7	(11)	2.9	(20)	2.0
5세(2013년생)	(277)	6.6	(14)	2.1	(14)	0.5
6세(2012년생)	(293)	6.9	(13)	2.9	(20)	2.4
<i>F</i>		2.5*		0.8		2.7*

* $p < .05$, ** $p < .01$, *** $p < .001$.

기타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수준 만족도를 살펴보면, 키즈카페의 경우, 60.0%가 만족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육아카페는 71.7%가 만족, 공공부문 육아지원 프로그램은 87.2%가 만족하여 이용자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II-2-13 ■ 기타서비스 비용 수준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①매우 만족	②대체로 만족	③보통	④대체로 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계(수)	평균
키즈카페	8.1	51.9	30.1	9.3	0.6	100.0 (1,520)	3.6
공공부문 육아카페	20.9	50.8	26.1	2.3	0.0	100.0 (80)	3.9
공공부문 육아지원 프로그램	48.1	39.1	9.9	1.8	1.1	100.0 (98)	4.3

IV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수요

1.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향후 이용 의사와 연령별 이상적 육아서비스 이용
2. 이용 수요와 이용 실제의 간극 현황
3. 정책 변동에 따른 육아서비스 이용 변동 의사
4. 소결



IV.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수요

이 장에서는 육아서비스 수요자인 영유아 가구가 원하는 육아서비스의 형태와 실제 이용간의 차이 여부와 이러한 간극의 발생 이유, 2018년도 도입이 확정되거나 도입 및 변경이 논의 중인 육아서비스 정책으로 인한 육아서비스 수요자의 서비스 이용 변동 의사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장에서는 수요자가 희망하는 이상에 가까운 육아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올바른 육아서비스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1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향후 이용 의사와 연령별 이상적 육아서비스 이용

가. 자녀 연령별 이용 희망 서비스

1) 아동 연령별 이용 희망 서비스와 이상적인 서비스

본 연구를 위한 조사 대상인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막내 자녀의 향후 연령별 이용 희망 서비스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IV-1-1>에 제시된 결과는 막내 자녀의 현재 연령 이후의 연령별 이용 희망 서비스를 응답하도록 한 결과를 취합한 것으로⁵⁰⁾, 전체 응답 사례수가 해당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표 IV-1-1>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가구는 자녀 연령이 만1세가 될 때는 ‘부모의 직접 돌봄’ 형태를 가장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현재 막내 자녀가 0세인 가구의 부모 392사례의 71.4%가 자녀 1세때 ‘부모 직접 돌봄’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 19.9%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원하며, 8.4%는

50) 예를 들면, 만1세(13~24개월)일 때 이용을 희망하는 육아서비스의 응답자는 현재 막내자녀가 0세인 경우(막내자녀 출생년도 기준 2018, 2017년도 출생한 경우)에 한함.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만2세~4세까지는 ‘어린이집’이 가장 이용을 원하는 육아서비스로, 만2세 49.9%, 만3세 76.7%, 만4세 때에는 60.0%가 어린이집 이용을 가장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만4세부터는 ‘유치원’ 이용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만 5~6세에는 유치원 이용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아져, 막내 자녀 기준 만6세에는 유치원 이용을 희망한다는 경우가 79.3%에 달하였다.

【 표 IV-1-1 】 자녀의 연령별 이용 희망 육아서비스(막내 자녀 기준)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반일제 이상 기타 기관 (유아스포츠택단, 예체능 학원 등)	개별돌봄 서비스 (조부모, 육아도우미 등 타인의 개별돌봄)	부모 직접 돌봄 (육아휴직 등 이용 포함)	계
만1세(13~24개월)	19.9	0.0	0.0	0.3	8.4	71.4	100.0(392)
만2세	49.9	0.3	0.5	1.5	4.6	43.1	100.0(647)
만3세	76.7	6.2	1.0	3.9	1.2	11.0	100.0(903)
만4세	60.0	30.0	2.1	5.9	0.3	1.7	100.0(1,143)
만5세	17.4	71.4	3.6	6.5	0.2	0.8	100.0(1,400)
만6세	6.1	79.3	5.7	7.9	0.3	0.7	100.0(1,648)

【 표 IV-1-2 】 자녀의 연령별 가장 이상적인 육아서비스(0세~6세)

단위 :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반일제 이상 기타 기관(유아 스포츠택단, 예체능 학원 등)	개별돌봄 서비스(조부모, 육아도우미 등 타인의 개별돌봄)	부모 직접 돌봄(육아 휴직 등 이용 포함)	계(수)
만0세(~12개월)	5.6	0.0	0.1	0.3	4.3	89.7	100.0(1,648)
만1세	17.7	0.2	0.1	0.7	6.7	74.6	100.0(1,648)
만2세	53.3	1.7	0.5	3.9	4.6	36.0	100.0(1,648)
만3세	70.4	10.1	1.7	5.9	1.2	10.6	100.0(1,648)
만4세	50.2	37.2	3.0	6.1	0.3	3.2	100.0(1,648)
만5세	12.7	74.0	4.8	6.7	0.2	1.6	100.0(1,648)
만6세	3.9	78.4	7.4	8.7	0.3	1.3	100.0(1,648)

〈표 IV-1-2〉에는 실제 본인의 자녀에게 앞으로 이용을 희망하는 서비스를 응답하도록 한 결과인 〈표 IV-1-1〉과는 달리,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재의 자녀 연령과는 상관없이, 영유아의 연령별로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생각하는 육아서비스의 이용을 응답하도록 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실제 자녀의 각 연령대별로 이용한 것과는 상관없이 평소에 아동의 연령별로 이상적인 육아서비스 이용이라고 생각해왔던 육아서비스의 연령별 ‘이상형’을 응답하도록 한 것으로 앞서 질문하였던 향후 자녀 연령별로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서비스와는 실제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상적인 형태의 육아서비스 이용을 응답하도록 하였으나, 응답 결과는 실제 자녀 연령별로 이용을 희망하는 서비스 응답 경향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에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영유아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0, 1세일 때는 ‘부모가 직접 돌보는 육아서비스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라 보고 있었고, 2세~4세는 어린이집 이용, 5~6세는 유치원 이용을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세까지는 부모가 직접 돌보는 형태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2세는 어린이집 이용이 이상적이라는 응답이 53.3%, 부모가 직접 돌보는 형태 36.0%로 어린이집 이용을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크게 높아졌다. 개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부모가 직접 돌보는 가정 양육의 형태에 대한 선호가 0~1세에서는 7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2세부터는 영유아 대상 기관 이용이 50% 이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기관 이용 초기인 2세를 포함해 4세까지는 어린이집, 5~6세는 유치원 이용이 이상적이라는 응답이 높아서 기관 서비스 이용을 이상적으로 보는 연령대에서도 영유아 연령별로 선호하는 기관에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⁵¹⁾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의 이용 이유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어린이집은 ‘대리 돌봄’을 위해 이용을 원하는 경우가 많으나, 유치원은 특히 초등학교 준비 목적이 이용의 주된 이유인 기관으로 연령별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51) III장 1절 이용 실태 참조

2) 초등 취학 후 이용 희망 서비스

본 조사의 응답대상은 현재 초등학교 입학 전의 자녀를 둔 가구이나, 향후 자녀들이 초등학교 입학한 후 하교 후 자녀를 어떻게 돌보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살펴 보았다.

〈표 IV-1-3〉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학원 등 사교육 시설’을 이용하여 돌보겠다는 응답이 36.7%로 가장 많고, 학교의 방과후 교실 이용 30.3%, 초등학교 돌봄 교실 이용 16.8%, 부모가 직접 돌본다는 응답이 13.1%,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2.4% 순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은 하교 이후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학교나 기타 기관에서 일정 시간의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에서 사교육 기관은 ‘교육’목적만이 아닌 초등학생 돌봄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대략적으로 응답하도록 한 것으로 실제 초등학교 입학 후에 어떠한 돌봄 방식을 이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표 IV-1-3 ▮ 자녀 초등학교 입학 후 하교 후 돌봄 희망 방법

단위 : %(명)

구분	초등학교 돌봄교실	방과 후 교실	학원 등 사교육 시설 이용	개별돌봄 서비스	부모 직접 돌봄	기타	계(수)
전체	16.8	30.3	36.7	2.4	13.1	0.7	100.0(1,648)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1.7	29.7	38.5	3.4	5.9	0.9	100.0(762)
외벌이	12.6	30.9	35.2	1.5	19.3	0.5	100.0(886)
χ^2 (df)				85.149***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14.3	32.3	34.5	0.9	17.9	0.0	100.0(223)
300-399만원 이하	19.3	33.4	31.4	1.6	14.3	0.0	100.0(440)
400-499만원 이하	14.3	32.0	35.9	1.6	15.6	0.5	100.0(384)
500-599만원 이하	17.3	28.0	38.7	3.0	11.4	1.5	100.0(271)
600만원 이상	17.6	24.8	44.5	4.8	6.7	1.5	100.0(330)
χ^2 (df)				60.663***			
지역규모							
대도시	12.8	31.9	38.2	2.3	14.0	0.8	100.0(662)
중소도시	19.4	28.2	35.6	2.8	13.1	0.8	100.0(716)
읍면지역	19.6	32.2	35.9	1.5	10.7	0.0	100.0(270)
χ^2 (df)				18.223			

(표 IV-1-3 계속)

구분	초등학교 돌봄교실	방과 후 교실	학원 등 사교육 시설 이용	개별돌봄 서비스	부모 직접 돌봄	기타	계(수)
지역규모							
대도시	12.8	31.9	38.2	2.3	14.0	0.8	100.0(662)
중소도시	19.4	28.2	35.6	2.8	13.1	0.8	100.0(716)
읍면지역	19.6	32.2	35.9	1.5	10.7	0.0	100.0(270)
χ^2 (df)				18.223			
모 근로형태							
임금근로자	23.1	31.1	36.4	3.2	4.9	1.3	100.0(618)
비임금근로자	16.8	21.7	46.6	3.7	11.2	0.0	100.0(161)
χ^2 (df)				20.094**			
막내자녀연령							
6세(2012년생)	18.1	28.2	42.7	2.4	8.1	0.4	100.0(248)
5세(2013년생)	19.8	30.0	34.6	1.6	12.8	1.2	100.0(257)
4세(2014년생)	17.5	25.8	38.3	2.9	14.2	1.3	100.0(240)
3세(2015년생)	15.6	33.2	32.8	2.7	15.2	0.4	100.0(256)
2세(2016년생)	16.5	34.9	33.3	0.4	14.5	0.4	100.0(255)
1세(2017년생)	14.3	31.3	38.1	3.8	12.1	0.4	100.0(265)
0세(2018년생)	15.0	26.8	37.8	3.1	16.5	0.8	100.0(127)
χ^2 (df)				32.153			

** $p < .01$, *** $p < .001$.

이러한 계획은 부모의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수준, 거주지역 규모, 모의 근로형태에 따라 차이가 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21.7%로 외벌이 가구의 12.6%보다 9.1%p 높았으며, 학원 등 사교육,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응답도 외벌이 가구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외벌이 가구는 부모가 직접 돌보겠다는 응답이 19.3%로 맞벌이 가구의 5.9%에 비해 3배 이상 높아 부모의 취업 형태에 따른 돌봄 계획의 차이를 보였다. 맞벌이 가구가 ‘직접 돌보겠다’는 응답은 휴직 대상 아동 기준 초등학교 2학년까지 대상 연령의 시기가 확대된 ‘육아휴직’을 이용하거나, 시간제 근로 등 직접 돌봄이 가능한 근로 형태의 조정 가능성을 고려한 응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어머니의 근로형태를 임금, 비임금 근로자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에서도 이에 따른 초등학생 돌봄 계획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 교실 이용 계획이 비임금근로자인 경우에 비해 눈에

띄게 높고, 학원 등 사교육 이용하겠다는 계획과 부모가 직접 돌보겠다는 응답은 어머니가 비임금근로자인 경우에 높아 차이를 보였다. 이는 임금, 비임금 근로가 의미하는 어머니의 근로시간의 장단, 근로시간대에 따른 차이가 돌봄 계획으로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비임금근로의 경우 아침 8~9시 경 출근하고 5~7시경 퇴근하는 풀타임근로의 형태보다는 반일 근무, 시간제 근무 등 근무시간이 짧거나 주5일 이상 근무하지 않는 형태의 비정형적 근무 형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용 돌봄 서비스도 어머니의 근로시간대에 맞추어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학원 등 사교육 시설' 이용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시간대가 맞을 경우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는데, 학원등 사교육 서비스와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관련 응답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부모가 직접 돌보겠다는 응답은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보다는 낮은 가구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소득 수준은 맞벌이 여부와도 관련된다고 사료되나, 특히 학원 등 사교육과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등 비용이 높은 육아서비스 이용은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거주지역 규모에 따라서도 초등학교 돌봄 계획의 차이가 드러났는데, 학원 등 사교육 이용은 대도시 38.2%, 중소도시 35.6%, 읍면지역 35.9%로 대도시지역에서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높고, 반면 초등학교 돌봄교실 이용은 읍면지역에서 이용 계획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반면, 대도시 지역에서의 이용 계획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양상을 보였다. 읍면지역에서 향후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19.6%, 중소도시에서는 19.4%로 유사하나, 대도시 지역에서는 12.8%로 대도시와 읍면, 중소도시 사이의 차이가 크게 드러났다.

학원 등 사교육기관은 비용 부담과 함께 지역별 접근성 차이로 인해 거주지역 규모별 이용 계획에 차이가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이며, 대신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대한 이용 수요가 읍면지역, 중소도시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읍면지역의 아동 인구는 감소추세가 현저하여 시장을 통한 민간 육아서비스(사교육 포함)의 공급이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저렴한 돌봄서비스의 공급과 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된 방과후 교실의 적절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막내 자녀 연령에 따른 초등학교 입학 후의 돌봄 계획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막내자녀가 2019년도 초등학교 입학 앞둔 2012년생인 경우, 초등 입학 이후의 돌봄 계획은 상당히 현실이 반영된 계획으로 볼 수 있는데, 2012년생 막내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학원 등 사교육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42.7%에 달하는 점은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을 위한 공적 부분의 서비스가 불충분함을 반영한다고 보여진다. 2019년도 입학 앞둔 자녀의 초등입학 후 돌봄을 ‘학원 등 사교육’으로 해결하겠다는 응답 외에는 ‘방과후 교실’ 28.2%, ‘초등학교 돌봄교실’ 18.1%, ‘부모 직접 돌봄’ 8.1%, ‘개별돌봄 서비스’ 2.4% 순으로 이용 의사가 나타났다.

2 이용 수요와 이용 실제의 간극 현황

가. 원하는 양육 형태와 실제

1) 어린이집

본 조사 당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가구에서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어린이집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였는지를 질문한 결과,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82.9%,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17.1%로 나타남으로써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을 선호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 가구일 때 어린이집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77.9%로 나타났고, 외벌이인 경우에는 87.2%로 나타나서 외벌이인 경우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어린이집 이용을 가장 원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10%p가량 더 높게 나타났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미취업인 경우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어린이집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였다고 보고한 비율이 8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휴직 중 80.4%, 취업 77.0% 순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어린이집이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였다는 응답 비율

이 더 높았다.

영유아 연령에 따라서는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어린이집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였다고 보고한 비율은 자녀의 연령이 1세인 경우 31.9%, 0세 30.8% 순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세와 6세가 20.2%, 2세 17.3%, 3세 14.0%, 4세가 11.3%로 자녀 연령 0~1세에서 어린이집 이용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V-2-1 ▮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어린이집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였는지 여부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수)	
전체	82.9	17.1	100.0	(1,165)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77.9	22.1	100.0	(541)
외벌이	87.2	12.8	100.0	(623)
χ^2 (df)	17.625***			
모 취업 여부				
취업	77.0	23.0	100.0	(476)
휴직중	80.4	19.6	100.0	(78)
미취업	87.8	12.2	100.0	(603)
χ^2 (df)	22.815***			
영유아 연령2				
0세(2018년생)	69.2	30.8	100.0	(3)
1세(2017년생)	68.1	31.9	100.0	(92)
2세(2016년생)	82.7	17.3	100.0	(281)
3세(2015년생)	86.0	14.0	100.0	(350)
4세(2014년생)	88.7	11.3	100.0	(191)
5세(2013년생)	79.8	20.2	100.0	(128)
6세(2012년생)	79.8	20.2	100.0	(120)
χ^2 (df)	22.274**			

** $p < .01$, *** $p < .001$.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해당 영유아 자녀에 대해 어린이집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가 아니라고 응답한 경우에만,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가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다. <표 IV-2-2>에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보기를 원한다는 응답이 3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 보육, 조부모·육아도우미의 개별돌봄 등과 같은 시간제로 양육지원을 이용하는 형태를 가장 원한다는 경우가 26.4%, 유치원 이용 24.8%, 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

관 이용 11.3% 순으로 나타났다. 즉, 어린이집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가 아니었다고 응답한 경우 과반수 이상의 부모들은 어린이집 이용 대신 자녀를 직접 돌보거나 시간제 돌봄의 양육지원을 받으면서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을 더 원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로는 가정에서 직접 돌봄이 4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치원 이용 21.1%, 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이 9.3% 순으로 나타났다. 외벌이의 경우에는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로 양육지원을 받은 형태를 원하는 것이 30.4%, 유치원 이용 30.3%,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 20.9%, 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14.4% 순으로 나타났다. 평소 자녀를 직접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 가구는 부모가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가장 원하고 있고, 반대로 미취업 부모가 전적으로 자녀 돌봄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은 외벌이 가구의 경우는 부모가 주로 돌보면서 시간제로 양육지원을 받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맞벌이 가구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외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부모가 주로 자녀를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을 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모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의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로 '가정에서 부모가 영유아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것'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원 이상인 어머니의 경우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을 선호하는 형태가 6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문대 졸 38.5%, 4년제 대학졸 34.7%, 고졸 이하 21.6% 순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고졸 이하의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부모가 직접 돌보며 시간제 양육지원을 이용하는 형태'가 두 번째로 선호하는 양육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유치원 이용 가장 선호하며(34.0%), 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28.4%,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이 21.6% 순으로 나타났다. 모 학력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모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취업 상태의 차이와 이로 인한 자녀 양육 형태의 차이가 있음을 짐작케 하는 결과라 하겠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휴직중이거나 취업 중인 경우 자녀를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각 48.2%, 42.4%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미취업 상태인 경우에는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로 양육지원을 이용하거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선호하는 양육형태로서 각 31.6%와 31.5%로 응답되었다.

영유아 연령에 따라서는 자녀가 영아인 경우는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로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이 48.4%로 가장 많았고, 유아의 경우에는 유치원 이용이 51.2%로 가장 많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1세와 2세, 3세에서는 해당 연령에서 가장 선호하는 양육형태로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이 각 67.8%, 52.1%, 34.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세에서는 부모가 주로 돌보면서 시간제 양육을 이용하는 것이 45.3%로 가장 많았고, 5세와 6세에서는 유치원 이용이 각 53.6%, 65.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V-2-2 ▣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어린이집 이용이 가장 원하는 형태가 아니었던 경우)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이용	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로 양육지원 이용	가정에서 조부모, 육아도우미 등이 부모 대신 돌봄	기타	계(수)	
전체	24.8	11.3	34.8	26.4	1.7	1.0	100.0	(199)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1.1	9.3	44.1	23.7	1.9	0.0	100.0	(120)
외벌이	30.3	14.4	20.9	30.4	1.3	2.6	100.0	(80)
χ^2 (df)	13.652*							
모 학력								
고졸이하	34.0	28.4	21.6	13.3	2.7	0.0	100.0	(39)
전문대졸	16.7	11.4	38.5	33.3	0.0	0.0	100.0	(58)
4년제대학졸	27.6	5.3	34.7	27.8	2.4	2.2	100.0	(93)
대학원이상	9.1	0.0	63.3	27.6	0.0	0.0	100.0	(9)
χ^2 (df)	29.981*							
모 취업 여부								
취업	20.6	11.9	42.4	23.0	2.1	0.0	100.0	(110)
휴직중	24.2	0.0	48.2	27.6	0.0	0.0	100.0	(15)
미취업	31.5	12.9	19.8	31.6	1.4	2.8	100.0	(73)
χ^2 (df)	15.252							

(표 IV-2-2 계속)

구분	유치원 이용	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로 양육지원 이용	가정에서 조부모, 육아도우미 등이 부모 대신 돌봄	기타	계(수)	
영유아 연령1								
영아	9.9	6.8	48.4	30.6	2.6	1.6	100.0	(128)
유아	51.2	19.4	10.5	18.8	0.0	0.0	100.0	(72)
χ^2 (df)	61.398***							
영유아 연령2								
0세(2018년생)	0.0	0.0	0.0	100.0	0.0	0.0	100.0	(1)
1세(2017년생)	0.0	7.3	67.8	17.8	3.6	3.5	100.0	(29)
2세(2016년생)	4.7	4.9	52.1	33.7	4.7	0.0	100.0	(48)
3세(2015년생)	21.3	8.5	34.2	33.9	0.0	2.1	100.0	(49)
4세(2014년생)	32.1	4.5	18.1	45.3	0.0	0.0	100.0	(22)
5세(2013년생)	53.6	18.0	14.1	14.3	0.0	0.0	100.0	(26)
6세(2012년생)	65.8	34.2	0.0	0.0	0.0	0.0	100.0	(24)
χ^2 (df)	109.169***							

* $p < .05$, *** $p < .001$.

다음으로 이상의 <표 IV-2-2>에서 응답하였던 가장 원하는 형태의 양육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를 질문한 결과, '일을 하고 있어서'가 43.5%로 가장 주된 이유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비용 부담 때문에' 17.0%, '집 근처에서 원하는 서비스가 없거나 부족해서' 12.6%,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6.3%, '이용 가능 시간 및 기간 등 원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달라서' 6.1% 순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일을 하고 있어서'라는 응답이 66.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외벌이인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24.8%로 가장 많았고, '집 근처에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 20.1%, '원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달라서'와 '기타' 13.0%로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400만원 이상인 가구(400~499만원 이하, 500~599만원 이하, 600만원 이상)에서는 '일을 하고 있어서'라는 응답이 각 44.1%, 52.1%, 62.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300~399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집 근처에서 원하는 서비스가 없거나 부족해서'가 28.6%로 가장 많았고, '원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달라서'가 24.9%, '비용부담 때문에' 18.9%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인 가구에서는 '일을 하고 있어서'가 35.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용 부담 때문에'라는 응답이 32.2%로 다른 소득 구간 가구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가장 원하는 형태의 양육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에 대해서 가구소득이 400만원 이상이거나 299만원 이하인 가구에서는 '일을 하고 있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300~399만원인 가구에서는 원하는 서비스 부족을 주요 이유로 들었고,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인 가구에서는 비용 부담도 주요 이유 중의 하나로 보고되었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을 하고 있어서'라는 응답이 71.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휴직 중인 경우에는 '일을 하고 있어서'라는 응답이 4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비용 부담 때문에' 26.4% 순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인 경우에는 '비용 부담 때문에'라는 응답이 26.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집 근처에서 원하는 서비스가 없거나 부족해서' 순으로 21.8%로 나타났다.

▮ 표 IV-2-3 ▮ 가장 원하는 형태의 양육을 하지 않는 이유(어린이집 이용이 가장 원하는 형태가 아니었던 경우)
단위: %(명)

구분	비용 부담 때문에	일을 하고 있어서	원하는 서비스는 대기가 길어서	집 근처에서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아이를 맡길만한 인력을 찾지 못해서	원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달라서	서비스 이용 자격이 해당하지 않아서	기타	계(수)
전체	17.0	43.5	2.7	12.6	6.3	3.1	6.1	0.5	8.2	100.0 (199)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1.7	66.3	3.1	7.5	3.1	1.7	1.6	0.0	5.0	100.0 (120)
외벌이	24.8	9.2	2.3	20.1	11.1	5.2	13.0	1.3	13.0	100.0 (80)
χ^2 (df)	68.341***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2.2	35.1	0.0	2.7	11.9	3.0	6.0	0.0	9.0	100.0 (33)
300~399만원 이하	18.9	24.9	4.4	28.6	4.2	4.6	2.4	2.4	9.5	100.0 (43)
400~499만원 이하	6.8	44.1	1.8	11.0	6.1	4.8	13.8	0.0	11.6	100.0 (45)
500~599만원 이하	17.0	52.1	6.7	14.5	0.0	0.0	4.7	0.0	5.0	100.0 (42)
600만원 이상	13.2	62.5	0.0	2.5	11.0	2.9	2.7	0.0	5.2	100.0 (36)
χ^2 (df)	52.563*									

(표 IV-2-3 계속)

구분	비용 부담 때문에	일을 하고 있어서	원하는 서비스는 대기가 길어서	집 근처에서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아이를 맡길만한 인력을 찾지 못해서	원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달라서	서비스 이용 자격이 해당하지 않아서	기타	계(수)	
모 취업 여부											
취업	9.1	71.3	3.3	8.2	1.9	1.9	1.7	0.0	2.5	100.0	(110)
휴직중	26.4	42.3	0.0	0.0	10.6	0.0	0.0	0.0	20.7	100.0	(15)
미취업	26.9	1.5	2.5	21.8	12.0	5.6	14.1	1.4	14.2	100.0	(73)
χ^2 (df)	101.343***										
영유아 연령1											
영아	14.2	52.3	0.0	11.7	2.7	4.1	5.8	0.8	8.4	100.0	(128)
유아	21.8	27.9	7.6	14.2	12.7	1.3	6.7	0.0	7.8	100.0	(72)
χ^2 (df)	26.827***										
영유아 연령2											
0세(2018년생)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
1세(2017년생)	10.9	60.3	0.0	14.6	0.0	3.5	0.0	0.0	10.7	100.0	(29)
2세(2016년생)	7.2	62.7	0.0	6.9	4.9	6.7	2.5	0.0	9.2	100.0	(48)
3세(2015년생)	23.4	36.2	0.0	14.9	2.2	2.1	12.7	2.1	6.4	100.0	(49)
4세(2014년생)	9.6	45.2	9.0	4.4	9.0	0.0	9.1	0.0	13.6	100.0	(22)
5세(2013년생)	39.4	17.8	7.0	18.2	7.1	3.5	3.5	0.0	3.5	100.0	(26)
6세(2012년생)	14.0	23.1	7.1	18.6	22.0	0.0	8.0	0.0	7.1	100.0	(24)
χ^2 (df)	69.235*										

* $p < .05$, *** $p < .001$.

2) 유치원

가구의 자녀 중 유아가 현재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자녀의 연령(4, 5, 6세)에서 해당 자녀의 유치원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였는지를 질문하였다. 이에 94.2%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현재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가 있는 가구에서는 대부분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는 유치원 이용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 모두에서 유치원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 92.7%, 95.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하고 있거나 휴직중, 미취업인 경우 모두 유치원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 92.3%, 96.9%, 95.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유아 연령에 따라서는 4세 유아인 경우에는 유치원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89.4%, 5세와 6세인 경우에는 각 97.1%와 94.6%로 나타났다. 4세에 비해 5세와 6세가 유치원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였다.

【 표 IV-2-4 】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유치원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였는지 여부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수)	
전체	94.2	5.8	100.0	(633)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92.7	7.3	100.0	(299)
외벌이	95.6	4.4	100.0	(335)
χ^2 (df)	2.385			
모 취업 여부				
취업	92.3	7.7	100.0	(273)
휴직중	96.9	3.1	100.0	(31)
미취업	95.5	4.5	100.0	(328)
χ^2 (df)	3.039			
영유아 연령2				
4세(2014년생)	89.4	10.6	100.0	(150)
5세(2013년생)	97.1	2.9	100.0	(221)
6세(2012년생)	94.6	5.4	100.0	(262)
χ^2 (df)	10.632**			

** $p < .01$.

현재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유아 자녀에 대해 유치원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가 아니라고 응답한 5.8%의 응답 사례를 대상으로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는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다. 이에 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을 가장 원하였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어린이집 이용 26.8%,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로 양육지원 이용이 25.1%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어린이집 이용이 가장 원하는 형태가 아니었던 경우에는 부모가 직접 돌보는 형태를 가장 원하였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유치원 이용을 원하지 않았던

경우는 부모가 직접 돌보는 형태를 원하기 보다는 다른 반일제 이상 기관(학원, 어린이집 등) 이용을 원한다는 응답이 많아 차이를 보였다. 이는 유치원 이용 아동의 연령이 3세 이상 유아에 한정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로 사료된다.

한편, 맞벌이 가구 여부, 모 취업 여부, 유아 연령에 따른 응답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 표 IV-2-5 ▮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유치원 이용이 가장 원하는 형태가 아니었던 경우)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이용	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로 양육 지원 이용	계(수)	
전체	26.8	40.2	7.9	25.1	100.0	(37)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7.8	29.7	8.8	33.7	100.0	(22)
외벌이	25.5	55.8	6.5	12.2	100.0	(15)
χ^2 (df)			2.337			
모 취업 여부						
취업	29.0	31.1	9.2	30.7	100.0	(21)
휴직중	0.0	0.0	0.0	100.0	100.0	(1)
미취업	25.5	55.8	6.5	12.2	100.0	(15)
χ^2 (df)			4.996			
영유아 연령2						
4세(2014년생)	38.4	31.5	0.0	30.2	100.0	(16)
5세(2013년생)	42.3	28.2	29.6	0.0	100.0	(6)
6세(2012년생)	6.8	55.5	6.8	30.8	100.0	(14)
χ^2 (df)			11.937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유아 자녀에 대해 유치원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가 아니라고 응답한 경우에만 가장 원하는 형태의 양육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를 질문하였는 바, 원하는 형태의 양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일을 하고 있어서’로 나타났다(30.6%). 이외 이유로는 ‘비용 부담 때문에’ 25.5%, ‘집 근처에서 원하는 서비스가 없거나 부족해서’ 23.3% 순으로 응답되었다.

▮ 표 IV-2-6 ▮ 가장 원하는 형태의 양육을 하지 않는 이유(유치원 이용이 가장 원하는 형태가 아니었던 경우)
단위: %(명)

구분	비용 부담 때문에	일을 하고 있어서	원하는 서비스는 대기가 길어서	집 근처에서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아이를 맡길만한 인력을 찾지 못해서	원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달라서	서비스 이용 자격이 해당하지 않아서	계(수)
전체	25.5	30.6	5.2	23.3	3.1	4.9	4.8	2.6	100.0 (37)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2.3	51.1	4.5	22.6	5.1	0.0	4.4	0.0	100.0 (22)
외벌이	45.1	0.0	6.2	24.5	0.0	12.2	5.5	6.5	100.0 (15)
χ^2 (df)					16.167*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2)
300~399만원 이하	20.8	20.1	10.5	10.3	0.0	19.3	19.0	0.0	100.0 (9)
400~499만원 이하	35.1	23.8	0.0	13.0	15.1	0.0	0.0	12.9	100.0 (7)
500~599만원 이하	29.1	0.0	0.0	70.9	0.0	0.0	0.0	0.0	100.0 (7)
600만원 이상	8.1	67.1	8.1	16.8	0.0	0.0	0.0	0.0	100.0 (11)
χ^2 (df)					44.380*				

* $p < .05$.

한편, 맞벌이인 경우에는 ‘일을 하고 있어서’가 51.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집 근처에서 원하는 서비스가 없거나 부족해서’ 22.6%, ‘비용부담 때문에’ 12.3%,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5.1%, ‘원하는 서비스는 대기가 길어서’ 4.5% 순으로 나타났다. 외벌이인 경우에는 ‘비용부담 때문에’가 4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집 근처에서 원하는 서비스가 없거나 부족해서’ 24.5%, ‘아이를 맡길만한 인력을 찾지 못해서’ 12.2%, ‘서비스 이용 자격에 해당하지 않아서’ 6.5%, ‘원하는 서비스는 대기가 길어서’ 6.2%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300~399만원 이하인 경우와 400~499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용부담 때문에’가 각각 20.8%, 35.1%로 가장 많은 주된 이유로 나타났고, 500~599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집 근처에서 원하는 서비스가 없거나 부족해서’ 70.9%로 가장 주된 이유였고, 600만원 이상에서는 ‘일을 하고 있어서’가 67.1%로 가장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3) 반일제 이상 기관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외의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였는지를 질문한 결과, 91.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즉, 현재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가 아니었다고 응답한 8.9%의 사례를 대상으로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는 무엇이었는지 질문하였다. 이에 유치원 이용 56.0%, 어린이집 이용 14.6%,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로 양육지원 이용 12.3% 순으로 응답되었는 바, 현재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 일부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다른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을 원하였으나 이용을 못하는 사정으로 인해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표 IV-2-7 ▮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였는지 여부 및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

단위: %(명)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였는지 여부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이 가장 원하는 형태가 아니었던 경우)				
예	아니오	계(수)	어린이집 이용	유치원 이용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로 양육지원 이용	계(수)
91.1	8.9	100.0(74)	14.6	56.0	17.1	12.3	100.0 (7)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자녀 가구에서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가 아니라고 응답한 경우 실제 가장 원했던 형태의 양육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를 질문한 결과, ‘집 근처에서 원하는 서비스가 없거나 부족해서’가 27.2%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이외 ‘일을 하고 있어서’ 26.9%, ‘비용부담 때문에’ 17.1%, ‘이용 가능 시간 및 기간 등에서 원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달라서’ 14.9%, ‘원하는 서비스의 대기가 길어서’ 13.8% 순으로 나타났다.

▮ 표 IV-2-8 ▮ 가장 원하는 형태의 양육을 하지 않는 이유(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이 가장 원하는 형태가 아니었던 경우)

단위: %(명)

비용 부담 때문에	일을 하고 있어서	원하는 서비스는 대기가 길어서	집 근처에서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또는 부족하여서)	원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달라서	계(수)
17.1	26.9	13.8	27.2	14.9	100.0(7)

4) 개별돌봄서비스

현재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였는지를 질문한 결과, 65.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34.5%가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던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에서는 전반적으로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였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90% 이상을 상회하였고, 어린이집도 82.9%이었던 반면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가구에서 해당 서비스가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였다는 비율은 다소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인 경우에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67.7%, 외벌이인 경우에는 59.1%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6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개별돌봄서비스가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74.2%로 가장 높았고, 300~399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66.4%, 500~599만원 이하 66.0%, 299만원 이하 62.6% 순이었던 반면, 400~499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47.5%로 가장 적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모 근로형태에 따라서는 임금근로자일 때 71.4%가 개별돌봄서비스가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였다고 응답하였던 반면, 비임금근로자는 51.6%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어머니의 근로 형태에 따라서도 응답 결과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모 학력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고졸 이하거나 전문대졸이면 각 55.4%, 54.3%가 개별돌봄서비스가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였다고 응답하였던 반면, 4년제 대학졸이거나 대학원 이상이면 각 73.4%, 62.8%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어머니 학력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모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에는 70.5%가 개별돌봄서비스가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였다고 응답한 반면, 휴직중이거나 미취업중인 경우 각 54.6%, 56.2%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어머니 취업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해당 자녀가 영아인 경우에는 64.5%가 개별돌봄서비스가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였다고 응답하였고 유아인 경우에는 66.6%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영유아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 표 IV-2-9 ▮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개별돌봄서비스가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였는지 여부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수)	
전체	65.5	34.5	100.0	(397)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67.7	32.3	100.0	(296)
외벌이	59.1	40.9	100.0	(101)
χ^2 (df)	2.220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62.6	37.4	100.0	(25)
300~399만원 이하	66.4	33.6	100.0	(65)
400~499만원 이하	47.5	52.5	100.0	(69)
500~599만원 이하	66.0	34.0	100.0	(100)
600만원 이상	74.2	25.8	100.0	(138)
χ^2 (df)	13.959**			
모 근로형태				
임금근로자	71.4	28.6	100.0	(248)
비임금근로자	51.6	48.4	100.0	(51)
χ^2 (df)	8.068**			
모 학력				
고졸이하	55.4	44.6	100.0	(62)
전문대졸	54.3	45.7	100.0	(87)
4년제대학졸	73.4	26.6	100.0	(203)
대학원이상	62.8	37.2	100.0	(39)
χ^2 (df)	13.460**			
모 취업 여부				
취업	70.5	29.5	100.0	(253)
휴직중	54.6	45.4	100.0	(46)
미취업	56.2	43.8	100.0	(92)
χ^2 (df)	8.407*			
영유아 연령1				
영아	64.5	35.5	100.0	(201)
유아	66.6	33.4	100.0	(196)
χ^2 (df)	0.174			

* $p < .05$, ** $p < .01$.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해당 영유아 자녀의 연령에서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이 가장 원했던 양육형태가 아니라고 응답한 경우,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는 무엇이었는지를 질문하였다. 이에 ‘어린이집 이용’을 원했다는 경우가 30.8%로 가장 많았고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 30.2%,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 보육 이용’ 20.3%, ‘유치원 이용’ 17.2% 순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 경우에는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이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였다는 응답 비율이 32.4%로 가장 많았고, 외벌이인 경우에는 어린이집 이용이 36.6%로 가장 많았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400~499만원 이하, 300~399만원 이하, 299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어린이집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 41.6%, 32.8%, 32.7%로 가장 많았고, 500만원 이상 가구(500~599만원 이하, 600만원 이상)에서는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이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 42.8%, 37.4%로 가장 많았다.

▮ 표 IV-2-10 ▮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개별돌봄서비스 이용이 가장 원하는 형태가 아니었던 경우)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이용	유치원 이용	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 보육 이용	기타	계(수)
전체	30.8	17.2	0.7	30.2	20.3	0.8	100.0(137)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8.3	16.5	1.0	32.4	21.8	0.0	100.0(96)
외벌이	36.6	18.9	0.0	25.1	17.0	2.5	100.0(41)
χ^2 (df)	4.496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2.7	22.0	0.0	22.4	22.8	0.0	100.0(9)
300~399만원 이하	32.8	25.2	0.0	18.4	23.5	0.0	100.0(22)
400~499만원 이하	41.6	13.0	2.6	20.4	19.5	2.9	100.0(36)
500~599만원 이하	31.7	13.8	0.0	42.8	11.8	0.0	100.0(34)
600만원 이상	17.3	18.6	0.0	37.4	26.8	0.0	100.0(36)
χ^2 (df)	18.633						

(표 IV-2-10 계속)

구분	어린이집 이용	유치원 이용	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 보육 이용	기타	계(수)
모 근로형태							
임금근로자	27.4	18.5	1.3	30.8	22.0	0.0	100.0(71)
비임금근로자	31.2	10.8	0.0	36.9	21.1	0.0	100.0(25)
χ^2 (df)	1.173						
모 취업 여부							
취업	26.8	14.9	1.3	34.6	22.5	0.0	100.0(75)
휴직중	33.7	22.3	0.0	24.6	19.4	0.0	100.0(21)
미취업	35.1	19.3	0.0	25.7	17.4	2.6	100.0(40)
χ^2 (df)	6.359						
영유아 연령1							
영아	30.0	4.4	0.0	38.2	25.9	1.4	100.0(71)
유아	31.7	31.2	1.5	21.4	14.2	0.0	100.0(65)
χ^2 (df)	22.037***						
영유아 연령2							
0세(2018년생)	13.5	13.5	0.0	59.6	13.5	0.0	100.0(7)
1세(2017년생)	33.7	0.0	0.0	39.8	26.5	0.0	100.0(16)
2세(2016년생)	25.7	3.7	0.0	33.9	36.7	0.0	100.0(31)
3세(2015년생)	41.1	6.0	0.0	35.4	11.7	5.8	100.0(18)
4세(2014년생)	56.3	14.8	0.0	19.4	9.5	0.0	100.0(21)
5세(2013년생)	24.0	40.0	4.2	19.9	11.9	0.0	100.0(23)
6세(2012년생)	16.5	37.5	0.0	24.9	21.2	0.0	100.0(22)
χ^2 (df)	48.402*						

* $p < .05$, *** $p < .001$.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자녀에 대해 해당서비스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가 아니었다고 응답한 경우 가장 원하는 형태의 양육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를 질문한 결과, ‘일을 하고 있어서’가 47.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타 12.7%, ‘믿고 맡길만한 기관을 찾지 못해서’ 9.6%, ‘원하는 수준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달라서’ 8.7%, ‘비용 부담 때문에’ 6.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맞벌이 가구인 경우 ‘일을 하고 있어서’가 65.0%로 주된 이유였으며, 외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믿고 맡길만한 기관을 찾지 못해서’가 19.8%로 가장 많았다. 이는 앞서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모가 가정에서 직접 돌보거나, 부모가 직접

돌보며 시간제 육아지원을 이용하고 싶었다는 응답이 높았고, 외벌이 가구는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했던 경우가 많았던 결과와 연관지어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400만원 이상인 가구(400~199만원 이하, 500~599만원 이하, 600만원 이상)에서는 ‘일을 하고 있어서’가 각 32.0%, 59.4%, 75.0%로 가장 주된 이유였고, 300~399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믿고 맡길만한 기관을 찾지 못해서’가 28.3%로 가장 많았고, 299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비용 부담 때문에’가 35.9%로 가장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 표 IV-2-11 ▮ 가장 원하는 형태의 양육을 하지 않는 이유(개별돌봄서비스 이용이 가장 원하는 형태가 아니었던 경우)

단위: %(명)

구분	비용 부담 때문에	일을 하고 있어서	원하는 기관은 대기가 길어서	집 근처에서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믿고 맡길만한 기관을 찾지 못해서	원하는 수준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달라서	서비스 이용 자격이 해당되지 않아서	기타	계(수)
전체	6.7	47.7	4.4	2.2	5.8	9.6	8.7	2.2	12.7	100.0 (137)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5.1	65.0	4.4	1.0	2.9	5.3	5.1	1.1	10.1	100.0 (96)
외벌이	10.4	7.4	4.6	4.9	12.5	19.8	17.0	4.7	18.8	100.0 (41)
χ^2 (df)	41.326***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5.9	30.7	11.4	0.0	0.0	11.4	10.6	0.0	0.0	100.0 (9)
300~399만원	9.0	18.3	4.4	0.0	13.3	28.3	5.2	0.0	21.5	100.0 (22)
400~499만원	5.6	32.0	8.0	2.9	8.2	8.0	8.2	5.3	21.7	100.0 (36)
500~599만원	2.7	59.4	0.0	2.9	3.0	8.8	17.1	3.1	3.0	100.0 (34)
600만원 이상	2.7	75.0	3.2	2.7	3.0	0.0	2.8	0.0	10.7	100.0 (36)
χ^2 (df)	60.261**									
모 취업 여부										
취업	6.6	72.8	2.9	1.3	2.5	2.7	5.1	0.0	6.1	100.0 (75)
휴직중	0.0	37.3	9.7	0.0	4.6	14.3	5.0	5.0	24.1	100.0 (21)
미취업	10.6	7.6	4.7	5.0	12.8	20.2	15.0	4.8	19.3	100.0 (40)
χ^2 (df)	54.977***									
영유아 연령1										
영아	6.1	50.7	4.5	1.5	5.9	12.0	6.0	3.1	10.3	100.0 (71)
유아	7.4	44.4	4.4	3.0	5.7	7.0	11.6	1.2	15.4	100.0 (65)
χ^2 (df)	4.474									

** $p < .01$, *** $p < .001$.

나. 원하는 이용 시간의 간극과 이유

1) 어린이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에 대한 의견을 질문한 결과, 현재 이용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76.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금보다 이용 시간을 좀 더 늘리고 싶다 16.0%, 지금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줄이고 싶다 3.8%, 지금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늘리고 싶다 3.1% 순으로 나타났다.

■ 표 IV-2-12 ■ 현재 어린이집 이용 시간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늘리고 싶다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늘리고 싶다	현재 이용 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줄이고 싶다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줄이고 싶다	계(수)		
전체	3.1	16.0	76.8	3.8	0.3	100.0	(1,165)	
모 취업 여부								
취업	2.8	14.9	74.0	7.6	0.6	100.0	(476)	
휴직중	4.1	20.1	74.6	1.2	0.0	100.0	(78)	
미취업	3.2	16.4	79.2	1.2	0.0	100.0	(603)	
χ^2 (df)							37.154***	

*** $p < .001$.

이러한 결과는 모 취업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어머니가 취업 중 또는 휴직중이면 현재 시간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각 74.0%, 74.6%로 어머니가 미취업일 때 79.2%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어머니가 휴직중인 경우 지금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늘리고 싶다는 응답이 20.1%로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14.9%, 미취업 16.4%에 비해 더 높게 응답되었으며, 지금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늘리고 싶다는 응답도 휴직 중인 경우가 4.1%로 취업한 경우 2.8%, 미취업 3.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중에서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많이 또는 조금 늘리고 싶다고 응답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늘리고 싶음에도 현재만큼만 이용하는 이유를 질문하였다. 이에 ‘아이가 혼자 남게 되어 싫어해서’가 31.0%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좋을 것 같아서' 22.1%, '이용 자격 때문에(종일반 자격에 해당되지 않아서)' 20.9%, '더 이용하는게 왠지 눈치가 보여서' 14.5% 순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면 '아이가 혼자 남게 되어 싫어해서'가 3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좋을 것 같아서' 29.9%, '더 이용하는데 왠지 눈치가 보여서' 16.8%로 나타났다. 반면 외벌이인 경우에는 '이용 자격 때문에(종일반 자격에 해당되지 않아서)' 31.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이가 혼자 남게 되어 싫어해서'가 25.2%,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15.5%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299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이용 자격 때문에(종일반 자격에 해당되지 않아서)'를 34.1%로 가장 주된 이유로 들었고, 300~399만원과 400~499만원 가구에서는 '아이가 혼자 남게 되어 싫어해서'가 각 35.0%, 45.5%를 주된 이유로 꼽았으며, 6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더 이용하는 게 왠지 눈치가 보여서' 29.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25.5%로 나타났다.

부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30대인 경우에는 '이용 자격 때문에(종일반 자격에 해당되지 않아서)'가 29.3%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다음으로 '아이가 혼자 남게 되어 싫어해서' 25.4%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23.6%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연령이 40대 이상인 경우에는 '아이가 혼자 남게 되어 싫어해서' 38.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21.0%, '더 이용하는 게 왠지 눈치가 보여서' 15.9% 순으로 나타났다.

모 연령에 따라서는, 어머니의 연령이 20대와 30대면 '아이가 혼자 남게 되어 싫어해서' 각 36.9%, 2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용 자격 때문에(종일반 자격에 해당되지 않아서)' 각 26.5%, 25.3%, '더 이용하는 게 왠지 눈치가 보여서' 각 23.5%, 13.3%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40대인 경우에는 '아이가 혼자 남게 되어 싫어해서' 38.3%로 가장 많았고,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21.0%, '더 이용하는 게 왠지 눈치가 보여서' 16.7% 순으로 나타났다.

모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 '아이가 혼자 남게 되어 싫어해서'가 43.7%로 가장 주된 이유로 나타났고, 휴직중인 경우에는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가 45.4%로 가장 많았으며, 미취업인 경우에는 '이용 자격 때문에(종일반 자격에 해당되지 않아서)'가 32.3%로 가장 많았다.

영유아 연령에 따라서는, 영아와 유아 모두 '아이가 혼자 남게 되어 싫어해서'가 각 26.3%, 42.7%로 가장 주된 이유로 꼽았으며, 영아의 경우에는 '이용 자격 때문에(종일반 자격에 해당되지 않아서)'가 25.8%로 다음으로 많았던 반면, 유아의 경우에는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가 21.7%로 2순위로 많았다.

표 IV-2-13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늘리고 싶음에도 현재까지만 이용하는 주된 이유

단위: %(명)

구분	이용 자격 때문에	더 이용 하는게 왠지 눈치가 보여서	아이가 혼자 남게 되어 싫어해서	추가 이용 비용이 부담 되어서	다른 기관, 사교육 등 다른 일정 때문에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좋을 것 같아서	기타	계(수)
전체	20.9	14.5	31.0	7.7	1.2	22.1	2.7	100.0 (223)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8.1	16.8	37.9	2.9	1.6	29.9	2.9	100.0 (102)
외벌이	31.8	12.6	25.2	11.7	0.8	15.5	2.5	100.0 (120)
χ^2 (df)	30.074***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4.1	11.4	15.8	16.6	0.0	19.3	2.8	100.0 (38)
300~399만원 이하	24.0	13.8	35.0	9.1	0.0	15.1	2.9	100.0 (70)
400~499만원 이하	19.2	10.2	45.5	4.3	1.6	19.2	0.0	100.0 (50)
500~599만원 이하	8.9	12.6	25.8	6.6	2.8	40.7	2.6	100.0 (35)
600만원 이상	13.5	29.2	22.6	0.0	2.7	25.5	6.4	100.0 (30)
χ^2 (df)	41.282*							
부 연령								
20대	0.0	48.4	0.0	51.6	0.0	0.0	0.0	100.0 (2)
30대	29.3	12.9	25.4	7.1	0.0	23.6	1.7	100.0 (123)
40대 이상	10.8	15.9	38.2	7.4	2.7	21.0	4.0	100.0 (96)
χ^2 (df)	25.948*							
모 연령								
20대	26.5	23.5	36.9	13.1	0.0	0.0	0.0	100.0 (9)
30대	25.3	13.3	27.5	6.9	0.5	23.9	2.6	100.0 (154)
40대 이상	8.9	16.7	38.3	8.9	3.0	21.0	3.3	100.0 (59)
χ^2 (df)	14.255							



(표 IV-2-13 계속)

구분	이용 자격 때문에	더 이용 하는게 웬지 눈치가 보여서	아이가 혼자 남게 되어 싫어해서	추가 이용 비용이 부담 되어서	다른 기관, 사교육 등 다른 일정 때문에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좋을 것 같아서	기타	계(수)	
모 취업 여부									
취업	7.3	14.0	43.7	3.5	1.9	26.1	3.5	100.0	(84)
휴직중	11.2	28.2	15.3	0.0	0.0	45.4	0.0	100.0	(19)
미취업	32.3	12.8	24.0	11.9	0.8	15.8	2.5	100.0	(118)
χ^2 (df)	41.763***								
영유아 연령1									
영아	25.8	15.5	26.3	7.6	0.0	22.3	2.6	100.0	(158)
유아	8.9	12.1	42.7	7.9	4.0	21.7	2.8	100.0	(65)
χ^2 (df)	17.910**								

* $p < .05$, ** $p < .01$, *** $p < .001$.

해당 영유아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많이 또는 조금 줄이고 싶다고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줄이고 싶음에도 줄이지 않고 지금처럼 이용하는 주된 이유를 질문한 결과,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가 65.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어린이집의 운영 방침상 일정 시간을 이용해야 해서’ 10.7%, ‘같은 기관에 다니는 형제자매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6.5% 순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인 경우에는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가 74.6%로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을 차지하였으며, 비록 응답 비율은 맞벌이인 경우에 비해 낮지만 외벌이인 경우에도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가 37.2%로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줄이고 싶음에도 지금처럼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외벌이인 경우 이외 ‘같은 기관에 다니는 형제자매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와 ‘어린이집의 운영 방침상 일정 시간을 이용해야 해서’도 각 27.4%, 26.6%를 차지하였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300~399만원 가구를 제외하고는 299만원 이하 가구와 400만원 이상 가구(400~499만원 이하, 500~599만원 이하, 600만원 이상) 모두에서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가 각 83.5%, 50.0%, 62.4%, 82.1%로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줄이고 싶음에도 줄이지 못하고 지금처럼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300~399만원 가구에서는 ‘같은 기관에 다니는 형제

자매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가 68.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어린이집의 운영 방침상 일정 시간을 이용해야 해서'가 31.8%로 나타났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에는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가 79.1%로 가장 많았고, 미취업중인 경우 '같은 기관에 다니는 형제자매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가 43.6%, '어린이집의 운영 방침상 일정 시간을 이용해야 해서'가 42.4%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영유아 연령에 따라서는 영아와 유아 모두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가 각 67.8%, 63.1%로 가장 주된 이유로 나타났으며, 영아의 경우에는 '아이를 봐주는 사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가 12.5%로 2순위 이유였던 반면 유아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방침상 일정 시간을 이용해야 해서'가 9.5%로 2순위였다.

▣ 표 IV-2-14 ▣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줄이고 싶음에도 줄이지 않고 이용하는 주된 이유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의 운영 방침상 일정 시간을 이용해야 해서	줄어든 시간만큼 다른 기관이나 개별 돌봄 서비스 이용시 비용이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아이를 봐주는 사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아이의 안전을 위해 한 곳에서 머무르게 하고 싶어서	같은 기관에 다니는 형제자매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기타	계(수)
전체	10.7	1.9	65.8	11.1	2.0	6.5	2.1	100.0 (47)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5.7	2.5	74.6	14.5	2.6	0.0	0.0	100.0 (36)
외벌이	26.6	0.0	37.2	0.0	0.0	27.4	8.8	100.0 (11)
χ^2 (df)				20.872**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6.5	0.0	83.5	0.0	0.0	0.0	0.0	100.0 (6)
300~399만원 이하	31.8	0.0	0.0	0.0	0.0	68.2	0.0	100.0 (3)
400~499만원 이하	12.1	0.0	50.0	37.9	0.0	0.0	0.0	100.0 (8)
500~599만원 이하	15.2	6.9	62.4	8.0	0.0	0.0	7.5	100.0 (13)
600만원 이상	0.0	0.0	82.1	7.3	5.7	4.8	0.0	100.0 (17)
χ^2 (df)				39.718*				
모 취업 여부								
취업	5.3	2.3	79.1	13.3	0.0	0.0	0.0	100.0 (39)
휴직중	0.0	0.0	0.0	0.0	100.0	0.0	0.0	100.0 (1)
미취업	42.4	0.0	0.0	0.0	0.0	43.6	14.0	100.0 (7)
χ^2 (df)				84.497***				

(표 IV-2-14 계속)

구분	어린이집의 운영 방침상 일정 시간 이상을 이용해야 해서	줄어든 시간만큼 다른 기관이나 개별 돌봄 서비스 이용시 비용이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아이를 봐주는 사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아이의 안전을 위해 한 곳에서 머무르게 하고 싶어서	같은 기관에 다니는 형제 자매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기타	계(수)	
영유아 연령 ¹									
영아	11.5	0.0	67.8	12.5	0.0	8.3	0.0	100.0	(27)
유아	9.5	4.5	63.1	9.2	4.7	4.0	4.9	100.0	(20)
χ^2 (df)				4.054					

* $p < .05$, ** $p < .01$, *** $p < .001$.

2) 유치원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자녀의 유치원 이용 시간에 대한 의견을 질문한 결과, 현재 이용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7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금보다 이용 시간을 좀 더 늘리고 싶다 14.1%, 지금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줄이고 싶다 6.5%, 지금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늘리고 싶다 5.0% 순으로 나타났다.

▮ 표 IV-2-15 ▮ 현재 유치원 이용 시간에 대한 의견

단위: %(명)

①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늘리고 싶다	②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늘리고 싶다	③현재 이용 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④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줄이고 싶다	⑤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줄이고 싶다	계(수)	
5.0	14.1	74.1	6.5	0.3	100.0	(633)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 자녀의 유치원 이용 시간을 많이 또는 조금 늘리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 유치원 이용 시간을 늘리고 싶음에도 현재만큼만 이용하는 주된 이유를 질문한 결과, ‘기타’ 의견을 제외하고는 ‘추가 이용비용이 부담되어서’가 18.7%로 가장 많았고, ‘아이가 혼자 남게 되어 싫어해서’와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가 동일하게 16.6%, ‘더 이용하는게 왠지 눈치가 보여서’ 11.3%, ‘다른 기관 이용, 사교육 등 다른 일정 때문에’ 10.2% 순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인 경우 ‘아이가 혼자 남게 되어 싫어해서’가 28.7%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추가 이용비용이 부담되어서’ 16.2%,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와 ‘더 이용하는 게 웬지 눈치가 보여서’가 동일하게 15.1%로 나타났다. 외벌이인 경우에는 기타 의견이 32.0%로 가장 많고, ‘추가 이용비용이 부담되어서’ 20.7%,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17.8%, ‘더 이용하는 게 웬지 눈치가 보여서’ 15.1%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299만원 이하인 경우 ‘아이가 혼자 남게 되어 싫어해서’가 3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타 의견 24.6%,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17.1%, ‘더 이용하는 게 웬지 눈치가 보여서’ 15.7% 순으로 나타났다. 300~399만원 이하 가구소득에서는 기타 의견이 23.2%로 가장 많았고,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18.7%, ‘추가 이용비용이 부담되어서’ 18.4%, ‘아이가 혼자 남게 되어 싫어해서’ 11.9% 순으로 나타났다. 400~499만원 이하 가구소득에서는 ‘추가 이용비용이 부담되어서’ 30.6%, 기타 의견 22.7%, ‘더 이용하는 게 웬지 눈치가 보여서’ 13.9%,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13.4% 순으로 나타났다. 500~599만원 이하 가구소득에서는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23.4%, ‘추가 이용비용이 부담되어서’ 19.6%, ‘아이가 혼자 남게 되어 싫어해서’와 기타 의견이 동일한 15.3% 순으로 나타났다. 600만원 이상 가구소득에서는 ‘아이가 혼자 남게 되어 싫어해서’ 26.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더 이용하는 게 웬지 눈치가 보여서’ 17.6%, 기타 의견 17.4%, ‘추가 이용비용이 부담되어서’ 12.8%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가구소득에 따라 유치원 이용 시간을 늘리고 싶음에도 현재만큼만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중인 경우 ‘아이가 혼자 남게 되어 싫어해서’가 27.4%로 가장 많았고,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16.6%, ‘더 이용하는 게 웬지 눈치가 보여서’ 16.3% 순으로 나타났다. 휴직중인 경우에는 ‘아이가 혼자 남게 되어 싫어해서’ 30.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28.8%, ‘추가 이용비용이 부담되어서’ 27.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취업하고 있는 경우와 주된 이유가 비슷

한 양상으로 나타났지만 3순위 이유에서는 다소 달랐다. 미취업인 경우 기타 의견이 3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추가 이용비용이 부담되어서’ 21.3%,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15.4%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취업중이거나 휴직중인 경우는 응답 경향이 유사한 부분이 많았지만, 미취업 중인 경우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볼 수 있다.

영유아 연령에 따라서는 4세 유아의 경우 기타 의견이 37.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25.0%, ‘아이가 혼자 남게 되어 싫어해서’ 12.5% 순으로 나타났다. 5세 유아의 경우 ‘추가 이용비용이 부담되어서’ 23.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이가 혼자 남게 되어 싫어해서’ 19.6%, 기타 13.7% 순으로 나타났다. 6세 유아의 경우 기타 의견이 19.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추가 이용비용이 부담되어서’ 18.8%,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17.2% 순으로 나타났다.

▣ 표 IV-2-16 ▣ 유치원 이용시간을 늘리고 싶음에도 현재까지만 이용하는 주된 이유

단위: %(명)

구분	아이가 혼자 남게 되어 싫어해서	더 이용 하는게 왠지 눈치가 보여서	방과후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추가 이용비용이 부담되어서	다른 기관, 사교육 등 다른 일정 때문에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기타	계(수)	
전체	16.6	11.3	5.9	18.7	10.2	16.6	20.7	100.0	(121)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8.7	15.1	9.9	16.2	8.3	15.1	6.9	100.0	(54)
외벌이	6.8	8.2	2.7	20.7	11.8	17.8	32.0	100.0	(67)
χ^2 (df)	20.901**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3.8	15.7	0.0	0.0	8.8	17.1	24.6	100.0	(11)
300~399만원 이하	11.9	9.3	9.3	18.4	9.3	18.7	23.2	100.0	(39)
400~499만원 이하	10.3	13.9	0.0	30.6	9.1	13.4	22.7	100.0	(27)
500~599만원 이하	15.3	3.9	7.3	19.6	15.1	23.4	15.3	100.0	(23)
600만원 이상	26.1	17.6	8.7	12.8	8.7	8.7	17.4	100.0	(21)
χ^2 (df)	16.708								
모 취업 여부									
취업	27.4	16.3	10.7	14.3	7.3	16.6	7.4	100.0	(50)
휴직중	30.5	0.0	0.0	27.1	13.6	28.8	0.0	100.0	(6)
미취업	7.0	8.4	2.8	21.3	12.2	15.4	32.9	100.0	(65)
χ^2 (df)	24.893*								

(표 III-2-16 계속)

구분	아이가 혼자 남게 되어 싫어해서	더 이용 하는게 왠지 눈치가 보여서	방과후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추가 이용비용이 부담되어서	다른 기관, 사교육 등 다른 일정 때문에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기타	계(수)
영유아 연령2 4세(2014년생)	12.5	12.4	0.0	8.3	4.1	25.0	37.6	100.0 (23)
5세(2013년생)	19.6	11.7	11.7	23.6	7.8	11.7	13.7	100.0 (47)
6세(2012년생)	15.8	10.4	3.3	18.8	15.2	17.2	19.4	100.0 (51)
χ^2 (df)	15.341							

* $p < .05$, ** $p < .01$.

반대로 유치원을 이용 유아의 유치원 이용 시간을 많이 또는 조금 줄이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유치원 이용 시간을 줄이고 싶음에도 지금까지처럼 이용하는 주된 이유를 질문한 결과,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가 45.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치원의 운영 방침상 일정 시간을 이용해야 해서’ 23.3%, 기타 의견 17.6% 순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인 경우에는 유치원 이용 시간을 줄이고 싶으나 줄이지 않고 지금까지처럼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71.5%), 외벌이인 경우에는 기타 의견(39.3%)을 제외하면 ‘유치원의 운영 방침상 일정 시간을 이용해야 해서’ 37.6%가 가장 많이 응답되어, 맞벌이 여부에 따른 주된 이유의 응답에는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였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299만원 이하 가구, 400~499만원 이하 가구와 6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는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를 각 67.9%, 37.3%, 71.4%로 가장 주된 이유로 들었으나, 300~399만원 이하 가구와 500~599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유치원의 운영 방침상 일정 시간을 이용해야 해서’가 각 38.9%, 41.8%로 가장 주된 이유로 나타나 소득수준별 차이가 있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취업하고 있거나 휴직중인 경우에는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가 각 68.2%, 83.6%로 가장 주된 이유로 응답되었다. 반면, 미취업일 때는 기타 의견이 39.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치원의 운영

방침상 일정 시간을 이용해야 해서'가 37.6%로 유치원 이용시간을 줄이지 못하는 주된 이유에 차이를 보였다.

영유아 연령에 따라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4, 5, 6세 모두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가 각 45.6%, 46.3%, 44.9%로 가장 주된 이유로 응답되었다.

▮ 표 IV-2-17 ▮ 유치원 이용시간을 줄이고 싶음에도 현재까지만 이용하는 주된 이유

단위: %(명)

구분	유치원의 운영 방침 때문에 일정 시간을 이용해야 해서	줄어든 시간만큼 다른 기관이나 개별 돌봄 서비스 이용시 비용이 부담됨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아이를 봐주는 사람의 부담을 줄이고 싶어서	아이의 안전을 위해 한 곳에서 머무르게 하고 싶어서	같은 기관에 다니는 형제 자매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기타	계(수)
전체	23.3	4.4	45.6	4.4	2.1	2.6	17.6	100.0 (43)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4.1	3.7	71.5	7.2	0.0	0.0	3.5	100.0 (26)
외벌이	37.6	5.4	5.7	0.0	5.4	6.7	39.3	100.0 (17)
χ^2 (df)	24.071***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0.0	0.0	67.9	0.0	0.0	0.0	32.1	100.0 (3)
300~399만원 이하	38.9	9.7	10.2	0.0	0.0	12.0	29.1	100.0 (9)
400~499만원 이하	24.8	0.0	37.3	0.0	12.4	0.0	25.5	100.0 (7)
500~599만원 이하	41.8	0.0	29.1	29.1	0.0	0.0	0.0	100.0 (6)
600만원 이상	10.8	5.7	71.4	0.0	0.0	0.0	12.1	100.0 (17)
χ^2 (df)	33.543							
모 취업 여부								
취업	13.4	4.7	68.2	9.2	0.0	0.0	4.5	100.0 (20)
휴직중	16.4	0.0	83.6	0.0	0.0	0.0	0.0	100.0 (6)
미취업	37.6	5.4	5.7	0.0	5.4	6.7	39.3	100.0 (17)
χ^2 (df)	25.590*							
영유아 연령2								
4세(2014년생)	13.1	6.5	45.6	0.0	0.0	7.6	27.1	100.0 (15)
5세(2013년생)	23.0	7.7	46.3	7.6	7.7	0.0	7.6	100.0 (12)
6세(2012년생)	32.9	0.0	44.9	6.0	0.0	0.0	16.2	100.0 (16)
χ^2 (df)	9.039							

* $p < .05$, *** $p < .001$.

3) 반일제 이상 기관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해당 자녀의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시간에 대한 의견을 질문한 결과, ‘이용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78.1%이며, ‘지금보다 이용 시간을 좀 더 늘리고 싶다’ 18.6%, ‘지금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늘리고 싶다’ 3.3%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현재 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용 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는 반면 이용 시간을 늘리고 싶다는 의견은 21.9% 정도로 나타났다.

▮ 표 IV-2-18 ▮ 현재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시간에 대한 의견

단위: %(명)

①지금 보다 이용 시간이 많이 늘리고 싶다	②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늘리고 싶다	③현재 이용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계(수)	
3.3	18.6	78.1	100.0	(74)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 자녀에 대해 기관 이용시간을 많이 또는 조금 늘리고 싶다고 응답한 사례에 대해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시간을 늘리고 싶음에도 현재만큼만 이용하는 이유를 질문하였다. <표 IV-2-19>에 따르면 반일제 이상 기관을 현재 보다 오랜 시간 이용하기를 원하나 이용시간을 늘리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추가 이용비용이 부담되어서’로 나타났으며(70.7%), 그외 ‘아이가 혼자 남게 되어 싫어해서’가 16.8%, ‘다른 기관, 사교육 등 다른 일정 때문에’ 6.0% 순으로 응답되었다.

▮ 표 IV-2-19 ▮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시간을 늘리고 싶음에도 현재까지만 이용하는 주된 이유

단위: %(명)

아이가 혼자 남게 되어 싫어해서(친구들이 그 시간에 다 하원함)	추가 이용비용이 부담되어서	다른 기관(ex. 학원), 사교육 등 다른 일정 때문에	기타	계(수)	
16.8	70.7	6.0	6.5	100.0	(16)

3 정책 변동에 따른 육아서비스 이용 변동 의사

본 절에서는 영유아 부모들에게 육아서비스별로 2018년 도입 예정이거나 도입 여부 논의 중인 내용을 제시하고, 이러한 정책변화에 따른 이용의사 변동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즉, 이러한 정책 변화가 있을 경우 자녀를 위해 해당 육아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변동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증가 또는 감소) 응답하도록 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표 IV-3-1〉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제시된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서는 대체로 해당 육아서비스 이용의사가 증가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각 서비스와 관련된 정부 정책 변화 방향이 대체로 수요자를 위한 지원 확대의 방향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이 시행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의사가 증가한다는 응답은 77.6%에 달해 서비스 이용 의사가 가장 크게 변화하는 정책 변화는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 확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이용 희망에 비해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없었던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 확충에 따른 이용 의사 증가가 두드러지게 응답된 가운데, 이밖에도 취업 부모를 위한 ‘시간지원 서비스’인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초·중·고등학교 입학기 단축근무 도입은 해당 서비스 이용 의사를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입학기 1시간 단축근무 지원은 이용 의사를 67.1%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육아휴직 3개월까지 급여 인상으로 육아휴직 이용 의사는 62.2% 증가한 것으로 응답되었다. 아버지 육아휴직에 대한 상한액 인상도 59.2% 가량 이용의사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입학기 1시간 단축근무의 경우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지원으로 ‘이용 의사가 증가하였다’는 응답은 자녀 초등 입학기 1시간 단축근무를 활용하고 싶다는 의사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반면, 정책 변화로 해당 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기 보다는 이용 의사의 변화가 없거나 이용 의사가 감소하였다는 비율이 높은 경우는 ‘어린이집 표준보육시간 제도 도입’(보육지원체계개편 TF, 2018)과 ‘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에서의 영아 교육 제외’로 인한 해당 서비스 이용 의사 변화였다. 현재 무상으로 제공되는 보

육서비스에 대해 일정 시간의 무상 보육시간 외에는 일정 부분 보육료 자부담 체계 도입으로 설계될 것으로 보이는 '표준보육시간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이용의사의 변화가 없다'라는 응답이 45.1%로 가장 높으나, '이용 의사 증가(증가 + 많이 증가)'도 42.0%로 유사한 응답 비중으로 응답되었다. 다만 표준보육시간 제도가 도입될 경우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이용 의사가 감소한다는 비율은 12.9%로 다른 정책 변화로 인한 이용 의사 감소가 미미한 수준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 의사 감소를 보이고 있다. 한편, 유치원의 특성화활동,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에서 영어를 제외한다면 해당 서비스 이용 의사가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19.4%로 가장 높은 이용 의사 감소를 보였는데, 이는 특성화프로그램,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해 영유아가구가 보이는 '영어'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를 보여주는 한 단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표 IV-3-1 ▮ 육아정책 변화 시 육아서비스 이용의사 변화 정도

단위: %

구분	정책 변화	해당 서비스	이용 의사 많이 감소	이용 의사 감소	이용 의사 변함 없음	이용 의사 증가	이용 의사 많이 증가	이용 의사 감소 비율	이용 의사 증가 비율
			1	2	3	4	5		
기관 보육· 교육 서비스	1. 어린이집 표준 보육시간 제도 도입주 ¹⁾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6.0	6.9	45.1	33.3	8.7	12.9	42.0
	2. 국공립어린이집·국공립유치원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교육 서비스	1.3	2.4	18.7	45.9	31.7	3.7	77.6
	3.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에서 '영어' 교육 제외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8.2	11.2	31.2	34.9	14.6	19.4	49.5
개별 돌봄 서비스	4.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영아종일제 돌봄 정부지원비율 상향(5%p)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돌봄	3.2	4.7	41.1	39.1	12.0	7.9	51.1
	5.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비율 상향(5%p)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돌봄	2.4	3.6	39.4	41.1	13.4	6.0	54.5

(표 IV-3-1 계속)

구분	정책 변화	해당 서비스	이용 의사 많이 감소	이용 의사 감소	이용 의사 변함 없음	이용 의사 증가	이용 의사 많이 증가	이용 의사 감소 비율	이용 의사 증가 비율
			1	2	3	4	5		
	6.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확대주 ²⁾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돌봄	2.5	3.7	36.1	41.6	16.1	6.2	57.7
부모 시간 지원 서비스	7.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지급액 인상주 ³⁾	육아휴직	1.9	2.3	33.6	37.8	24.4	4.2	62.2
	8.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한 아버지 육아휴직 3개월(아빠의 달) 상한액 인상(200만원)	아버지 육아휴직	1.9	2.7	36.2	34.6	24.6	4.6	59.2
	9. 초등 1학년 입학기 자녀 부모 하루 1시간 단축근무 지원 (사업주 지원)	1시간 단축근무	1.8	1.9	29.2	36.1	31.0	3.7	67.1

주: 1) 일정 시간의 '표준보육시간'은 무상 이용, 표준보육시간 이상 이용은 비용 부담(신윤정, 2018)
 2)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연 480 → 600시간으로 확대(여성가족부, 2018)
 3)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지급액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으로 확대(헬스조선, 2017.12.27.)

4 소결

본 장에서는 영유아 가구가 자녀의 연령별로 이용하기를 원하는 육아서비스의 유형과 실제 이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아동의 연령별로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육아서비스의 이용 형태, 선호하는 양육 형태와 실제의 간극과 이유를 살펴보았으며, 자녀의 초등 입학 이후 돌봄 방식에 대해서도 어떠한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였다. 또한 2018년 현재 도입되었거나 도입 예정된 육아정책 및 서비스, 도입 논의 중인 육아정책 및 서비스로 인해 관련 서비스 이용 의사가 어느 정도 변동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려고 하였다.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었다.

첫째, 영유아 부모들이 자녀 양육을 위해 이용을 원하는 육아서비스 유형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자녀 연령 0~1세때에는 '부모가 직접 돌보는

형태'를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보며 실제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기를 희망하고 있었고, 만2세~4세까지는 '어린이집', 만5~6세는 '유치원' 이용을 이상적이라 보고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상적인 육아서비스 이용'은 실제 자녀의 이용 가능성과 관련 없이 응답하도록 하였으나, 연령별 '이상적인 육아서비스 이용' 형태와 막내 자녀를 기준으로 향후 이용하기를 원하는 연령별 '이용을 원하는 육아서비스 형태'는 상당히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영유아를 둔 가구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여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육아서비스의 다양화도 필요하나, 본 조사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결과는 연령별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거나 선호되는 육아서비스의 유형을 고려한 육아지원 서비스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하겠다. 즉, 0~1세 자녀를 둔 부모가 가장 원하는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육아서비스(예를 들면 부모의 시간 지원)'에 실제 이용가능성을 높이며, 주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애착을 기반으로 조금씩 기관 보육서비스 이용을 시작하는 2세 이후의 영유아의 육아를 돕기 위한 질 높은 기관 인프라의 구축이 이루어질 때 수요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진정한 '맞춤형 육아지원'이 가능하며 수요자의 육아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도 2~4세 때는 '어린이집' 이용 욕구로 나타나는 안전한 대리돌봄과 보호가 제공되는데 집중하며, 5~6세 시기에는 유아의 초등학교 준비와 연계한 다양한 발달적 자극이 제공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환경이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을 지원하는 육아서비스의 수요를 살펴본 결과, '학원 등 사교육'을 이용해 초등생 자녀의 하교 후 돌봄을 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아 이 시대 사교육이 '교육'의 목적 뿐 아니라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의 역할을 지원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교육을 이용하는 시간이 교육과 돌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시간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을 위해 육아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계획은 가구의 소득 수준, 지역, 부모의 취업 관련 특성(맞벌이 여부, 임금근로자 여부 등)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 바, 비용 부담이 커서 소득계층에 따라 이용이 차등화되는 '학원 등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공공 초등 돌봄 서비스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보여진다. 또한 민간 인프라의 자생적 성장이 어려운 읍면지역은 공공 초등 돌봄

서비스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교육’이 초등학생의 돌봄 지원 체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도 시사받을 수 있다. 영유아와 다른 ‘초등학생’이라는 대상을 고려할 때 초등학생 방과후의 돌봄 서비스는 방과후의 시간을 단순한 보호가 제공되는 시간으로서만이 아니라, 교육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교육+보호’의 기능을 함께하는 서비스로 계획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다만 학교의 방과후 교실과 초등돌봄교실은 교육적 내용이 결합되더라도 교과 학습에 관한 교육이 아니라, 숙제 지도, 예체능, 취미·특기 활동, 독서 지도 등 자유로우면서도 아동들에게 편안한 교육 활동으로 기획되어 교육적 효과를 지니면서도 초등학생에게 새로운 ‘긴장’이 아닌 ‘쉽’과 ‘놀이’가 되는 시간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영유아 부모에게 자녀의 해당 연령에 현재 육아서비스의 이용 유형이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였는지 질문한 결과, 현재 이용 서비스가 가장 원하는 육아서비스 이용 형태였다는 응답은 어린이집 이용 사례의 82.9%, 유치원 이용 사례의 94.2%,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사례의 91.1%, 개별돌봄 서비스 이용 사례의 65.5%로 나타나 이용 육아서비스 종별로 차이를 보였다.

부모들이 실제 이용과 다른 가장 원하는 형태의 양육이 있었음에도 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취업’과 ‘비용 부담’이 주된 요인이었으며, ‘개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개별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장 원하는 형태가 아닌 경우, 이러한 주요 응답 외 ‘믿고 맡길만한 기관을 찾지 못해서’도 주요한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자녀의 연령별로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육아서비스의 이용 형태가 있고, 가능하다면 이를 이용하기를 원하나 각 육아서비스 유형에 따른 비용 부담의 차이가 있고 취업으로 인한 이용의 현실적인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육아지원 정책은 가능한한 육아서비스 수요자의 이상과 실제의 간극을 줄여주어 행복한 육아를 지원하는 것을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이용 시간과 관련하여, 네 명 중 세 명은 적당한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현재 보다 이용 시간을 늘리고 싶다는 의견도 16.0%정도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용 시간을 늘리고 싶으나 현실적으로 늘리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로는 특히 기관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아이가 혼자 남게 되어 싫어해서’,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이용 자격

때문에(종일반 자격에 해당되지 않아서)', '더 이용하는데 왠지 눈치가 보여서' 순으로 응답되었고 유치원과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이용 시간을 늘릴 경우 '추가 이용 비용 부담'도 이용 시간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 중 주요한 응답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발달과 피로감을 고려하여 연령별 적정한 시간의 기관 서비스 이용을 장려하여야 하지만, 맞벌이 등으로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비용 부담'이나, '기관의 눈치가 보여서'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라 사료된다.

다섯째, 2018년 도입 논의 중이거나 도입(예정)된 육아정책과 관련하여 해당 육아서비스 이용 의사가 변동할 것인지를 살펴본 결과, 변동 정책과 무관하게 대부분 이용의사가 변동이 없거나 이용 의사가 증가할 것으로 응답되었다. 무상으로 지원되는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에 대해 일정 부분 부모의 자부담이 추가될 '표준보육시간 제도' 도입과 유치원의 특성화,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영어 교육을 제외할 경우는 해당 서비스 이용 의사가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기는 했으나 육아서비스에 대한 이용 의사는 육아서비스가 질 높은 방향으로 다듬어 지는 동안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일반적으로 인프라나 지원 수준의 확대, 서비스 질 제고의 방향성을 추구하는 육아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육아서비스 수요자인 영유아 가구의 지속적인 이용 확대를 유인할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반드시 이용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인프라와 지원 확대를 통해 어느새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영유아가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그간 기관 보육·교육서비스에 비해 비용 부담이나 심리적 불편함, 인프라의 부족 등으로 이용이 저조하였던 기타 육아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원 수준이 확대될수록 영유아 가구의 이용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간 이용이 저조하였던 '부모 돌봄 시간 지원 서비스'분야의 육아서비스(육아휴직, 아버지 육아휴직 등)도 이 서비스의 이용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노력이 지속된다면 향후 활발한 이용이 예상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V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지원 정책 관련 의견과 요구

1. 영유아 가구의 육아지원 정책 관련 의견
2.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시 정부 지원 부족 부분
3.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개선 요구
4. 소결



V.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지원 정책 관련 의견과 요구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에 대한 이용 경험과 만족도, 정부 지원 중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 개선 요구 등 정책 대상의 정책 관련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1 영유아 가구의 육아지원 정책 관련 의견

먼저 본 절에서는 영유아 가구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육아지원 정책을 크게 교육·보육비 지원 정책, 부모의 자녀 돌봄시간 지원, 기타 육아지원 서비스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이용 경험과 이용 시 정책만족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 영유아 가구의 육아지원 정책 인지 및 이용 경험

1) 교육·보육비 지원 정책

표 V-1-1 교육보육비 지원 정책 이용 경험 및 만족도

단위:%(명)

교육/보육비 지원 정책명	이용 경험주) (현재 이용& 과거 이용 경험)	정책만족도						계(수)	평균
		매우만 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불 만족			
기관 보육교육서비스									
1. 0-2세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67.4	22.0	55.5	18.2	3.8	0.5	100.0 (1,406)	3.9	
2. 3-5세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72.3								

(표 V-1-1 계속)

교육/보육비 지원 정책명	이용 경험주 (현재 이용 & 과거 이용 경험)	정책만족도						계(수)	평균
		매우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불만족			
3. 3-5세 유치원 교육비 지원	47.4	17.7	54.7	20.4	6.3	1.0	100.0 (781)	3.8	
4.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18.1								
5. 시간제 보육료 지원	5.8								
6.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지원	18.6								
개별돌봄									
7. 아이돌보미 영아 종일제 돌봄	1.8								
8. 아이돌보미 시간제 돌봄	4.6	19.1	49.4	22.5	9.0	-	100.0 (89)	3.8	
9.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0.7								
출산 양육비용									
10.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87.7	16.4	47.8	27.4	6.4	2.1	100.0 (1,445)	3.7	

주: '이용 경험'은 현재 이용 중인 경우와 과거 이용 경험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

영유아가 이용하는 기관, 개별돌봄 서비스, 현금지원 등 교육·보육비 영역 내 지원별 이용 경험과 정책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영유아 가구가 가장 많이 경험한 지원유형은 '양육수당'으로 87.7%의 영유아 가구에서 지원을 경험한 바가 있었다. 다음으로 3-5세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72.3%, 0-2세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67.4%, 3-5세 유치원 교육비 지원 47.4%,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지원 18.6%,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18.1%, 시간제 보육료 지원 5.8%, 아이돌보미 시간제 돌봄 지원 4.6%, 아이돌보미 영아 종일제 돌봄 지원 1.8%,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0.7% 순으로 경험률이 나타났다.

양육수당은 영유아 열 명 중 약 아홉 명은 취학 전에 한 번 이상은 지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보육교육서비스 중에서는 3-5세만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보다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으나, 3-5세가 이용하는 기관 이용 지원(3-5세 보육료, 3-5세 유치원 교육비) 경험률은 전체 영유아 가구의 100%가 넘게 나타나고 있어 3-5세 유아에 있는 경우 기관 이용 지원을 대부분 받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전반적으로 개별돌봄 서비스 이용률이 낮

아 지원 수혜 경험도 기관보육교육서비스 지원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보육교육비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각 유형 지원 경험자를 대상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매우 불만족-1'에서 '매우 만족-5'까지의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한 결과 모든 지원 정책에 대해 3.7점(대체로 만족에 가까움)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가장 수혜 경험이 보편적이었던 '양육수당'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3.7점에 해당하였고, 아이돌봄서비스 3.8점, 유치원 교육비 지원 3.8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3.9점으로 기관보육교육서비스 지원에 대해 만족도가 개별돌봄서비스 지원, 출산양육비 현금지원에 비해 높고,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모든 세부 지원 정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 표 V-1-2 ▣ 교육보육비 지원 정책 미이용 사유

단위: %(명)

구분	지원 대상 비해당 (연령)	다른 지원을 받고 있어서	실제 이용하기 어려움	이용절차 복잡	서비스 내용이 부실함	신뢰가 안감	비용이 비쌌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없음	기타	계(수)
0-5세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41.3	32.6	4.1	0.0	1.0	10.7	0.0	0.8	9.1	100.0 (242)
3-5세 유치원 교육비 지원	46.6	38.1	6.2	0.5	0.2	1.6	2.2	0.7	3.9	100.0 (867)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21.6	18.6	8.9	6.7	3.7	14.8	3.7	9.9	12.1	100.0 (1,559)
양육수당	29.6	60.6	3.9	0.0	1.5	0.0	1.0	1.0	2.5	100.0 (203)

주: '지리적 접근성 떨어짐'은 '기타' 응답에 포함함.

이러한 각 유형별 보육·교육비 지원 경험이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각 지원을 받지 않은 이유를 질문한 결과 <표 V-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령이 지원 대상보다 높거나 낮아)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와 '다른 지원을 받고 있어서 (중복수혜가 안되므로)'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으며, '보육료 지원'의 경우 '신뢰가 안가서'가 10.7%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미경험 가구(어린이집 이용 미경험 가구)의 이유 중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차지하였다. '유치원 교육비' 지원 미경험(유치원 미이용) 이유 중에서는 지원 대상 비해당, 다른 지원과의 중복 외에 '이

용자가 많아 실제 이용하기 어려워서가 6.2%로 응답되어, 원하는 유치원 입학이 어려워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원 미경험자 중 가장 사례수가 많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미경험 가구의 경우, 다양한 미이용 이유가 응답되었는데, 아동 연령에 따른 지원 대상 비해당, 다른 서비스 지원과의 중복 외에, 주요 응답으로 ‘신뢰가 안가서’ 14.8%,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없음’ 9.9%, ‘실제 이용이 어려움’ 8.9%, ‘이용 절차가 복잡함’ 6.7% 등이 응답되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에서 1:1 개별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1:1로 자녀 돌봄을 맡기는 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인프라의 부족과 편리성 부족이 미이용의 주된 사유로 지적되고 있어 원활한 서비스 공급을 위한 공급체계의 체계화와 서비스 정착 노력이 좀더 요구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2) 부모 시간지원 정책

취업한 부모라도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요구가 대리양육 인프라에 대한 요구만큼 높아지는 현실에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에 대한 영유아 부모들의 인지도와 수혜 경험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 표 V-1-3 】 부모 시간지원 정책 인지 및 이용 경험

단위: %(명)

기타 지원 정책명	정책 인지여부			정책 이용 및 수혜 여부		
	세부내용까지 알고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현재 이용중이거나 이용한 적이 있음	이용(수혜) 경험이 없음	계(수)
1. 육아휴직	39.5	57.1	3.4	19.3	80.7	100.0(1,592)
2. 남성 육아휴직	24.9	69.8	5.3	3.3	96.7	100.0(1,560)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7.2	63.3	19.5	3.0	97.0	100.0(1,327)
4.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 시간선택제, 재택근무 등)	16.9	63.8	19.2	3.1	96.9	100.0(1,331)

취업한 부모의 (육아) 시간을 지원하는 정책 중 ‘육아휴직’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으며(96.6%), 그 외 육아휴직 대상자인 아버지(남성)의 사용을 더욱 지원

하기 위해 더 높은 급여가 지급되는 ‘남성 육아휴직’도 유사한 수준으로 인지도가 높았다(94.7%). 육아휴직 급여 수준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다는 응답은 육아휴직 39.5%, 남성육아휴직 24.9%로 육아휴직에 대한 인지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80.5%만이 인지하고 있어(세부 내용까지 알고 있음 17.2%+들어만 봤음 63.3%) 육아휴직에 비해 관심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유연근무제도 유사한 인지도를 보이고 있었다(80.8% 인지)

각 시간 지원 정책에 대해 들어보았거나, 세부 내용까지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한 사례에 대해서만 실제 각 정책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육아휴직은 인지도도 가장 높았지만 이용 경험도 가장 높은 시간지원 정책으로서, 19.3%가 현재 이용중이거나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그 외 남성이 육아휴직을 이용한 경우는 이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사례 중 3.3%에 불과하였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0%, 유연근무제 이용도 3.1%로 육아휴직 외 부모 시간지원 정책은 활성화되지 못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 표 V-1-4 ■ 부모 시간지원 정책 만족도(육아휴직, 남성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유연근무제)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수)	평균
전체	14.8	44.6	28.1	10.7	1.7	100.0(345)	3.6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6.0	49.8	22.8	10.3	1.1	100.0(263)	3.7
외벌이	11.0	28.0	45.1	12.2	3.7	100.0(82)	3.3
χ^2 (df)	21.246(4)***						

*** $p < .001$.

육아휴직(남성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등 취업 부모의 시간지원 정책 이용 경험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응답하도록 하였는 바, 만족도는 3.6점으로 나타났다. 만족도가 보통 이상이나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에는 약간 미달하는 정도의 만족도로 보인다.

한편, 가구의 맞벌이 여부에 따라 이러한 시간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차이를 나타냈다. 맞벌이 가구인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65.8%에 달하였으나, 외벌이 가

구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39.0%로 큰 차이를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시간지원 정책은 원칙적으로 모든 취업부 또는 취업모를 위한 정책이나, 실제로는 맞벌이 가구에서 주로 이용되며, 이는 시간지원 정책 이용 시 상당 부분 급여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벌이 가구의 경우 유일한 가구소득원인 취업부모가 시간 지원을 이용 시 가구소득의 감소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하기에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을 하고 있는 부모들의 육아 참여의 권리(부모권)를 차별 없이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간정책 이용에 따른 급여 감소를 최소화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기타 육아지원 정책

보육·교육비 지원, 부모 시간 지원 외 물품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육아지원기관의 영유아 부모 및 아동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형태의 기타 지원에 대해 인지 및 이용 경험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 표 V-1-5 ▣ 기타 육아지원 정책 인지 및 이용 경험

단위: %(명)

기타 지원 정책명	정책 인지여부			정책 이용 및 수혜 여부		
	세부 내용까지 알고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현재 이용중이거나 이용한 적이 있음	이용(수혜) 경험이 없음	계(수)
1. 장난감도서 대여서비스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자체 등)	35.1	53.9	11.0	30.2	69.8	100.0(1,467)
2.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등 (육아정보 제공 서비스, 부모지원서비스(부모교육, 상담), 놀이 체험 프로그램, 육아카페)	19.6	53.8	26.6	19.5	80.5	100.0(1,209)
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다문화가정 아동 발달지원 서비스, 비만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10.4	56.6	33.1	4.0	96.0	100.0(1,103)

영유아 가구 중 약 89%는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난감, 도서 대여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고, 지역사회 육아지원기관에서 부모, 영유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육아카페 등에 대해서는 73.4%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세부 내용까지 알고 있음 19.6%+들어 봤음 53.8%). 이에 비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67% 정도가 인지하고 있어 비교적 인지도가 낮았고, 세부 내용까지 알고 있는 경우는 10.4%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기타 육아지원 정책에 대해 들어보았거나 세부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해당 정책 이용 경험을 질문한 결과, 장난감, 도서 대여서비스 이용 경험이 30.2%로 가장 높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육아지원 프로그램은 19.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4.0%가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표 V-1-6 】 기타 육아지원 정책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수)	평균
장난감, 도서 대여서비스	22.3	53.5	19.4	4.1	0.7	100.0(443)	3.9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등	20.3	59.7	16.9	2.5	0.4	100.0(236)	4.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0.5	52.3	18.2	4.4	4.5	100.0(44)	3.8

이러한 기타 육아지원 정책 이용 경험자들에게 얼마나 만족하는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매우 불만족-1점’에서 ‘매우 만족-5점’까지 5점으로 평정하게 한 결과, 기타 육아지원 서비스에 대해 경험자들은 ‘대체로 만족’에 가까운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2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시 정부 지원 부족 부분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꼈던 육아지원 분야가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이라는 응답이 30.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관보육·교육(어린이집·유치원) 서비스' 27.9%, '육아휴직 등 부모의 자녀 돌봄시간 지원' 17.6%, '개별돌봄서비스' 11.2% 순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가장 정부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기관보육·교육(어린이집·유치원) 서비스'라고 응답한 비율이 26.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25.2%, '육아휴직 등 부모의 자녀 돌봄시간 지원' 23.8%, '개별돌봄서비스' 13.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이라는 응답이 35.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관보육·교육(어린이집·유치원) 서비스' 29.2%, '육아휴직 등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 지원' 12.3%, '개별돌봄서비스' 9.6% 순으로 나타나, 맞벌이 여부에 따른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한 육아지원 분야에 관한 인식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499만원 이하 가구에서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에 정부지원이 가장 부족하다는 응답이 각 38.6%, 36.6%, 30.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기관보육·교육(어린이집·유치원) 서비스' 각 24.2%, 26.4%, 28.9%로 나타났다. 그러나, 3순위에서는 300~399만원 이하 가구와 400~499만원 이하 가구에서 '육아휴직 등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 지원'이 각 13.6%, 16.7%로 나타난 반면 299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개별돌봄서비스가 11.2%로 3순위로 차이를 보였다. 한편, 500~599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육아휴직 등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26.9%로 가장 많았고 '기관보육·교육(어린이집·유치원) 서비스' 25.8%,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24.0% 순으로 나타났다. 6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에서는 '기관보육·교육(어린이집·유치원) 서비스'에 정부지원이 가장 부족하다는 의견이 33.0%로 가장 많고,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23.9%, '육아휴직 등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 지원' 20.9%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가구

소득에 따른 정부 지원 부족 부분에 대한 인식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거주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 거주자들은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한 육아지원 분야로 ‘기관보육·교육(어린이집·유치원) 서비스’를 35.2%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24.5%, ‘육아휴직 등 부모 돌봄시간 지원’ 17.5%, ‘개별돌봄서비스 지원’ 11.2% 순으로 응답하였다.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한 육아지원 분야로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을 꼽아 각각 36.7%, 31.1%가 이에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기관보육·교육 서비스 지원’이 각 21.9%, 25.9%, ‘육아휴직 등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 지원’이 각 16.8%, 20.0% 순으로 나타나, 대도시 거주자와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 거주자의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한 육아지원 분야에 관한 인식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모 근로형태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임금근로자인 경우에는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한 육아지원 분야로 ‘기관보육·교육(어린이집·유치원) 서비스’ 26.5%, ‘육아휴직 등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 지원’ 26.1%로 유사하게 응답되었고,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23.6%로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인 경우에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이 32.3%로 가장 지원이 부족한 분야로 지적하였고, ‘기관보육·교육(어린이집·유치원) 서비스’가 각 26.1%, ‘육아휴직 등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 지원’ 13.7%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어머니의 근로형태에 따라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한 육아지원 분야에 관한 인식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모 학력에 따라서는 어머니 학력이 고졸 이하이거나 전문대 졸업 경우에는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한 육아지원 분야로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아서, 고졸이하 43.2%, 전문대졸 33.7%가 이에 응답하였고, ‘기관보육·교육(어린이집·유치원) 서비스’가 각 24.9%, 25.5%, ‘육아휴직 등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 지원’이 각 11.0%, 18.4%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이 4년제대학졸인 경우 가장 정부지원이 부족한 육아지원 분야로 ‘기관보육·교육(어린이집·유치원)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31.0%),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24.7%, ‘육아휴직 등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 지원’ 19.3%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

아휴직 등 부모의 자녀 돌봄시간 지원'이 가장 정부지원이 부족한 육아지원 분야라는 의견이 27.4%로 가장 많았고,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24.7%, '기관보육·교육(어린이집·유치원) 서비스' 20.5% 순으로 응답하였다. 어머니 학력에 따른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한 육아지원 분야에 대한 인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구의 자녀 연령별 구성에 따라서도 정부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육아지원 분야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영아가 있는 가구(영아 가구, 영유아 가구)의 경우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한 육아지원 분야로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을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아서 영아가구 31.5%, 영유아 가구 33.2%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관보육·교육(어린이집·유치원) 서비스'에 각각 23.5%, 26.1%가 응답하였다. 유아 자녀만이 있는 유아가구의 경우 '기관보육·교육(어린이집·유치원) 서비스'가 가장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32.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이 28.7%, '육아휴직 등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 지원' 16.2%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 구성에 따른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한 육아지원 분야에 대한 인식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표 V-2-1 ▣ 자녀양육을 위한 정부지원이 부족한 육아지원 분야

단위: %(명)

구분	기관보육·교육	개별 돌봄 서비스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	육아 휴직 등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 지원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양육 물품지원	계(수)
전체	27.9	11.2	6.6	17.6	30.9	5.8	100.0 (1,648)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6.4	13.0	7.2	23.8	25.2	4.5	100.0 (762)
외벌이	29.2	9.6	6.1	12.3	35.8	7.0	100.0 (886)
χ^2 (df)			56.115(5)***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4.2	11.2	5.4	10.8	38.6	9.9	100.0 (223)
300~399만원 이하	26.4	10.2	6.6	13.6	36.6	6.6	100.0 (440)
400~499만원 이하	28.9	12.0	6.8	16.7	30.7	4.9	100.0 (384)

구분	기관보육 ·교육	개별 돌봄 서비스	시간제 이용· 기타 서비스	육아 휴직 등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 지원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양육 물품지원	계(수)
500~599만원 이하	25.8	11.4	8.1	26.9	24.0	3.7	100.0 (271)
600만원 이상	33.0	11.2	6.1	20.9	23.9	4.8	100.0 (330)
χ^2 (df)			60.939(20)***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35.2	11.2	7.1	17.5	24.5	4.5	100.0 (662)
중소도시	21.9	11.6	6.7	16.8	36.7	6.3	100.0 (716)
읍면지역	25.9	10.0	5.2	20.0	31.1	7.8	100.0 (270)
χ^2 (df)			45.525(10)***				
모 근로형태							
임금근로자	26.5	13.8	6.6	26.1	23.6	3.4	100.0 (618)
비임금근로자	26.1	10.6	8.7	13.7	32.3	8.7	100.0 (161)
χ^2 (df)			21.876(5)***				
모 학력							
고졸이하	24.9	10.7	4.1	11.0	43.2	6.1	100.0 (345)
전문대졸	25.5	10.5	5.3	18.4	33.7	6.7	100.0 (419)
4년제대학졸	31.0	11.5	8.1	19.3	24.7	5.5	100.0 (803)
대학원이상	20.5	12.3	11.0	27.4	24.7	4.1	100.0 (73)
χ^2 (df)			59.736(15)***				
자녀구성							
영아 가구	23.5	12.9	5.1	18.4	31.5	8.6	100.0 (511)
유아 가구	32.7	10.9	8.0	16.2	28.7	3.5	100.0 (661)
영유아 가구	26.1	9.7	6.3	18.7	33.2	6.1	100.0 (476)
χ^2 (df)			32.039(10)***				

*** $p < .001$.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꼈던 육아지원 분야에서 기관보육·교육서비스에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응답한 대상에게만 기관보육·교육서비스 분야에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구체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 ‘국공립 어린이집·국·공립 유치원 공급 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7.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어린이집·유치원 공급부족’ 18.9%, ‘영아 무상보육료, 누리과정 보육·교육비 지원액 수준’ 17.8%, ‘어린이집·유치원의 보육·교육 서비스 질 수준 미흡’ 14.1%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국공립 어린이집·국·공립 유치원 공급 부족’이라는 응답이 전 소득 구간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나, 각 40.7%(299만원 이하), 45.7%(300~399만원 이하), 45.9%(400~499만원 이하), 45.7%(500~599만원 이하), 56.04%(600만원 이상)로 나타났으나 소득 구간별 응답 비율에는 차이가 있었다. 두 번째로 많이 응답된 항목은 299만원 이하 가구 소득을 제외하고는 ‘어린이집·유치원 공급부족’으로 각 19.8%(300~399만원 이하, 400~499만원 이하), 21.4%(500~599만원 이하), 16.5%(600만원 이상)였다. 299만원 이하 소득 가구에서는 ‘영아 무상보육료, 누리과정 보육·교육비 지원액 수준’이 두 번째로 많이 응답되었다(25.9%). 즉, 기관보육·교육서비스에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응답한 가구 내에서도 소득 수준별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 하겠다.

거주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지역 규모와 상관없이 ‘국공립 어린이집·국·공립 유치원 공급 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대도시 47.2%, 중소도시 45.9%, 읍면지역 52.9%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대도시와 읍면지역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 공급부족’이 많이 지적되어 각 20.2%, 20.0%로 나타났다. 중소도시에서는 보육·교육비 지원액 수준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17.8%). 한편 3순위로 많이 응답된 것은 대도시에서는 ‘영아 무상보육료, 누리과정 보육·교육비 지원액 수준’이었으나(19.7%),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의 보육·교육 서비스 질 수준 미흡’으로 각각 17.2%, 14.3%로 나타났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취업하고 있거나 미취업인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국·공립 유치원 공급 부족’이라는 응답이 각 51.1%, 47.0%로 가장 많았고, 휴직중인 경우에는 ‘어린이집·유치원 공급부족’이 37.5%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구체적인 부분은 모 취업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녀연령별 구성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모든 유형의 자녀구성에서 ‘국공립 어린이집·국·공립 유치원 공급 부족’이 기관보육·교육서비스 지원에 있어 가장 부족한 부분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영아만 있는 영아가구보다는(38.3%) 유아가구(50.9%), 영유아가 모두 있

는 영유아 가구에서의 응답 비율이(50.8%) 현저히 높았다. 영아가구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부족’을 지적한 응답도 28.3%로 유아가구, 영유아가구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표 V-2-2】 기관보육·교육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이 부족한 부분

단위 : %(명)

	영아 무상보육료, 누리과정 보육·교육비 지원액 수준	어린이집· 유치원 공급부족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부족	어린이집· 유치원의 보육·교육 서비스 질 수준 미흡	기타	계(수)	
전체	17.8	18.9	47.6	14.1	1.5	100.0	(460)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25.9	16.7	40.7	13.0	3.7	100.0	(54)
300-399만원 이하	19.8	19.8	45.7	13.8	0.9	100.0	(116)
400-499만원 이하	19.8	19.8	45.9	12.6	1.8	100.0	(111)
500-599만원 이하	12.9	21.4	45.7	18.6	1.4	100.0	(70)
600만원 이상	12.8	16.5	56.0	13.8	0.9	100.0	(109)
χ^2 (df)	11.706(16)						
지역규모							
대도시	19.7	20.2	47.2	12.0	0.9	100.0	(233)
중소도시	17.8	16.6	45.9	17.2	2.5	100.0	(157)
읍면지역	11.4	20.0	52.9	14.3	1.4	100.0	(44)
χ^2 (df)	6.846(8)						
모 취업 여부							
취업	16.5	19.2	51.1	13.2	0.0	100.0	(182)
휴직중	8.3	37.5	29.2	12.5	12.5	100.0	(24)
미취업	19.9	16.7	47.0	14.7	1.6	100.0	(251)
χ^2 (df)	31.106(8)***						
자녀구성							
영아가구	17.5	28.3	38.3	15.0	0.8	100.0	(120)
유아가구	16.2	14.4	50.9	17.6	0.9	100.0	(216)
영유아가구	21.0	17.7	50.8	7.3	3.2	100.0	(124)
χ^2 (df)	21.328(8)**						

** $p < .01$, *** $p < .001$.

육아지원 분야 중에서 개별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응답한 대상에게만 개별돌봄서비스 분야에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구체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추가적으로 질문한 결과,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대상이 한정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0.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아이돌봄서비

스 연계가 잘 안됨(원하는 시간대 이용이 어려움) 26.6%,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수준이 낮음 19.6%, ‘아이돌봄서비스 수준이 미흡함(서비스 내용, 이용 시간 불편)’ 12.0%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돌봄서비스 정책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정부 지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의견은 가구의 자녀구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영아가구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수준이 낮음’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라는 응답이 많았고(33.3%), 유아가구와 영유아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한정됨’을 가장 문제로 지적하고 있었다.

표 V-2-3 개별돌봄서비스 정책 분야에서 정부지원이 부족한 부분

단위: %(명)

구분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이 한정됨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수준이 낮음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가 잘 안됨	아이돌봄 서비스 수준 미흡	기타	계(수)
전체	40.8	19.6	26.6	12.0	1.1	100.0 (184)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6.0	36.0	32.0	16.0	0.0	100.0 (25)
300~399만원 이하	37.8	22.2	26.7	11.1	2.2	100.0 (45)
400~499만원 이하	41.3	15.2	23.9	17.4	2.2	100.0 (46)
500~599만원 이하	48.4	12.9	29.0	9.7	0.0	100.0 (31)
600만원 이상	54.1	16.2	24.3	5.4	0.0	100.0 (37)
χ^2 (df)			16.433(16)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39.2	13.5	28.4	17.6	1.4	100.0 (74)
중소도시	43.4	20.5	27.7	8.4	0.0	100.0 (83)
읍면지역	37.0	33.3	18.5	7.4	3.7	100.0 (27)
χ^2 (df)			1.029(8)			
모 취업 여부						
취업	46.1	16.9	25.8	9.0	2.2	100.0 (89)
휴직중	53.8	30.8	7.7	7.7	0.0	100.0 (13)
미취업	32.5	20.0	31.3	16.3	0.0	100.0 (80)
χ^2 (df)			10.224(8)			
자녀구성						
영아가구	30.3	33.3	19.7	16.7	0.0	100.0 (66)
유아가구	52.8	9.7	26.4	9.7	1.4	100.0 (72)
영유아가구	37.0	15.2	37.0	8.7	2.2	100.0 (46)
χ^2 (df)			21.136(8)**			

** $p < .01$

다음으로 육아지원 분야중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가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한 분야라고 응답한 대상에게만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 분야에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구체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다. 이에 가장 부족한 부분이라 응답된 부분은 ‘서비스의 다양성 부족(원하는 프로그램 없음)’이었으며 (30.3%), 다음으로 ‘서비스 수준 미흡(서비스 내용, 담당 인력의 질, 공간의 규모 등)’ 29.4%,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원 부족’ 25.7%, ‘서비스에 대한 홍보 미흡(서비스가 있는지 여부를 잘 모름)’ 12.8%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 분야에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구체적인 부분에 관한 응답의 경우 300~399만원 이하와 299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서비스 수준 미흡(서비스 내용, 담당 인력의 질, 공간의 규모 등)’이 각 41.4%, 50.0%로 가장 많았고, 400~499만원 이하 가구와 500~599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서비스 다양성 부족(원하는 프로그램 없음)’이 각각 50.0%, 36.4%로 가장 많았으며, 6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원 부족’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가구소득에 따라 응답에 차이를 보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한편 대도시 지역에서는 ‘서비스 수준 미흡(서비스 내용, 담당 인력의 질, 공간의 규모 등)’이 시간제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해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라는 응답이 34.0%로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에서는 ‘서비스 다양성 부족(원하는 프로그램 없음)’이 35.4%, 읍면지역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원 부족’이 42.9%로 가장 많이 응답되어 지역규모별 차이를 보였다.

모 근로형태에 따라서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원 부족’과 ‘서비스 다양성 부족(원하는 프로그램 없음)’이 모두 34.1%로 동일한 응답 비율을 보였고,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서비스 수준 미흡(서비스 내용, 담당 인력의 질, 공간의 규모 등)’이 50.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가운데 ‘서비스 다양성 부족(원하는 프로그램 없음)’도 35.7%로 나타났다.

모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 ‘서비스 다양성 부족’을 구체적으로 가장 정부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지적하였으며(32.7%), 다음으로 ‘서비스 수준 미흡’ 28.6%,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원 부족’ 26.5% 순으로 응답되었다. 어머니가 휴직중인 경우에도 취업중인 경우와 동일하게 ‘서비스 다양성 부족’

이 가장 정부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라 응답하였으며(50.0%), 이외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원 부족’이 33.3%, ‘서비스에 대한 홍보 미흡(서비스가 있는지 여부를 잘 모름)’ 16.7%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미취업인 경우 ‘서비스 수준 미흡’이 33.3%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서비스 다양성 부족(원하는 프로그램 없음)’ 25.9%,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원 부족’ 24.1%순으로 나타났다.

■ 표 V-2-4 ■ 시간제 이용, 기타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한 부분

단위: %(명)

구분	서비스 다양성 부족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원 부족	서비스 수준 미흡	서비스에 대한 홍보 미흡	기타	계(수)	
전체	30.3	25.7	29.4	12.8	1.8	100.0	(109)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25.0	8.3	50.0	16.7	0.0	100.0	(12)
300-399만원 이하	17.2	24.1	41.4	13.8	3.4	100.0	(29)
400-499만원 이하	50.0	19.2	19.2	11.5	0.0	100.0	(26)
500-599만원 이하	36.4	31.8	18.2	9.1	4.5	100.0	(22)
600만원 이상	20.0	40.0	25.0	15.0	0.0	100.0	(20)
χ^2 (df)	17.823(16)						
지역규모							
대도시	25.5	25.5	34.0	10.6	4.3	100.0	(47)
중소도시	35.4	20.8	27.1	16.7	0.0	100.0	(48)
읍면지역	28.6	42.9	21.4	7.1	0.0	100.0	(14)
χ^2 (df)	7.282(8)						
모 근로형태							
임금근로자	34.1	34.1	17.1	12.2	2.4	100.0	(41)
비임금근로자	35.7	7.1	50.0	7.1	0.0	100.0	(14)
χ^2 (df)	7.829(4)						
모 취업 여부							
취업	32.7	26.5	28.6	10.2	2.0	100.0	(49)
휴직중	50.0	33.3	0.0	16.7	0.0	100.0	(6)
미취업	25.9	24.1	33.3	14.8	1.9	100.0	(54)
χ^2 (df)	4.086(8)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꼈던 육아지원 분야에서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부모의 돌봄시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응답한 대상에게만 부모의 돌봄시간 지원 서비스 분야에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구체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미흡’이 32.1%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다음으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미흡(시간 지원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 등)’ 21.7%, ‘비용 지원 미흡(육아휴직 급여 수준 등)’ 19.7%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부모의 돌봄 시간 지원 서비스 분야에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응답에서 299만원 이하, 400~499만원 이하, 500~599만원 이하인 가구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미흡’이 각 33.3%, 39.1%, 33.6%로 가장 많았으며, 300~399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미흡(시간 지원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 등)’이 30.0%, 6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는 ‘비용 지원 미흡(육아휴직 급여 수준 등)’이 30.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구소득에 따라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부모의 돌봄시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총 자녀 수에 따라서는 자녀가 1명이거나 2명인 경우 ‘사회적 분위기 조성 미흡’이 각 32.8%, 34.1%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비용 지원 미흡’,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미흡(시간 지원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 등)’ 이 모두 22.2%로 응답되었다.

모 취업 여부에 따른 응답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취업 상태와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미흡’이 부모의 돌봄시간 지원 분야에 있어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취업중인 경우 31.4%, 휴직중 30.4%, 미취업중인 경우 33.6%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가 미취업중인 경우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는 응답 비율과(27.1%), ‘법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응답 비율이(14.4%) 취업중이거나 휴직중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 바, 이러한 결과는 간접적으로 부모의 돌봄시간 지원의 인프라와 법적 지원 미흡으로 이러한 돌봄시간 지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경력 단절이 된 미취업모가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겠다.

표 V-2-5 부모의 돌봄 시간 지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한 부분

단위: %(명)

구분	비용 지원 미흡	사회적 분위기 조성 미흡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미흡	지원 기간 불충분	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등 지원 부족	이용 자격기 준 확대 미흡	법적 지원 미흡	남성의 이용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미흡	기타	계(수)
전체	19.7	32.1	21.7	6.2	4.5	3.8	7.6	3.8	0.7	100.0(290)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8.3	33.3	8.3	8.3	0.0	16.7	12.5	12.5	0.0	100.0(24)
300-399만원 이하	16.7	28.3	30.0	3.3	3.3	0.0	13.3	5.0	0.0	100.0(60)
400-499만원 이하	15.6	39.1	18.8	4.7	3.1	6.3	9.4	3.1	0.0	100.0(64)
500-599만원 이하	19.2	35.6	20.5	5.5	9.6	2.7	2.7	2.7	1.4	100.0(73)
600만원 이상	30.4	24.6	23.2	10.1	2.9	1.4	4.3	1.4	1.4	100.0(69)
χ^2 (df)	52.828(32)*									
총자녀수										
1명	18.5	32.8	20.2	8.4	5.0	3.4	6.7	5.0	0.0	100.0(119)
2명	20.0	34.1	23.7	3.7	3.7	3.0	6.7	3.7	1.5	100.0(135)
3명 이상	22.2	22.2	19.4	8.3	5.6	8.3	13.9	0.0	0.0	100.0(36)
χ^2 (df)	13.425(16)									
모 취업 여부										
취업	24.8	31.4	20.4	6.6	5.1	4.4	5.1	2.2	0.0	100.0(137)
휴직중	23.9	30.4	13.0	13.0	6.5	4.3	0.0	6.5	2.2	100.0(46)
미취업	11.2	33.6	27.1	2.8	2.8	2.8	14.0	4.7	0.9	100.0(107)
χ^2 (df)	31.563(16)*									

* $p < .05$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꼈던 육아지원 분야에서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정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응답한 대상에게만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정책 분야에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구체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비용 지원 수준 미흡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60.1%), 다음으로 ‘비용 지원 기간 미흡(연령 기준 확대 필요)’ 15.7%, ‘비용 지원 서비스의 다양성 부족’ 12.0%, ‘서비스 홍보 부족(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구조)’ 7.7% 순으로 응답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현재 어머니가 휴직중인 경우 현금 지원 수준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72.4%로 취업중 56.2%, 미취업 61.4%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가구의 자녀연령 구성에 따라서는 유아자녀가 있는 유아가구, 영유아 가구의 경우 ‘비용 지원 기간 미흡(연

령 기준 확대 필요)'의 의견이 각각 16.8%, 18.4%로 영아가구의 11.8%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이 눈에 띈다. 연령에 따라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현금 지원은 아동 연령이 높아지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현금 지원액이 감소하므로 이러한 응답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 표 V-2-6 ▣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한 부분

단위: %(명)

구분	비용 지원 수준 미흡	서비스 홍보 부족	비용 지원 기간 미흡	비용 지원 서비스의 다양성 부족	지원 대상 한정	기타	계
전체	60.1	7.7	15.7	12.0	3.5	1.0	100.0(509)
모 취업여부							
취업	56.2	10.1	20.1	10.1	3.6	0.0	100.0(169)
휴직중	72.4	3.4	6.9	13.8	0.0	3.4	100.0(29)
미취업	61.4	6.8	14.3	12.3	3.9	1.3	100.0(308)
χ^2 (df)	12.821(10)						
자녀구성							
영아가구	59.0	9.9	15.5	2.5	2.5	1.2	100.0(161)
유아가구	57.4	8.4	11.6	5.3	5.3	0.5	100.0(190)
영유아가구	64.6	4.4	8.9	2.5	2.5	1.3	100.0(158)
χ^2 (df)	12.796(10)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꼈던 육아지원 분야에서 양육 물품 지원(도서대여, 완구, 장난감, 기저귀, 분유 등)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응답한 대상에게만 해당 분야에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구체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 '지원기준 한정(연령, 소득 등 자격기준의 한정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움)'이 3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비스 홍보 부족(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구조)' 24.0%, '물품 지원량이 적음(실제 필요량에 비해 적음)' 16.7%, '물품 지원 서비스의 다양성 부족(육아품목 중 일부에 한정)' 15.6%, '전달체계의 접근성 부족(대여기관 부족 등)' 9.4%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양육 물품 지원(도서대여, 완구, 장난감, 기저귀, 분유 등)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응답에서 299만원 이하, 300~399만원 이하, 6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지원 기준 한정 (연령, 소득 등 자격기준의 한정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움)'이 각 31.8%,

34.5%, 62.5%로 가장 많았으며, 400~499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서비스 홍보 부족(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구조)’이 42.1%로 가장 많았고, 500~599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물품 지원량이 적음(실제 필요량에 비해 적음)’이 30.0%로 가장 많았다.

거주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지원 기준 한정(연령, 소득 등 자격기준의 한정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움)’이 각 40.0%, 37.8%로 가장 많았고, 읍면지역에서는 ‘서비스 홍보 부족(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구조)’이 28.6%로 가장 많았다.

【표 V-2-7】 양육물품 지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한 부분

단위: %(명)

구분	물품 지원량이 적음	서비스 홍보 부족	지원 기준 한정	물품 지원 서비스의 다양성 부족	전달체계의 접근성 부족	계(수)
전체	16.7	24.0	34.4	15.6	9.4	100.0(96)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13.6	18.2	31.8	27.3	9.1	100.0(22)
300~399만원 이하	20.7	24.1	34.5	17.2	3.4	100.0(29)
400~499만원 이하	10.5	42.1	21.1	10.5	15.8	100.0(19)
500~599만원 이하	30.0	10.0	20.0	20.0	20.0	100.0(10)
600만원 이상	12.5	18.8	62.5	0.0	6.3	100.0(16)
χ^2 (df)	19.475(16)					
지역규모						
대도시	13.3	26.7	40.0	13.3	6.7	100.0(30)
중소도시	17.8	20.0	37.8	15.6	8.9	100.0(45)
읍면지역	19.0	28.6	19.0	19.0	14.3	100.0(21)
χ^2 (df)	3.785(8)					

3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개선 요구

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주체에 대한 인식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부모와 국가 중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부모가 우선 책임지고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 80.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부모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음 9.9%, 국가가 우선 책임지고 나머지 부모가 부담해야 함 8.9%, 국가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음 0.8% 순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부모가 우선 책임지고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맞벌이 78.6% 외벌이 81.5%로 부모가 자녀 양육 책임의 주체라는 생각이 외벌이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모든 소득계층 구간에서 부모가 우선 책임지고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299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78.0%, 300~399만원 이하 80.2%, 400~499만원 이하 78.9%, 500~599만원 이하 81.9%, 600만원 이상 81.5%로 나타났다.

모 연령에 따라서는 어머니의 연령이 20대인 경우 부모가 우선 책임지고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83.3%로 가장 높고, 30대 80.7%, 40대 이상 78.2%로 오히려 젊은 연령대일수록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 책임 인식이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모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취업 중인 경우 부모가 우선 책임지고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77.8%로 가장 낮고, 휴직중인 경우 84.1%, 미취업인 경우 81.4%로 나타났다.

표 V-3-1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소재

단위 : %(명)

구분	부모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음	부모가 우선 책임지고 국가가 지원해야 함	국가가 우선 책임지고 나머지 부모가 부담해야 함	국가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음	기타	잘 모름	계(수)
전체	9.9	80.2	8.9	0.8	0.1	0.1	100.0(1,648)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9.8	78.6	10.6	0.8	0.0	0.1	100.0(762)
외벌이	9.9	81.5	7.4	0.9	0.1	0.1	100.0(886)
χ^2 (df)							6.010(5)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9.4	78.0	10.8	1.3	0.0	0.4	100.0(223)
300~399만원 이하	10.7	80.2	8.2	0.9	0.0	0.0	100.0(440)
400~499만원 이하	11.5	78.9	9.1	0.3	0.0	0.3	100.0(384)
500~599만원 이하	8.1	81.9	8.9	0.7	0.4	0.0	100.0(271)
600만원 이상	8.8	81.5	8.5	1.2	0.0	0.0	100.0(330)
χ^2 (df)							15.842(20)

(표 V-3-1 계속)

구분	부모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음	부모가 우선 책임지고 국가가 지원해야 함	국가가 우선 책임지고 나머지 부모가 부담해야 함	국가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음	기타	잘 모름	계(수)
모 연령							
20대	10.0	83.3	6.7	0.0	0.0	0.0	100.0(60)
30대	9.5	80.7	8.8	0.7	0.0	0.2	100.0(1,153)
40대 이상	10.5	78.2	9.6	1.4	0.2	0.0	100.0(427)
χ^2 (df)	7.272(10)						
모 취업여부							
취업	10.7	77.8	10.3	1.1	0.0	0.2	100.0(653)
휴직중	4.0	84.1	11.9	0.0	0.0	0.0	100.0(126)
미취업	10.0	81.4	7.5	0.8	0.1	0.1	100.0(861)
χ^2 (df)	12.762(10)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정책 수혜 전 부모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4.9%,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5.1%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299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5.8%, 300~399만원 이하 73.0%, 400~499만원 이하 72.4%, 500~599만원 이하 74.5%, 600만원 이상 80.0%로 나타나서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에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모 연령에 따라서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어머니의 연령이 20대인 경우 83.3%, 30대 75.1%, 40대 73.5%로 20대 부모가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인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모 학력에 따라서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어머니가 고졸 이하인 경우 71.6%, 전문대졸인 경우 74.2%, 4년제대학졸 77.0%, 대학원이상 74.0%로 어머니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와 대학원 이상인 경우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다소 낮게 인지하였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어머니가 취업하고 있는 경우 74.1%, 휴직중인 경우 82.5%, 미취업인 경우 74.6%로 휴직중인

어머니가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인지하였다.

■ 표 V-3-2 ■ 부모교육의 필요성

단위: %(명)

구분	필요	불필요	계
전체	74.9	25.1	100.0(1,648)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75.8	24.2	100.0(223)
300-399만원 이하	73.0	27.0	100.0(440)
400-499만원 이하	72.4	27.6	100.0(384)
500-599만원 이하	74.5	25.5	100.0(271)
600만원 이상	80.0	20.0	100.0(330)
χ^2 (df)		6.840(4)	
모 연령			
20대	83.3	16.7	100.0(60)
30대	75.1	24.9	100.0(1,153)
40대 이상	73.5	26.5	100.0(427)
χ^2 (df)		2.717(2)	
모 학력			
고졸이하	71.6	28.4	100.0(345)
전문대졸	74.2	25.8	100.0(419)
4년제대학졸	77.0	23.0	100.0(803)
대학원이상	74.0	26.0	100.0(73)
χ^2 (df)			
모 취업여부			
취업	74.1	25.9	100.0(653)
휴직중	82.5	17.5	100.0(126)
미취업	74.6	25.4	100.0(861)
χ^2 (df)		4.177(2)	

나. 육아 서비스별 정부 지원 부족 부분 및 개선이 필요한 점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꼈던 육아지원 분야에서 기관보육·교육서비스에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응답한 대상에게만 기관보육·교육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충이 5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치원·어린이집 영유아 인구 수 대비 적정 설치 및 확충으로 접근성 제고 18.3%, 보육료·교육비 지원 안정화 9.3%, 인력 지원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감축 8.3%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거주 지역 규모, 모 취업 여부, 자녀 구성과 관계없이 기관보육·교육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공통적으로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충이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다음으로 유치원·어린이집 영유아 인구 수 대비 적정 설치 및 확충으로 접근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표 V-3-3 기관보육·교육서비스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기타	개선할 부분 없음	계(수)
전체	18.3	50.2	9.3	2.6	4.6	8.3	5.2	0.2	1.1	0.2	100.0 (460)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7.8	44.4	5.6	0.0	5.6	5.6	9.3	0.0	1.9	0.0	100.0 (54)
300~399만원 이하	13.8	58.6	11.2	0.9	4.3	6.9	4.3	0.0	0.0	0.0	100.0 (116)
400~499만원 이하	13.5	52.3	9.9	1.8	4.5	9.0	5.4	0.9	1.8	0.9	100.0 (111)
500~599만원 이하	21.4	41.4	8.6	7.1	2.9	11.4	5.7	0.0	1.4	0.0	100.0 (70)
600만원 이상	21.1	47.7	9.2	3.7	5.5	8.3	3.7	0.0	0.9	0.0	100.0 (109)
χ^2 (df)					33.189(36)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20.6	52.4	5.6	2.1	4.7	9.4	4.3	0.0	0.4	0.4	100.0 (233)
중소도시	17.2	48.4	10.2	1.9	5.1	9.6	6.4	0.0	1.3	0.0	100.0 (157)
읍면지역	12.9	47.1	20.0	5.7	2.9	1.4	5.7	1.4	2.9	0.0	100.0 (100)
χ^2 (df)					33.171(18)*						
모 취업 여부											
취업	16.5	46.7	9.9	4.9	4.9	9.9	4.9	0.0	1.6	0.5	100.0 (182)
휴직중	25.0	54.2	0.0	0.0	8.3	4.2	8.3	0.0	0.0	0.0	100.0 (24)
미취업	18.3	52.6	10.0	1.2	4.0	7.6	5.2	0.4	0.8	0.0	100.0 (251)
χ^2 (df)					16.369(18)						
자녀구성											
영아가구	25.0	47.5	8.3	0.0	4.2	10.0	5.0	0.0	0.0	0.0	100.0 (120)
유아가구	13.4	51.4	7.9	4.2	6.5	10.2	5.1	0.5	0.9	0.0	100.0 (216)
영유아가구	20.2	50.8	12.9	2.4	1.6	3.2	5.6	0.0	2.4	0.8	100.0 (124)
χ^2 (df)					30.350(18)*						

주: ① 유치원·어린이집 영유아 인구 수 대비 적정 설치 및 확충으로 접근성 제고, ②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충, ③ 보육료·교육비 지원 안정화, ④ 시설 등 물리적 환경 개선, ⑤ 보육·교육과정(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 개선, ⑥ 인력 지원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감축, ⑦ 아동학대 등 근절, ⑧ 부모 참여 프로그램 확대

* $p < .05$

육아지원 분야 중 개별돌봄서비스 정책분야에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응답한 대상에게만 개별돌봄서비스 정책분야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여 질문한 결과, 공공 개별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 확대가 33.2%로 가장 많았고, 공공 개별돌봄인력(예: 아이돌보미) 양성 확대 29.3%, 공공 개별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수준 제고 10.3%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299만원 이하, 300~399만원 이하, 500~599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공공 개별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 확대가 각 44.0%, 35.6%, 32.3%로 가장 많았고, 400~499만원 이하와 6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공공 개별돌봄인력(예: 아이돌보미) 양성 확대가 각 43.5%, 29.7%로 가장 많았다.

거주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는 공공 개별돌봄인력(예: 아이돌보미) 양성 확대가 39.2%로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공공 개별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 확대가 각 38.6%, 55.6%로 가장 많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에는 공공 개별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 확대를 가장 많이 요구하였고(36.0%), 휴직중이거나 미취업 상태인 경우 공공 개별돌봄인력 양성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아 각각 46.2%, 31.3%로 응답되었다.

마지막으로 자녀구성에 따라서는 자녀 중 영아가 있는 영아가구, 영유아 가구에서는 공공 개별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 영아가구 33.3%, 영유아 가구 39.1%로 응답되었고, 유아가구에서는 공공 개별돌봄인력 양성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34.7%).

■ 표 V-3-4 ■ 개별돌봄서비스 정책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

단위: %(명)

구분	공공 개별돌봄인력	공공 개별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 확대	공공 개별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수준 제고	공공 개별돌봄서비스의 유형 다양화	공공 개별돌봄인력의 전문성 제고	긴급 돌봄에 대한 대응성 제고	개선할 부분 없음	계(수)	
전체	29.3	33.2	10.3	9.8	7.1	9.8	0.5	100.0	(184)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8.0	44.0	20.0	16.0	0.0	12.0	0.0	100.0	(25)
300~399만원 이하	31.1	35.6	6.7	6.7	6.7	11.1	2.2	100.0	(45)
400~499만원 이하	43.5	28.3	4.3	8.7	4.3	10.9	0.0	100.0	(46)

구분	공공 개별돌봄 보인력	공공 개별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 확대	공공 개별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수준 제고	공공 개별돌 봄서비스 의 유형 다양화	공공 개별돌 봄인력 의 전문성 제고	긴급 돌봄에 대한 대응성 제고	개선할 부분 없음	계(수)	
500~599만원 이하	22.6	32.3	16.1	9.7	6.5	12.9	0.0	100.0	(31)
600만원 이상	29.7	29.7	10.8	10.8	16.2	2.7	0.0	100.0	(37)
χ^2 (df)	28.187(24)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39.2	18.9	6.8	12.2	13.5	9.5	0.0	100.0	(74)
중소도시	24.1	38.6	14.5	8.4	2.4	10.8	1.2	100.0	(83)
읍면지역	18.5	55.6	7.4	7.4	3.7	7.4	0.0	100.0	(27)
χ^2 (df)	25.697(12)*								
모 취업 여부									
취업	25.8	36.0	10.1	11.2	7.9	9.0	0.0	100.0	(89)
휴직중	46.2	30.8	7.7	0.0	0.0	15.4	0.0	100.0	(13)
미취업	31.3	28.8	11.3	10.0	7.5	10.0	1.30.8	100.0	(80)
χ^2 (df)	6.741(12)								
자녀구성									
영아가구	25.8	33.3	13.6	7.6	7.6	12.1	0.0	100.0	(66)
유아가구	34.7	29.2	9.7	12.5	6.9	6.9	0.0	100.0	(72)
영유아가구	26.1	39.1	6.5	8.7	6.5	10.9	2.2	100.0	(46)
χ^2 (df)	8.367(12)								

* $p < .05$

육아지원 분야중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 정책 분야에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응답한 대상에게만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 정책 분야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서비스의 다양성 확대’와 ‘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예: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사업 비용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한 요구가 동일하게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서비스 수준 제고 21.1%, 적극적 홍보로 서비스 내용에 대한 인지도 제고 19.3% 순으로 응답되었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 정책 분야에서 가장 많이 개선이 요구되었던 부분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299만원 이하와 300~399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예: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사업 비용 지원 대상 확대)가 각 33.3%, 37.9%로 가장 많았고, 400~499만원 이하와 500~599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서비스의 다양성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아서 각각

50.0%, 36.4%가 응답되었다. 6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적극적 홍보로 서비스 내용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가장 많이 요구하여 35.0%로 가장 많았다.

거주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 정책 분야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는 서비스의 다양성 확대가 각각 34.0%, 31.3%로 가장 많이 요구되었으며, 읍면지역에서는 ‘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예: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사업 비용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한 요구가 50.0%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취업하고 있거나 휴직 중인 경우에는 서비스의 다양성 확대가 각 32.7%, 33.3%로 가장 많았고, 미취업인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가 33.3%로 가장 많았다.

▣ 표 V-3-5 ▣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 정책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

단위: %(명)

구분	서비스의 다양성 확대	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	서비스 수준 제고	적극적 홍보로 서비스 내용에 대한 인지도 제고	기타	계(수)
전체	29.4	29.4	21.1	19.3	0.9	100.0 (109)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5.0	33.3	25.0	16.7	0.0	100.0 (12)
300~399만원 이하	17.2	37.9	27.6	17.2	0.0	100.0 (29)
400~499만원 이하	50.0	30.8	3.8	15.4	0.0	100.0 (26)
500~599만원 이하	36.4	18.2	18.2	22.7	4.5	100.0 (22)
600만원 이상	15.0	25.0	35.0	25.0	0.0	100.0 (20)
χ^2 (df)			19.946(16)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34.0	23.4	23.4	17.0	2.1	100.0 (47)
중소도시	31.3	29.2	16.7	22.9	0.0	100.0 (48)
읍면지역	7.1	50.0	28.6	14.3	0.0	100.0 (14)
χ^2 (df)			8.253(8)			
모 취업 여부						
취업	32.7	24.5	26.5	16.3	0.0	100.0 (49)
휴직중	33.3	33.3	16.7	16.7	0.0	100.0 (6)
미취업	25.9	33.3	16.7	22.2	1.9	100.0 (54)
χ^2 (df)			3.897(8)			

육아지원 분야에서 부모 돌봄시간 서비스에서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응답한 대상에게만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부모의 돌봄시간 지원 서비스 정책 분

야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서비스를)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홍보 강화)’이 3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도 이용의 일부 자동화·강제화(예; 자동육아휴직, 아빠의 달 이용 강제화)’ 19.0%,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직장지원강화(대체인력풀 구축 및 연계, 대체인력 비용 지원 수준 제고 등)’ 16.2%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299만원 이하 가구를 제외한 300만원 이상의 모든 가구에서는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홍보 강화)’이 각 41.7%, 29.7%, 35.6%, 27.5%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제도 이용의 일부 자동화·강제화’에 대한 개선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29.2%).

거주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지역규모와 관계없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홍보 강화)’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으며, 다음으로 대도시는 ‘제도이용의 일부 자동화·강제화’가(20.7%), 중소도시는 ‘근로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복지, 승급 등 인사 관련 수준의 명확한 기준 설정’(18.3%),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직장지원강화(대체인력풀 구축 및 연계, 대체인력 비용 지원 수준 제고 등)’가 24.1%로 두 번째로 많이 응답된 부모 돌봄시간 요구는 지역규모별 차이를 보였다.

모 근로형태에 따라서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모두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이 각 31.1%와 50.0%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어머니의 취업, 휴직, 미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이 각 29.9%, 43.5%, 31.8%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으며, 특히 현재 어머니가 휴직중인 경우 이러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부모의 돌봄시간 지원 서비스 정책 분야에 대한 개선 요구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녀구성에 따라서는 모든 유형의 자녀구성에서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공통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밖에 영아 가구에서는 ‘제도 이용의 일부 자동화·강제화’에 대한 요구가 23.4%, 영유아 가구에서는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직장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2.5%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부모의 돌봄시간 지원 정책에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상의 분석 결과들은 영유아가구의 부모들이 현재 육아휴직, 유연근무제와 같은 자녀돌봄을 위한 시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사회적 분위기의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표 V-3-6 부모의 돌봄시간 지원 정책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

단위: %(명)

구분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급여 수준 제고	근로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복지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	제도 이용의 일부 자동화·강제화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직장 지원 강화	서비스 다양성 강화	기타	계(수)	
전체	12.4	14.5	32.8	19.0	16.2	4.5	0.7	100.0	(290)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8.3	12.5	25.0	29.2	20.8	4.2	0.0	100.0	(24)
300~399만원 이하	6.7	11.7	41.7	16.7	18.3	5.0	0.0	100.0	(60)
400~499만원 이하	14.1	15.6	29.7	25.0	10.9	3.1	1.6	100.0	(64)
500~599만원 이하	13.7	13.7	35.6	15.1	17.8	4.1	0.0	100.0	(73)
600만원 이상	15.9	17.4	27.5	15.9	15.9	5.8	1.4	100.0	(69)
χ^2 (df)	14.857(24)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12.1	10.3	41.4	20.7	12.1	3.4	0.0	100.0	(116)
중소도시	14.2	18.3	26.7	17.5	16.7	5.0	1.7	100.0	(120)
읍면지역	9.3	14.8	27.8	18.5	24.1	5.6	0.0	100.0	(36)
χ^2 (df)	14.692(12)								
모 근로형태									
임금근로자	16.8	18.6	31.1	12.4	16.1	4.3	0.6	100.0	(161)
비임금근로자	9.1	0.0	50.0	22.7	13.6	4.5	0.0	100.0	(22)
χ^2 (df)	8.623(6)								
모 취업 여부									
취업	19.7	13.1	29.9	14.6	17.5	5.1	0.0	100.0	(137)
휴직중	4.3	26.1	43.5	10.9	10.9	2.2	2.2	100.0	(46)
미취업	6.5	11.2	31.8	28.0	16.8	4.7	0.9	100.0	(107)
χ^2 (df)	30.244(12)**								
자녀구성									
영아가구	12.8	12.8	34.0	23.4	9.6	6.4	1.1	100.0	(94)
유아가구	13.1	16.8	33.6	16.8	16.8	2.8	0.0	100.0	(107)
영유아가구	11.2	13.5	30.3	16.9	22.5	4.5	1.1	100.0	(89)
χ^2 (df)	9.816(12)								

** $p < .01$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정책에서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응답한 대상에
 제만 현금 지원 정책 분야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현금지원수준 제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30.5%), 그외 ‘양육비용지원
 대상 확대(지원 대상 연령 확대 등)’ 25.5%, ‘자녀 연령별 양육비가 많이 소요되
 는 핵심 범주에 대한 집중 양육비 제공’ 25.1% 순으로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400~499만원 이하 가구를 제외한 모든 소득계층에서
 ‘현금지원수준 제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0~499만원 이하
 소득 가구에서는 ‘양육비용 지원 대상 확대’가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26.3%). 가
 구소득 299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현금지원수준제고’와 ‘자녀 연령별 양육비가
 많이 소요되는 핵심 범주에 대한 집중 양육비 제공’이 동일하게 30.2%로 개선 요
 구가 가장 높은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가 1명이나 2명인 경우에는 ‘현금지원수준제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아서 각 33.7%, 32.1%로 나타났으며,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연령별 양육비가 많이 소요되는 핵심 범주에 대한 집중 양육비 제
 공’이 35.7%로 가장 많이 요구되었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취업하고 있거나 휴직중인 경우에는 ‘현금
 지원수준제고’가 각 31.4%, 51.7%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미취업인 경우에는
 ‘자녀 연령별 양육비가 많이 소요되는 핵심 범주에 대한 집중 양육비 제공’이
 27.9%로 가장 많았다.

한편 영아만 있는 영아가구에서는 ‘현금지원수준제고’에 대한 개선 요구가 가
 장 높아서 39.1%가 이에 응답한 반면, 유아만 있는 유아가구에서는 ‘양육비용지
 원 대상 확대’(28.4%), 영아 유아가 모두 있는 영유아가구는 ‘자녀 연령별 양육비
 가 많이 소요되는 핵심 범주에 대한 집중 양육비 제공’(32.9%)을 가장 많이 응
 답하여 자녀구성에 따른 현금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요구도에 차이를 보였다.

▣ 표 V-3-7 ▣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정책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

단위: %(명)

구분	현금 지원 수준 제고	자격 충족시 자동 지급	양육 비용 지원 대상 확대	자녀 연령별 핵심 범주에 대한 집중 지원	기타	개선할 부분 없음	계(수)
전체	30.5	17.9	25.5	25.1	0.8	0.2	100.0 (509)
가구 소득							

(표 V-3-7 계속)

구분	현금 지원 수준 제고	자격 충족시 자동 지급	양육 비용 지원 대상 확대	자녀 연령별 핵심 범주에 대한 집중 지원	기타	개선할 부분 없음	계(수)	
299만원 이하	30.2	12.8	26.7	30.2	0.0	0.0	100.0	(86)
300~399만원 이하	32.3	17.4	22.4	27.3	0.6	0.0	100.0	(161)
400~499만원 이하	25.4	22.0	26.3	24.6	1.7	0.0	100.0	(118)
500~599만원 이하	29.2	15.4	27.7	26.2	0.0	1.5	100.0	(65)
600만원 이상	35.4	20.3	27.8	15.2	1.3	0.0	100.0	(79)
χ^2 (df)	19.605(20)							
총 자녀 수								
1명	33.7	15.3	27.6	21.9	1.0	0.5	100.0	(196)
2명	32.1	18.1	24.7	24.7	0.4	0.0	100.0	(243)
3명 이상	15.7	24.3	22.9	35.7	1.4	0.0	100.0	(70)
χ^2 (df)	15.259(10)							
모 취업 여부								
취업	31.4	19.5	24.9	22.5	1.2	0.6	100.0	(169)
휴직중	51.7	20.7	17.2	10.3	0.0	0.0	100.0	(29)
미취업	27.6	16.9	26.9	27.9	0.6	0.0	100.0	(308)
χ^2 (df)	13.384(10)							
자녀구성								
영아가구	39.1	16.1	23.0	20.5	1.2	0.0	100.0	(161)
유아가구	27.4	20.5	28.4	22.6	0.5	0.5	100.0	(190)
영유아가구	25.3	16.5	24.7	32.9	0.6	0.0	100.0	(158)
χ^2 (df)	16.178(10)							

육아지원 분야에서 양육물품 지원 정책에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응답한 대상에게만 양육물품 지원 정책 분야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지원 자격기준 확대(소득 기준 상향 등)’ 30.2%, ‘물품 지원 서비스 분야 다양화’ 17.7%, ‘물품지원 전달체계의 접근성 확대(물품 대여 기관의 확충 등)’ 16.7%, ‘서비스 홍보 강화(자격 충족 시 대상자 통보, 이용 의향 접수)’ 13.5%, ‘물품지원량 수준 제고’ 12.5%, ‘지원기간 연장’ 9.4%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300~399만원 이하 가구를 제외한 모든 소득 구간 가구에서는 ‘지원 자격기준 확대(소득 기준 상향 등)’에 각 31.8%(299만원 이하), 26.3%(400~499만원 이하), 30.0%(500~599만원 이하), 56.3%(600만원 이상)이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300~399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물품지원 전달체계의 접근성 확대(물품 대여 기관의 확충 등)’에 가장 많은 24.1%가 응답하였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지원 자격기준 확대(소득 기준 상향 등)’이 각 30.0%, 35.6%로 가장 많았고,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물품지원 서비스 분야 다양화’가 23.8%로 가장 많았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취업하고 있거나, 휴직중, 미취업과 상관없이 ‘지원 자격기준 확대(소득 기준 상향 등)’가 각 37.0%, 50.0%, 24.6%로 가장 많았다. 자녀구성에 따라서도 유형에 관계 없이 ‘지원 자격기준 확대(소득 기준 상향 등)’가 영아가구 29.5%, 유아가구 21.7%, 영유아가구 37.9%로 나타났다.

【표 V-3-8】 양육물품 지원 정책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

단위: %(명)

구분	물품 지원 서비스 분야 다양화	물품 지원량 실제 필요량 수준으로 제고	서비스 홍보 강화	물품 당 지원 기간 연장	지원 자격기준 확대	물품지원 전달 체계의 접근성 확대	계(수)	
전체	17.7	12.5	13.5	9.4	30.2	16.7	100.0	(96)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7.3	13.6	9.1	4.5	31.8	13.6	100.0	(22)
300~399만원 이하	10.3	13.8	20.7	13.8	17.2	24.1	100.0	(29)
400~499만원 이하	21.1	10.5	15.8	10.5	26.3	15.8	100.0	(19)
500~599만원 이하	20.0	0.0	10.0	20.0	30.0	20.0	100.0	(10)
600만원 이상	12.5	18.8	6.3	0.0	56.3	6.3	100.0	(16)
χ^2 (df)			17.910(20)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23.3	10.0	16.7	3.3	30.0	16.7	100.0	(30)
중소도시	11.1	11.1	13.3	13.3	35.6	15.6	100.0	(45)
읍면지역	23.8	19.0	9.5	9.5	19.0	19.0	100.0	(21)
χ^2 (df)			6.809(10)					
모 취업 여부								
취업	7.4	22.2	11.1	14.8	37.0	7.4	100.0	(27)
휴직중	25.0	0.0	0.0	12.5	50.0	12.5	100.0	(8)
미취업	21.3	9.8	16.4	6.6	24.6	21.3	100.0	(61)
χ^2 (df)			13.066(10)					
자녀구성								
영아가구	25.0	9.1	11.4	9.1	29.5	15.9	100.0	(44)
유아가구	4.3	21.7	13.0	8.7	21.7	30.4	100.0	(23)
영유아가구	17.2	10.3	17.2	10.3	37.9	6.9	100.0	(29)
χ^2 (df)			11.643(10)					

4 소결

본 장에서는 육아서비스의 수요자인 영유아 가구의 다양한 유형의 육아서비스와 관련된 정책 인지도와 수혜 경험, 정책 만족도를 살펴봄으로써 각 유형의 육아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얼마나 영유아 가구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영유아 가구가 육아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 지원 미흡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과 영유아 가구가 희망하는 개선 방향을 파악함으로써 수요자 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한 육아서비스 개선의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첫째, 영유아 가구는 다양한 육아 관련 정책 지원 중 양육수당 수혜 경험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관 보육·교육비 지원을 받은 경험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을 받은 경험은 주로 양육수당과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시의 비용 지원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그 외의 육아정책의 수혜 경험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이어서, 육아지원 정책의 수혜가 특정 분야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였다. 즉 우리나라의 육아지원 정책은 그 범주는 다양하게 존재하나 실제 수혜 경험이 일부 정책에 몰려 있고 대부분 낮은 수준으로 이는 육아정책에 대한 제감도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 사료된다. 도입 10년이 넘어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비롯하여, 다양한 기타 육아지원 서비스는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통한 인지도 제고가 시급한 상황으로 보여진다. 또한 수혜 경험자의 만족도에 있어 보육·교육비 지원이나 기타 육아지원서비스에 비해 부모 시간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부모 시간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을 지원하는 시간 지원 정책들은 맞벌이 가구에 비해 외벌이 가구의 만족도가 낮았는데, 이는 유일한 가구소득원인 외벌이 가구의 취업부모가 시간 지원 정책을 이용하였을 경우 가구 소득 감소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맞벌이 여부를 불문하고 취업 부모들에게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부모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간 정책 이용에 따른 급여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둘째, 영유아 가구가 육아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

각하는 분야는 ‘현금 지원’ 분야였으며, 이는 주로 ‘지원 수준이 실제 필요에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인 것으로 응답되었다. 영유아 가구는 현금 지원 다음으로 기관보육·교육서비스 분야,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 지원 분야, 개별돌봄서비스 분야 순으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기관보육·교육 서비스 분야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국공립유치원의 공급 부족이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었는데, 이는 ‘국공립’이 의미하는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 즉 기관보육·교육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 제고에 대한 요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로 대표되는 개별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미흡한 부분은 ‘비용 지원 대상’의 한정성, 낮은 비용 지원 수준, 그리고 연계 부족이었는데, 이는 곧 공공의 개별돌봄서비스는 아직 비용 부담과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접근성’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돌봄시간 지원에 대한 정부 지원 부족 부분은 무엇보다 제도가 있으나 ‘마음 놓고 당당히!’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요약될 수 있었다. 육아휴직제도는 도입 이후 지원대상과 급여 수준 확대 등 지속 발전하여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제도를 실질적으로 쓸 수 없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직장문화’가 암암리에 존재하며, 결국 부모 돌봄시간 지원은 ‘심리적 접근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 있다고 보여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지 않아도 휴직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자동으로 휴직이 되는 등 법적 강제성이 일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득수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가장 고소득 가구에서는 ‘비용 지원 미흡(육아휴직 급여 수준 등)’이 부모 돌봄 시간 지원 정책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

이는 앞서 외별이 가구의 취업 부모의 경우와 유사하게, 육아휴직의 낮은 급여 대체율로 고소득 노동자와 가구 내 주소득원이 될 수 있는 남성, 또는 외별이 취업부모의 돌봄 시간 지원 정책 이용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사료된다.

‘눈치 보지 않고’ 부모의 돌봄시간 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과 더불어, 일정 기간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권리를 소득수준, 성별, 맞벌이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취업 부모에게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혁신적인 제도 개선

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셋째, 육아를 위한 물품 지원 서비스의 경우 주된 육아서비스 지원은 아니나, 양육비 부담을 절감하고 대여 서비스 등을 이용, 바람직한 육아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소득 기준 등에 의해 일부에 한정되고, 지원에 대한 홍보 부족이 정부 지원의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현금 지원과 더불어 물품 지원은 특히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대상의 한정성’이 있는 지원으로 어떤 지원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지원 대상 가구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전에 서비스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출생 신고 시 영유아 가구가 해당되는 정부 정책 지원과 다양한 육아서비스 정보를 홍보물로 지급하는 등 효과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특히 읍면지역에서 서비스 홍보 부족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높았는 바, 육아지원 정보에 어두운 지역 주민 등 정보접근성이 취약한 집단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VI

육아서비스 수요에 대응한 정책 방안

1. 기본 방향
2. 육아서비스 수요 대응을 위한 주요 전략
3. 육아서비스 수요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Ⅵ. 육아서비스 수요에 대응한 정책 방안

본 장에서는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 연구의 수행 과정을 통해 파악된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와 수요, 수요의 변동 가능성과 방향을 근간으로 육아정책이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방향과 전략,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1 기본 방향

가. 육아서비스 인프라의 충분성 확보

본 연구를 위한 조사 결과, 많은 영유아 가구들은 육아서비스 지원에 대한 정부 지원의 주요 부족 부분으로 여전히 인프라의 불충분성을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공급 부족을 지적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았으며, 특히 국공립어린이집과 국공립유치원 등 공보육교육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개별돌봄서비스에 있어서도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서 ‘실제 사용이 어려울 것 같아서’,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어려워서’를 지적하는 응답이 많았을 뿐 아니라, 현재 지원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비용 지원 대상의 한정성과 함께 서비스 연계가 잘 되지 않는, 즉 인프라의 접근성이 낮음을 주요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기관보육교육서비스의 경우 이용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없이 전체 영유아에 지원이 확대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 접근성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는 현재 영유아 수 대비 전체 기관의 정원이 부족한 수준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지향해야

할 접근성 확대 방안은 지역별 균형 배치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질 높은 서비스 기관’의 확충, 즉 국공립으로 대표되는 공공성 있는 기관 보육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개별돌봄서비스의 경우 민간육아도우미가 아닌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공공의 개별돌봄서비스가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인력양성과 비용 지원 대상 확대가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개별돌봄서비스는 가정으로 파견되는 인력에 의한 1:1 서비스로 민간 시장을 통해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고비용이 소요되는 서비스로 비용 부담이 매우 높은 서비스이다. 개별돌봄서비스의 인프라 확충은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력에 의한 서비스의 확충이어야 함은 자명하므로, 현재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의 개별돌봄서비스인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발전선상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의 처우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인력이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 수요 예측에 의한 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서비스의 실질적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나. 수요자의 ‘육아만족도’ 제고 지향

육아서비스는 우선 수요자의 ‘육아만족도’를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영유아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육아서비스’가 부문별로 갖추어져 있으나, 육아서비스 유형별로 발전 수준과 수요자의 인지도, 수혜경험,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어 모든 육아서비스가 수요자의 육아를 만족스럽게 지원하고 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영유아 가구 특성, 영유아 특성에 따라 드러나는 육아서비스의 욕구 차이와 현재 육아서비스에 대한 개선 요구에 근거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육아서비스가 수요자인 영유아 가구(부모와 아동)가 만족스러운 육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며, 이러한 방향성에 따라 우리나라 육아서비스 지원 정책이 취해야 할 전략과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다. 육아서비스 수요 변동에 대한 대응성 강화

육아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또 하나의 지향해야 할 방향은 ‘수요 변동에 대한 대응성’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육아서비스의 수요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가장 먼저, 육아서비스의 수요자인 영유아 가구 또는 초등학교 아동 가구에서 필요로 하거나 선호하는 서비스는 대상자인 영유아 인구(영유아 가구), 초등학교 인구(초등학교를 둔 가구)의 총체적 증감에 따라 영유아 대상, 초등학교 대상 육아서비스 공급 규모에 변동이 필요할 수 있다. 육아서비스 대상 인구의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전체적인 필요 규모는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육아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 본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나므로, 인구 감소에 따라 감소되는 수요와 함께 정책 지원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수요를 고려한 예측과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 전체 서비스 대상 중에서도(영유아, 초등 학생 인구 및 해당 가구 규모) 대상의 취약성으로 인한 특정 서비스에 수요 증감이 있을 수 있다. 영유아 인구가 동일하더라도 영유아를 둔 맞벌이 가구의 비율, 한부모 가구의 비율, 저소득 가구의 비율 등 영유아 가구 특성의 변화에 따라 해당 유형의 가구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며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수요 변동이 따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남북의 화해 모드가 지속되고 있고 통일의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긍정적으로 언급되는 가운데, 통일 이후 육아서비스의 새로운 대상으로 유입되며 동시에 다양한 취약성을 가질 수 있는 ‘북한의 영유아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

셋째, 만약 서비스 대상의 양적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육아서비스 수요에는 서비스에 대한 선호의 변화 등 질적인 변화도 예측 가능하다.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의 변동은 시민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영유아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양육 형태, 서비스의 이용 행태를 통해 수요를 변동 시킨다.

또한 정부의 육아서비스 지원의 수준이 변동함에 따라 정책변동에 수요자가 즉각적이고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육아서비스의 수요는 정체된 것이 아니며 다양한 변동 요인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육아서비스 수요 대응의 기본 방향으로 ‘수요자의 육아만족도 제고’와 함께 ‘육아서비스 수요 변동에 대한 대응성 강화’를 제안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기본 방향, 즉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와 수요 변동에 대한 대응성 강화를 두 축으로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전략과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육아서비스 수요 대응을 위한 주요 전략

가. 수요자 ‘육아만족도’ 제고를 위한 전략

1) 이상과 실제의 간극 최소화: 연령별 선택과 집중

본 연구 결과, 영유아 가구는 육아서비스와 정책의 궁극적 대상인 ‘자녀’의 연령별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육아 형태가 있었으면, 가급적 자녀와 부모 자신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육아를 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즉, 자녀가 0~1세일 때는 가정 내 양육의 형태 중에서도 ‘부모 자신이 자녀를 직접 돌보는 형태’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영영아기를 지난 2세부터는 조금씩 기관 보육·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자녀에게나 부모에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세 이후 어떤 유형의 기관보육·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느냐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자녀 연령별 바람직한 육아의 장소와 주로 돌봄을 제공하는 자에는 일정한 경향성을 드러내었다.

이에 아동의 연령별로 모든 유형의 서비스 지원을 동일하게 확대하기 보다는 연령별로 선호가 집중되는 육아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령별 바람직한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 등의 집중 지원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육아휴직제도의 적용 대상 연령은 확대되었으나, 부모의 직접 돌봄이 가장 선호되는 자녀 출생 직후 ~1세까지 이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대체율 상향, 출산휴가 후에는 대상자의 신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시작되도록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만 육아휴직 연기 대상이 되

도록 하는 등의 영영아기 자녀와 부모에게 ‘부모 시간지원 정책’을 더욱 차별화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2) 서비스별 차별화

육아서비스 수요자 대상의 조사 결과, 육아서비스별로 서비스의 인지도, 이용률, 만족도의 차이가 있었고, 각 서비스에 대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점과 개선요구도 차이가 있었다.

영유아가구의 육아만족도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지향점을 지니더라도,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과 방법은 각 서비스의 특성과 영유아가구의 의견을 반영해 차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나. 수요 변동의 대응성 강화 전략

1) 양적 변동 요인 모니터링과 자동 반영 시스템 구축

매년 출생건수, 영유아 인구 수, 영유아 가구 수 등 육아서비스 대상자 수의 즉각적 증감과 중장기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인구통계를 종합하여, 육아서비스 유형별 관련 재정 규모와 필요공급량에 자동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2) 질적 변동 요인 정기적 모니터링

전체 인구 수외 육아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차별화될 수 있는 영유아 가구의 유형별 통계(가구원수, 양부모·한부모 비율, 다문화 가구, 조손가구, 맞벌이 가구 등)를 지속 모니터링하며, 육아서비스에 대한 정책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이용 영향 평가를 실시한다. 정책변동에 따른 이용 의사의 변화와 실제 변화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3 육아서비스 수요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가. 육아서비스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1) 아동 연령별 핵심 육아서비스에 대한 지원 강화

가) 0~1세 영영아 양육: 부모 직접 돌봄 지원 서비스 사회적 인식 제고와 육아휴직 급여 대체율 인상

0~1세 자녀 양육에 있어 취업, 미취업 부모를 불문하고 직접 돌볼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고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행복한 육아의 출발점을 제공하기 위해 이 시기 ‘부모의 돌봄 시간 지원’을 어느 시기 보다 차별화하여 전폭적 지원을 제공한다.

먼저, 육아휴직제도를 포함하여 유연근무제 등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영유아 부모가 ‘육아휴직제도’에서 가장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보다 ‘사회적 분위기 조성’으로, 제도의 내용이 부족해서라기 보다는 우선 제도를 이용하는데 있어 여전히 ‘눈치 보이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었다. 이에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자녀를 둔 부모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이며, 특히 가장 어린시기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이 시간을 사회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지함을 정부가 지속적인 메시지로 전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홍보 전략과 더불어 민간부문의 사업장, 특히 중소기업이 사원들의 부모 돌봄 시간 이용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중소기업 이하 사업장 대상의 지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 이용 시 소득 감소폭을 줄여야 한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제도 이용 시 소득대체율은 현재 통상임금의 40% 수준(첫 3개월은 80%, 아빠의 달 이용시 100%)으로 최고 100만원(첫 3개월 상한 150만원, 둘째 자녀에 대해 아빠의 달 이용시 첫 3개월 200만원 상한)에 불과한데, 급여 대체율도 낮으나 상한액이 100~150(200)만원에 한정됨으로써 외벌이 가구의 취업부모, 취업중인 한부모, 남성, 고소득 근로자의 접근성이 현저히 저해되고 있다. 부모권은 외벌이 가구의 가장에게도, 고소득 남성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보

장될 필요가 있으나, 현저히 감소하는 소득 때문에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권리’와 ‘가구의 생계’ 간의 선택에서 ‘생계’를 택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취업부로서 자녀와 함께 할 ‘단 1년’의 기간만은 누릴 수 있도록 육아휴직의 급여대체율 인상이 시급하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특히 ‘자녀와 함께 할 권리’ 또는 ‘자녀양육의 책임’은 2차 소득자로 간주되는 여성에 전가되는 현재의 육아시스템이 변화되기 어려우며, 육아서비스 수요자인 영유아 가구의 ‘육아만족도’의 제고도, 행복한 육아도 요원할 것이다.

나) 2~6세 기관보육·교육 서비스: 질 높은 인프라 구축에 집중

(1) 2~4세: 안전한 돌봄과 보호, 서비스의 신뢰 회복

자녀 연령 0~1세때 ‘부모의 직접 돌봄’에서의 안정적 애착 형성과 형성된 부모의 양육역량을 기반으로 2세부터는 점차 자녀의 발달 및 부모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기관 보육·교육서비스 활용이 바람직하게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세~4세까지, 5~6세의 기관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욕구는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2~4세는 ‘안전한 돌봄과 보호’가 가장 중요한 시기로 어떤 교육적 활동보다도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력에 의해 질 높은 케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음이 2~4세 시기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관인 어린이집 이용 이유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기관보육·교육서비스 분야에서 부모들이 정부지원이 가장 미흡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국공립어린이집·국공립유치원 확충’ 부분이며 바라는 개선사항도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확충을 가장 바라고 있다는 결과는 기관보육교육서비스의 수요자인 영유아 가구는 무엇보다 ‘국공립’이 의미한다고 보는 양질의 인력, 안정적 운영, 국가의 관리를 통한 ‘질 높은 서비스’를 기관 보육교육서비스에 가장 바라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확충’ 목표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그 어느때보다 높게, 명확하게 제시된 이상 국공립어린이집과 국공립유치원 확충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관보육·교육서비스 분야에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다만, 기관보육·교육서비스의 수요자가 요구하는 ‘국공립’기관은 단순한 ‘설립유

형'의 측면이 아니라, '국공립'이 보장한다고 보는 안전하고 신뢰로운 질 높은 서비스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무늬만 국공립'인 기관이 양산되어 국공립보육·교육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까지 잃지 않도록 특히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기관으로 전환될 때 심사와 추후 모니터링과 관리, 컨설팅을 통해 수요자의 전폭적인 신뢰에 부합하는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5~6세 기관보육·교육 서비스: 초등학교 대비와 연계한 다양한 발달적 자극을 제공할 수 있는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에 집중

본 연구를 위한 조사 결과, 영유아 부모가 응답한 5~6세의 기관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목적은 '대리 돌봄' 즉, 안전한 보호에서 나아가 아동의 발달, 초등학교 준비 등 유아에게 초등학교 입학과 연계하여 이를 대비하고 다양한 발달적 자극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5~6세 기관보육교육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안전한 돌봄을 바탕으로, 사회성, 인지, 정서 발달 등 전인적 발달을 촉진하고 초등학교 입학 후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로 유아의 편안한 적응을 돕고 부모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초등학교 준비'가 단순히 읽기, 쓰기, 수개념 등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지 발달 이외에 '학교 준비도'에 포함되는 다양한 측면이 포함된다는 측면에서 초등학교 입학에 맞추어 '전인적 발달'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다) 초등학생의 돌봄 지원: 공공 돌봄 인프라의 확충과 내실화에 집중

본 연구를 위한 조사 결과, 영유아 부모들은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학교의 돌봄교실, 방과후 프로그램과 같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공공 돌봄 인프라 보다는 '학원 등 사교육기관' 이용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교육'이 단지 교육 목적만이 아니라 '돌봄'의 역할을 적지 않게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만 사교육은 지역간 인프라의 차이와 비용 부담에 따른 접근성이 가구 소득계층에 따라 차별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하는 초등돌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바람직한 형태가 아님은 자명하다. 이에 초등학생의 돌봄 인프라로서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공공인프라의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특

히 읍면지역은 우선적인 확충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돌봄의 대상이 영유아가 아닌 ‘초등학생’임을 고려하여 공적 인프라를 통해 제공되는 돌봄 시간이 단순 보호를 넘어서 교육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내실화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초등돌봄 서비스는 ‘교육 + 보호’의 기능을 하는 서비스로 계획될 필요가 있다.

2) 서비스별 정책 과제

가) 보편적 서비스: 모든 영유아 가구 지원

육아서비스 이용의 지원 대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영유아와 그 가구에 해당되는 서비스인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 보육교육서비스와 가정 내 양육에 대한 현금 지원인 가정양육수당은 각각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1) 기관 보육·교육서비스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을 통한 보육교육서비스 질의 제고

기관 보육·교육서비스에 대해 영유아 부모들은 전반적으로 비용 지원에 대한 요구보다는 ‘국공립’기관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는 현재 ‘무상보육·교육’ 실현 기반아래 비용 지원은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서비스 이용 접근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신장되었으나,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으로 상징되는 ‘질 높고 믿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접근성은 일부에 한정되었고, 민간·사립 기관의 질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들의 요구는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에 지속 집중되었다.

이에 문제인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확충 목표(국공립 기관 비율, 국공립 이용 아동 비율)를 달성하는 것은 가시적인 정책 목표가 될 것이며, 국공립어린이집·국공립유치원의 ‘질 높은 서비스’가 보다 많은 수요자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으로, 양적인 목표 달성과 실제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의 서비스 질이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제공되며, 기타 어린이집·유치원 전반의 서비스 질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현금 지원: 현금 지원의 재설계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을 때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은 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고 지급된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육아서비스의 하나이나, 양육수당을 포함한 '현금' 지원 성격의 육아서비스에는 비용 수준의 미흡성이 정부지원이 가장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지원 수준이 실제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수준에 부족하다는 점에서 지원 수준의 미흡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육수당의 경우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최초 도입 시점인 2009년과 거의 동일한 단가로 유지되고 있고, 유아기까지 지급 연령이 확대되면서 가정 양육이 아닌 고소득층의 유아기 사교육 비용을 지원한다는 오명까지 있는 상황으로 '가정양육수당의 지급연령 및 연령별 지급 수준이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도입 취지와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 연령대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를 인식하기 어려워, '현금 지원 성격의 육아지원 서비스 간의 연계와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8년 9월부터 영유아기부터 자녀가 있는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했으므로, 양육수당은 가정양육이 선호되고 권장되는 시기의 수요자의 자율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가정양육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영아기에는 지급 수준을 상향하고, 대신 유아기는 양육수당 지급대상에서는 장기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한다(표 VI-3-1 참조).

제시한 안은 특히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양육이 선호되고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영아기 가정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지급대상은 영유아에 한정하고 대신 영아기 지급수준을 영아기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상향하는 안을 제시한 것이다. 지급수준은 선행연구를 통해 수요자에게 수요조사를 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아동수당의 경우 아동이 있는 가구의 가계 부담을 경감한다는 동일한 목표 하에서도,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출생순위가 낮아질수록 더 높은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반대로 자녀양육에 있어서도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한자녀 가구 지원을 위해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정책 목표에 따라 다양

한 안이 가능하다. 연령에 따라서도 다양한 안이 가능하나, 현금 성격의 지원에는 수요자 입장에서 도덕적 해이와 해당 수당의 정책 목표와 배치되는 오남용도 가능하므로 일정한 상한액을 두는 안을 제안한다.

▣ 표 VI-3-1 ▣ 현금 지원 서비스 조정안

구분	지급대상	지급수준
가정양육수당	영아에 한정(유아 제외)	영유아 가구의 희망 수준, 실제 양육비 소요액을 반영하여 조정
아동수당	영유아~미성년 자녀까지 확대	출생순위, 연령별 차등화 및 상한액 설정

나) 기타 서비스

(1) 개별돌봄서비스 :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접근성 제고

개별돌봄서비스는 정부 지원이 부족한 분야로 기관보육·교육서비스 위주로 확대된 육아서비스 분야에서 이용률이 본 조사에서 나타난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기준으로 하여도 4.6%에 머물러 있는 등 공공사업의 수준이 매우 낮은 분야이다. 개별돌봄서비스 분야에 대해 영유아 부모들이 가장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비용 지원 대상이 한정됨’이었다. 즉, 비용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해 비용 부담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간의 개별돌봄서비스 비용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나 개별돌봄서비스의 특성상 이용 단가가 높기 때문에 비용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 이용 부담은 매우 클 수 있다. 즉, 국가가 보장하는 인력이 민간의 개별돌봄서비스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여도 지원대상이 아닌 수요자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 있다. 이에 비용 지원 대상의 확대가 공공의 개별돌봄서비스(아이돌봄지원사업)의 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해 우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현재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액 자부담하는 계층(‘라’형)을 줄이고 ‘가~다’형의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 중 하나로, 이는 여성가족부가 2018년 8월 발표한 개선대책에 이미 반영된 바 있다⁵²⁾. 이로 인해 2019년부터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원하는 많은 대상 가구의 경제적 접근성이

52)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8. 8. 31). 아이돌봄서비스, 질은 높이고 이용부담은 줄이고-『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대책』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러한 개선대책으로 비용지원을 받는 소득계층 내에서는 정부 지원 비율 외에 가정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시간당 단가가 대부분 조금이라도 하락할 것이나, 일부 소득 구간에서는 2018년에 비해 시간당 단가가 다소 상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소득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용 부담 외에도 이용 희망가구 대비 활동 돌보미의 부족, 수요자의 이용 희망 시간대와 아이돌봄 인력의 활동 시간대의 차이 등에서 발생하는 연계의 어려움도 육아서비스로서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 가구의 육아만족도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즉,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는 아이돌보미 양성을 확대해야 하며, 이용자와 공급자간 수요와 공급이 미스매치되는 부분에 대한 조정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아이돌보미의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돌보미의 활동을 유인하기 위해 시간대별 시간당 단가의 차등화나 활동돌보미가 선호하지 않는 2~3시간의 단시간 서비스 제공 시 교통비를 지급하거나 지자체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등 다양한 유인을 마련하여 수요와 공급이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인력 양성 계획에 있어 실제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대기시스템을 구축하여 과학적 수요 예측에 근거한 적절한 양성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인력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시간과 활동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양성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표 VI-3-2>에 이러한 제안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 표 VI-3-2 ▣ 개별돌봄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과제

구분	정책과제	실행과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상향	• 가~다형 확대 (중위소득 기준 150%까지 확대) ^{주)}
	• 정부 지원 비율 상향	• 시간당 단가 상승시 상승분 정부 부담으로 흡수
아이돌봄서비스 인프라 접근성 강화	• 절대 인력풀 확대	• 수요 예측에 근거한 양성 (대기시스템 활용)
	• 수요- 공급 미스매치 감소	• 피크시간대 활동 돌보미 추가 인센티브 지급 • 단시간 활동 돌보미 교통비 실비 지원

주: 아이돌봄지원사업 개선대책 반영(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8. 8. 31)

(2) 부모 돌봄 시간 지원: 사회문화적지지 기반 확대와 사각지대 보안을 통한 접근성 제고

부모의 돌봄 시간 지원(각종 육아 관련 휴가, 휴직, 유연근무제 등)은 취업한 부모라도 자녀와 함께할 권리를 신장 시키고, 취업한 부모를 둔 아동에게도 부모와 함께 할 권리를 제공하는 지원이다.

취업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특성으로 인해, 사업장의 협조가 취업부모의 시간 지원 이용의 접근성을 좌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용의 필요성을 못느끼기 보다는 이용에 따른 직장에서의 불이익, 동료에게 돌아갈 불편 등을 고려해 소위 ‘눈치가 보여’ 이용을 못한다는 것이 그간 많은 연구에서 드러난 ‘부모 시간 지원 서비스’ 미이용의 주된 사유였다(도남희·이정원·김문정, 2012: 83).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지속적 제도 확대가 이루어져 이용률이 상당히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영유아 부모들은 사업장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인 이 제도를 이용하는데 있어 ‘사회적 분위기 조성’의 미흡이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라 얘기하고 있었다.

이에 부모 돌봄 시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행복한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취업부모의 ‘부모권’과, 나아가 아이들도 부모가 일을 하더라도 부모와 함께 할 시간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점, 이러한 시간 지원이 장기적으로 취업부모의 경력단절 방지와 건강한 시민의 양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지원하는 것이 취업부모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그리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TV, 영화관 광고시간을 통해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공익광고를 방영하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의 광고판에 광고문 부착, 사업장에 포스터 배포, 부착하도록 하며, 가족친화기업인증 시 사업장 내 육아기 부모의 시간 지원 이용을 권장하는 직장 문화의 정도를 지표 포함 하는 등 일반 시민, 사업장에 ‘부모권’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지지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압력에 의한 인정이 아니라, 사업장에 자발적인 육아기 직원의 부모 돌봄 시간을 지원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장의 근로자가 육아

휴직, 유연근무제 등의 활용으로 경영에 부담이 있을 수 있는 사업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사업주와 해당 근로자의 심적 부담을 줄여주도록 한다. 사업장의 규모와 전체 직원 대비 육아휴직자의 발생 비율을 고려해 차등적 지원을 강화한다. 대체 인력 채용 비용 지원 수준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사회문화적 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부모 돌봄 시간 지원(예: 육아휴직)을 이용하려는 취업부모의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으로 신청되고, 이를 이용하지 않으려는 사유를 제시하였을 때 이용이 연기 되는 등 육아기 부모는 반드시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 돌봄 시간 이용’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한다. 다만, 이러한 조치를 위해서는 급여 감소에 대한 부담으로 이용을 할 수 없는 집단(남성, 외벌이가구의 취업부모, 취업중인 한부모, 고소득 근로자)을 위해 급여대체율의 상향을 동반 추진한다.

이러한 정책과제를 요약하자면 <표 VI-3-3>과 같다.

▣ 표 VI-3-3 ▣ 부모 자녀 돌봄 시간 지원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과제

구분	정책과제	실행과제
심리적 접근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화적 분위기 조성 (마음 놓고 당당히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적극적 홍보·지속적 메시지 (매스미디어 활용 광고, 대중교통 광고 지속 노출, 가족진화사업 인증 지표 내 ‘직장 분위기’ 가중치 확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실질 인프라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지원 차등화(사업장 규모, 육아휴직 발생 비율에 따른 차등 지원 설계) • 육아휴직 자동 신청 간주 법제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①항 개정)
사각지대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벌이’ 가구의 2차 소득자 지원이 아닌 ‘모든 취업부모’ 지원 (한부모 가구 취업부모, 외벌이 가구의 취업부모, 남성, 고소득 취업부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급여대체율 상향(급여대체율 복유류 국가 수준의 파격 상향 또는 지급상한액 폐지 → 급여대체율 상향으로 중장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확대

(3) 물품 지원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물품지원 서비스의 경우 물품 지원별 대상의 한정성(연령, 소득기준 등)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며, 향후 이러한 부부의 개선이 요구되는 서비스였다. 물품지원 서

비스를 포함하면 한국의 육아지원 서비스는 기관보육·교육서비스, 개별돌봄서비스, 양육비용 경감을 위한 현금성 지원, 양육물품 지원 등 자녀 양육 시 필요한 지원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기관보육·교육서비스 외에는 지원 수준이나 접근성 면에서 대부분 낮은 수준으로 수요자 입장에서는 지원받는 육아서비스에 대한 체감도가 낮을 수 밖에 없었다. 특히 물품 지원의 경우는 대상의 한정과 홍보 부족으로 서비스 인지도가 낮고, 제공 또는 대여받을 수 있는 물품의 항목 다양하지 않다는 점도 물품 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체감도를 낮추는 요인이었다.

이에 물품지원 서비스는 전반적인 접근성과 이를 통한 체감도 제고를 목표로 지원 대상의 확대와 지원 육아품목의 다양화, 홍보의 효율화를 제안한다.

첫째, 현재 저소득층 영아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기저귀와 조제분유 등 물품지원은 보편적인 양육비 경감 대책이 아닌 저소득층 지원의 성격이 큰 서비스로, 소득기준의 변동은 없는 상태에서 저소득층가구의 아동에게 위생과 건강상태를 적정한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해 충분한 수준의 양을 제공하고 지원 기준 연령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저귀의 경우 24개월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배변훈련의 결과에 따라 기저귀 이용이 24개월 이후까지 이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제공기간을 6개월~1년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장난감, 도서 대여 서비스 등은 영유아 가구의 이용도도 높고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로 나타나, 일정 시기 동안만 이용되는 육아물품 대여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가 높다는 것을 고려하여 장난감, 도서 외에도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는 카시트, 유모차 등을 포함한 대여서비스 물품의 다양화를 제안한다.

셋째, 물품지원 서비스처럼 대상 자격의 제한이 있고 신청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무엇보다 적극적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홍보물 활용과 인력을 통한 육아 컨설팅과 홍보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연령 제한이 있는 경우는 대상 연령에서 제외되기 전에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가 육아지원 정책과 서비스, 거주지가 속한 지자체 지원 서비스를 종합한 홍보물을 매년 제작,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비치하고, 아동의 출생 신고 시 육아정책 홍보물을 제공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다. 그러나, 출생 신고 시 1회성으로 제공되는 홍보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되는 서비스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며, 수요자가 이를 비치하여 지속 활용하기에도 무리가 있으므로, 중요한 시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발송해 주는 ‘outreach’형 서비스가 더욱 적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월령별로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도록 안내문 발송 시, 해당 연령 이후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홍보물로 함께 배송하는 것도 수요자의 정책인지를 높이고 서비스 이용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는 주민센터나 보건소의 인력 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우리동네 보육반장’과 같이 육아에 대한 정보 제공과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된 지역주민을 활용해 지역의 새로 출산한 가정에 찾아가는 서비스로 육아상담과 함께 주요 육아정책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주민센터나 보건소 담당자, 지역에서 양성된 상담원 등은 육아정책에 대한 교육을 받아 지역 주민에 설명하고 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역 거점 기관의 인력이나 지역주민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특화된 육아 서비스에 대한 홍보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나. 육아서비스 수요 변동 대응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육아서비스 통합 통계 구축

육아서비스에 포함되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는 현재 소관부처가 여러 개의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 보육과 유아교육이 보건복지부, 교육부로 소관부처가 나뉘어져 있을 뿐 아니라, 개별돌봄서비스(아이돌봄 지원사업)는 여성가족부, 육아휴직 등 부모 돌봄 시간 지원 서비스는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분산되어, 서비스 간 연계가 잘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육아서비스 이용자 통계도 각각의 사업으로 분산되어 전체 영유아 인구,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육통계(가정양육수당 이용 통계 포함), 유아교육 통계, 고용노동부통계,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통계, 기타 육아지원 서비스(물품 지원 포함) 사업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인구 추계 통계와 더불어 육아서비스 이용 관련 추이과 수요 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사업통계의 통합과 육아서비스 담당부서간의 연계와 조율이 가능한 플랫폼

을 구축하도록 한다.

2) 육아서비스 수요 파악을 위한 종합 실태조사 실시 및 종합계획 수립

육아서비스 평가와 수요 파악을 위해 실시되는 각종 실태조사들에도 통합하여 분절적인 조사 수행으로 인한 중복과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고 모든 부처가 함께 이용하고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한다.

현재 소관부처별로 실시되고 있는 실태조사들을 통합, 대규모화하여 서비스별로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를 수집하여 서비스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며, 종합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특정 부처 사업에 국한된 분절적 계획을 넘어선 ‘육아서비스 종합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참고문헌

- 강이주(2007).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과 관련요인 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16(2). pp.315-331.
- 관계부처합동(2010).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보완판. 관계부처합동
- 관계부처합동(2011).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 (2011-2015) 『2015 가족행복 더하기』. 관계부처합동
- 권미경·박원순·엄지원(2016).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7). *교육통계연보*.
- 교육부(2018). 2018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교육부
-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김나영·김아름(2017). 육아지원을 위한 아동수당 도입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나영·도남희·이동하·조혜주(2016). 육아지원을 위한 시간정책의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유해미·최은영·최효미·배윤진·양미선·김정민(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최효미·최지은·장미경(2016).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방안(II) -2세와 5세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지·장혜경·최인희·김소영·선보영(2013). 2012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은지·장혜정·황정임·최인희·김소영·정수연(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지경(2005). 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과 지출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3(6), 47~60.
- 대한민국정부(2015).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대한민국정부.

- 문무경·박창현·송기창·김문정(2017). 2018-2022 유아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박선권(2017).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저출산 대응정책을 중심으로-. NARS 현안보고서, 제302호. 국회입법조사처
- 박선욱(2008). 미취학자녀를 둔 가구의 자녀보육비 지출실태와 영향요인. 소비문화연구. 11(2). 197~213.
- 박선욱(2011). 보육서비스 유형선택과 비용의 결정요인. 한국생활과학회지. 20(4). 831~847.
- 박선혜·나원정·최금영(2012).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조사-한국복지패널 1차년도와 7차년도의 변화 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5회 한국복지패널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601-622.
- 박원순·김동훈·김승진(2016). 북한이탈주민 자녀양육지원시스템. 육아정책연구소.
- 백은주·한선아·강민정(2011). 영아기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선호 유형에 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6(4), 209-232.
- 백선희·조성우(2005). 미취학 자녀의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과 결정 요인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41. pp.429-455.
- 백학영·안서연(2012).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가구의 소비지출 변화. 한국사회정책, 19(3), 9~47.
- 보건복지부(2008~2017). 각 연도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8).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8a). 2018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안내(개정안). 보건복지부.
- 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손창균·이혜민(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울특별시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2017). 2017 유아교육실태조사 요약보고서.
- 신윤정(2018). 보육지원체계 개편 TF 정책제안. 보육지원체계 개편TF 정책토론회 자료.
- 양미선·박진아·손창균·임지희(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양미선·김길숙·손창균·김정민(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 여성가족부(2016).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8). 2018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8a).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 유연근무제 유형(http://worklife.kr/website/index/m2/flexitime_what.asp) (2018.6. 18. 인출)
- 유해미·김아름·김진미(2015). 국내 육아지원정책 동향 및 향후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육아정책연구소(2017). 2016 유아교육 보육 주요통계. 육아정책연구소.
- 이경선·김주후(2010). 유아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가구특성별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1), 21~38.
- 이미화·최윤경·이정원·도남희·권미경·박진아·이혜민·김영원(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 조사 보고
- 이삼식·최효진(2014). 취업여성의 출산행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 이성림(2011). 영유아 자녀 가계의 보육 및 교육서비스 소비 실태. 생활과학, 14, pp.118-134.
- 이성림·성미애(2012). 소득계층을 중심으로 본 영유아 자녀 돌봄 및 교육 실태와 정책적 함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6), pp.23~37.
- 이윤진·이정원·김문정(2013). 5세 누리과정 도입 후 교육보육지출비용 변화 분석 : 2011-2012년 동일기관 이용 가구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7(2), pp.166-189.
- 이정원·도남희·김세현·나지혜(2012). 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2012).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원·이윤진·김희수(2017). 2018-2022 보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이진화·박진아·박기원(2015).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III). 육아정책연구소.

임신출산육아기지원(http://worklife.kr/website/index/m4/worker_pay.asp, 2018. 6. 18. 인출)

장혜경·황정임·최인희·김영란·주재선·김소영(2015). 2015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은영·장명림·민정원·김문정·우석진(2014). 유아수용계획 수립을 위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적용 방안.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최효미·김길숙·이동하·임준범(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V). 육아정책연구소.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V). 육아정책연구소.

행정안전부(2010, 2011). 외국인주민 현황.

행정안전부(2012~2016).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

[보도·보도참고자료]

교육부(2017. 12. 27).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발표

보건복지부(2017. 12. 27).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발표

보건복지부(2018. 1. 17).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선진형 복지국가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2018. 2. 28).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등 핵심 민생법안 포함, 복지부 소관 9개 법안, 2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2018. 4. 16).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가구 월 1170만 원.

보건복지부(2018. 6. 18). “아이는 미래”, 미래를 위한 “아동수당” 내일부터 신청하세요!

통계청(2017. 11. 16). 2016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통계청(2018. 2. 28.). 2017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신문기사]

- 국제뉴스(2017. 11. 3). 제주도교육청, 병설유치원 24학급 신증설...입학 부담 해소
광주매일신문(2018. 2. 26). 올해지역초등학교 입학생 709명 감소... 지난해 比
광주 425·전남 284명 줄어. 10명 미만 입학 속출...대책마련 절실.
글로벌이코노믹(2018. 1. 24). '기저귀 왕국' 김벌리도 저출산엔 속수무책...5500명
감원·공장 10개 폐쇄.
연합뉴스(2018. 2. 12). 저출산 영향 충북 공립유치원·초중고생 18만명 대로 감소
중부일보(2017. 5. 29). 유치원 부족 시흥 목감지구...안산·안양으로 원정 통학
충남일보(2017. 8. 2). 저출산으로 6월 온라인쇼핑 아동·유아용품 홀로 뒷걸음.
한국일보(2018. 3. 1). 가팔라지는 '출산 절벽'...합계출산율 1.17→1.05명 급감.
헬스조선(2017.12. 27.). 임신중 육아휴직 신청 가능...남성출산휴가도 확대.

[홈페이지]

- e-나라지표(www.index.go.kr)
법제처(www.law.go.kr)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http://seoul.childcare.go.kr/Iseoul/10000/d2_10002/d2_10003.jsp)
아동수당(www.ihappy.or.kr)
아이돌봄서비스(www.idolbom.go.kr)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www.betterfuture.go.kr)
한국보육진흥원(www.kcpi.or.kr)

[법률]

- 건강가정기본법[법률 제15350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600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 제91호]
아동수당법[법률 제15539호]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4597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28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541호]

유아교육법[법률 제14567호]

유아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4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142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법률 제12449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88호]

Abstract

Demand for Childcare Services of Household with Infants/Children and Governmental Policy Support

Jeong Won Lee · Jeong Rim Lee · Tae Woo Kim

1.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This study started from a perspective that governmental policy support is necessary as demand for childcare services varies due to social and environmental changes which users' household faces. Continuation of low birthrate results in decrease in number of the service users and specific needs and preferences for childcare services change as various policies for childcare services support change.

In this regard, this study dived into current usage and plans of childcare services and investigated the correlation between demand of the services and policy changes. It has its purpose to suggest governmental policies to reflect the changes in demand.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interviewed 1648 panels of active users of childcare services and inquired current usage of the services, demand, acknowledgement of benefit of policy support for such services, satisfaction, and need for improvements.

The study is planned to interview the same panel total 5 times until year of 2022; first interview was conducted in 2018.

In addition to the user interviews, discussions among service providers such as directors of child care & educational institutions, managers of

childcare support center and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were hold to support the data.

3. Result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when people asked with questions about ideal childcare service, in general they tend to think that household with child between age of 0 and 1 prefer parental care rather than to use the care services, with child between age of 2 and 4 prefer pre-kindergarten, and with child between age of 5 and 6 prefer kindergarten. Household with child who attends elementary school prefers private institutional education for their child after school; being that said, It is clear that private institutional educ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as childcare services especially for household with 1st,2ndand3rdgradeelementarystudents.

Second, even when most of service users are utilizing services as they prefer the most, some users could not use their preferred the most services. The main reasons for those users are 'working parents', 'cost', and 'lack of accessibility'.

Third, policies to support childcare services either implemented in 2018 or planned to be implemented increase service users' willingness to use the service. Specifically, Moon government's 'increase in number of public pre-kindergarten/kindergarten' affects parents' willingness to use such public services. Moreover, increase in maternity leave payment and support for paternity leave also positively influence the user willingness. However, it seems that implementation of standard childcare service operating hours will negatively affect the users.

Fourth, polices like maternity/paternity leave and flexible working hours that support parents to have 'time' to care their children are well-known but less utilized among users. When compared with double income household, single income household's satisfaction toward policies was low.

Fifth, among polices that supports childcare services, household with infant/children feels that they need more monetary support from the

government, especially when the child is infant or when household has single source of income. However, double income household or household with children feels that government need to provide more support for institutional childcare education service. Based on the users' situation, the need for governmental support for childcare services varied.

Sixth, parents seem to value 'childcare taken care by government' the most as direction of government policy, however they seem to have less value on 'free education for all household regardless of their income'. They also think that the most important purpose of the policy is 'to build atmosphere for all children to be raised healthy.'

The final, in the public side, parents wanted 'public childcare institution expansion' in 'childcare educational service' sector and they wanted 'broaden criteria for financial support beneficiary for individual care service' and 'increase in number of public care service provider' in 'individual childcare service' sector. Parents also wanted 'freely utilizing the service without any interference by others' in 'parenting time support' sector and 'increase in financial support' as well.

4. Policy Suggestion

Based on these main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for Korea's childcare policies:

First, directions to support the childcare service demand are 'public childcare service infrastructure expansion', 'service user satisfaction improvement', and 'responsiveness of policy to support change in demand'.

Second, policy to support the change in demand shall consider strategy of 'select and concentrate'. For household with infant at age between 0 and 1, the study suggested policy to expand service infrastructure and improve accessibility of the service, so it can encourage parents to directly engage in childcare. For household with child at age between 2 and 6, the study suggested to expand public child care and educational service infrastructure and improve the service and

to care elementary students, public care infrastructure expansion and services improvement were suggested.

Third, improvement of support for parents to care for their children is suggested as core assignment for policy makers. Specifically, through maternity/paternity leave payment increase, not only double income household, but also single income household and single parent household shall be guaranteed with sufficient time to care for their children.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